

발간등록번호	11-1060100-000255-13
연구보고	2007-60

#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2007



##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2007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교수)  
**박병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  
**김광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  
**허경미** (계명대학교 교수)  
**정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장임다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박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김종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서동혁**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위원)

##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연구요약

### I. 연구목적

- 2007년 전국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 파악
-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그 변화 추이 파악
- 성매매 방지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II. 연구내용과 범위

#### 1.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발생규모

- 성매매 유형은 크게 업소형과 비업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업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추정 가능하므로 “업소”를 가장 기초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업소형은 다시 전업형과 겸업형으로 나눌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 업소의 현황과 규모를 2002년 실태 조사의 기준을 반영하여 파악함.
- 성매매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다룸. ① 성매매 알선업체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② 성매매여성 수, ③ 성매매 구매자 수 또는 성매매 거래량, ④ 경제비용(“성적 서비스 비용”) 분석, ⑤ 성매매의 전체적인 경제규모 추정

#### 2.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는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와 한국 남성의 해외성구매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음.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는 미국, 호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남성의 해외성구매는 중국, 태국,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 3. 성매매여성의 생활사 연구

-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성매매 현장과 성매매여성들의 생활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성매매여성들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후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문헌에서 수행되었던 심층면접의 대표적인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① 성매매시장으로의 유입, ② 성매매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중점적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음. 이 외에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로서 ③ 탈성매매 관련 정책과 탈성매매 과정에 대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조사항목에 반영하였음.

### 4.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형사법적 대응

- 성매매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사건들을 표집하여 '수사 및 재판기록'의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실시
- 주요 연구 쟁점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현황과, ②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당시와의 비교를 통한 변화 및 문제점 고찰

## Ⅲ. 연구방법

### 1.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전국현황 조사

- 조사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상담소를 통한 집결지 업소 조사, 행정자료를 통한 집결지 현황(업소 수, 여성 수) 조사, 한국궤립 면접원을 통한 집결지주변 타 업종 사업체를 통한 탐문 조사 병행
- 조사대상 : 2002년 실태조사 등의 선행연구, 행정자료, 경찰청 자료, 2006년 조사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39개 집결지
- 조사단위 :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이 군집된 일련의 연속적 구역 또는 지역

- 조사기간 : 본 조사는 2007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후 보완(탐문)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 조사내용 : 업소 수 및 성매매여성 규모, 성적 서비스 비용, 성구매자 수 등

## 2. 겸업형 성매매 가능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 조사대상 : 통계청의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 중에서 2002년 실태조사 시 성매매 알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조사된 7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찻집 혹은 다방, 노래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에 속칭 ‘자유업’으로 지칭되는 업종(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들이 포함되는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총 8개 업종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모집단 :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2002년 실태조사 7개 업종에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을 추가하여 8개 업종으로 설정함.
- 표본의 선정 : 전국을 서울,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 농어촌 4개 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의 지역을 성산업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으로 재분류한 다음, 8개 업종별로 지역의 표본수를 비례 배정
  - 유효 표본 3,60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성매매 알선영업 여부, 성매매여성 수, 성적 서비스 비용, 성구매자 수 등
- 조사의 실시 : 조사경험이 풍부한 한국갤럽의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한국갤럽 연구진에서 직접 조사원 교육을 시키고,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초순부터 9월 말까지 실시

## 3.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연구

- 문헌검토: 관련 보도자료, 국내외 관련기관 보고서 문헌검토
- 현지방문: 미국과 호주 현지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

#### 4. 성매매여성 생활사 연구

-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와 연결하여 총 20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음.
- 심층면접 시기와 방법 : 2007년 8월~10월, 총 3개월 동안 1:1 면접을 기본으로 수행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그룹면접 방식을 취하였음. 면접 자료의 수집은 사전에 동의를 얻어 녹음하는 것과 면접자가 사전에 준비된 면접지침서에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함.

#### 5. 성매매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 조사방법 : 사건조사표 및 피의자조사표를 이용한 수사 및 재판상 기록 분석
- 조사기간 : 2007년 8월 26일~9월 18일, 4주간
- 표집방법 : 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2004년 9월~2007년 5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 보존되어 있는 해당범죄의 사건번호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확정 판결된 사건들의 목록을 표집틀로 이용,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청별, 분기별 접수비율을 고려하여 5% 임의표집
- 조사기록 : 총 659건, 2,938명의 피의자의 수사 및 재판 기록 분석 시행

### IV. 주요 연구결과

#### 1.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

- 조사지역 : 소위 집결지로 인식되는 39개 지역(2002년 기준 반영)
- 39개 집결지역 총 업소 수 : 1,443개
- 39개 집결지역 성매매여성 수 : 3,644명
- 39개 집결지역 연간 성구매자 수 : 251만 명
- 39개 집결지역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 5.8명
- 39개 집결지역 연간 거래액 : 2,068억원
- 39개 집결지역 평균 성적 서비스 비용 : 82,251원
- 연간 전업형 집결지 매출 규모 : 약 2,068억 원

## 2. 겸업형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 전국 일반유흥주점업 56.2%, 무도유흥주점업 56.3%, 간이주점업 2.7%, 다방운영업 28.6%, 노래방운영업 19.4%, 이용업 12.2%, 마사지업 62.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25.5%로 추정
- 전국 성매매 알선업체 수 : 2007년 기준, 8개 업종 44,804개 업소로 추정
- 업종별 업소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 추정 : 일반유흥주점업 4.01명, 무도유흥주점업 3.60명, 간이주점업 1.16명, 다방운영업 2.06명, 노래방운영업 3.43명, 이용업 1.16명, 마사지업 2.64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1.74명으로 전체 평균은 3.29명으로 추정
- 전국 8개 업종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수 추정: 2007년 기준 147,000여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8개 업종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음.
-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의 업소당 평균 성구매자 수는 평균 3.39명이며, 전체 일일 평균 구매자수는 151,000여 명으로 조사되었고,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의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은 150,000여 원으로 조사됨.
- 연간 성구매자 수 : 5,010만명으로 추산됨.

## 3. 전체 성매매 관련업소의 분포현황 및 규모(인터넷 및 기타 포함)<sup>1)</sup>

- 전국 성매매 (알선) 업소수 : 전업형 성매매 업소수와 겸업형의 성매매 알선 업소수는 46,247개로 추정됨.
- 전체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여성 수 추정: 본 연구에서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포함한 전체 성매매여성 수는 약 270,000명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수는 약 118,000여 명으로 추정됨. 약 270,000명 수준의 성매매여성 수는 20~30대 여성 인구의 3.5%를 차지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여성 인구의 약 6.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연간 성구매자 수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포함한 연간 성

1) 전체 성매매 관련업소의 현황 및 규모는 전업형, 겸업형과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포함한 것이며,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는 단속실적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합계의 44%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제4장 제2절 다 참조).



구매자 수는 약 9,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구매자 수는 4,134만 명으로 추정됨.

-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규모 : 2007년 기준, 전업형 집결지의 총 거래액은 2,000억 여 원, 겸업형 8개 업종의 성매매로 인해 산출되는 총 거래액은 약 7조 7,000억 원,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총 거래액은 6조 2,000억여 원으로 총 14조여 원으로 추정
- 성매매 관련 산업의 거래액 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6년 국내 총생산(GDP) 847조 9천억 원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임.

#### 4. 성매매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서비스업 전체로는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7.7%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주요 서비스 부문별로는 일반성매매 관련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같은 기간 중 견조하게 상승하였음. 이에 비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 무도주점업 등 대상 업종은 각각 0.3% 상승하거나 2.1% 하락하여 여타 서비스업과 크게 대조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일반성매매 관련 산업이 하락하는 추세와 성매매처벌법 등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가능함. 특히 2004~2005년 기간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평균 1.7%상승한 것에 비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경우 12.1% 하락한 것은 성매매처벌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성매매 관련 산업등과 대체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1~2005년 기간중 평균 9.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은 8.2%,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은 8.7% 상승하여 대조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5.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 미국의 경우 인신매매와 관련된 미연방기관 합동 검거를 통해 성매매에 연루된 한국여성들이 발견되고 있음. 이들은 한국에서부터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알선광고에 유인되어 미국에서 성매매를 하게 됨. 이들은 범죄와 연루된 알선조직이

제공하는 위조 신분증이나 캐나다·멕시코를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옴. 한국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서부와 동부뿐만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함. 알선조직과 업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여성들을 이동시키고 있음. 인신매매 피해자로 밝혀지면 여성들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미국에서 추방됨.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는 합법화되어 있음. 외국인의 경우 법적 체류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법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호주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됨. 취업이나 일하며 영어를 배우는 기회로 유인하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여성들 유인됨. 다수가 문화교류 취업비자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통해서 입국함.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로서 성매매여성이 2003~2004년 63명에서 2004~2005년 222명으로 증가함. 2002~2005년 불법성매매로 적발된 한국여성 비중은 전체 적발된 여성 중 15%~25%를 차지하고 있음. 호주에서도 불법 성매매여성 중 인신매매피해자는 정부의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만 여타의 경우는 추방됨.
- 일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알선광고로 여성을 주로 유인 함.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사해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알선료가 낮음. 3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에 체류 조건을 어기지 않고 성매매하는 여성이 많음. 일본 경찰 단속이 활발하지 않아 성매매가 성행되고 있고 한국의 성매매여성들은 에이즈, 폭력, 범죄, 인권유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남성들의 해외 성구매를 보면, 중국의 경우 하이난과 칭다오에서는 골프여행을 동반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남성들은 단체관광객으로 혹은 가이드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하이난, 상하이, 하얼빈, 칭다오, 웨이하이, 단둥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음. 중국 당국의 방관, 가이드의 역할, 여행사의 묵인, 한국남성의 관심이 결합되어 중국에서 한국 남성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 태국의 경우 주요 성매매 경로는 단체관광을 통해 이루어짐. 현지 유흥업소를 통해 상대를 찾기도 함. 한국남성이 태국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다는 보고가 있음. 또 마약을 복용하거나 성매매 여성에게 마약을 권한다는 사례도 수집되어 있음. 성매매여성에 대한 가학적 성행위 요구 및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가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성구매자 층은 크게 단체관광객과 유학생·어학연수생으로 구분됨. 단체관광객은 관광 후 유흥업소에서 상대를 찾아 2차를 나간다고 함.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학생들도 성매매를 하고 있음. 코피노라 불리는 이들의 자녀

가 현지에서 자라고 있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필리핀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한국남성의 가학적 성행위 요구 및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이 보고됨.

## 6.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의 변화

- 2004년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으로 인한 한국 성매매 현실의 변화는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성매매여성과 업주와의 관계의 변화 : 여전히 성매매여성과 업주는 폭력, 감금 등의 지배종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채권무효 관련 조항과 경찰 단속 강화 등으로 성매매여성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됨. 이에 업주와 선불금 혹은 빚이 감소되어 지배와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었음. 또한 수입 분배 차원에서도 기존에 업주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일정 부분 변하였다고 함.
-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와의 관계 변화 :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의 관계가 기존에는 성적 협박이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관계였음.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강력해진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과 모욕도 다소 줄었음.
-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각종 전달체계가 수립되어 성매매 현장으로 투입되는 등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이루었음. 특히 성매매피해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결심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처음에는 상담소나 지원시설의 종사자를 불신하였으나 점차 신뢰하게 되어 정서적 지지자 혹은 원조자로 인식하게 됨.
- 새로이 수립된 자활지원정책으로 인한 변화 : 성매매여성에게 있어 자활지원정책은 탈성매매의 직접적인 기회와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과 생활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는 기회로서 의미를 가짐.

## 7.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에 따른 성매매 사건 처리현황 분석

- 기획수사와 성매매 업소유형 : 성매매위반 사건의 업소형 성매매 중에서는 안마시술소/스포츠 마사지업소(21.9%)가, 경로형 성매매 중에서는 인터넷채팅(23.3%)

이 가장 많이 검거됨. 이는 성매매 집결지의 축소도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인터넷과 마사지업소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기획수사에 있다고 판단됨.

- 유사성교행위와 성매매업소유형 : 유사성교행위의 경우 현재 조사된 성매매위반 사건의 13.8%로, 성교행위에 대한 단속(84.9%)보다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나 꾸준히 단속되고 있음. 유사성교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51.4%)였으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소만을 비교해보면 성교행위(73.3%)가 유사성교행위(26.7%)에 비해 3배가량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및 한계 : 전체 형사사건의 구공판 구속율이 2.0%인데 비해, 성매매 강요자의 구공판 구속율이 17.9%, 단순성매매 알선자가 14.1% 등으로 높아,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소율의 경우에도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 44.3%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의 기소율은 71.9%로 매우 높은 편으로,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단속이 되는 경우 많은 수가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동시에 약식기소율이 63.8%를 차지하여 양형의 정도는 그리 강화되지 않음.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 단속 및 처벌의 미비 : 윤방법과는 달리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중간착취자의 알선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는 반인권적인 성산업 구조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의 형태를 직업소개행위, 장소·자금·토지 제공행위 및 광고행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인신매매 등 성매매강요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성매매강요행위인 제18조 위반의 경우 1.9%, 성매매광고행위인 제20조 위반인 경우는 2.0%로 실제 적용율은 낮은 편임. 특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인 제18조 3항 3호 위반은 한 사례도 없었음. 그리고 만약 법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다하더라도 약식기소율이 높은 편임(광고업자 80.0%, 건물주 84.6%, 장소제공자 72.4%, 성매매 강요자 67.5%). 성매매처벌법의 규정이 세분화되고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관행상 윤방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찰의 구형 및 법원 선고의 강화 :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해볼 때,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의 자유형 구형은 2002년보다 약 12.8% 포인트 증가(9.2% → 21.3%), 벌금형 구형은 2002년 보다 약 12.1% 포인트 감소하여(90.8% → 78.7%),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당시보다 검찰의 구형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법원

선고 역시 강화되어 2002년에 비해 실행 선고율은 1.6% 포인트 증가(1.6% → 3.2%), 벌금형 선고율은 3.3% 포인트 감소하였음(90.0% → 86.7%).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을 비교해보아도 전체적으로 윤방법 당시보다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우선 구공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6%에서 20.1%로 9.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구공판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 증가, 법원의 선고형량의 경우 실행은 평균 9.17개월에서 10.7개월로 상승하였음. 구약식의 경우도 검찰의 구벌금은 평균 1,512,600원에서 1,712,300원으로, 법원의 선고벌금은 평균 1,458,700원에서 1,695,700원으로 증가하였음.

- 신설된 몰수·추징 규정 및 성매매보호처분 적용의 한계 : 알선자의 성매매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성매매의 불법수익구조를 근절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전체 성매매 알선 피의자 중 10.5%에만 부과되어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고 있음. 성매매 보호처분 역시 전체 성매매 피고인의 4.6%에만 부과되는 등 그 활용정도가 낮은 편임.
-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의 한계 : 성매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스쿨 교육이 한계가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제도가 없는바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이 요청됨.
- 선불금 관련 판례 분석 : 선불금 관련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업주의 선불금 지급 뿐 아니라 사채업자 등 금융기관의 선불금 지급까지 채권무효로 하고 있어, 윤방법 당시 선불금 무효규정을 피하고자 했던 관행을 근절하려는 사법기관의 의지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

## V. 정책제언

### 1. 성매매 금지주의에 따른 사회의식 확산

- 성매매가 범죄임을 천명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범시민운동이 필요함. 특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에만 집중되었던 기존 성매매방지정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성산업, 성구매자에 대한 개입을 보다 강화함과 더불어 사후적 개입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강조되어야 함.

- 다양한 범시민운동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남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함.

## 2. 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의 필요성

- 전담인력·부서 증원 및 시민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의식을 제고해야 함. 지난 3~40년간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성산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협동해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예방, 억제, 처벌하기 위한 선택의 정서」에 의거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단속·처벌(prosecution)의 3차원적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성산업 축소 및 수요 차단을 위한 집행력의 강화가 필요함. 특히 성산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과 성구매자 처벌 등의 처벌법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 밖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신종·변종 성산업 업소를 단속하는 차원의 집행이 필요하며,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과정이 필요함.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수사 역량 강화도 같은 차원이 될 수 있겠음.
- 일단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함. 이미 우리나라는 성매매 음성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결국 정부와 경찰의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관련부처·경찰·민간단체 간의 연계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해야 사회적 충격과 비용, 그리고 혼란을 줄이고 성매매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실적 평가를 활용,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권장해야 함.

### 3. 인터넷성매매 축소를 위한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대처

- 성매매알선에 이용된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 처벌 및 사이트 폐쇄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함. 아울러 유료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접근제한어(예를 들어 조건만남 등)를 정하여 ‘청소년 접근 제한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한어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등법)상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터넷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와 더불어 요건사실의 입증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사이트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운영진에 대해서 대한민국국적여부, 국외서버를 둔 곳의 범죄성립여부 등 국제공조에 의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임.

### 4. 해외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한인 해외성매매에 있어 불법채류 외국여성에 대한 밀입국 알선행위, 불법 인신구속 및 성매매 강요와 관련, 국제규범과 달리 인신매매를 성폭력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술홍행 채류자격증 송출업체, 특수관광협회, 연예기획사 등에 의한 강제적 성매매, 임금체불,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 및 외국인피해자 보호시설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각국의 인신매매 혹은 성매매 관련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 호주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의 관련 기관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직업 활동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호주에서 불법적 성매매에 종사하다 적발된 여성과 이에 관련된 브로커의 기록을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 공유하여 이들에 의한 해외 성매매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미국 성매매 알선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많아 미국 성매매 행을 선택하게 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불법 채

류 혹은 성매매와 관련된 기록을 미국의 국토안보부, 국무성 등과 한국의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 공유하여 이들에 의한 해외 성매매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는 성매매에 대해서 경찰이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호주나 미국과 차이가 있음. 이런 환경에서 유흥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번성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음. 성매매여성의 신변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색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 수사 당국의 적극적 공조가 요구됨.
- 한국 남성의 중국, 태국, 필리핀에서의 성구매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적 행위이지만, 이들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규제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정부 당국은 한국에 소재한 여행사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현지 가이드를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가이드와는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함.

## 5.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 전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서울 등 특·광역시나 중소도시에서는 마사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에서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다방운영업에서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에 의한 위반 성매매 업소의 유형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검거(23.3%)와 안마시술소/출장마사지(21.9%)의 검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건의 특성상 접근성이 수월한 업종에서의 수사결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성매매알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실효성 있는 법적 대책의 보완작업이 요구됨. 우선 중간매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폐쇄하고 주변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안 마련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 음성적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언론 등이 제기한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따른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함. 적발 시 영업장폐쇄 근거를 마련하고, 알선업자와 건물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보



완해야 함. 유흥향락업소에 대한 허가제·신고제의 제도정비 및 업종전환을 위한 거시적인 경제정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존스쿨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해외 원정 성매매의 실태 및 국가위신도 등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이를 파악하고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성매매여성들의 해외 송출 문제와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6.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적극적 홍보

-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긴급구조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장 성매매 현장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성매매현장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추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생존권 보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함. 단기간 내 자활이 어려운 성매매여성의 특성을 고려, 자활 이후에는 임대주택 또는 그룹홈 등 안정적 장기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성매매시장 재유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의식개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함. 본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는 성공하고 있으며, 상담소 관계자에 대한 신뢰 관계도 성립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펴나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책이 성공하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할 것임.
- 탈성매매에 대한 성공사례는 여성의 '생존권·근로권' 및 '성(性)의 자기결정권' 등 성매매 탈범죄화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강제된 선택'임을 홍보하고,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탈성매매 자활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실질적 생존권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조사결과 요약

### 1. 성매매 규모 실태(2007)

#### □ 성매매 경제 규모

	업소수 (개, 건)	성매매여성 수 (명)	연간성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 (억원)
전업형	1,443	3,644	251	2,068
겸업형	44,804	147,392	5,010	76,865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36,337)	118,671	4,134	62,019
합 계	46,247 (82,584)	269,707	9,395	140,952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여성 수, 성구매자 수, 연간 거래액의 경우, 단속실적 비율을 고려해서 전체 합계의 44%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함(제4장 제2절 다 참조).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비업소형이나 경로형 등의 유형으로 대부분 업소의 형태를 띠지 않으므로 업소 수는 추정하지 않음.

○ 추정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업소수는 46,000여 개로 나타났음.

- 전업형 업소수는 1,443개, 겸업형 성매매 업소수는 44,804개, 그리고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업소수는 추정하지 않음.
- 성매매여성 수는 전업형 3,644명, 겸업형 약 148,000명,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약 120,000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270,000명으로 추정되었음.
- 연간 성구매자 수는 전업형 251만여 명, 겸업형 5,000만여 명,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4,100만여 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9,395만 명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성매매 산업의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하면 전업형이 2,000억여 원, 겸업형이 약 7조 7,000억 원,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6조 2,000억여 원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성매매로 인한 연간 거래액은 14조여 원 정도로 추정되었음.
- 이것은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847조 9,000억 원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매매 알선 비율(겸업형)

업종	알선 비율	사업체 모집단(개)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일반유흥주점업	0.562	40,482	22,731
무도유흥주점업	0.563	5,460	3,074
간이주점업	0.027	84,564	2,310
다방운영업	0.286	16,056	4,585
노래방운영업	0.194	36,080	7,000
이용업	0.122	21,832	2,653
마사지업	0.627	3,001	1,880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0.255	2,241	571
합계	0.214	209,716	44,804

-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의 겸업형 사업체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21.4%로 나타났으며, 마사지업이 62.7%, 무도유흥주점업이 56.3%, 일반유흥주점업이 56.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간이주점업은 2.7%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8개 업종 전체 사업체 209,716개 중에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약 44,804개로 나타났음.

□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

○ 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 (개, %)	지역내 업소수 (개, %)	지역내 성매매여성수 (명, %)
유리방	23(59.0)	916(63.5)	2,375(65.2)
기지촌	2(5.1)	35(2.4)	130(3.6)
여관/여인숙	6(15.4)	229(15.9)	204(5.6)
주점식 전업형	8(20.5)	263(18.2)	935(25.7)
합계	39(100.0)	1,443(100.0)	3,644(100.0)

- 성매매여성의 규모는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전업형의 경우 39개 집결지역내에 1,443개 업소에 있는 성매매여성의 규모가 약 3,644명으로 추정되었음.

○ 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개)	업소별 성매매여성 평균 추정치 (명)	업종별 성매매여성 전체 규모 추정치 (명)
일반유흥주점업	22,731	4.01	91,116
무도유흥주점업	3,074	3.60	11,071
간이주점업	2,310	1.16	2,678
다방운영업	4,585	2.06	9,463
노래방운영업	7,000	3.43	24,025
이용업	2,653	1.16	3,079
마사지업	1,880	2.64	4,965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71	1.74	993
합계	44,804	3.29	147,392

- 겸업형의 경우,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성매매여성은 평균 3.29명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하면 약 147,392명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업에 가장 많은 91,11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이 24,025명으로 뒤를 따랐음.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에는 가장 적은 9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간이주점업소가 2,678명으로 추정되었음.

○ 종합

구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합계
성매매 여성(명)	3,644	147,392	118,671	269,707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업형은 영업일수를 300일로 가정하고, 겸업형은 영업일수를

330일로 가정하고, 단속 비율을 고려해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전체 성매매 거래의 44%인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업형은 3,644명, 겸업형은 147,39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118,67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269,707명으로 추정되었음.

#### □ 성구매자 규모

##### ○ 전업형

구분	유리방	기지촌	여관/ 여인숙	주점형	전체
지역수(개)	23	2	6	6	39
지역당 평균 업소수(개)	39.8	17.5	38.2	32.9	37.0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수(명)	4.3	10.0	7.5	7.6	5.8
1인당 1일 성구매자수(명)	1.7	2.7	8.5	2.1	2.3

- 전업형 집결지역에서 성구매자 수를 살펴보면, 39개 집결지역내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평균 5.8명으로 나타났음.

- 이것을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로 살펴보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음.

##### ○ 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개)	업소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추정치 (명)	전체 1일 성구매자 수 추정치 (명)
일반유흥주점업	22,731	3.76	85,367
무도유흥주점업	3,074	2.70	8,314
간이주점업	2,310	3.19	7,375
다방운영업	4,585	1.99	9,139
노래방운영업	7,000	3.03	21,194
이용업	2,653	2.66	7,032
마사지업	1,880	6.00	11,282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71	3.68	2,100
합계	44,804	3.39	151,803

-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를 살펴보면, 평균 3.39명으로 나타났음.

- 이것을 1일 전체 성구매자 수로 살펴보면, 151,000여 명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업소가 85,367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가 2,100명으로 가장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

구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합계
연간 성구매자 규모(만명)	251	5,010	4,134	9,395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전체 성매매 거래 규모의 44%인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업형은 연간 251만여 명, 겸업형은 연간 5,010만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약 4,134만 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9,395만 명으로 추정되었음.

□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 전업형

구분	유리방	기지촌	여관/여인숙	주점식 전업형	전체
지역수(개)	23	2	6	8	39
지역당 평균 업소수(개)	39.8	17.5	38.2	32.9	37.0
성적 서비스 평균비용(원)	65,836	122,442	34,434	163,415	82,251

- 전업형 집결지역의 경우, 평균 구매 비용이 82,251원으로 나타났으며, 주점식 전업형 형태가 163,41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관/여인숙 형태가 평균 34,43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만원)
일반유흥주점업	22,731	16.63
무도유흥주점업	3,074	19.37
간이주점업	2,310	15.00
다방운영업	4,585	10.00
노래방운영업	7,000	16.28
이용업	2,653	7.57
마사지업	1,880	11.35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71	9.50
합계	44,804	15.15

-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성적서비스 구매 평균비용은 약 152,000원으로 나타났음. 그 중 무도유흥주점업소가 약 194,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유흥주점업소가 약 166,000원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이용업이 약 76,000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2.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 성매매 경제 규모의 변화

○ 전업형

구분	추정 결과		
	2002년	2007년	증감
지역 수(개)	69	39	-30
전체 업소수(개)	2,938	1,443	-1,495
전체 성매매여성 수(명)	9,092	3,644	-5,448
연간 성구매자 수(천명)	21,003	2,514	-18,489
성적 서비스 평균비용(원)	73,961 ~ 168,647	82,251	-
연간 거래액(억원)	18,318	2,068	-16,250

- 본 조사의 전업형 집결지역을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69개에서 39개로 감소하였음.
  - 연간 이용 구매자수가 2,100만여 명에서 2007년에 251만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연간 거래액 규모는 2002년 1조 8,000억여 원 규모에서 2007년 2,000억여 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1조 6,000억여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전업형 집결지역 수의 감소는 업소수의 감소와 연간 성구매자수의 감소로 이어짐.

○ 겸업형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겸업형 8개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02년도 203,288개소이고, 2007년도는 209,716개로 업소의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여성종사자(상용종사자, 임시/일용직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의 수는 2002년도 293,633명이며 2007년도에는 294,505명임(단,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 종사자들 모두가 성매매여성이 아님).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전체 1일 성구매자 수(명)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만원)		연간 거래액(억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희 주점업	28,093	22,731	197,772	85,367	18.35	16.63	108,900	46,849	-62,051
무도유희 주점업	1,461	3,074	5,187	8,314	20.67	19.37	3,216	5,314	+2,098
간이주점업	8,412	2,310	34,828	7,375	15.09	15.00	15,734	3,651	-12,083
다방운영업	9,757	4,585	53,953	9,139	8.34	10.00	13,054	3,016	-10,038
노래방 운영업	5,849	7,000	21,058	21,194	15.82	16.28	9,995	11,393	+1,398
이용업	2,929	2,653	27,475	7,032	9.22	7.57	7,601	1,757	-5,844
마사지업	1,437	1,880	21,972	11,282	13.22	11.35	8,717	4,227	-4,490
기타미용 관련서비스업	-	571	-	2,100	-	9.50	-	658	-
합계	57,938	44,804	357,739	151,803	15.37	15.15	164,996	76,865	-88,101



- 이 중에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2007년 겸업형 업소의 연간 거래액 규모는 약 7조 7,000억 원 정도로 나타났음.
- 2002년 연간 거래액 규모인 약 16조 5,000억 원 규모에 비해 8조 8,000억여 원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업에서 약 6조 2천억여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 운영업이 약 1,4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성매매 알선율의 감소로 2002년에 비해 알선 사업체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서비스 거래액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인터넷 및 기타

- 각 년도 단속 실적 비율을 반영하여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2002년도에 약 5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07년도 6조 2,000억여 원 규모로 4,100억여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

구분	업소수(개, 건)		성매매여성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연간 거래액(억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	2,100	251	18,318	2,068	-16,250
겸업형	57,938	44,804	241,114	147,392	10,732	5,010	164,966	76,865	-88,101
인터넷/기타	(19,224)	(36,337)	79,012	118,671	4,052	4,134	57,879	62,019	+4,140
합 계	60,876 (80,100)	46,247 (82,584)	329,218	269,707	16,884	9,395	241,163	140,952	-100,211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추정 : 단속실적 반영 비율 2002년도 24%, 2007년도 44%

- 전업형, 겸업형, 그리고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성매매 경제규모는 2002년도 24조여 원에서 2007년도 14조여 원으로 10조여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매매 알선 사업체의 변화

○ 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개)			지역내 업소수(개)		
	2002년	2007년	증감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69	39	-30	2,938	1,443	-1,495

- 전업형 집결지역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통적 의미의 집결지역 수는 2002년 69개에서 2007년은 39개 지역으로 감소했음.

○ 지역 내 전체 업소수도 2002년 2,938개에서 1,443개로 약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겸업형

업종	알선 비율			사업체 모집단(개)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2002년	2007년	증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주점업	0.799	0.562	-0.237	35,151	40,482	28,093	22,731	-5,362
무도유흥주점업	0.456	0.563	+0.107	3,207	5,460	1,461	3,074	+1,613
간이주점업	0.090	0.027	-0.063	93,814	84,564	8,412	2,310	-6,102
다방운영업	0.387	0.286	-0.101	25,228	16,056	9,757	4,585	-5,172
노래방운영업	0.182	0.194	+0.012	32,220	36,080	5,849	7,000	+1,151
이용업	0.113	0.122	+0.009	25,911	21,832	2,929	2,653	-276
마사지업	0.379	0.627	+0.248	3,787	3,001	1,437	1,880	+443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0.255	-	-	2,241	-	571	-
합계	0.26	0.214	-0.046	219,318	209,716	57,938	44,804	-13,134

- 업종별/지역별 성매매 알선 비율을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26%에서 21.4%로 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일반유흥주점업에서는 감소하였고, 마사지업에서는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는 마사지업이 37.9%에서 62.7%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는 57,938개 사업체에서 44,804개 사업체로 약 13,000여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

구분	업소수(개, 건)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1,495
겸업형	57,938	44,804	-13,134
인터넷 및 기타	(19,224)	(36,337)	+(17,113)
합 계	60,876 (80,100)	46,247 (82,584)	-14,629 (+2,484)

※ 합계에서 ( )안의 숫자는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할 경우의 업소수임.

- 전업형과 겸업형 업소들만으로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를 비교할 경우, 2007년도의 경우 46,247개 사업체로 2002년도에 비해 14,000여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접대비 상한액을 500,000원으로 제한한 정책으로 일반유흥주점업에서의 접대가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자유업종인 마사지업에서의 성매매율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전업형 집결지역의 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성매매여성 규모의 변화

○ 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개)		지역내 업소수(개)		성매매여성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69	39	2,938	1,443	9,092	3,644	-5,448

- 전업형 집결지역내 성매매여성 규모와 관련해서 2002년에는 69개 지역 9,000여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에서는 39개 지역 3,644명으로 나타나 5,400여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성매매여성 평균 추정치(명)		성매매여성 전체 규모 추정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 주점업	28,093	22,731	4.97	4.01	139,620	91,116	-48,504
무도유흥 주점업	1,461	3,074	5.53	3.60	8,081	11,071	2,990
간이주점업	8,412	2,310	2.52	1.16	21,199	2,678	-18,521
다방운영업	9,757	4,585	3.36	2.06	32,782	9,463	-23,319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	3.43	-	24,025	-
이용업	2,929	2,653	2.56	1.16	7,498	3,079	-4,419
마사지업	1,437	1,880	7.29	2.64	10,476	4,965	-5,511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571	-	1.74	-	993	-
합계	57,938	44,804	4.16	3.29	241,114	147,392	-93,722

- 겸업형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평균 추정치가 2002년 4.16명에서 2007년 3.29명으로 감소하였음. 전체 여성 규모도 2002년 241,000여 명에서 2007년도에 147,000여 명으로 93,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2002년도에 비해 성매매여성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유흥주점업 및 다방운영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음.

○ 마사지업의 경우 업소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업소의 성매매여성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성매매여성 수가 7.27명에서 2.64명으로 감소 추정된 사실에 기인함.

○ 인터넷 및 기타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의 경우 2007년도에 약 120,000여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40,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종합

구분	업소 수(개, 건)		성매매여성 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	-5,448
겸업형	57,938	44,804	241,114	147,392	-93,722
인터넷 및 기타	(19,224)	(36,337)	79,012	118,671	+39,659
합 계	60,876	46,247	329,218	269,707	-59,511

-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종사 여성 규모가 약 270,000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59,000여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업형은 2002년 약 9,100명에서 2007년 3,600여명으로 감소하였음.

○ 겸업형은 2002년도 241,000여명에서 2007년 147,000여명으로 93,000여명이 감소하였음.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2002년도 80,000여명에서 2007년도에 약 120,000명으로 약 40,000명 증가하였음.

## □ 성구매자 규모의 변화

### ○ 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 수(개)		성매매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69	39	7.0	2.3	2,100	251	-1,849

※ 성매매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에서 2002년의 경우 7.0명은 단속 통계에서 추정된 값이며, 조사자료에서 추정된 값은 평균 4.3명임.

- 전업형 업소의 경우,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가 2002년도에는 평균 7.0명이었으며, 2007년도에는 평균 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간 성구매자 수는 2007년도에 약 251만 명으로 2002년도 약 2,100만 명에 비해 1,800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겸업형<sup>2)</sup>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 주점업	28,093	22,731	7.04	3.76	5,933	2,817	-3,116
무도유흥 주점업	1,461	3,074	3.55	2.70	156	274	+118
간이주점업	8,412	2,310	4.14	3.19	1,045	243	-802
다방운영업	9,757	4,585	5.53	1.99	1,619	302	-1,317
노래방 운영업	5,849	7,000	3.60	3.03	632	699	+67
이용업	2,929	2,653	9.38	2.66	824	232	-592
마사지업	1,437	1,880	15.29	6.00	659	372	-287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571	-	3.68	-	69	-
합계	57,938	44,804	6.17	3.39	10,732	5,010	-5,722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의 성문화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자료(여성가족부, 2007c)에 의하면 10명중 4명은 법 시행후 성구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애 1회 이상 성매매 경험자 중 42.4%는 최근 3년간 성매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최근 1년간 성구매 횟수의 감소가 그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82.9%로 최근 1년간 성구매 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이후 성구매 횟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

- 겸업형의 업종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6.17명에서 2007년도에 3.39명으로 감소하였음.
- 연간 성구매자 수를 추정하면 2007년도에 5,000만여 명으로 2002년도의 1억여 명에 비해 5,700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 업이 2002년도에 비해 3,100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다방운영업이 1,300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마사지업 및 이용업 등에서의 업소 수는 증가하였지만, 성구매자 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인터넷 및 기타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한 전체 성구매자 규모는 2007년도에 약 4,100만여 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82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구분	업소 수(개, 건)		연간 성 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2,100	251	-1,849
겸업형	57,938	44,804	10,732	5,010	-5,722
인터넷 및 기타	(19,224)	(33,489)	4,052	4,134	+82
합 계	60,876	46,247	16,884	9,395	-7,489

-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에 연간 성구매자 규모가 약 9,400만 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7,50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의 변화

○ 전업형

구분	2002년		2007년
	short	long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원)	73,691	168,647	82,251

- 전업형 업소의 경우, 2002년도에는 성적 서비스 비용을 long time과 short time을 구분해서 short time이 평균 73,691원, long time이 평균 168,647원으로 나타났음.
- 2007년도 성적 서비스 비용은 평균 82,251원으로 나타났음.

○ 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만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18.35	16.63	-1.72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20.67	19.37	-1.30
간이주점업	8,412	2,310	15.09	15.00	-0.09
다방운영업	9,757	4,585	8.34	10.00	+1.66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15.82	16.28	+0.46
이용업	2,929	2,653	9.22	7.57	-1.65
마사지업	1,437	1,880	13.22	11.35	-1.87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571	-	9.50	-
합계	57,938	44,804	15.37	15.15	-0.22

- 겸업형의 업종별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은 2002년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2002년이나 2007년 모두 150,000여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 별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목 차

가. 요약 .....	i
나. 조사결과 요약 .....	xv
<b>제1장 서론</b> .....	1
제1절 문제제기 .....	3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5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조사대상 업소 형태 .....	6
제4절 연구의 제한점 .....	10
<b>제2장 연구방법</b> .....	11
제1절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에 관한 방법론 .....	13
1. 성매매 집결지역 실태조사(전업형) .....	13
가. 조사개요 .....	13
나. 조사지역 선정 .....	19
다. 조사진행 .....	26
라. 주요 조사 내용 .....	28
2.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겸업형) .....	29
가. 조사개요 .....	29
나. 표본 설계 .....	31
다. 질문지 설계 .....	38
라. 실사 설계 .....	41
마. 모집단 수정 .....	43
3. 2007년 실태조사 특징 및 조사진행 방법 .....	45
제2절 성매매여성 실태 조사방법 .....	48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 .....	48
2. 심층면접의 시기와 방법 .....	48

3. 심층면접 내용과 세부 조사항목 .....	48
제3절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조사방법 .....	51
1. 공식통계자료 분석 .....	51
2.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 분석 .....	51
3. 판례 분석 .....	51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	52
1. 관련 보도자료 분석 .....	52
2. 국내외 관련기관 보고서 및 문헌 검토 .....	53
3. 외국 현지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 .....	53
<b>제3장 2007년 성매매 실태 .....</b>	<b>55</b>
제1절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역 조사 결과 .....	57
1. 지역 특성 .....	57
2. 자료처리 과정 .....	58
3. 주요 조사 결과 .....	60
가. 업소 수 및 성매매여성 수 .....	60
나. 성적 서비스 비용 .....	61
다.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	61
라. 집결지역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	62
마. 기타 관련 사항 .....	63
제2절 겸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에 대한 전국표본 조사결과 .....	65
1. 추정식 .....	65
가. 성매매 알선 비율 .....	65
나. 성적 서비스 비용 .....	66
다.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규모 추정 .....	67
2. 겸업형 업소 전체 종사 여성 규모 .....	67
3.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 업체 규모 .....	71
가. 일반유흥주점업 .....	71
나. 무도유흥주점업 .....	74
다. 간이주점업 .....	76

라. 다방운영업 .....	78
마. 노래방운영업 .....	80
바. 이용업 .....	82
사. 마사지업 .....	85
아.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87
자. 성산업 업종별 성매매 실태 .....	89
4. 성매매여성 규모 .....	91
5.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	94
6.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	97
제3절 인터넷 성매매 실태 .....	98
1.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인터넷 성매매 단속 현황 .....	98
2. 인터넷 성매매 유형 .....	101
가. 채팅포털 사이트 .....	101
나. 일반 포털사이트 .....	101
다. 유흥업소 사이트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	102
라. 역할대행(애인대행) 사이트 .....	103
마. 성인(채팅)사이트 .....	103
3. 정책적 시사점 .....	104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	106
1.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	106
가.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경로 및 실태 .....	106
나.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	115
다.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	127
2. 한국남성의 해외 성구매 경로 및 실태 파악 .....	133
가. 한국남성의 중국 성구매 경로 및 실태 .....	133
나. 한국남성의 태국 성구매 경로 및 실태 .....	137
다. 한국남성의 필리핀 성구매 경로 및 실태 .....	141
3. 소 결 .....	144

<b>제4장 한국의 성매매 시장분포 및 규모추정</b> .....	147
제1절 지역별 분포 상황 .....	149
1. 유흥업소의 전국 분포 .....	149
가. 유흥업소의 전국 현황 .....	149
나. 업종별/지역별 유흥업소 현황 .....	152
2. 연도별 유흥업소 현황 변화 .....	160
가. 업종별/연도별 유흥업소 현황 변화(전국) .....	160
나. 업종별/연도별 사업체 현황 변화(지역별) .....	160
제2절 성매매의 경제규모 .....	172
1. 성매매의 경제규모 추정 .....	172
가. 전업형 성매매 .....	172
나. 겸업형 성매매 .....	173
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	173
2. 성매매 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평가 .....	175
제3절 성매매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177
1.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의의 및 효과 .....	177
2.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	180
가. 기본 방법론 .....	180
나. 일반균형방식에 의한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효과 추정 .....	182
다. 산업연관분석 .....	184
3.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188
가.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	188
나. 성매매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및 구조 분석과 조사방법 .....	191
다.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활동 변화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	193
라. 국민경제적 유발효과 실증 시나리오 분석 .....	196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12
<b>제5장 성매매여성의 실태</b> .....	215
제1절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17

제2절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	220
1.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 .....	220
가. 유입이전: 성장배경 .....	220
나. 유입과정 .....	221
2. 성매매여성으로서의 생활 .....	222
가. 업소 이동 .....	222
나. 피해실태 .....	224
다. 사회적 관계 형성 .....	226
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 .....	228
마. 수입과 지출 .....	229
3. 탈성매매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 .....	231
가. 현재 상태 .....	231
나.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	232
다. 공권력에 대한 인식 .....	235
라.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	236
마.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 .....	240
바. 성매매 재유입 요인 .....	241
제3절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의 변화 .....	243
1.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2002년도 연구를 중심으로 .....	243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환경 변화 .....	244
<b>제6장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b> .....	247
제1절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의미 .....	249
제2절 공식통계에 따른 성매매 사건 처리 현황 .....	251
1. 성매매사건의 발생 및 검거현황 .....	251
2. 수사기관의 처분현황 .....	252
3. 법원의 처리현황 .....	254
제3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에 따른 성매매사건 처리현황(2004-2007) .....	257
1. 조사내용 및 방법 .....	257

가. 조사의 범위 .....	257
나.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	259
다. 조사 내용 .....	262
라. 조사방법의 한계 .....	265
2. 성매매 사건의 특성 및 주요내용 .....	265
가.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현황 .....	266
나. 사건별 피의자 수 및 기소불기소 현황 .....	271
다. 수사단서 현황 .....	274
라. 성매매업소 유형 및 현황 .....	274
3. 성매매 피의자의 특성 및 주요내용 .....	277
가. 피의자 유형 분포 .....	277
나. 위반법률별 적용현황 .....	279
다. 성매매 행위태양 .....	280
4. 성매매 사건 처분 현황 .....	282
가. 검찰처분의 현황 및 특징 .....	282
나. 1심 법원의 판결 내용 및 특징 .....	288
제4절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와 한계 .....	292
1. 수사 및 단속의 변화 .....	292
가. 성매매 단속의 강화 .....	292
나. 성매매알선자 단속 및 처벌의 강화 .....	294
다. 신설된 성매매 알선유형 규제의 한계 .....	296
2.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의 변화 .....	297
가. 검찰 구형의 강화 .....	297
나. 법원 선고의 강화 .....	298
다. 검찰의 구형량 및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	298
라. 몰수추징의 신설 및 적용의 한계 .....	299
마. 성매매보호처분의 신설 및 적용의 한계 .....	300
바.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의 한계 .....	300
3. ‘선불금’ 관련 판례분석 .....	301
가. 성매매 행위 관련 업주의 선불금 채권무효 .....	302

나. 금융기관의 선불금 대출관련 채권무효 .....	303
다. 윤락행위 한계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선불금 대출 채권의 무효 .....	304
라. 성매매영업 동업자의 채권무효 관련 .....	306
마. 집결지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단속의 기본권 침해 여부 관련 .....	307
바. 소결 .....	308
제5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310
1. 인신매매 등의 중한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	310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인보호의 강화 .....	311
3. 성매매 광고 내지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강화 .....	313
4.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활성화 .....	313
5. 존스쿨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	314
6.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필요 .....	315
<b>제7장 2002년도 실태조사와의 비교 .....</b>	<b>317</b>
제1절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	319
1.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종합한 성매매 규모 실태(2007) ..	319
가.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	319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	320
다.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 .....	321
라. 성구매자 규모 .....	322
마.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	324
2.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	325
가. 성매매 경제규모 .....	325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	329
다. 성매매여성 규모 .....	332
라. 성구매자 규모 .....	334
마.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	336
바. 소결 .....	337
제2절 성매매여성의 실태 변화 .....	339
제3절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 .....	342

1. 검찰 구형의 강화 .....	342
2. 법원의 선고의 강화 .....	342
3. 검찰의 구형량 및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	343
제4절 정책제언 .....	345

<b>참고문헌</b> .....	355
-------------------	-----

<b>부록</b> .....	363
-----------------	-----

부록 1. 전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	365
부록 2. 겸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	370
부록 3. 겸업형 심층조사 질문지 .....	376
부록 4. 성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항목표 .....	380
부록 5. 인신매매 근절을 미국정부의 정책 .....	385
부록 6.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호주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	392
부록 7-1.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	405
부록 7-2.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	406
부록 7-3.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	407
부록 7-4.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	408
부록 7-5.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	409
부록 7-6.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	410



## 표 차례

<표 I -1> 성매매 유형과 특징 .....	9
<표 II -1> 선행자료의 지역별 집결지역 조사 현황 .....	21
<표 II -2>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실시 현황 .....	23
<표 II -3> 최종 조사대상 지역(전업형 집결지역) .....	25
<표 II -4>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진행 .....	26
<표 II -5>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현황 .....	28
<표 II -6> 전업형 집결지역 주요 조사내용 .....	29
<표 II -7>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겸업형) 개요 .....	30
<표 II -8> 모집단의 업종별 규모 .....	32
<표 II -9>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구분 기준 .....	33
<표 II -10> 업종별 지역별 구성비 현황 .....	34
<표 II -11> 밀집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읍면동 수/사업체 수) .....	35
<표 II -12> 분산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읍면동 수/사업체 수) .....	35
<표 II -13>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	36
<표 II -14> 밀집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	37
<표 II -15> 분산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	37
<표 II -16> 질문지 구성 절차 .....	39
<표 II -17>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예비조사 개요 .....	40
<표 II -18> 주요 조사 내용(겸업형) .....	41
<표 II -19> 실제 표본의 지역별 분포 .....	43
<표 II -20> 8개 겸업형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비교 .....	44
<표 II -21> 전업형/겸업형 실태조사 진행과정 .....	46
<표 II -22> 2002년과 2007년의 실태조사 특징 비교 .....	47
<표 II -23> 심층면접 조사항목 .....	50
<표 III -1>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현황 .....	57

<표 Ⅲ-2> 집결지의 업소 유형별 특성 .....	58
<표 Ⅲ-3> 집결지의 업소 특성별 영업방식 .....	58
<표 Ⅲ-4> 총 업소수 및 총 성매매여성 수 .....	61
<표 Ⅲ-5> 집결지의 업소유형별 영업지표 .....	62
<표 Ⅲ-6> 39개 집결지의 ‘전업형 성매매’ 경제규모 .....	63
<표 Ⅲ-7> 주 이용 연령층 특성 .....	63
<표 Ⅲ-8> 매출 변화 .....	64
<표 Ⅲ-9> 매출 감소 이유 .....	64
<표 Ⅲ-10>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적용) ...	68
<표 Ⅲ-11> 수정모집단 자료 적용 겸업형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 .....	69
<표 Ⅲ-12>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接客원 규모 추정치 .....	70
<표 Ⅲ-13> 지역별 일반유흥주점업의 성매매 실태 .....	72
<표 Ⅲ-14> 지역별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 수(추정치) .....	73
<표 Ⅲ-15>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일반유흥주점 업소수의 분포 .....	74
<표 Ⅲ-16> 지역별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실태 .....	74
<표 Ⅲ-17> 지역별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75
<표 Ⅲ-18>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무도유흥주점 업소수의 분포 .....	76
<표 Ⅲ-19> 지역별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실태 .....	77
<표 Ⅲ-20> 지역별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77
<표 Ⅲ-21>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간이주점 업소의 분포 .....	78
<표 Ⅲ-22> 지역별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실태 .....	79
<표 Ⅲ-23> 지역별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79
<표 Ⅲ-24>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다방의 분포 .....	80
<표 Ⅲ-25> 지역별 노래방 업소의 성매매 실태 .....	81
<표 Ⅲ-26> 지역별 노래방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81
<표 Ⅲ-27>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노래방의 분포 .....	82
<표 Ⅲ-28>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실태 .....	83

<표 Ⅲ-29>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84
<표 Ⅲ-30>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이용업의 분포 .....	84
<표 Ⅲ-31> 지역별 마사지업의 성매매 실태 .....	85
<표 Ⅲ-32> 지역별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86
<표 Ⅲ-33>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의 분포 .....	86
<표 Ⅲ-34> 지역별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성매매실태 .....	87
<표 Ⅲ-35> 지역별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	88
<표 Ⅲ-36>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분포 .....	88
<표 Ⅲ-37>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	89
<표 Ⅲ-38>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관련업소 분포 .....	89
<표 Ⅲ-39> 업종 유형별 규모 추정 .....	90
<표 Ⅲ-40> 업종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업체의 분포 .....	91
<표 Ⅲ-41>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성매매 알선업소 분포 .....	91
<표 Ⅲ-42> 업종별 성매매여성 수의 평균값 추정 .....	92
<표 Ⅲ-43> 성매매여성 규모추정 .....	93
<표 Ⅲ-44> 20-30대 여성 인구수 및 경제활동 인구수 .....	94
<표 Ⅲ-45> 업종별 유형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의 추정 .....	95
<표 Ⅲ-46> 1일 성구매자 수의 규모 추정 .....	96
<표 Ⅲ-47> 업소 유형별 성적 서비스의 평균 구매비용 추정 .....	97
<표 Ⅲ-48>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단속 추진실적 .....	99
<표 Ⅲ-49> '07년 하계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분석결과 .....	99
<표 Ⅲ-50>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	100
<표 Ⅲ-5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성매매유도 인터넷정보 심의실적 .....	100
<표 Ⅲ-52> 호주내에서 불법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여성들의 국적별 분포 .....	121
<표 Ⅲ-53> 호주내 한인 성매매여성 .....	123
<표 Ⅲ-54> 2000년-2005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	133
<표 Ⅲ-55> 2000년-2005년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	138
<표 Ⅲ-56> 2000년-2005년 필리핀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	142

<표 IV-1> 16개 시도별 8개 유흥업종 분포(실질사업체 기준) .....	150
<표 IV-2> 8개 유흥업종의 시도별 분포(1천명당 사업체수) .....	151
<표 IV-3> 8개 유흥업종의 전국분포 .....	152
<표 IV-4> 일반유흥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2
<표 IV-5> 무도유흥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3
<표 IV-6> 간이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4
<표 IV-7> 다방운영업의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5
<표 IV-8> 노래방운영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6
<표 IV-9> 이용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7
<표 IV-10> 마사지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8
<표 IV-11>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	159
<표 IV-12>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전업형) .....	172
<표 IV-13>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겸업형) .....	173
<표 IV-14> 성매매 규모 추정 .....	175
<표 IV-15> 산업연관표 구성 .....	186
<표 IV-16> 2005년 서비스업 및 성매매처벌법 관련 산업 주요 지표 .....	189
<표 IV-17> 2001~2005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	190
<표 IV-18> 특정산업의 외생화를 위한 산업연관표 구조 분석 .....	195
<표 IV-19>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규모추정 (백만원) .....	198
<표 IV-20>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거래액 변화율: 전국 .....	199
<표 IV-21>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산출액 도출 결과 .....	201
<표 IV-22> 2004~2006년 규제에 따른 주점관련 산업 중간 및 최종수요 감소 .....	203
<표 IV-23> 2004~2006년 규제에 따른 기타관련 산업 중간 및 최종수요 감소 .....	204
<표 IV-24> 성매매 관련 주점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	206
<표 IV-25> 성매매 관련 기타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	208
<표 IV-26> 성매매 관련 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총효과 .....	209
<표 IV-27> 대체 산업 활동 증가를 고려한 성매매처벌법시행의 국민경제적 효과 .....	211
<표 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19
<표 V-2>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장배경 .....	220

<표 V-3>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유입과정	221
<표 V-4>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업소 이동	223
<표 V-5>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피해실태	225
<표 V-6>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사회적 관계 형성	227
<표 V-7>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매매에 대한 인식	228
<표 V-8>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수입과 지출	230
<표 V-9>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현재 상태	231
<표 V-10>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234
<표 V-11>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공권력에 대한 인식	236
<표 V-12>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238
<표 V-13>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	241
<표 V-14>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매매 재유입 이유	242
<표 VI-1>	성매매사건의 발생·검거현황	251
<표 VI-2>	성매매사건의 처분현황	253
<표 VI-3>	윤방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255
<표 VI-4>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256
<표 VI-5>	검찰청별 성매매사건 접수현황(2004-2005)	258
<표 VI-6>	분기별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260
<표 VI-7>	표집된 조사사건 수 및 실제 열람건수	261
<표 VI-8>	기록조사된 지청별 성매매사건수 및 피의자수	266
<표 VI-9>	성매매관련 법률의 규율대상	267
<표 VI-10>	성매매처벌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정형 비교	269
<표 VI-11>	위반법률별 건수	271
<표 VI-12>	위반법률별 피의자수	272
<표 VI-13>	조사사건의 기소인원 및 기소율	273
<표 VI-14>	위반법률별 수사단서	274
<표 VI-15>	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의 유형*	275
<표 VI-16>	분기별 최대접수된 성매매업소 유형 및 테마단속 유형 비교	276
<표 VI-17>	성매매피의자 유형 분포	277

<표 VI-1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성비 .....	278
<표 VI-19> 성매매처벌법 위반법률 현황 .....	279
<표 VI-20>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성매매행위태양* .....	281
<표 VI-21> 성매매업소의 유형별 성매매자의 성매매 행위* .....	281
<표 VI-22>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처리현황 .....	283
<표 VI-23>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성매매보호처분 현황 .....	285
<표 VI-24>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형 현황 .....	286
<표 VI-25>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	287
<표 VI-26>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제1심 판결 현황 .....	288
<표 VI-27>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평균 제1심 선고형량 .....	290
<표 VI-28>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평균 구형량 및 선고형량의 비교 .....	290
<표 VI-29> 성매매처벌법 시행 전후 총 검거인원 및 처분현황(2003.9.-2005.9.)	292
<표 VI-30> 경찰청 테마단속 추진실적 .....	293
<표 VI-31> 지청별 최대 검거된 성매매업소 유형 .....	294
<표 VI-32>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기소 및 구속현황 .....	295
<표 VI-33> 성매매 알선자의 법조항별 위반현황 .....	296
<표 VI-34>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 검찰구형 형태 비교 ...	297
<표 VI-35> 윤방법(2002) 및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선고형태 비교 .....	298
<표 VI-36>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의 처벌내용과 형량관계 비교 .....	299
<표 VI-37>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및 제1심 선고형량 .....	299
<표 VI-3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불기소 및 보호사건 처리현황 .....	301
<표 VII-1> 성매매 규모 추정 .....	319
<표 VII-2>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겸업형) .....	320
<표 VII-3> 성매매 알선 사업체(종합) .....	321
<표 VII-4> 성매매 종사자 규모(전업형) .....	321
<표 VII-5> 성매매여성 규모(겸업형) .....	322
<표 VII-6> 성매매여성 규모(종합) .....	322

<표 VII-7> 성구매자 규모(전업형) .....	323
<표 VII-8> 성구매자 규모(겸업형) .....	323
<표 VII-9> 연간 성구매자 규모(종합) .....	324
<표 VII-10>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전업형) .....	324
<표 VII-11>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겸업형) .....	325
<표 VII-12>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전업형) .....	326
<표 VII-13>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겸업형) .....	328
<표 VII-14>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종합) .....	329
<표 VII-15>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비교(전업형) .....	329
<표 VII-16> 성매매 알선 비율 비교(겸업형) .....	330
<표 VII-17>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비교(겸업형) .....	331
<표 VII-18>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종합) .....	332
<표 VII-19>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전업형) .....	332
<표 VII-20>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겸업형) .....	333
<표 VII-21>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종합) .....	334
<표 VII-22> 성구매자 규모 비교(전업형) .....	334
<표 VII-23> 성구매자 규모 비교(겸업형) .....	335
<표 VII-24> 성구매자 규모 비교(종합) .....	336
<표 VII-25>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전업형) .....	336
<표 VII-26>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겸업형) .....	337
<표 VII-27>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 검찰구형 형태 비교 ..	342
<표 VII-28> 윤방법(2002) 및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선고형태 비교 .....	343
<표 VII-29>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의 처벌내용과 형량관계 비교 .....	343
<표 VII-30>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및 제1심 선고형량 .....	344

제 1 장

#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3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5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조사대상 업소 형태	6
제4절 연구의 제한점	10



## 제1절 문제제기

2003년 6월 정부는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인식하고, 성매매관련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2개 관련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4.3.31)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양법을 언급시 성매매방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11월 비상설 회의체로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대책이나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필요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평가는 크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분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성매매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관련 산업 혹은 집결지의 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그 유형이 날로 다양화되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전국의 성매매관련 사업체 수와 성매매여성 수, 그리고 성구매자 수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국가경제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사실 성매매는 속성상 개인의 은밀한 거래임과 동시에 2004년 이후 불법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업주는 물론 당사자들까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설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소평가되고, 이것은 지하경제로 거래되므로 정확한 규모의 추정은 매우 어렵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성산업 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2002년 여성부의 용역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2002a)(이하 2002년 실태조사라 한다.)’가 유일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관련된 산업의 연간 거래액을 2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실체분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지만, 과소 추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없

#### 4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인증한 전국규모의 경제관련 통계자료와 전국규모의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해 도출해 낸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성산업 규모 및 성매매 실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가 가진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최근 새롭게 생성 또는 변화되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공식통계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캐나다, 미국, 호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한인 남성들이 해외 여행 시 성을 산다는 보도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이 현상을 단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위험의 요지가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인의 해외 성매매 혹은 성구매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성매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인 해외성매매, 해외 성구매, 인터넷 성매매는 그 속성상 실태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책은 중앙의 관련 부처만의 정책 영역이 아니라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행해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정책 수립을 위해 꾸준히 생산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의 성산업 규모를 2007년 현재를 기점으로 성매매업소 실태, 성구매자 수 및 경제규모 파악, 성매매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의 매입·매출이 전국 경제규모에 미치는 영향,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본 조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업소 실태 및 성매매여성의 수, 성구매자 및 경제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성매매업소는 크게 전업형, 겸업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산업 관련 전체 종사 여성의 규모,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 업체의 규모, 성매매 알선업체 성매매여성 규모, 성구매자 수 및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등에 의한 경제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둘째, 인터넷 성매매 단속 및 모니터링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 업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거래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다. 따라서 그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기존의 성매매 업소 파악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되나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 성매매와 관련한 공식통계 자료활용과 그 유형분류로 한정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를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 측면과 한국남성의 해외 성구매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업소의 다양성을 종합하여 한국의 성매매 시장의 분포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것이 성매매 관련 산업의 감소가 관련 사업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의 변화를 상담소, 쉼터, 그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여섯째,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통계에 따른 성매매 사건의 처리현황,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에 따른 성매매사건의 처리현황,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곱째, 2007년도의 조사결과 중 전국의 성산업 규모의 변화, 성매매 알선 비율, 성매매여성의 규모, 성구매자의 규모, 성적 서비스 구매 비용, 성매매 1일 평균 거래액, 성매매 경제규모의 추정치, 성매매여성의 실태, 그리고 형사법적 대응의 변

화를 200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조사대상 업소 형태

-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이다.
-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 실태조사대상 유흥업소의 형태는 <표 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소형(전업형 성매매, 겸업형 성매매)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 유흥업소는 술집 따위와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하며(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유흥주점이 이러한 맥락에 포함된다. 본 조사에서는 ‘유흥업소’를 성매매알선 가능 업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 성매매란 과거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매매음 등이 사용되었으며, 향락산업이나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래를 통칭한다. 성매매에는 성적 이미지, 이에 준하는 쾌락 및 유희의 판매도 광의의 개념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성교 또는 성적 쾌락을 주는 유사 성교행위로 한정한다.
- ▶ 성매매의 유형은 매개체의 특성에 따라 업소형과 비업소형 성매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성산업의 목적성이나 영업특성에 따라서는 전업형과 겸업형 성매매로도 분류할 수 있다.
- ▶ 전업형 성매매는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전업형’ 성매매는 2002년 실태조사에서도 사용된 용어로서, 본 조사에서는 사창가, 흥등가, 윤락가,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 등 전통적으로 직접적인 성매매가 이

루어져 온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를 집결지라고 한다.)이라고 정의한다.<sup>3)</sup> 이와 유사한 의미로 혹은 전통형 성매매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업형 성매매’라 한다.

- ▶ 겸업형 성매매는 전통형 성매매인 전업형 성매매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소위 ‘산업형’ 성매매로도 정의된다. 겸업형 성매매는 주로 3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인정하는 유흥접객 서비스업의 사업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성매매를 의미한다. 2002년 실태조사에서 이 범주에 들어가는 업종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업, 다방/찻집, 노래방운영업, 이발소운영업, 마사지업소 등 7개가 있다.<sup>4)</sup> 본 조사에서는 이 7개 업종에 소위 ‘휴게텔’, ‘피부(발)관리’ 등 업종 구분이 모호한 ‘자유업’ 범주의 업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겸업형 성매매를 선정하였다.
- ▶ 전자매개형 성매매(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라고 칭한다.)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온라인을 활용해 접촉을 시도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즉, 성인 PC방, 전화방이나 최근 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한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성매매 규모는 직접 조사하기 힘든 영역이다.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고 하면, 혼자서 여러 개의 ID를 통해 복수의 채팅 사이트와 채팅 창을 동시에 띄우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 ‘성매매여성’이란 전업형 혹은 겸업형의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 성을 파는 자를 통칭해서 말하며, 해당 업소에 있거나 혹은 있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부를 수 있는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단, 겸업형 성매매 알선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중에는 단순히接客만하는 여성이 있으며接客원 모두가 성매매 여성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 혹은 성을 파

3)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업형 성매매’를 소위 흥등가, 사창가(윤락가), 기지촌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직접 성매매(direct prostitution)라고 정의하였다.

4)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겸업형 성매매’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간이주점, 마사지업, 증기탕, 이발소, 티켓다방, 노래방 등 유흥접객 서비스업의 형태를 띠는 간접 성매매(indirect prostitution)로 정의하였다.

## 8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는 행위를 한자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성매매여성’은 이 두 가지를 포괄한다.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성매매종사여성’의 정의로 ‘자신 및 가족의 생계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여성’을 말하였다. 즉 일회적 또는 즉흥적·비전문적으로 성매매 활동에 가담하는 여성들은 ‘성매매종사여성’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본 조사에서 성매매여성이란 2002년도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2007년 실태조사에서 전업형, 겸업형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의 동기를 질문하지 않았으므로, 일회적, 즉흥적, 비전문적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분하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

<표 1-1> 성매매 유형과 특징

유형	주요 특성	업소형태	내 용
업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주류판매를 할 수 있지만, 성매매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됨)</li> <li>특정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가시화</li> <li>여성은 성매매를 통해서 생계유지</li> <li>업주와 성매매여성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불가능</li> </ul>	성매매 집결지	서울 용산, 청량리588, 영등포, 미아리텍사스, 부산 완월동, 인천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및 용주골 등 기지촌
		소규모 성매매 업소	군소규모의 율락장소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지역들(흔히 '판자집' 또는 '벌집', '펜루집'이라고 알려진 장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알선</li> <li>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 또는 업소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li> <li>근로계약 성립가능 및 계약된 근로내용은 형식적으론 합법적</li> <li>최근에는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도방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로 변화</li> <li>또한 업소가 타 업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을 절대부로 일시 공급하여 소개료를 받아 행기는 식(일종의 직업소개처럼)의 영업전략도 등장함.</li> </ul>	식품 접객 업소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카페, 레스토랑, 인삼차집), 단란주점, 유흥주점(톱살롱, 외국인 관광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중 위생 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탕 등의 특수목욕장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비업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소개시키는 방식 또는 남녀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li> <li>일종의 출장형 성매매</li> <li>여기에는 인력공급자(소개자)가 주도적으로 여성을 지배·공급하는 성매매 영업자형과 단순히 소개료(알선료)만을 행기는 소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li> </ul>	인력 공급업체 (보도방)	각종 유흥업소 및 노래방 또는 호텔·여관 등에 성판매자를 직접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형태
		이벤트사	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영업형태
		연예계 성매매	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콜걸들이 사회고 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 간에 만남, 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영업하는 형태</li> <li>전화서비스업체 또는 인터넷 사이트개설자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서로 연결되도록 전자매체나 연결 장소만을 제공하여 소개자 형태에 그치는 경우로 나뉨.</li> </ul>	전화방 /폰팅 /화상 대화방	전화방/ 080전화서비스 및 폰팅/ 화상대화방 등을 통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경우와 성매매여성을 확보하여, 출장성매매 서비스를 매개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여성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서 1:1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li> </ul>	on-off 라인 연계형 성매매	사이버 공간 내 성매매 알선사이트나 채팅 등을 통하여 하는 이루어지는 성매매(특히 원조교제)	
	박카스 이춤/들병이	등산객, 운전수, 공원의 노인 등 대상으로 직접 호객하는 성매매	
	거리 성매매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계약 동거형 성매매	미군 및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지속적 성적 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형태의 성매매	

\* 출처 : 변화순·황정임(1998), 여성부(2002a); 재인용, 여성가족부(2007b).  
 \* 위 표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전자매개형성매매'로 분류됨. 위에 제시된 성매매 유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 및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성매매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함.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를 위한 사건조사표에서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비업소형에서 분리하여 경로형으로 분류하였음.  
 \* 음영 처리한 부분은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특성을 연구한 업소형태와 내용임.

## 제4절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는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당업소의 업주 혹은 관련자의 면담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률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업종 및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재검증, 남성 모니터링 요원의 손님을 가장한 전화 및 일부 업소는 방문 모니터링까지 겸하여 미비한 자료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규모 추정 의 최소한의 수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로 등장하는 해외 성매매 현상과 관련된 자료는 법 집행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나 언론매체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관련 현상을 총체적 파악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은 성매매범죄를 은폐하기에 보다 용이한 수단으로 급부상되고 있으나 추정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의 확산에 대한 파악도 검거 혹은 시정조치에 한정된 수치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넷째, 최소화된 수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성산업 규모 추정 혹은 산업연관 분석 역시 최소화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전체 산업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업소 조사결과에서 추정된 전업형과 겸업형의 결과 이외에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영역은 본 연구의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에 의한 단속비율을 반영하였다(전체 성매매 규모의 44% 수준으로 가정: 제4장 제2절 다 참조). 이것은 인터넷 성매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2002년 실태조사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통계적 수치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상황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단속이 인터넷 성매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자료를 근거로 인터넷 성매매 비율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연구방법

제1절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에 관한 방법론	13
제2절 성매매여성 실태 조사방법	48
제3절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조사방법	51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52

## 제1절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에 관한 방법론

### 1. 성매매 집결지역 실태조사(전업형)

#### 가. 조사개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를 선정하는 것은 우선 전업형 집결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집결지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업형 집결지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전업형 집결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제1장 제3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업형 집결지에 대한 구분이 2002년에 비해 생성, 소멸되었고 또한 업종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념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하여 전업형 집결지 개념에 대해서 연구자, 지역운동가 및 행정부처에 따라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집결지가 폐쇄나 개발을 통해 사라졌다. 이와 동시에 업소에서 성매매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형태에 따라서 술 등이 매개가 된 겸업형 형태의 밀집 지역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맥주/양주, 방석집 등으로 허가가 된 겸업형(혹은 산업형) 업소들이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그 존재를 오랫동안 ‘성매매 집결지’로 간주한 지역도 존재한다. 게다가 일부 지방에서는 그 규모 면에서 집결지라기보다는 ‘원하면 성매매도 가능한 비슷한 유형의 유흥업소가 몇 개 모여 있는 지역’ 정도로 인식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집결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2002년 실태조사(여성부, 2002a), 2006년 행정자료,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자료(2006b)를 통해 집결지에 대한 개념을 비교해보고, 이들의 정의를 참고하고 지역방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집결지로 간주되는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1) 2002년 실태조사에서의 집결지 개념과 유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2년 실태조사(여성부, 2002a)에서 사용된 집결지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업형 성매매”는 소위 흥등가, 사창가, 기지촌 등에서 성매매를 1차적 영

업목적으로 하여, 집결지에 집중되어 있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성매매(direct prostitution)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란 해당 지역민들에 의해서 소위 “사창가” 또는 “윤락가”로 인지되는 특정 밀집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허가 없이 불법·무허가 형태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형태와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이면서 숙박업소나 일반음식점 또는 주점 등의 등록허가를 얻어 사업자 등록증을 비치하고 변태·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sup>5)</sup>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들을 1차적으로 전업형 집결지로 본 후에, 변화되는 방식의 “혼합형 성매매” 업소들의 일부를 포함시켜 집결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집결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사업자 등록허가 없이 불법·무허가 형태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전통적 사창가, 둘째,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기지촌, 셋째, 뼈끼를 통해 가정집(소위 펌부집, 별집, 판자집 등)이나 여관/여인숙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속칭 여관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주점 등으로 등록허가를 얻어 술을 매개로 변태·불법영업을 하는 속칭 포프라마치식 주점<sup>6)</sup>이나 주점겸업 성매매업소인 혼합형이다.

## 2) 2006년 행정자료에서의 집결지의 개념과 유형

2006년 경찰청 및 16개 시도를 통해 조사된 집결지는 2002년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집결지로 규정하였으나, 겸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술이나 마사지 등이 매개된 형태의 업종들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의 유형으로는 첫째, 여성을 유리문 안쪽에 상품처럼 앉아 있게 하고 안쪽의 쪽방에서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인 유리방, 둘째,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보도방과 연결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여관/여인숙, 셋째,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 내에서 술접대 및 춤공연, 스트

5)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이를 “전통형과 산업형의 혼재형”이라고 유형화시켰다.

6) 포프라마치식 주점은 대개 방석집, 맥주/양주집으로도 불리며, 술을 매개로 주점 내에서 불법·변태 영업이나 때로는 성매매까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업소를 말한다.

립쇼 등과 더불어 성매매 등을 하는 맥주·양주·방석집, 넷째, 외국인을 위한 유흥가로서 내국인 출입금지인 클럽 등의 기지촌, 마지막으로 위의 4가지 형태 이외의 기타 유형으로는 강원도 동해시의 발한상가아파트<sup>7)</sup>가 있었다.

### 3) 2006년 조사에서의 집결지의 개념과 유형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b)에서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를 규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156개의 조사지역을 선정하여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집결지로 간주하기 힘든 지역(이를 기초지역이라 칭하였다.) 49개를 제외한 107개 지역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집결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둘째, 음주가무 등이 제공되지만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셋째, 과거부터 지역사회에서 “사창가”, “창녀촌”, “홍등가” 등으로 인지되어 있는 지역, 넷째, 위의 3가지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업소의 밀집지역으로 인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즉, 2006년 조사에서는 성매매의 목적성 또는 주목적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업소의 밀집지역으로 간주되는 형태를 포함하여 집결지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 하에서 구분된 집결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구매 남성들이 업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볼 수 있는 유리방, 둘째,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지만, 업소 내에서 술 접대 및 춤, 스트립쇼, 성매매 등이 함께 이루어지며, 성매매 비용이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맥주양주/방석집, 셋째, 실제로는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여성들이 방을 하나씩 빌려 기거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여관/여인숙<sup>8)</sup>, 넷째, 미군기지 주변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전용클럽의 형태로 형성된 집결지역인 기지촌, 마지막으로 유리방 업소, 기지촌, 빈민지역 주변에 작고 허름한 판자집에 방이 하나씩 있는 형태인 쪽방/판

7) 2개동의 발한상가아파트의 1개 동의 일부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8)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는 여관/여인숙 유형에 성매매 여성들이 주변에 있는 술집이나 여관으로 출장을 나가는 소위 ‘전화발이’ 형태의 성매매 및 일반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도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자집이 있다.

#### 4) 본조사에서의 집결지 개념과 유형

본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2년도에 수행된 실태조사와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개념의 “사창가” 성격의 집결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선행조사나 행정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집결지 개념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깔럼의 연구진 및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에서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로 조사된 지역 중 일부를 관찰해보았다. 본조사의 집결지 개념과 유형은 선행자료의 개념 적용 및 일부 지역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본조사에서 사용된 집결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리방” 형태이다. 이 지역은 불법·무허가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사회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창가” 또는 “윤락가”로 인식되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비등록 “유리방” 형태의 업소가 대부분이며, 속칭 “청량리 588”이나 “대구 자갈마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음주가무를 매개로 하나, 성매매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밀집지역으로 본조사에서는 “주점식 전업형”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속칭 “혼합형”, “맥주양주집”이나 “방석집”으로 불리는 업소 형태가 여기에 다수 포함되며, 허가된 업소일 수도 있으며 유흥주점 형태로 허가된 업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성매매가 1차적인 목적인 경우가 아니거나 성구매자가 성매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즉, 본조사에서는 음주가무를 제공하지만 성매매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업소들은 겸업형 업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집결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은 유흥주점 등으로 허가를 받고 성구매자들에게 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류 판매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성매매로 가기 위한 영업형태인 경기성남의 “중동골목”, 대전의 유천동 등이 있겠다.

셋째, 밀집이나 규모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정의하였다. 집결지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최소 10개 이상의 업소들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하는 곳

으로 규정하였으며, 밀집형태가 아니거나 그 규모가 작은 지역은 집결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서울 신림동의 속칭 “방석집” 골목 등은 규모 면에서 볼 때 소규모로서 본조사의 집결지 정의에서 제외되었다.<sup>9)</sup>

넷째,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을 집결지로 정의하였다. 즉, 술이나 기타 여흥이 제공된 후에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가무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벗어나 숙박업소 등의 다른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제외하였다. 즉, 단란주점과 같이 소위 주류 판매는 영업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선택적인 성매매는 인근 숙박업소 등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영업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겸업형 밀집지역”으로 간주하고 집결지 정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위의 4가지 정의에 의해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를 1차적으로 분류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선행연구와 행정자료에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범위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등을 참고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조사 지역은 39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단 본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집결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집결지 개념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해당 업소들도 여러 형태로 변화 또는 생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본 조사는 위에서 논의한 집결지 정의에 적합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향후 이러한 집결지 개념과 정의, 그 범주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선정된 집결지의 유형은 “유리방”, “주점식 전업형”, “여관/여인숙형”, “기지촌형”의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리방”은 성구매자가 업소 안 여성들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이 설치된 업소를 말하는데, 대개 비등록 형태로 성매매가 주목적인 영업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집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점식 전업형”은 대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주류가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가운데 해당 장소에서 바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속칭 맥주양주집, 방석집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형태를 지닌 업소

9) 이러한 지역들은 성매매 여부의 선택이나, 성매매가 1차적 목적이라는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도 제외가능한 지역이다.

들이 있는 집결지역을 ‘주점식 전업형’으로 분류하였다.<sup>10)</sup>

셋째, “여관/여인숙”은 보통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호객행위나 전화발이 등으로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는 유형이나, 숙박업 등록업소보다는 제약이 다소 약한 하숙의 형태나 비등록 업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넷째, 기지촌은 미군부대 주변 클럽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군을 대상으로 한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 소위 2차를 나가거나, 계약 동거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본 조사의 집결지 중에는 판자집이나 쪽방형의 성매매 업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형태면에서 판자집이나 쪽방이 대개 유리방 지역이나 여관/여인숙 지역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II-1> 본 조사에서의 전업형 성매매업소의 범주

10) 이 유형은 2002년 실태조사의 ‘주점 겸업 율락업소 유형’,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보고서의 ‘유홍주점 등록 형태의 유리방 유형’으로 분류된 지역 기준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나. 조사지역 선정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집결지역과 관련한 2002년 실태조사,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보고서 및 행정자료를 1차적 기준으로 삼고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집결지역에 대한 기준 정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실태조사,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자료, 2006년 지자체 자료, 그리고 2006년 경찰청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검토하면서 본 조사는 <표 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2년 실태조사의 69개 지역, 2006년 자료의 40개 지역, 2006년 행정자료(각각 41개, 33개 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집결지로 간주한 80개 지역을 1차적으로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폐쇄, 쇠락/쇠퇴, 겸업형 조사지역으로의 분류 등의 이유로 제외가 가능한 지역은 하나씩 제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39개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지역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2002년 실태조사, 2006년 실태조사, 2006년 시·도 및 경찰청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비교 가능성을 위해 2002년 실태조사의 집결지 선정 기준 반영을 고려하였다<표 II-1>. 2002년 실태조사의 경우,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역은 “해당 지역민에게 있어서 ‘사창가’ 또는 ‘윤락가’로서 공통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69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업소 유형이나 업소의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소 유형은 전통적인 “유리방” 형태, “여관/여인숙” 형태, 혹은 미군 부대 근처를 중심으로 발전한 “기지촌”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주점 형태의 “주점식 전업형” 형태 등 다양한 유형들로 이루어진 지역도 전업형 집결지로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의 집결지 정의를 적용하여 기초지역을 제외한 107개에 이르는 지역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집결지 선정 과정에서 참고하였다. 또한 이는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로서 2002년 실태조사는 물론 과거 수행되었던 여러 형태의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본 조사 실시에 있어 검토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107개 조사 지역 중 그 선정기준과 참고자료를 검토하였고 여기에서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인 40개의 지역만을 참고하였다.<sup>11)</sup>

셋째, 이상의 자료 이외에도 기존 행정기관(시도 및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집결지 자료를 고려하였다<표 II-1>. 각 시도나 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집결지역 관련 자료는 그 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사창가’ 또는 ‘윤락가’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먼저,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한 시도 집결지 현황자료에서는 전업형 집결지가 41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6년 경찰청 자료에는 폐쇄된 지역을 제외하고 33개 집결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2)</sup> 그런데 시도나 경찰청 등이 파악한 집결지역 이외에 해당 지역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집결지로 분류하는 곳이 다소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개 허가를 받은 겸업형(또는 산업형) 업소이거나 다소 유사한 영업형태의 소규모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듯 집결지 선정 과정에서 상충되는 이견이 있어서 모든 의견을 전부 종합하여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1)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보고서는 조사지역 선정에 있어 국책연구소, 현장단체 등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자료, 행정기관 및 경찰 자료 등을 그 ‘선정근거’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기초지역을 제외한 총 107개의 집결지 실태조사 지역을 설정하였다. 그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2002)’가 선정근거로 활용되었던 지역은 처음에 총 41개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107개 중 41개의 지역만을 활용한 이유는 107개의 집결 지역은 여러 기관의 집결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집결지 개념을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경찰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집결지역 리스트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관의 자료로 볼 수 있는 국책연구소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선정근거로 사용된 지역만을 활용하게 되었다. 단, 41개의 지역은 영등포지역을 2개의 집결지로 본 것으로 서울지역 집결지가 6개로 반영된 것으로 2002년도 실태조사 당시 영등포의 2개 집결지는 1개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도 지역탐방 등을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영등포지역의 2개 집결지를 1개의 집결지로 간주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보고서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2002)’가 선정근거로 활용된 41개 지역을 40개 지역으로, 그 중 서울지역 6개를 5개로 조정하여 <표II-1> 괄호 ‘( )’ 안에 표기하였다.

12) 참고로 2007년 경찰청 자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사후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는데, 2006년 경찰청 자료에서 2개 지역이 폐쇄되어 31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II-1&gt; 선행자료의 지역별 집결지역 조사 현황

(단위 : 개)

지역	2002년 실태조사	2006년 여성인권 중앙지원 센터보고서	2006년 지자체 자료	2006년 경찰청 자료	2007년 경찰청 자료
서울	5	10(5)	5	5	5
부산	3	9(2)	3	3	3
대구	2	7(1)	1	1	1
인천	3	2(2)	2	2	1
광주	2	7(1)	4	1	1
대전	2	3(2)	2	1	1
울산	1	7(-)	-	-	-
경기	11	22(6)	9	6	6
강원	8	5(8)	5	6	5
충북	3	7(1)	-	-	-
충남	3	2(2)	-	1	1
전북	9	6(3)	4	2	2
전남	3	6(2)	1	1	1
경북	9	8(3)	3	3	3
경남	5	2(1)	1	1	1
제주	-	4(1)	1	-	-
합계	69	107(40)	41	33	31

※ 2007년 경찰청 자료 : 2007년 본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검증 확인에 이용한 자료로 2006년 경찰청 자료에서 2개 지역(인천 학익동, 춘천 장미촌)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본 조사는 시기적으로 2006년 경찰청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경찰청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음.

결론적으로 본조사에서의 집결지 선정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69개 지역,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보고서에서 '2002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선정된 40개 지역, 2006년 지자체에서 집결지로 조사한 41개 지역, 2006년 경찰청에서 조사한 33개 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집결지로 간주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결과 1차 조사대상 지역은 총 80개 지역이

었다. 그러나 선정된 80개의 지역 중에서 이미 폐쇄 또는 거의 소멸 상태이거나 쇠락·쇠퇴 등의 이유로 집결지역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 19개 지역은 1차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표 II-2>에서 “쇠락·쇠퇴”, “거의 소멸지역”으로 언급).

다음으로 “겸업형” 혹은 “겸업형 밀집지역”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 그 영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숙박업 형태”의 지역은 2차적으로 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표 II-2>에서 “겸업형”, “겸업형 밀집지역”으로 언급). 이렇게 2차적으로 제외된 겸업형 지역이나 숙박업 형태의 지역은 총 20개 지역이며 1, 2차 제외과정을 거쳐서 총 41개 지역으로 조사대상 지역이 압축되었다.<sup>13)</sup>

세 번째로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및 2007년 행정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 2개 지역(인천 남구 학익동, 강원도 춘천시 장미촌)은 추가로 제외하여서 최종적으로는 39개 지역이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표 II-2>에서 “2007년 폐쇄”로 언급).

따라서 이상 세 가지 참고자료에서 한 곳에서라도 집결지로 조사된 80개 지역에서 1, 2차 제외과정을 거쳐 총 39개 지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2007년 폐쇄된 2개 지역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39개 지역을 본 조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표 II-3>).

13) 조사과정에서 지역의 실사와 더불어 NGO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숙박업과 겸업형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일부 있었다. 숙박업은 대구 퐁치골목, 전북 남원 북부시장, 겸업형은 전남 순천 동외동 옷장 술집골목 등에서 본조사와 NGO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조사의 심층적 지역탐방 조사 결과를 우선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표 11-2〉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실시 현황

연번	시도	지역	숙칭 또는 거리명	2002 실태 조사	2006 여성인권 중앙지원 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 조사 지역	유형	제외 근거
1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	○	○	○	○	유리방	
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	○	○	○	○	유리방	
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588	○	○	○	○	○	유리방	
4	서울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	○	○	○	○	○	유리방	
5	서울	용산구	용산역	○	○	○	○	○	유리방	
6	부산	서구	완월동	○	○	○	○	○	유리방	
7	부산	해운대구	609	○		○	○	○	유리방	
8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	○	○	○	○	유리방	
9	대구	중구	자갈마당	○	○	○	○	○	유리방	
10	대구	중구	태평로 뚝지골목	○	√					숙박업 형태 (감소 추세)
11	인천	남구	학익동 특정지역	○	○	○	○			2007년 폐쇄
12	인천	남구	주안 텍사스촌	○						2006년 폐쇄
13	인천	남구	엘로우하우스	○	○	○	○	○	유리방	
14	광주	광산구	1003번지	○	○	○		○	주점식 전업형	
15	광주	서구	닭전머리(양동/월산동)	○	√	○		○	주점식 전업형	
16	광주	동구	대인동 금남로5가 일대		√	○	○	○	유리방	
17	광주	동구	계림동		√	○		○	주점식 전업형	
18	대전	중구	유천동	○	○	○	○	○	주점식 전업형	
19	대전	동구	대전역 윤락가	○	○	○		○	여관/여인숙	
20	울산	울주군	상남리(청량면 덕하시장)	○	√					겸업형 형태
21	경기	수원시	수원역전	○	○	○	○	○	유리방	
22	경기	수원시	북수동(수원천 근처)		√	○				쇠퇴지역
23	경기	안양시	호계3동 텍사스 골목	○	√					겸업형 형태
24	경기	안양시	안양1동 녹순철길 뚝지골목	○	√					겸업형 형태
25	경기	광명시	광명동(2,4동) 텍사스촌	○	√					겸업형밀집지역
26	경기	평택시	삼리	○	○	○	○	○	유리방	
27	경기	성남시	중동골목	○	○	○	○	○	주점식 전업형	
28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주변		○	○		○	주점식 전업형	
29	경기	동두천시	생연7리	○	√	○	○	○	유리방	
30	경기	파주시	법원20호	○	○	○	○	○	유리방	
31	경기	파주시	용주골(대추벌)	○	○	○	○	○	유리방	
32	경기	파주시	문산읍 미군클럽	○	√					쇠퇴지역
33	경기	파주시	조리읍 미군클럽	○						거의 소멸
34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군단앞)		√	○				쇠퇴지역
35	강원	강릉시	강릉역(교2동)	○	○					쇠퇴지역
36	강원	동해시	발한동		○	○	○			쇠퇴지역
37	강원	춘천시	근화동(난초촌)	○	○	○	○	○	유리방	
38	강원	춘천시	장미촌	○	○		○			2007년 폐쇄
39	강원	양구군	중리, 하리	○	○					쇠퇴지역
40	강원	홍천군	언덕집	○						거의 소멸 (2002년 1개)

24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연번	시도	지역	숙칭 또는 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 근거
41	강원	속초시	금호실업	○	○	○	○	○	유리방	
42	강원	원주시	매화촌(희매촌)	○	○	○	○	○	유리방	
43	강원	태백시	대밭촌	○	○	○	○			쇠락지역
44	충북	제천시	역전	○	√					검업형밀집지역
45	충북	청주시	오정목(우암동)	○	√					검업형 형태
46	충북	청주시	사창동	○	√					검업형 형태
47	충북	충주시	성남동 구 버스터미널 일대		○			○	주점식 전업형	
48	충남	천안시	역전(대흥동 하숙촌)	○	○			○	여관/여인숙	
49	충남	아산시	장미마을	○	○		○	○	주점식 전업형	
50	충남	서산시	서부상가	○						검업형밀집지역
51	전북	군산시	쉬파리 골목	○	√					쇠락지역
52	전북	군산시	미성동 A타운		√	○		○	기지촌	
53	전북	익산시	한일장 골목	○	√					쇠락지역
54	전북	익산시	중앙동 농협골목	○	√					쇠락지역
55	전북	익산시	창인동 여인숙골목	○	○	○		○	여관/여인숙	
56	전북	정읍시	시기동 천주교성당 부근	○	√					쇠락지역
57	전북	정읍시	수성동 학생사 골목	○						검업형 형태
58	전북	전주시	선화촌	○	○	○	○	○	여관/여인숙	
59	전북	전주시	선미촌	○	○	○	○	○	유리방	
60	전북	남원시	북부시장	○	√					숙박업 형태
61	전남	여수시	공화동	○	○	○	○	○	여관/여인숙	
62	전남	여수시	교동		○					쇠락지역
63	전남	순천시	동외동 옷장의 술집골목	○	√					검업형 형태
64	전남	목포시	보광동 골목(축복동)	○	√					숙박업 형태
65	경북	의성군	염매시장	○						검업형 형태
66	경북	포항시	중앙대학	○	○	○	○	○	유리방	
67	경북	포항시	우물재	○						검업형 형태
68	경북	안동시	안동역전	○	√	○	○			쇠락지역
69	경북	안동시	서부시장	○						검업형밀집지역
70	경북	영주시	영주역전	○	√					쇠락지역
71	경북	영주시	열매시장	○						검업형밀집지역
72	경북	경주시	역전앞 적선지대(300고지)		○	○	○	○	유리방	
73	경북	김천시	평화동 성당골목	○	√					숙박업 형태
74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			○	기지촌	
75	경남	진주시	진주역 부근	○	√					쇠락지역
76	경남	진주시	장대동	○	√					검업형밀집지역
77	경남	통영시	야마호텔	○						거의 소멸(2002년 2개)
78	경남	거제시	도깨비 상가	○						검업형밀집지역
79	경남	마산시	신포동	○	○	○	○	○	유리방	
80	제주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	○		○	여관/여인숙	
계				69	40(28)	41	33	39		

- ※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나온 ○ : 2002 행정원 자료라는 근거로 표시된 지역
- ※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나온 √ : 2002 행정원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자료(해당지역 성매매 관련단체 현장조사결과 등)에 근거해 조사된 지역 ( ) 안의 숫자
- ※ 쇠락지역 :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자료에서 기초조사지역으로 되어 있는 쇠락·쇠퇴 지역
- ※ 검업형 형태 : 유흥주점 형태로 주류 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 ※ 검업형 밀집지역 :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의 유흥업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lt;표 II-3&gt; 최종 조사대상 지역(전업형 집결지역)

연번	시도	지역	속칭 또는 상세위치	업소유형
1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 앞	유리방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청량리588	유리방
3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영등포역 포함)	유리방
4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23 텍사스 골목	유리방
5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88 미아리 텍사스	유리방
6	부산	서구	총무동/초장동 일대 완월동	유리방
7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유리방
8	부산	해운대구	우1동 645 해운대 609	유리방
9	대구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유리방
10	인천	남구	송의 1동 옐로우하우스	유리방
11	광주	동구	대인동 금남로5가 일대	유리방
12	광주	동구	계림동	주점식 전업형
13	광주	남구/서구	양동/월산동	주점식 전업형
14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	주점식 전업형
15	대전	동구	정동(현 중앙동)	여관/여인숙
16	대전	중구	유천동	주점식 전업형
17	경기	수원시	고등동/매산동(수원역 부근)	유리방
18	경기	성남시	중동	주점식 전업형
19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주변	주점식 전업형
20	경기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삼리	유리방
21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철리	유리방
22	경기	파주시	연풍리 용주골	유리방
23	경기	파주시	법원동 대능리 법원리 20호	유리방
24	강원	춘천시	근화동96 춘천역 부근 난초촌	유리방
25	강원	속초시	금호동 금호실업	유리방
26	강원	원주시	학생동 희매촌	유리방
27	충북	충주시	성남동 구 버스터미널 일대	주점식 전업형
28	충남	천안시	대흥동 하숙촌	여관/여인숙
29	충남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주점식 전업형
30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	유리방
31	전북	전주시	다가동 선화촌	여관/여인숙
32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앞	여관/여인숙
33	전북	군산시	미성동 A타운	기지촌
34	전남	여수시	공화동 여수역 일대	여관/여인숙
35	경북	포항시	대흥동 중앙대학	유리방
36	경북	경주시	황오동179 경주역 맞은편 300고지	유리방
3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기지촌
38	경남	마산시	서성동 신포동 꽃동네	유리방
39	제주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여관/여인숙

※ 서울 영등포 : 신세계백화점 뒷골목과 영등포역 부근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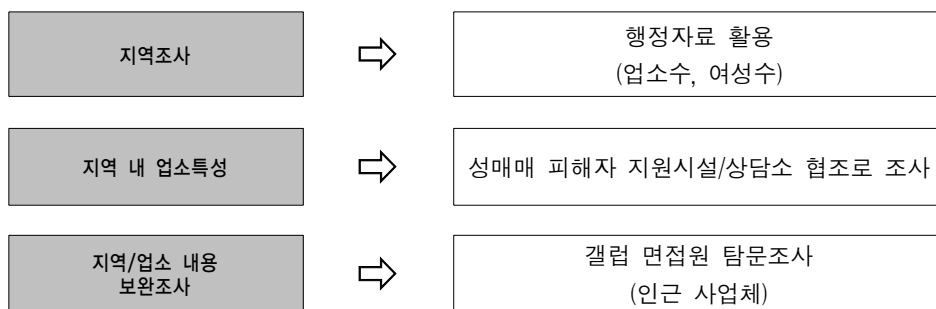
### 다. 조사진행

전업형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는 집결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과 집결지역내 업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집결지역 내 업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는 집결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역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업형 집결지라는 특성 및 조사 성격상 일반 면접원이 집결지역내 업소에 접근해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결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가 파악하고 있는 집결지역내 업소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가 직접 업소를 조사하기 어려운 지역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가 파악하고 있는 집결지역내 업소들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업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갤럽 전문면접원들이 집결지역 주변에서 집결지역 업소들의 상황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다른 업종의 사업체(슈퍼, 세탁소, 부동산 등)를 통해 집결지역 업소의 특성을 탐문하는 형식으로 업소 특성의 내용을 보완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간접적인 정보 확보는 집결지역내 업소들의 대표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I-4>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진행



마지막으로 업소 특성 이외의 집결지역의 전반적인 특성(전체 업소 수, 성매매 여성 수)에 대해서는 시도 및 경찰청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갤럽 면접

원들은 탐문조사 과정을 통해 전체 업소 수, 성매매여성 수를 파악하여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상호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한 직접 조사 및 파악된 정보, 시도 및 경찰청의 행정자료를 통한 집결지역의 전반적인 특성, 마지막으로 한국갤럽 면접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한 미흡한 정보 보완이라는 3가지 방향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된 정보들은 상호 비교/보완이 가능하도록 처리되었다.

실제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3~4개월에 걸쳐 지역별 집결지 선정, 기초자료 및 현황 파악, 각 시/도별 행정담당자를 통한 선정된 집결지별 기초현황 파악, 서울지역 집결지 예비조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중 조사협조 가능 여부 타진 등의 작업을 하면서 실제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항 대처법 등의 준비를 하였다.

실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한 지역 내 업소 조사는 2007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행정자료를 통한 협조 조사 및 한국갤럽 면접원들을 통한 탐문조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갤럽 면접원들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선정한 39개 지역 중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서 지역 내 업소들의 특성을 파악한 지역은 19개 지역이며, 시도 및 경찰청의 행정자료를 파악한 지역은 28개 지역이다. 또한 시도 담당자나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집결지역 내 전체 업소 수 및 전체 여성 수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한 조사, 시도/경찰청 등에서 파악한 행정자료 활용, 한국갤럽 면접원들의 집결지역 직접 조사 및 지역 내 인근 타 사업체(세탁소, 슈퍼마켓, 미장원 등)를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의 3가지 조사방식이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 집결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조사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의 불충분성도 상호 보완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lt;표 II-5&gt;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현황

(단위 : 개)

지역	조사대상 지역	지원시설/ 상담소 협조/ 조사 지역	행정기관 (시도/경찰청) 자료협조	한국갤럽 탐문조사 지역
서울	5	1	5	5
부산	3	2	3	3
대구	1	1	1	1
인천	1	-	1	1
광주	4	4	1	4
대전	2	1	1	2
울산	-	-	-	-
경기	7	-	6	7
강원	3	3	3	3
충북	1	-	-	1
충남	2	2	1	2
전북	4	-	2	4
전남	1	1	1	1
경북	3	2	2	3
경남	1	1	1	1
제주	1	1	-	1
합계	39	19	28	39

## 라. 주요 조사 내용

전업형 집결지역내 업소들에 대한 조사 항목은 성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요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업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lt;표 11-6&gt; 전업형 집결지역 주요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업체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기간</li> <li>• 월간 정기휴무 일수</li> <li>• 객실/객석 수</li> <li>• 1일 평균 성구매자 수</li> <li>• 월 평균 매출액(현금/카드 결제 구분)</li> <li>• 주된 성구매자 연령층</li> <li>• 전체 종업원 수(여성접객원)</li> </ul>
성적 서비스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구매자의 성적 서비스 요구 현황</li> <li>• 1일 평균 성적 서비스 구매자 수</li> <li>• 성적 서비스 이용 비용</li> <li>• 매출 변화</li> <li>• 정책 관련 건의사항</li> </ul>
사업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업종/등록 여부</li> </ul>

## 2.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겸업형)

### 가. 조사개요

2007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는 2002년의 조사 경험을 기반으로 2007년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겸업형 조사의 경우, 성매매 실태 및 규모 추정을 위해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을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2002년도에 선정된 7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노래방운영업, 다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업(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등 분류가 모호한 업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1개 더 추가하여 8개 업종을 겸업형 표본조사 업종으로 선정하였다.<sup>14)</sup> 지역에 대한 구분은 2002년 기준을 참고하여 서울, 광역시,

14) 일반적으로 '자유업'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용어는 아니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볼 때 '마사지업'이나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석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영업하는 업종으로 각종 형태의 마사지, 휴게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소도시, 농어촌 4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지역을 성매매 관련업소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으로 재분류하였다.

표본크기는 각 표본지역을 밀집, 분산지역으로 구분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3,600개로 정하였다. 또한 실제로 조사의 대상이 될 표본사업체는 통계청의 “2005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표본조사는 2007년 8월 초순부터 9월 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접원에 의한 설문 조사, 면접원의 업소 관찰, 면접 후 성매매 가능업소에 예약 손님으로 가장한 전화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가 진행된 질문지에 대해서 조사감독원은 질문지 에디팅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업종 및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재검증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외에 남성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손님을 가장한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미비한 자료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접원이 조사 후에 작성한 ‘조사후 기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이 높거나 조사에 대한 협조도가 높았던 업소를 선발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업종의 경기(호·불황), 매출액이나 성매매율 등에 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II-7>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겸업형) 개요

구 분	내 용
1) 모 집 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성매매 행위가 가능한 8개 업종의 사업체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기초)
2) 조사지역	전국 16개 시·도
3) 표본크기	겸업형 성매매업소 3,605개
4) 조사대상	사업체 대표자 혹은 사업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자
5)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원칙(업종/업소의 특성에 따라 관찰 및 자기기입식 조사 등 가능한 조사방법 병행)</li> <li>- 조사진행 후 면접원이 작성한 면접원 후기록</li> <li>- 손님으로 가장한 전화 모니터링</li> </ul>

## 나. 표본 설계

### 1) 모집단 선정

본 조사에서는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7개 업종을 기본으로 하고, ‘휴게텔’ 등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포함하기 위해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2002년에 조사한 7개 업종에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은 행정적 분류상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포함한 것이다.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서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하면,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인 일반유흥주점업(H55231), 무도유흥주점업(H55232), 간이주점업(H55233), 노래방운영업(Q88913), 다방운영업(특별시·광역시 제외, H55242), 이용업(R93111)과 마사지업(R93122),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R93129)의 사업체를 조사모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2002년과 마찬가지로 다방운영업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만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유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배달 및 티켓영업 등을 할 다방이나 커피숍의 비율은 극히 낮고, 그 중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할 다방의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개 업종의 영업형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유흥주점업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을 말한다. 요정, 료살롱, 비어홀, 맥주양주집,接客원이 있는 단란주점 등
- 무도유흥주점업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을 말한다. 카바레, 극장식 클럽, 나이트클럽 등(무도장이나 콜라텍, 댄스교습소 등은 제외)
- 간이주점업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接客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등
- 찻집(다방) : 커피 등 차나 음료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일반커피숍, 카페, 티켓다방 등
- 노래방 :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노래방 등<sup>15)</sup>

15) 본 조사의 노래방 정의는 통계청의 표준산업산업분류에 의한 정의이다. 2002년 실태조사

- 이용업 : 일반이발소, 모범이발소, 퇴폐이발소 등
- 마사지업 : 일반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 자유업이 여기에 포함(지압치료는 제외)
-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만관리센터가 포함된다. 다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시간제로 운영되는 휴식시설(휴게텔, 산소방 등) 등

## 2) 모집단 분포

2006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5년 12월 31일 기준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자료에서 정리한 모집단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sup>16)</sup>

<표 11-8> 모집단의 업종별 규모

산업분류코드	업종명	사업체수(개)
H55231	일반유흥주점	28,757
H55232	무도유흥주점	5,351
H55233	간이주점	96,390
H55242	다방운영	15,951
Q88913	노래방운영	36,193
R93111	이용업	22,424
R93122	마사지업	3,360
R93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1,290
합계		209,716

출처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5~2006.

다방운영업은 서울시와 광역시 지역에서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2년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도시와 농

에서는 노래방을 ‘성인노래방 등’으로 표현하였다.

16)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조사를 하여 당해 12월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활용한 2005년 12월 31일 기준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

어촌지역의 티켓다방과 같은 다방운영업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209,716개 사업체이며 이중에서 간이주점업이 96,390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래방운영업이 36,193개이고,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은 1,290개로 가장 적은 사업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실태의 특성이 특별시·광역시와 도지역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사모집단을 특별시·광역시, 도지역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층화하였으며 이들의 층 내에서도 성매매 관련업소의 밀집지역과 분산지역간의 특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층 내에서 2차로 층화하였다. 여기에서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구분은 읍면동 단위로 관련업종 사업체의 빈도로 분류하였는데, 분류기준을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2002년 조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기준은 아래의 <표 II-9>과 같다. 노래방을 예로 들면, 서울은 노래방이 25개 이상, 광역시는 29개 이상, 중소도시는 30개 이상, 그리고 농어촌은 11개 이상 있는 읍면동을 밀집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II-9>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구분 기준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유흥주점	50	50	50	20
무도유흥주점	6	5	6	5
간이주점	100	100	100	40
다방	-	-	40	30
노래방	25	29	30	11
이용원	20	20	20	15
마사지업	4	3	3	2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4	3	3	2

모집단의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의 빈도와 구성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II-10>에 제시되고 있다.

일반유흥주점업은 중소도시가 47.6%이고, 광역시가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도유흥주점업도 중소도시가 43.3%를 차지하고 광역시와 농어촌이 각각 21.4%와 19.1%를 차지하며, 간이주점업은 중소도시에 44.3%가 소재하고 광역시와 서울에

각각 28.3%와 21.0%가 소재하고 있다. 한편, 다방업은 중소도시에 70.5%가 소재하고 농어촌에도 29.5%가 소재하며, 노래방운영업은 중소도시에 43.8%가 소재하고 광역시와 서울에 각각 30.6%와 18.5%가 소재하고 있다. 이용업은 중소도시와 광역시에 각각 41.8%와 27.2%가 소재하고 마사지업은 중소도시에 42.1%가 소재하고 서울과 광역시에 각각 30.8%와 24.2%가 소재하고 있다.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은 중소도시에 42.1%, 서울에 28.9%, 광역시와 농어촌이 각각 27.1%, 1.9%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중소도시에 46.3%가 소재하고 광역시와 서울시에는 각각 26.0%와 18.3%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업종별 지역별 구성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4,990 (17.4)	7,877 (27.4)	13,700 (47.6)	2,190 (7.6)	28,757 (100)
무도유흥주점	871 (16.3)	1,145 (21.4)	2,315 (43.3)	1,020 (19.1)	5,351 (100)
간이주점	20,279 (21.0)	27,272 (28.3)	42,740 (44.3)	6,099 (6.3)	96,390 (100)
다방운영	-	-	11,249 (70.5)	4,702 (29.5)	15,951 (100)
노래방운영	6,682 (18.5)	11,059 (30.6)	15,850 (43.8)	2,602 (7.2)	36,193 (100)
이용업	4,070 (18.2)	6,108 (27.2)	9,363 (41.8)	2,883 (12.9)	22,424 (100)
마사지업	1,034 (30.8)	812 (24.2)	1,416 (42.1)	98 (2.9)	3,360 (100)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373 (28.9)	350 (27.1)	543 (42.1)	24 (1.9)	1,290 (100)
총합	38,299 (18.3)	54,623 (26.0)	97,176 (46.3)	19,618 (9.4)	209,716 (100)

<표 II-9>에 주어진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분류기준에 의해 밀집지역과 분산지역별로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11>, <표 II-12>. 간이주점업과 일반유흥주점업의 읍면동당 사업체수는 각각 120.4개(172/20,716)와 79.2개

(150/11,87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밀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지역의 경우 간이주점업, 이용업과 노래방업이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사지업과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은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소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밀집지역의 사업체수는 56,365개이고 분산지역의 사업체수는 153,351개이지만 읍면동수는 밀집지역이 1,607개이고 분산지역이 15,512개로 약 9.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밀집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읍면동 수/사업체 수)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20/1,632	32/2,940	71/6,572	27/735	150/11,879
무도유흥주점	40/458	63/683	114/1,369	67/558	284/3,068
간이주점	24/3,671	33/4,528	78/10,222	37/2,295	172/20,716
다방	-	-	27/1,492	12/405	39/1,897
노래방	59/2,328	101/4,330	129/5,744	65/1,168	354/13,570
이용업	12/349	20/465	39/961	38/734	109/2,509
마사지업	76/626	101/548	180/990	23/67	380/2,231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18/99	37/153	60/235	4/8	119/495
합계	249/9,163	387/13,647	698/27,585	273/5,970	1,607/56,365

<표 II-12> 분산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읍면동 수/사업체 수)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386/3,358	502/4,937	790/7,128	330/1,455	2,008/16,878
무도유흥주점	212/413	238/462	477/946	260/462	1,187/2,283
간이주점	491/16,608	678/22,744	1,244/32,518	526/3,804	2,939/75,674
다방	-	-	1,308/9,757	706/4,297	2,014/14,054
노래방	428/4,354	593/6,729	1,165/10,106	500/1,434	2,686/22,623
이용업	502/3,721	700/5,643	1,375/8,402	702/2,149	3,279/19,915
마사지업	236/408	200/264	318/426	31/31	785/1,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188/274	155/197	255/308	16/16	614/795
합계	2,443/29,136	3,066/40,976	6,932/69,591	3,071/13,648	15,512/153,351



### 3) 표본배분

표본크기는 실제 조사기간, 밀집, 분산지역 구분을 통한 지역별 대표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3,600개로 정하였다.<sup>17)</sup> 이들의 업종별 또는 지역별 할당은 성매매 알선율 등과 같은 특성이 업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업종별로 유의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업종별로 100개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에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2,800개를 비례할당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역별로는 업종별로 할당된 표본크기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우선 30 또는 50개를 우선할당한 후에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하여 자체가중의 표본설계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였으며, 업종별, 지역별 층에 대한 비례할당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II-13>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 계
일반유흥주점	87	135	225	37	484
무도유흥주점	30	34	74	34	172
간이주점	293	408	603	83	1,387
다방	0	0	222	91	313
노래방	105	180	257	41	583
이용원	74	111	165	49	399
마사지업	42	37	61	5	145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39	31	45	2	117
합 계	670	936	1,052	342	3,600

업종별로는 간이주점업이 1,387개로 전체의 38.5%로 제일 많이 할당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1,052개가 할당되어 전체의 29.2%에 해당되었다.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할당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

17) 3,600개 표본은 전국 단위의 사업체 조사에서는 충분한 표본수이며 표본오차도 이에 따라 충분히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조사내용과 조사여건 상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 관리에 중점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최소 3:7의 비율로 비례배분 비율을 조정하였다.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표본할당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4> 밀집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 계
일반유흥주점	35	68	113	15	231
무도유흥주점	15	20	44	19	98
간이주점	117	163	241	37	558
다방	0	0	67	27	94
노래방	42	72	77	21	212
이용원	22	33	50	15	120
마사지업	29	26	43	3	101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16	16	23	1	56
합 계	276	398	658	138	1,470

<표 II-15> 분산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 계
일반유흥주점	52	67	112	22	253
무도유흥주점	15	14	30	15	74
간이주점	176	245	362	46	829
다방	0	0	155	64	219
노래방	63	108	180	20	371
이용원	52	78	115	34	279
마사지업	13	11	18	2	44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23	15	22	1	61
합 계	394	538	994	204	2,130

표본사업체의 선정은 <표 II-13>에 주어진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를 밀집 지역과 분산지역으로 재배분한 후에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5~2006년)’ 자료를 분석하여 전국의 동읍면을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추출 리스트를 구성한 다음, 행정지역별로 정렬한 뒤에 표본사업체를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사업체를 동읍면으로 정리하였다.

모집단에 주어진 업종과 실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업종변경의 비율을 모집단에 적용하여 모집단의 구성을 조정한 후에 모수 추정 과정에 적용하였다.

#### 다. 질문지 설계

##### 1) 질문지 구성 절차

본 조사의 질문지는 2002년 조사 내용 및 성산업구조, 성매매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 위주로 질문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lt;표 II-16&gt; 질문지 구성 절차

절 차	내 용
1 단계 자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산업 및 성매매 실태에 관련된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li> <li>• 기초 질문지 수집</li> <li>• 분석모델</li> </ul>
2 단계 질문시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자료 및 분석모델을 토대로 질문시안 작성</li> <li>• 관련 전문가 및 내·외부 연구진의 자문을 토대로 질문시안 작성</li> </ul>
3 단계 1차 질문 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향후 분석 및 활용성을 감안하여 질문초안 확정</li> </ul>
4 단계 예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조사를 실시해 실제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 수정</li> <li>•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점검</li> </ul>
5 단계 2차 질문 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조사 후 오류점 발견(실사연구원 간담회)</li> <li>• 단어 수정 및 논리적 설문 전개</li> </ul>
6 단계 질문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질문지 확정</li> </ul>

## 2) 예비조사

연구진에 의해 1차 완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 및 접촉 가능성 타진 등을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lt;표 II-17&gt;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예비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1) 조사기간	2007년 6월 19일 ~6월 23일
2) 조사 지역	서울/경기 지역
3) 조사 대상	각 업종별 약 3~4개 업소 접촉
4)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contact 가능성 파악</li> <li>- 업종별 응답 거부율 파악 (1일 contact 가능건수/조사거절 현황)</li> <li>- 업종별 조사가능시간대 파악</li> <li>- 응답자 접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협조 정도 파악</li> <li>- 질문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li> <li>- 업소 전반적인 상황 및 분위기 파악(과소응답 포함)</li> </ul>

예비조사는 2007년 6월 19일부터 약 1주일 정도 진행하였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 업종별로 약 3~4개의 업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가 끝난 후에는 예비조사 면접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질문지에 대한 응답 거부율, 조사 및 응답자 접촉 가능성,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및 실제 실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각 업종별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실사 지침 등을 준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주요 조사 내용

표본으로 선정된 겸업형 사업체에 대한 주요 조사 항목은 성적 서비스 관련 현황 및 성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요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관련 사항들을 보조 항목 형태로 선정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lt;표 II-18&gt; 주요 조사 내용(검업형)

구 분	내 용
업체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기간</li> <li>• 월간 정기휴무 일수</li> <li>• 객실/객석 수</li> <li>• 1일 평균 이용고객 수</li> <li>• 월 평균 매출액</li> <li>• 주된 고객층 연령<sup>18)</sup></li> <li>• 전체 종업원 수(여성접객원 등)</li> </ul>
2차 서비스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님 성적 서비스 요구 현황</li> <li>• 손님 성적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li> <li>• 1일 평균 성적 서비스 구매자 수</li> <li>• 성적 서비스 이용 비용</li> <li>• 성적 서비스 제공 이유</li> <li>• 지역 내 성적 서비스 제공 현황</li> <li>• 매출 변화</li> <li>• 정책 관련 건의사항</li> </ul>
사업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업종/등록 여부/등록 사업내용/실질 사업내용</li> </ul>

## 라. 실사 설계

### 1)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면접원들이 리스트에 있는 사업체를 방문해서 그 사업체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대표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조사의 특성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면접원이 응답자를 면접하는 방식이나 응답자의 자기기입 방식을 병행해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 조사내용 자체가 불법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허위 응답이나 과소 응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면접원 후 기록’에 주요 항목(성적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면접원의 관찰 기록을 작성하게

18) ‘고객’으로 지칭한 이유는 해당 업종이 모두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소 이용자도 모두 ‘성구매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함으로써 설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sup>19)</sup>, 분석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을 추정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1차 조사 과정은 2007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하였다.

1차 조사 과정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체 비율을 추정한 이후에 자료처리를 진행하면서 응답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작업을 하였다. 실제 응답자의 응답 내용과 면접원의 '면접원 후기록' 내용을 비교하여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등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성매매 관련 주요 항목(성적 서비스 비용, 여성 종업원 규모 등) 등에 대해 전화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응답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보완 작업을 통해 성매매 관련 주요 항목들의 값을 추정하는데 활용하였다.

## 2) 조사진행

본 조사는 한국갤럽 전문면접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8월초부터 9월말까지 약 2개월 정도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자료처리 및 검증 과정에서 부족한 응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였다.

조사는 표본설계에 따라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실제 조사 완료되어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3,605개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 '면접원 후기록'은 면접원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업소의 분위기나 규모, 여성接客원 존재 여부 및 파악되는 인원 수, 성매매 알선 가능성 등을 면접조사가 끝난 이후 따로 기록한 현황표이며 이를 통해 응답 내용의 1차 검증 및 보완 작업이 수행되었다.

&lt;표 II-19&gt; 실제 표본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업종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
	밀집	분산	밀집	분산	밀집	분산	밀집	분산	
일반유희주점	68	64	98	88	161	142	20	31	672
무도유희주점	16	14	21	14	45	35	18	14	177
간 이 주 점	90	162	138	218	202	318	33	36	1,197
다 방	-	-	-	-	73	148	27	65	313
노 래 방	41	66	70	112	75	183	18	21	586
이 용 업	20	49	30	77	43	115	15	33	382
마 사 지	27	12	24	9	39	14	3	0	128
기 타 미 용	22	24	23	14	34	29	2	2	150
합	284	391	404	532	672	984	136	202	3,605

면접원들은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선정한 표본리스트를 이용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리스트는 본표본과 예비표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표본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표본 사업체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표본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예비표본 리스트에서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특성을 지닌 사업체를 현장에서 대체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마. 모집단 수정

본 조사에서는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8개 업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8개 업종별 조사대상 사업체는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리스트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리스트에 표기된 업종과 해당 사업체에서 행하는 실제적 영업활동이 상이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 사업 기준으로 업종을 재분류하였으며, 새롭게 분류된 업종 기준으로 이후 자료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리스트 상에서 분류된 모집단의 분포와 실제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새로운 업종 구분으로



분류하여 수정한 모집단 분포가 나타났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업종의 차이는 일반유흥주점업이 증가하였고, 간이주점업에서 감소한 형태로 나타났다.<sup>20)</sup> 이것은 간이주점업으로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업종의 경우 리스트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업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 사업 기준으로 수정된 모집단 규모는 이후 분석 과정에서 가중치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업종의 차이를 통해 이용업과 마사지업에서 감소된 모집단 수의 일부는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1-20> 8개 검업형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비교

(단위 : 개)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일반유흥주점	4,990	7,334	7,877	10,931	13,700	18,987	2,190	3,230	28,757	40,482
무도유흥주점	871	871	1,145	1,145	2,315	2,371	1,020	1,073	5,351	5,460
간이주점	20,279	18,015	27,272	24,120	42,740	37,466	6,099	4,963	96,390	84,564
다방운영	-	-	-	-	11,249	11,189	4,702	4,867	15,951	16,056
노래방운영	6,682	6,602	11,059	11,157	15,850	15,841	2,602	2,480	36,193	36,080
이용업	4,070	3,857	6,108	6,001	9,363	9,091	2,883	2,883	22,424	21,832
마사지업	1,034	948	812	747	1,416	1,256	98	50	3,360	3,001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373	672	350	522	543	975	24	72	1,290	2,241
총합	38,299	38,299	54,623	54,623	97,176	97,176	19,618	19,618	209,716	209,716

20)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 실제 조사 과정에서 리스트에 있는 무도유흥주점업의 대부분이 일반유흥주점업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리스트 상에서는 무도유흥주점업이지만 실질 사업 기준은 일반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분석 과정에서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에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업종 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리스트에서 일반유흥주점업이었지만 실질 사업에서는 무도유흥주점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포함하여 실질사업 모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연구에서는 업종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2007년 실태조사 특징 및 조사진행 방법

2007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는 2002년 실태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조사설계 특성을 반영하되, 2007년 새롭게 변화된 환경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설계를 진행하였다.

2007년에 진행된 겸업형 및 전업형 집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에 수행한 방식과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1차 기본조사를 수행하고<sup>21)</sup>, 겸업형 조사의 경우 전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자료 검증 및 추가 조사 작업을 하였으며, 전업형 조사의 경우 집결지역 주변 업종 등을 통한 탐문조사를 통해 자료 보완 작업 등을 하였다.<sup>22)</sup>

21)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노래방운영업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를 하였으며, 퇴폐이발소,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은 관찰이나 탐문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찰 및 탐문 방식은 면접조사된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2007년 5월에 진행된 서울 및 경기지역 8개 업종 대상의 예비조사 결과, 2002년 실태조사에서는 설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된 이발소, 다방,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업종들도 설문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22) 2002년 실태조사에서 전업형 조사는 공무원의 탐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활용하기 위해 3가지 방향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표 II-22 참조).

<표 II-21> 전업형/겸업형 실태조사 진행과정

① 연구자회의	· 연구진 및 기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회의	
② 표본설계/표본추출틀 확보	전업형	겸업형
	· 2002년 실태조사 기준 이용	·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을 모집단으로 규정
③ 리스트 입수 및 정리	전업형	겸업형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최종 조사지역 선정(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이용) · 최종 39개 지역 선정	· 통계청으로부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명부 입수 (상호/전화번호 포함) · 전국 실사진행
④ 예비조사 / 질문지 확정	· 2007년 6월 예비조사 실시 · 실사상황 점검 · 질문지 수정	
⑤ 본 조사/검증	전업형	겸업형
	· 2007년 9~10월 · 집결지 주변 지원시설/상담소협조 · 전문 면접원 이용 · 집결지역 주변 탐문조사 · 지역자료는 행정자료 이용	· 2007년 8월~9월 · 전문 면접원 활용 · 면접조사 원칙(상황에 따라 자기기입식 병행) · 손님 가장 전화모니터링 검증
⑥ 자료처리/분석	전업형	겸업형
	· 집결지역 유사 유형별 권역화 하여 무응답 보정 작업 진행	· 업종별 실질사업 확인 이후 모집단 추정 · 수정모집단 이용 모수추정
⑦ 보고서 작성/수정	· 연구진 협의를 통해 최종 조사결과 확정 · 보고서 작성 및 수정	

2007년 실태조사의 특징을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표 II-22>와 같다.

전업형 조사의 경우 2002년 실태조사 기준을 반영하되,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집결지 지역을 선정하였다.

겸업형 조사의 경우, 업종 선정, 지역 구분(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 밀집지역/분산지역) 등의 방식은 2002년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설계를 진행하였다. 단, 업종의 경우 2002년도에 선정된 7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노래방운영업, 다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업 등 분류가 모호한 업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1개 더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8개 업종을 겸업형 표본조사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표 II-22> 2002년과 2007년의 실태조사 특징 비교

구 분	2002년 실태조사	2007년 실태조사
전업형 업소 집결지 파악	- 행정기관 자료협조와 연구진 협의를 통해 집결지역 선정	-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이용하여 집결지역 선정(39개 지역 선정)
전업형 업소 조사방법	- 관련 공무원의 탐문조사	- 집결지역 관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단체를 이용하여 집결지역별 1~10개 정도 업소 표본조사 진행 - 한국궤립 면접원들이 집결지역 주변에서 집결지역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업소(슈퍼, 세탁소 등) 들을 대상으로 집결지역내 업소의 전반적인 경향성 파악 - 집결지역 주요 특성(전체 업소 수, 여성종업원 수)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행정자료 참고
겸업형 업소 조사업종	- 7개 업종	- 7개 업종과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포함하여 8개 업종
겸업형 조사방법	- 설문, 면접, 관찰, 탐문조사 또는 혼합조사 적용(업종별 조사방법 차별화)	- 면접조사 원칙 (업종 및 업소 특성에 따라 관찰 및 자기기입식 조사 등 병행) - 조사진행 후 면접원이 면접원 후기록 작성 - 손님을 가장한 전화 모니터링
표본규모 및 배분	- 6,000개중 5,000개 완료 - 업종별 비례할당 후 밀집지역/분산지역은 3:7 비율 배분	- 3,605개 유효표본 - 업종별 최소표본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하고 밀집 지역/분산지역은 최소 3:7 비율로 비례배분 조정

## 제2절 성매매여성 실태 조사방법

###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전후로 성매매 현장과 성매매여성의 생활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를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후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여성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전후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전국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와 접촉하였다. 여러 상황에 처해있는 성매매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의 면접대상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매매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상당수가 거부하였고 총 20명에 대해서만 심층면접을 수행할 수 있었다.

### 2. 심층면접의 시기와 방법

심층면접은 2007년 8월부터 10월 총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은 연결을 도와준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면접대상자와 면접자간의 1:1 면접을 기본으로 수행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면접대상자 여럿과 함께 면접하는 방식 등을 취하기도 하였다. 면접 자료의 수집은 사전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는 것과 면접자가 사전에 준비된 면접지침서에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녹음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한 면접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노트만을 작성할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각 항목별로 구분되었으며 개념도출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다.

### 3. 심층면접 내용과 세부 조사항목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은 여러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다. 연구진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후 성매매여성의 생활실태의 변화 탐색이라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앞서 수행되었던 성매매여성으로 수행된 심층면접을 검토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수행된 심층면접의 대부분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

입 과정과 업소 내에서의 피해 및 생활 실태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문헌에서 수행되었던 심층면접의 대표적인 조사항목을 반영하였으며,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수립된 탈성매매 관련 정책과 탈성매매 과정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항목에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의 조사항목은 아래 <표 II-23>와 같다.

<표 II-23> 심층면접 조사항목

구분	대항목	소항목
성매매 시장유입	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배경	- 학력, 연령 - 가족관계, 가출경험, 성폭력/가정폭력 경험
	유입 과정	- 유입이전 취업경험 - 유입동기, 유입시기, 유입시 성매매에 대한 생각 - 유입 업소 형태
성매매 피해여성 으로 생활	업소 이동	- 이동한 업소 형태, 이동 요인, 이동 과정 - 제3자의 개입 여부 및 과정
	피해실태	- 업주 손님에 의한 폭력 및 통제 정도 - 신체적, 심리적 피해 정도 - 불합리한 계약: 일하는 조건의 공지 여부, 차용증 작성 여부, 수입의 분배구조,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 여부 - 신분증 압류 여부
	사회적 관계 형성	- 업주와의 관계 - 인간관계 형성: 동료, 가족, 기타 사회적 관계 형성
	성매매에 대한 인식	- 성매매에 대한 인식
	수입과 지출	- 수입의 종류와 내역 - 소비생활(월평균 생활비) - 빚과 이자 - 업주와의 분배구조
탈성매매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	현재 상태	- 현재 상태: 거주지, 정책 수급여부, 수급기간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 탈성매매 결심의 조건 - 탈성매매 결심의 장애요인
	공권력에 대한 인식	- 성매매여성으로서 경찰 및 검찰에 대한 인식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 자활 개념 - 제공받는 급여의 종류(적절성) - 담당 직원과의 관계, 의미 - 개선되어야 할 사항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해당자만)	- 평소 경찰 단속 등에 대한 생각 - 수사과정: 수사관(경찰 및 검찰)의 질문 방식 및 태도 - 피해자의 경우, 입증 과정에서의 어려움, 증명방법 - 피의자의 경우, 구속여부 - 처분결과 및 현재 상황 - 선불금 문제: 현재 상황, 증명 방법 - 주변의 지원(상담소, 변호사 등)에 대한 생각과 경험 - 개선되어야 할 사항
	기타	- 성매매 재유입의 요인

### 제3절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조사방법

#### 1. 공식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는 각종 공식통계를 통해 성매매 관련범죄의 발생현황,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성매매 사건처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주된 자료로는 『범죄분석』, 『사법연감』, 『검찰연감』 등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를 참조하고, 경찰청 및 검찰청의 검거 및 접수 내부자료와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보충하였다.

#### 2.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 분석

본 기록조사를 통해 공식통계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사과정 및 내용, 즉 피의자와 사건의 특성과 성매매 사건처분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수사 및 재판기관의 성매매 관련 법조항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3. 판례 분석

성매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성매매관련법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 행위로 규제되고 있고, 한국인의 해외성매매는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다루는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 5개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매매는 불법이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한국여성과 같은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체류조건 및 해당 업소의 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해외성매매에 대해서 명확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사법 및 법집행 기관도 부분적으로 성매매 실태 및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만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결국 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해외성매매 경로와 실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적 윤곽을 짐작하는 정도이다.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향후 관련 대책 마련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 1. 관련 보도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해외성매매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매매의 불법성, 은밀성, 그리고 여타 범죄와의 연루되는 경향으로 성매매 실태를 보여주는 명확한 통계나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해당국가의 이민국, 검찰, 경찰 등은 수사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적 발표는 언론에 의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다. 또 기자들의 성매매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탐문조사에 기초한 기사는 해당 국가에서 벌어지는 한국여성의 성매매 실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사례로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는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장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미국에서 성매매 하는 한국여성의 경우는 밀입국이나 인신매매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연방 기관의 합동 작전에 의해 경로나 실태가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보도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국 현지 신문을 참고하였

다. 호주의 경우는 호주의 현지 신문 및 교민신문을, 일본의 경우는 국내 신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한국남성의 해외 성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태국, 필리핀을 다루었다. 이들 국가로 향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성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관광이 성매매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한다. 한국 남성 관광객의 성구매는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국내 언론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 2. 국내외 관련기관 보고서 및 문헌 검토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와 관련된 보고서와 문헌을 참고하였다. 미국 국무성이 발간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고서, 미국의 민간단체(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가 발간한 미국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호주연방경찰의 연간 보고서, 호주법무부가 호주 한국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밝힌 문서 등을 참고하였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의 보고서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한국남성의 성구매 행태와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3. 외국 현지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 경로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 현지 방문을 하였다.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대표단과 2007년 3월 14일부터 3월22일까지 미국 현지를 방문하였다. 서부의 LA에서 동부 워싱턴, 뉴욕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무성, 국무성, 이민관세집행부(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 ICE), 여성단체, 언론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호주 방문은 이미정 연구위원에 의해 2007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호주의 캔버라에서는 호주이민국, 연방경찰청, 호주범죄위원회의 관리를 면담하여 한국여성의 성매매 경로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시드니 영사관 경찰담당 영사, 호주동아일보의 편집국장,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 성매매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있는 연구자를 면담하여 한국여성의 성매매 경로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

## 2007년 성매매 실태

제1절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역 조사 결과	57
제2절 겸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에 대한 전국표본 조사결과	65
제3절 인터넷 성매매 실태	98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106

## 제1절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역 조사 결과

### 1. 지역 특성

2007년 전업형 집결지역 조사에 적용된 지역은 39개 지역이며, 경기도가 7개, 서울이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한 각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은 전업형 집결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현황

지역	조사대상 지역(개)
서울	5
부산	3
대구	1
인천	1
광주	4
대전	2
울산 <sup>23)</sup>	-
경기	7
강원	3
충북	1
충남	2
전북	4
전남	1
경북	3
경남	1
제주	1
합계	39

23) 울산광역시외의 경우, 2002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표본 집결지는 1개였으나, 선행자료 검토 결과 집결지로 간주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의 전업형 집결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lt;표 III-2&gt; 집결지의 업소 유형별 특성

(단위 : 개, %)

구분	합계
유리방	23(59.0)
기지촌	2(5.1)
여관/여인숙	6(15.4)
주점식 전업형	8(20.5)
합계	39(100.0)

집결지역의 업소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집결지 특성인 유리방 형태로 운영하는 유형이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주점식 전업형 형태가 8개, 여관/여인숙 형태가 6개로 나타났다. 기지촌은 2개 지역으로 가장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lt;표 III-3&gt; 집결지의 업소 특성별 영업방식

(단위 : 개, %, 중복응답)

구분	유리방	기지촌	여관/여인숙	주점식 전업형	총합
총 집결지수	23	2	6	8	39
주류(술) 판매 여부	3(13.0)	2(100.0)	1(16.7)	8(100.0)	14(35.9)
노래, 춤, 기타 여흥 가능	1(4.3)	2(100.0)	1(16.7)	7(87.5)	11(28.2)
2차 서비스용 쪽방	13(56.5)	1(50.0)	5(83.3)	5(62.5)	24(61.5)

집결지역의 영업방식 특성을 살펴보면, 성적 서비스용 쪽방이 있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35.9%, 여흥이 가능한 경우가 28.2%로 나타났다. 업소유형 중 유리방 지역의 경우, 성적 서비스용 쪽방이 있는 경우가 56.5%로 나타났으며, 주점식 전업형의 경우, 주류 판매, 노래/춤/여흥 가능, 성적 서비스용 쪽방 등 대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료처리 과정

전업형 집결지역의 자료는 지역 특성과 관련된 자료와 지역 내 업소 특성을 조

사한 개별 자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결지역내 전체 업소 수 및 전체 여성수와 관련된 자료는 경찰청 자료, 시도 자료, 한국갤럽 탐문조사 자료 등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기반으로 39개 지역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규모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지역을 이용하여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대체(imputation)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집결지역의 사업체 수와 성매매여성 규모 값을 대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① 2007년 자료(한국갤럽 탐문조사 자료, 시도 행정자료, 경찰청 자료) 중에서 큰 값을 사업체 수 또는 성매매여성 수로 하였다.<sup>24)</sup> 이것은 집결지에 대한 규모가 과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되거나 확보된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② 만약 이러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성이 유사한 업종의 값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검토하고, 2006년 자료<sup>25)</sup>와 비교하여 이상치가 있을 경우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집결지역의 전체 업소수와 성매매여성 수를 제외한 내용은 집결지역내 업소들의 특성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집결지역내 업소들에 대한 조사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들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한국갤럽 전문면접원의 탐문조사 자료에서 얻은 정보도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업소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집결지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변수별로 항목 무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집결지역내 사업체 수와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무응답을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24) 본 조사에서는 전업형 집결지 조사를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과소응답을 예상하여 동일 집결지에 대한 3가지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5) 집결지역 선정에 이용한 2006년 행정자료 및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보고서 등 2006년 기초자료에 있는 결과 등을 비교 검토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① 집결지역의 특성을 업소 유형 자료를 이용하여 유리방, 기지촌, 주점식 전업형, 여관/여인숙 등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항목 무응답 값을 이러한 유형 및 지역을 고려하여 평균 대체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 ②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2006년 자료와 비교하여 이상치가 있을 경우 추가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체 및 보정 과정을 통해 39개 집결지역에 대한 정보와 업소 특성 자료들을 결합하여 집결지역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였다.

### 3. 주요 조사 결과

#### 가. 업소 수 및 성매매여성 수

2007년 전업형 집결지역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결지역내 전체 업소 수 및 성매매여성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4>는 경찰청/시도의 행정자료 및 한국갤럽 탐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역내 업소 수와 성매매여성 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39개 집결지역에 있는 업소 수는 1,443개로 나타났으며, 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수는 약 3,644명 정도로 나타났다. 업소 유형별로는 유리방 지역이 2,375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지촌 지역이 130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소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는 평균 2.53명이며, 주점식 전업형이 3.56명, 기지촌 지역이 3.71명, 유리방 지역이 2.59명으로 나타났으며, 여관/여인숙 지역이 0.89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sup>26)</sup>

---

26) 2006년 경찰청 자료에는 33개 지역에 업소 수는 1,097개, 종업원 수는 2,663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7년 경찰청 자료에는 31개 지역에 업소 수는 995개, 종업원 수는 2,50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조사의 경우, 지역 선정에 있어서 경찰청 자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업소 수 및 종업원 수 결과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lt;표 III-4&gt; 총 업소 수 및 총 성매매여성 수

구분	집결지역수 (개, %)	지역내업소수 (개, %)	지역내 성매매여성 수 (명, %)	업소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 (명)
유리방	23(59.0)	916(63.5)	2,375(65.2)	2.59
기지촌	2(5.1)	35(2.4)	130(3.6)	3.71
여관/여인숙	6(15.4)	229(15.9)	204(5.6)	0.89
주점식 전업형	8(20.5)	263(18.2)	935(25.7)	3.56
합계	39(100.0)	1,443(100.0)	3,644(100.0)	2.53

다음으로 집결지역내 주요 영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개 집결지역내에 있는 1,443개소의 지역당 평균 업소 수는 37.0개로 나타났다. 유리방 지역이 39.8개, 여관/여인숙이 38.2개, 그리고 주점식 전업형 지역이 32.9개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지촌 지역이 17.5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II-5>.

지역별 전체 성매매여성 수(3,644명)를 이용하여 지역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를 살펴보면 평균 93.4명으로 나타났으며, 주점식 전업형 지역이 평균 116.9명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 나. 성적 서비스 비용

성적 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 39개 집결지역 전체 평균적으로 약 82,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점식 전업형의 경우 평균 약 163,000원 수준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지촌이 평균 약 122,000원, 유리방 지역이 평균 약 66,000원, 여관/여인숙 지역이 평균 약 34,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I-5>.

#### 다.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다음으로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를 살펴보면, 업소당 평균적으로 약 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지촌 지역이 평균 10.0명, 주점식



전업형 지역이 평균 7.6명, 여관/여인숙 지역 평균 7.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리방 지역이 평균 4.3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II-5>.

이것을 성매매여성 1인당 1일 접객하는 성구매자 수로 산정해보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관/여인숙 지역이 평균 8.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기지촌 지역이 평균 2.7명, 주점식 전업형 지역이 평균 2.1명, 유리방 지역이 평균 1.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I-5>.

<표 III-5> 집결지의 업소유형별 영업지표

구분	유리방	기지촌	여관/ 여인숙	주점식 전업형	전체
지역수(개)	23	2	6	8	39
지역당 평균 업소수(개)*	39.8	17.5	38.2	32.9	37.0
지역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명)	103.3	65.0	34.0	116.9	93.4
업소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명)**	2.6	3.7	0.9	3.6	2.5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원)	65,836	122,442	34,434	163,415	82,251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명)***	4.3	10.0	7.5	7.6	5.8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1.7	2.7	8.5	2.1	2.3

\* : 지역당 평균성매매여성 수 = 지역내 성매매여성 수/집결 지역수

\*\* : 업소당 평균 성매매여성 수 = 지역내 성매매여성 수/지역내 업소수

\*\*\* :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 = 업소당 평균 성구매자 수/업소당 평균 여성수

#### 라. 집결지역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39개 집결지역의 성매매 경제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성매매여성 수와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업소들의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영업일수를 약 300일로 추정하였다(월 평균 휴일 약 4일)<sup>27)</sup>. 이것을 통해 연간 거래량이 약 251만 여건으로 추정되며, 이것과 서비스 비용 평균 82,251원을 곱하여 추정한 연간 거래액은 약 2,06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7) 연간 영업일수 및 월 평균 휴일 일수는 본 조사의 설문을 통해 응답된 결과이다.

&lt;표 III-6&gt; 39개 집결지의 '전업형 성매매' 경제규모

구분	조사결과
전체 성매매여성 수(명)	3,644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2.3
연간 거래량(천건)	2,514
평균 서비스 비용(원)	82,251
연간 거래액(억원)	2,068

\* 연간 거래량 : 연간 영업일수는 300일로 계산함.

#### 마. 기타 관련 사항

다음으로 집결지역내 업소들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관련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결지역내 업소들을 주로 이용하는 성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30대(31.3%)와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29.5%)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III-7&gt; 주 이용 연령층 특성

(단위 : 개,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연령 <sup>28)</sup>	합계
유리방	8(11.6)	21(30.4)	11(15.9)	6(8.7)	1(1.4)	22(31.9)	69(100.0)
기지촌	1(50.0)	0(0.0)	0(0.0)	0(0.0)	0(0.0)	1(50.0)	2(100.0)
여관/여인숙	1(5.3)	3(15.8)	6(31.6)	2(10.5)	1(5.3)	6(31.6)	19(100.0)
주점식 전업형	1(4.5)	11(50.0)	6(27.3)	0(0.0)	0(0.0)	4(18.2)	22(100.0)
합계	11(9.8)	35(31.3)	23(20.5)	8(7.1)	2(1.8)	33(29.5)	112(100.0)

다음으로 최근 1~2년간 매출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소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28) 주된 이용 연령층은 본 조사의 설문에 응답된 결과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모든 연령'은 해당 집결지의 성구매자의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성매매방지법 때문’이라는 이유가 46.2%, ‘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유리방 지역의 기지촌 지역 집결지가 여관/여인숙 지역과 주점식 전업형 지역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 법제정이 유리방 지역과 기지촌 지역 집결지의 업소 감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III-8> 매출 변화

(단위 : 개, %)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해당 없음	합계
유리방	1(1.6)	3(4.9)	55(90.2)	2(3.3)	61(100.0)
기지촌	0(0.0)	0(0.0)	2(100.0)	0(0.0)	2(100.0)
여관/여인숙	0(0.0)	5(26.3)	14(73.7)	0(0.0)	19(100.0)
주점식 전업형	0(0.0)	4(33.3)	7(58.3)	1(8.3)	12(100.0)
합계	1(1.1)	12(12.8)	78(83.0)	3(3.2)	94(100.0)

<표 III-9> 매출 감소 이유

(단위 : 개, %)

구분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경기 때문에 (불황)	기타	합계
유리방	29(52.7)	18(32.7)	8(14.5)	55(100.0)
기지촌	2(100.0)	0(0.0)	0(0.0)	2(100.0)
여관/여인숙	4(28.6)	5(35.7)	5(35.7)	14(100.0)
주점식 전업형	1(14.3)	4(57.1)	2(28.6)	7(100.0)
총합	36(46.2)	27(34.6)	15(19.2)	78(100.0)

※ 기타 의견으로는 ‘시설 낙후’, ‘환경 변화’ 등이 있었음.

## 제2절 겸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에 대한 전국표본 조사결과

겸업형 성매매 가능 업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다방업, 노래방업,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사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 업소의 규모와 그 실태 등을 추정하였다. 추정하는 모수는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이며, 2002년도에 추정한 결과와 비교 분석을 위해서 2002년도에 분석한 변수들 중심으로 모수 추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 1. 추정식

본 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과정에서 고려된 변수인 업종(8개 업종), 지역(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구분(밀집지역/분산지역) 변수가 모수 추정 과정에도 층화변수로 이용되어 적용되었다. 업종의 경우, 표본설계 과정에서 적용된 모집단과 실제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실제 업종을 기준으로 수정된 모집단의 현황을 고려하여 수정된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였으며, 지역 및 지역구분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모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즉 8개 업종별, 지역(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별, 지역구분(밀집지역/분산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는데, 마사지업과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조사 사례수가 적어서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을 통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주요 관심 모수는 성매매 알선 비율, 성매매 알선 사업체 수, 성매매 종사 여성의 성적 서비스 비용, 성산업 관련 업종의 경제규모 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모수 추정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성매매 알선 비율

본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은 실제 응답자의 응답 및 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의 성매매 가능성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성매매 알선 비율은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알선율 추정

$$- \widehat{P}_{ij} = \sum_{k=1}^2 W_{ijk} \widehat{P}_{ikj}$$

$$- W_{ijk} = \frac{N_{iik}}{N_{ij}} \quad (i : \text{업종}, j : \text{지역}, k : \text{지역구분})$$

○ 알선율 추정량의 분산 추정

$$- \widehat{V}(\widehat{P}_{ij}) = \sum_{h=1}^2 W_{ijk}^2 \left( \frac{N_{iik} - n_{iik}}{N_{ijk}} \right) \left( \frac{\widehat{P}_{iik}(1 - \widehat{P}_{iik})}{n_{iik} - 1} \right)$$

○ 알선율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추정

$$- \widehat{P}_{ij} \pm 2 * \sqrt{\widehat{V}(\widehat{P}_{ij})}$$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종별, 지역별 단위로 알선 비율을 추정하고, 전체 사업체 규모와 알선 비율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사업체 수를 추정하였다.

#### 나. 성적 서비스 비용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성적 서비스 비용 관련 모수 추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dehat{\mu}_{st} = \sum_{h=1}^H W_h \overline{y}_h$$

여기에서  $h$ 는 층을 나타내고  $W_h$ 는  $h$ 층의 모집단 구성비이며,  $\overline{y}_h$ 는  $h$ 층의 표본평균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추정량의 분산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idehat{V}(\widehat{\mu}_{st}) = \sum_{h=1}^H W_h^2 \left( \frac{N_h - n_h}{N_h} \right) s_h^2$$

여기에서  $s_h^2$ 은  $h$ 층의 표본분산으로 아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s_h^2 = \frac{\sum_{j=1}^n (y_{hj} - \bar{y}_h)^2}{n_h - 1}$$

#### 다.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규모 추정

성매매 관련 산업의 전체 경제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은 성적 서비스 거래 규모, 여성 종업원 규모, 성구매자 규모 등 성산업 관련 주요 항목들의 종합적인 결합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 산업의 거래액에 의한 경제규모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SS = \sum_{i=1}^n \sum_{j=1}^m P_{ij} Q_{ij}, \quad Q_{ij} = F_{ij} C_{ij}$$

$$SS_j = \sum_{i=1}^n \sum_{j=1}^m P_{ij} Q_{ij}, \quad SS_i = \sum_{j=1}^m P_{ij} Q_{ij}$$

여기에서  $SS$ 는 관련 산업 전체의 거래액이고,  $SS_i$ 는 지역  $i$ 의 거래액이며,  $SS_j$ 는 업종 유형  $j$ 의 거래액이다.  $P_{ij}$ 는 지역  $i$ 에서 업종 유형  $j$ 의 거래액이고  $Q_{ij}$ 는 지역  $i$ 에서 업종 유형  $j$ 의 거래량을 나타낸다.  $F_{ij}$ 는 지역  $i$ 에서 업종 유형  $j$ 의 종사 여성수이고,  $C_{ij}$ 는 지역  $i$ 에서 업종 유형  $j$ 의 여성 1인당 접촉 성구매자수를 의미한다.

## 2. 겸업형 업소 전체 종사 여성 규모

겸업형 조사는 우리나라의 여러 업종 중에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면, 이 8개 업종에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 종사자 규모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8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여성종사자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표 III-10>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업종별 사업체의 수

와 여성종사자 수를 파악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여성 종사자는 상용종사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성接客원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성 종사자 규모는 성매매여성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이며,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겸업형 8개 업종의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를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성매매 종사 여성 규모와 비교하기 위한 준거 틀로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209,716개의 8개 업종의 사업체에 294,505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간이주점업에 127,78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반 유흥주점업이 74,5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은 2,372명으로 가장 적은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사지업이 6,3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2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293천명에서 294천명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적용)

업종	사업체수(개)		여성 종사자 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일반유흥주점업	30,912	28,757	80,072	74,564
무도유흥주점업	3,608	5,351	9,726	11,026
간이주점업	88,992	96,390	113,475	127,787
다방운영업	24,991	15,951	53,704	29,451
노래방운영업	27,861	36,193	23,369	34,999
이용업	25,463	22,424	10,275	7,926
마사지업	1,461	3,360	3,042	6,380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1,290	-	2,372
합계	203,288	209,716	293,633	294,505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 수는 상용종사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된 내용임.

위의 결과를 본 조사에서 파악한 실제 업종의 분포 결과를 적용한 수정 모집단 자료로 적용했을 경우, 여성 종사자 규모는 31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간이주점업에 112,109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유흥주점업이 104,99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으로 4,121명으로 나타났고, 마사지업이 5,69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2년과 비교하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노래방운영업, 마사지업 등은 여성 종사자 규모가 증가한 반면, 다방운영업, 이용업 등은 여성 종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수정모집단 자료 적용 겸업형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

업종	사업체수(개)		여성 종사자 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일반유흥주점업	34,136	40,482	88,423	104,966
무도유흥주점업	2,327	5,460	6,273	11,251
간이주점업	86,872	84,564	110,772	112,109
다방운영업	24,972	16,056	53,663	29,645
노래방운영업	27,464	36,080	23,036	34,890
이용업	25,517	21,832	10,297	7,717
마사지업	1,423	3,001	2,963	5,698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2,241	-	4,121
합계	202,711	209,716	295,427	310,396

위의 결과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8개 업종의 여성 종사자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통계청의 여성 종사자 규모는 각 업종의 모든 여성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여성接客원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여성接客원 및 도우미 규모를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한 결과가 다음 <표 III-12>과 같다.



<표 III-12>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接客원 규모 추정치  
(2007년 조사 결과 적용)

업종	겸업형 사업체 추정치 (개)	업소별 여성接客원 평균 규모 추정치(명)			업종별 전체 여성接客원 규모 추정치(명)		
		상시	임시	합계	상시	임시	합계
일반유흥주점업	40,482	1.52	1.39	2.91	61,378	56,386	117,664
무도유흥주점업	5,460	1.28	1.34	2.62	6,996	7,322	14,318
간이주점업	84,564	0.26	0.10	0.36	22,097	8,093	30,190
다방운영업	16,056	0.79	0.24	1.03	12,663	3,883	16,546
노래방운영업	36,080	0.13	0.78	0.90	4,536	27,989	32,525
이용업	21,832	0.12	0.10	0.22	2,639	2,213	4,852
마사지업	3,001	1.49	0.48	1.97	4,461	1,442	5,902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2,241	0.76	0.29	1.06	1,711	659	2,370
합계	209,716	0.56	0.51	1.07	116,481	107,987	224,468

각 업소에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상시 혹은 임시<sup>29)</sup> 모두를 포괄하는 여성接客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24,468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매매 알선 여부와 상관없이 8개 업종 전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接客원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유흥주점업에 117,66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래방이 32,525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은 2,370명으로 가장 적은 여성接客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업 4,852명, 마사지업이 5,902명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29) 본 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상시와 임시는 본 조사 질문지 상에서 표현한 개념을 간략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의 질문지에서 여성接客원 및 도우미 관련 질문을 '귀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여성接客원이나 도우미'의 규모를 묻는 질문과 '귀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님이 요구할 경우 불러주는 여성接客원이나 도우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따라서 전자를 '상시', 후자를 '임시'로 개념화하여 표현하였으며, 총 여성接客원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상시와 임시를 모두 포함해서 규모를 추정하였다.

### 3.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 업체 규모

본 조사 대상인 8개 업종 유형별 성매매 알선 비율<sup>30)</sup> 및 성매매 알선 업체수의 추정은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서울, 6대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에 대해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과 알선업체수를 추정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업종 유형별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의 전국 모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가. 일반유흥주점업

<표 III-13>은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일반유흥주점업의 성매매 알선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을 보면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55.9%이고, 분산지역은 50.0%로 나타났다. 6개 광역시의 경우 일반유흥주점 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5.1%, 분산지역은 48.9%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5.3%, 분산지역의 그 비율은 66.2%였으며, 농어촌 지역 중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0.0%, 분산지역은 48.4%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밀집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55~60% 수준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분산지역의 경우 중소도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는 앞의 <표 III-12>의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접객원 규모(224,468명)와는 다른 개념이다. 앞의 <표 III-12>에 있는 여성접객원 규모는 8개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접객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매매 알선 사업체 및 성매매와 관련 없이 해당 사업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전체 8개 유흥업종 사업체 중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를 추정하고, 그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매매여성 규모로 추정하였다.

&lt;표 III-13&gt; 지역별 일반유흥주점업의 성매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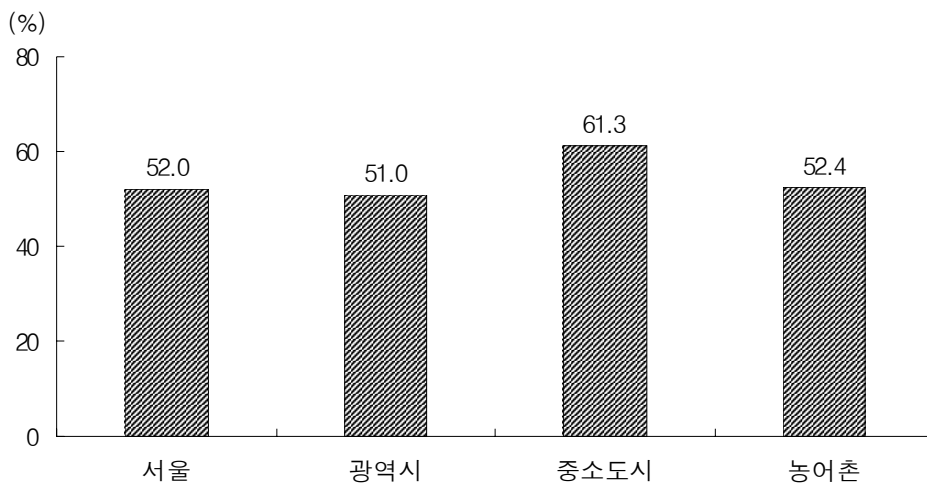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 지역	분산 지역	합	밀집 지역	분산 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울	2,546	4,788	7,334	68	64	132	0.559	0.500
광역시	3,811	7,120	10,931	98	88	186	0.551	0.489
중소도시	8,477	10,510	18,987	161	142	303	0.553	0.662
농어촌	1,108	2,122	3,230	20	31	51	0.600	0.484

위의 <표 III-13>의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을 토대로 해서 각 지역별 성매매 알선 비율을 추정하면 <표 III-14>의 결과를 얻는다. 서울에 있는 일반유흥주점업들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52.0%로 집계되었다. 추정비율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42.9%에서 61.2%이다. 광역시의 그 비율은 51.0%, 중소도시는 61.3%, 농어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2.4%이다.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업체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중소도시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각 지역의 모수에다 추정비율을 곱하면 된다. 그 결과 서울에는 3,817개소의 성매매 알선 일반유흥주점 업소들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3,146개에서 4,487개이다. 다음으로 광역시에는 5,579개소, 중소도시에는 11,643개소, 그리고 농어촌에는 1,692개소의 성매매알선 일반유흥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14&gt; 지역별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 수(추정치)

지 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95%)		모수 (개)	추정치(개)	추정치 신뢰구간(95%)	
		하위	상위			하위	상위
서울	0.520	0.429	0.612	7,334	3,817	3,146	4,487
광역시	0.510	0.433	0.588	10,931	5,579	4,736	6,422
중소도시	0.613	0.558	0.669	18,987	11,643	10,590	12,696
농어촌	0.524	0.380	0.667	3,230	1,692	1,229	2,154



&lt;그림 III-1&gt;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표 III-15>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일반유흥업소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도시가 55.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광역시로 45.1개소가 분포해 있으며, 농어촌 지역이 42.2개, 서울이 39.1개로 각각 집계되었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중소도시, 광역시 순으로 성매매알선 일반유흥주점 업소가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III-15&gt;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일반유흥주점 업소수의 분포

지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3,817	39.1
광역시	12,383	5,579	45.1
중소도시	20,891	11,643	55.7
농어촌	4,005	1,692	42.2

※ 인구수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참고로 한 것임.

#### 나. 무도유흥주점업

다음으로 무도유흥주점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밀집지역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0.0%이고, 분산지역의 비율은 57.1%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밀집지역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2.9%, 분산지역은 71.4%로 각각 나타났다. 분산지역이 밀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6.7%,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5.7%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을 살펴보면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5.6%, 분산지역의 알선 비율은 57.1%로 나타났다.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광역시의 분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의 밀집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역시의 밀집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유흥주점업과 비슷하게 50% 수준 이상으로 높은 알선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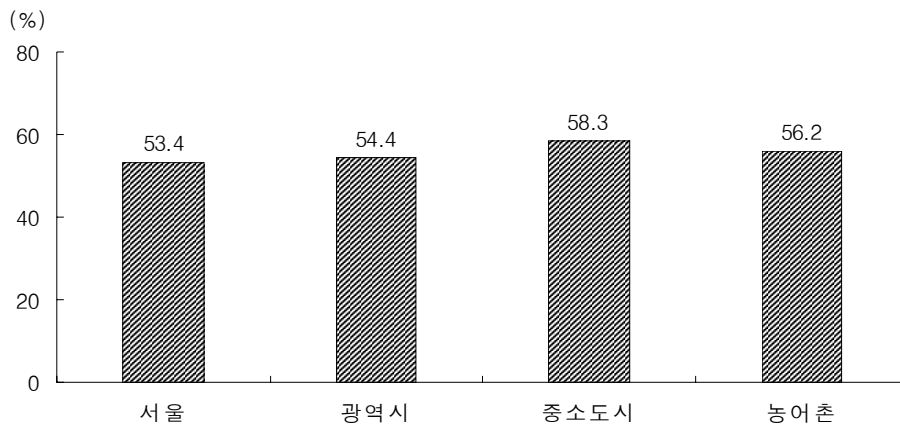
&lt;표 III-16&gt; 지역별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실태

지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울	458	413	871	16	14	30	0.500	0.571
광역시	683	462	1,145	21	14	35	0.429	0.714
중소도시	1,425	946	2,371	45	35	80	0.667	0.457
농어촌	611	462	1,073	18	14	32	0.556	0.571

다음으로 지역별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은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3.4%이고, 알선업체 수는 465개로 나타났다. 추정비율의 95% 신뢰구간은 34.1%에서 72.7%이고, 추정치의 신뢰구간은 297개 업소에서 633개 업소이다. 광역시의 경우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4.4%,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623개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알선 비율은 58.3%, 추정치는 1,382개 업소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실태를 보면,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6.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603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지역별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서울	0.534	0.341	0.727	871	465	297	633
광역시	0.544	0.375	0.713	1,145	623	429	816
중소도시	0.583	0.474	0.692	2,371	1,382	1,125	1,640
농어촌	0.562	0.377	0.747	1,073	603	405	802



<그림 III-2>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지역의 인구수를 통제한 결과가 <표 III-18>에 제시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성매매를 알선하는 무도유흥주점 업소 수는 농어촌 지역이 15.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로 6.6개이며, 광역시가 5.0개, 서울이 4.8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III-18>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무도유흥주점 업소수의 분포

지 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465	4.8
광역시	12,383	623	5.0
중소도시	20,891	1,382	6.6
농어촌	4,005	603	15.1

#### 다. 간이주점업

<표 III-19>에는 간이주점 업소의 표본조사를 통해 밝혀진 성매매 알선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3.3%이고,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9%이다. 광역시의 경우 간이주점 밀집지역에서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3.6%로 조사되었고, 분산지역은 1.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소도시의 밀집지역에 위치한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0.5%, 분산지역의 그 비율은 4.1%였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밀집지역은 6.1%,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19&gt; 지역별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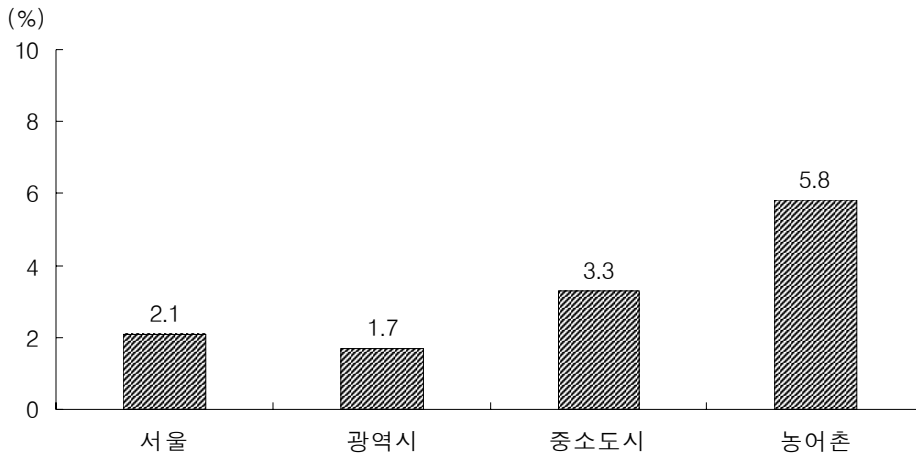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 지역	분산 지역	합	밀집 지역	분산 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울	2,837	15,178	18,015	90	162	252	0.033	0.019
광역시	3,810	20,310	24,120	138	218	356	0.036	0.014
중소도시	8,364	29,102	37,466	202	318	520	0.005	0.041
농어촌	1,986	2,977	4,963	33	36	69	0.061	0.056

표본조사의 성매매 알선 비율을 근거로 지역별 전체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과 알선업체의 추정치를 구해보면 <표 III-20>과 같다. 먼저 서울의 경우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2.1%이며,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376개 업소이다. 서울의 알선 비율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0.2%에서 3.9%이며, 추정치의 신뢰구간은 41개 업소에서 711개 업소이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광역시의 경우를 추정해 보면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1.7%,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418개 업소이다. 중소도시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알선업소의 추정치는 1,231개이다. 농어촌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5.8%, 알선업소의 추정치는 286개이다. 간이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농어촌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 서울의 순서이며, 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lt;표 III-20&gt; 지역별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 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서울	0.021	0.002	0.039	18,015	376	41	711
광역시	0.017	0.003	0.031	24,120	418	80	755
중소도시	0.033	0.016	0.050	37,466	1,231	590	1,872
농어촌	0.058	0.000	0.115	4,963	286	1	570





<그림 III-3>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인구 10만 명 당 성매매를 알선하는 간이주점 업소의 분포상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이 7.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5.9개, 서울 지역이 3.8개, 광역시 지역이 3.4개로 나타났다(<표 III-21>).

<표 III-21>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간이주점 업소의 분포

구분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376	3.8
광역시	12,383	418	3.4
중소도시	20,891	1,231	5.9
농어촌	4,005	286	7.1

### 라. 다방운영업

다방운영업에 대한 성매매 알선여부의 조사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중소도시의 다방운영업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7.4%이고,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1.6%로 나타

났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37.0%이고, 분산지역은 4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지역별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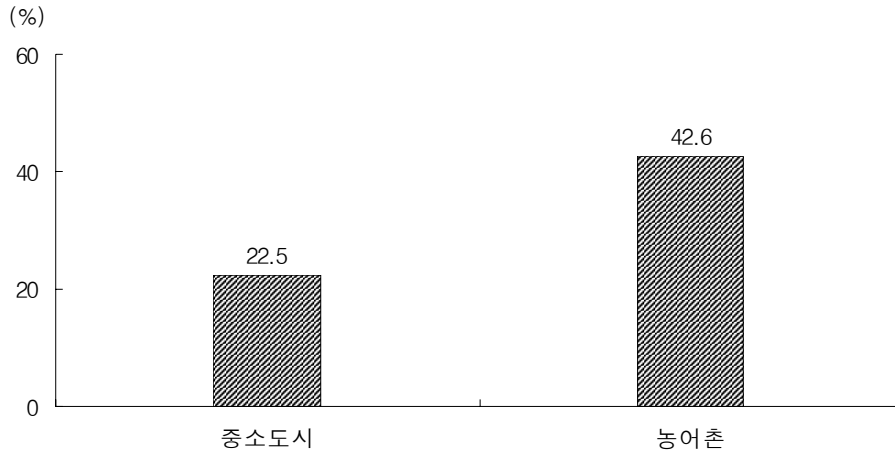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중소도시	1,630	9,559	11,189	73	148	221	0.274	0.216
농 어 촌	405	4,462	4,867	27	65	92	0.370	0.431

<표 III-22>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성매매 알선 실태를 추정해보면 <표 III-23>과 같다. 우선 중소도시의 경우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22.5%로 집계되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티켓다방의 추정치는 2,513개 업소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은 16.6%에서 28.4%이며, 알선업소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은 1,852개 업소에서 3,175개 업소이다. 농어촌 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2.6%로 나타났으며, 업소수의 추정치는 2,072개 업소이다.

절대 건수로는 중소도시에 티켓다방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구수를 통제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중소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티켓다방 추정치는 12.0개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티켓다방 수는 51.7개로 추정되었다.

<표 III-23> 지역별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 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중소도시	0.225	0.166	0.284	11,189	2,513	1,852	3,175
농 어 촌	0.426	0.312	0.540	4,867	2,072	1,518	2,626



<그림 III-4>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표 III-24>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다방의 분포

지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중 소 도 시	20,891	2,513	12.0
농 어 촌	4,005	2,072	51.7

**마. 노래방운영업**

노래방 업소에서의 소위 “노래 도우미”를 통한 성매매 알선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노래방 밀집지역에서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7.1%, 분산지역은 9.1%로 나타났다(<표 III-25>). 광역시의 경우 노래방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2.9%였고,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1.4%로 집계되었다. 중소도시 노래방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2.7%이고, 분산지역은 21.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을 보면, 노래방 밀집지역의 그 비율은 5.6%, 분산지역은 14.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조사 결과 광역시 및 중소도시 지역의 알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III-25&gt; 지역별 노래방 업소의 성매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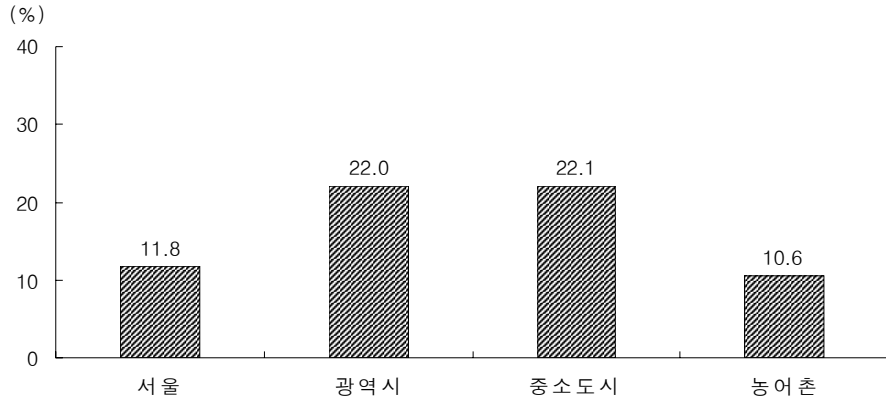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울	2,248	4,354	6,602	41	66	107	0.171	0.091
광역시	4,177	6,980	11,157	70	112	182	0.229	0.214
중소도시	5,503	10,338	15,841	75	183	258	0.227	0.219
농어촌	1,051	1,429	2,480	18	21	39	0.056	0.143

<표 III-26>은 지역별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율과 알선업체 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노래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의 추정치는 11.8%이며, 95%의 신뢰구간은 5.7%에서 18.0%이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노래방 업소의 추정치는 780개 업소이고,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373개에서 1,186개이다.

광역시의 노래방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서울보다 높은 22.0%로 나타났으며,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2,450개 업소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노래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22.1%, 알선업체의 추정치는 3,507개 업소이다. 농어촌의 경우,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10.6%로 집계되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노래방의 추정치는 26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중소도시 및 광역시 지역이 서울이나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III-26&gt; 지역별 노래방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 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서울	0.118	0.057	0.180	6,602	780	373	1,186
광역시	0.220	0.159	0.281	11,157	2,450	1,771	3,130
중소도시	0.221	0.170	0.273	15,841	3,507	2,690	4,324
농어촌	0.106	0.003	0.209	2,480	263	7	518



<그림 III-5> 노래방의 성매매 알선 비율

인구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노래방의 분포를 보면, 광역시가 19.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16.8개), 서울(8.0개)의 순서이며, 농어촌 지역이 6.6개로 나타나 성매매 알선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27>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노래방의 분포

지 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780	8.0
광역시	12,383	2,450	19.8
중소도시	20,891	3,507	16.8
농어촌	4,005	263	6.6

### 바. 이용업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이용업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0.0%, 분산지역은 10.2%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이용업 밀집지역의 비율은 16.7%이며, 분산지역은 6.5%였다. 중소도시 이용업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0.9%였고,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0%, 분산지역은 3.0%였다. 중소도시

밀집지역 및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28>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실태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울	282	3,575	3,857	20	49	69	0.100	0.102
광역시	430	5,571	6,001	30	77	107	0.167	0.065
중소도시	833	8,258	9,091	43	115	158	0.209	0.191
농어촌	734	2,149	2,883	15	33	48	0.010	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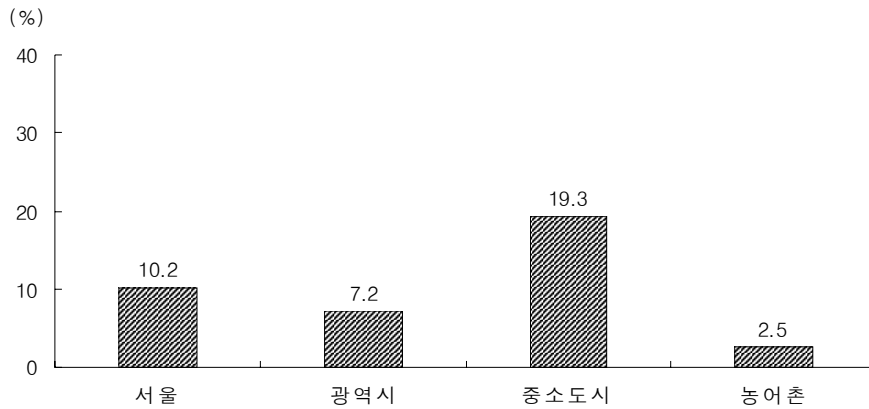
<표 III-28>은 표본조사의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을 토대로 모집단의 성매매 알선 비율과 성적 서비스 제공업체 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이용업 성매매 알선 비율 추정치는 10.2%이며, 95% 신뢰구간은 2.0%에서 18.3%이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업의 추정치는 393개 업소이며, 95% 신뢰구간은 79개에서 707개이다.

광역시의 경우, 이용업 성매매 알선 비율은 7.2%,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업의 추정치는 433개 업소이다. 중소도시의 이용업 성매매 알선 비율은 19.3%,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업의 추정치는 1,754개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경우를 보면,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5%이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업의 추정치는 72개 업소이다.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 광역시의 순이며, 농어촌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을 인구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이용업 숫자로 산출해 보면, 서울이 4.0개, 광역시가 3.5개, 중소도시 8.4개, 농어촌이 1.8개로 추정된다.

<표 III-29>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하위	상위			하위	상위
서울	0.102	0.020	0.183	3,857	393	79	707
광역시	0.072	0.019	0.125	6,001	434	116	751
중소도시	0.193	0.126	0.260	9,091	1,754	1,144	2,364
농어촌	0.025	0.000	0.071	2,883	72	0	206



<그림 III-6>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표 III-30>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이용업의 분포

지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393	4.0
광역시	12,383	433	3.5
중소도시	20,891	1,754	8.4
농어촌	4,005	72	1.8

## 사. 마사지업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업소와 같은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마사지 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70.4%, 마사지 업소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6.7%로 조사되었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를 보면 마사지 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4.4%였다. 중소도시 마사지 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4.1%로 나타났으며, 마사지 업소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7.1%였다. 농어촌 마사지 업소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모두 33.3%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의 밀집지역은 60% 이상으로 성매매 알선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지역별 마사지업의 성매매 실태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울	505	443	948	27	12	39	0.704	0.667
광역시	455	292	747	24	9	33	0.667	0.444
중소도시	893	363	1,256	39	14	53	0.641	0.571
농어촌	50	-	50	3	-	3	0.333	0.333

표본조사결과 나타난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을 토대로 지역별 마사지 업소 모집단의 성매매 알선 비율과 성적 서비스 제공업체 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III-32>에 제시되었다.

서울 지역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8.6%였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업소의 추정치는 651개 업소이다. 농어촌 지역의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비율은 33.3%,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업소 추정치는 17개이다.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광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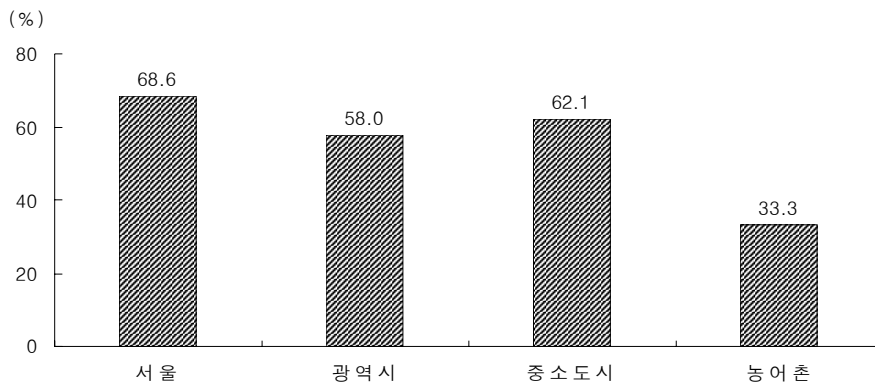


시 지역 등이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업소의 분포를 보면, 서울이 6.7개, 중소도시가 3.7개, 광역시가 3.5개, 농어촌 지역이 0.4개로 집계되었다.

<표 III-32> 지역별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 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하위	상위			하위	상위
서울	0.686	0.521	0.852	948	651	494	808
광역시	0.580	0.394	0.766	747	433	294	572
중소도시	0.621	0.484	0.758	1,256	780	608	952
농어촌	0.333	0.000	1.000	50	17	0	50



<그림 III-7>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표 III-33>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의 분포

지 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651	6.7
광역시	12,383	433	3.5
중소도시	20,891	780	3.7
농어촌	4,005	17	0.4

### 아.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2007년 처음 조사된 피부 관리실과 같은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은 소위 ‘자유업’ 등으로 분류되는 업종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서울의 경우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50.0%, 분산지역은 12.5%로 조사되었다. 광역시의 경우,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47.8%, 분산지역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4.3%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밀집지역은 26.5%, 분산지역은 13.8%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밀집지역, 분산지역 모두 25.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밀집지역의 알선 비율이 분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지역별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성매매실태

지 역	모집단 수(개)			표본 수(개)			성매매 알선 비율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합	밀집지역	분산지역
서 울	287	385	672	22	24	46	0.500	0.125
광 역 시	281	241	522	23	14	37	0.478	0.143
중소도시	460	515	975	34	29	63	0.265	0.138
농 어 촌	36	36	72	2	2	4	0.250	0.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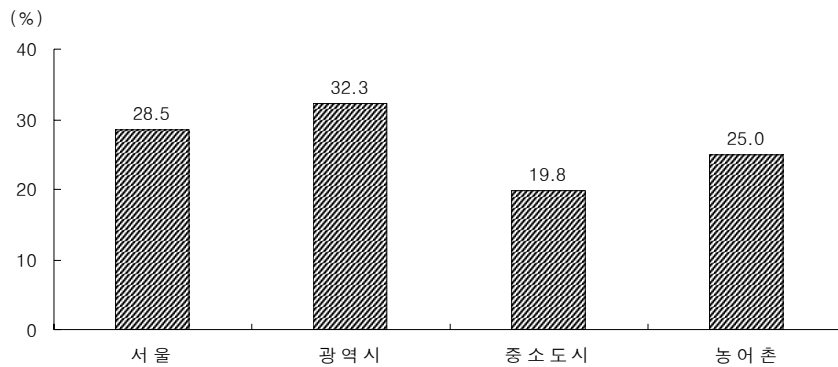
지역별로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 규모를 추정하면, 서울의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소 성매매 알선 비율은 28.5%로 집계되었다. 이 비율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16.2%에서 40.8%이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 추정치는 192개 업소이며,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09개 업소에서 274개 업소이다. 광역시의 경우,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32.3%,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는 169개로 집계되었다.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19.8%였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의 추정치는 193개 업소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25.0%,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 추정치는 18개이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소 성매매 알선 비율은 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분포를 보면, 서울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가 1.4개, 중소도시가 0.9개, 농어촌 지역이 0.4개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35> 지역별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지역	추정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서울	0.285	0.162	0.408	672	192	109	274
광역시	0.323	0.176	0.471	522	169	92	246
중소도시	0.198	0.098	0.298	975	193	95	290
농어촌	0.250	0.000	1.000	72	18	0	72



<그림 III-8>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표 III-36>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분포

지역	인구수(천명)	성매매 업소수(개)	10만 명당 업소수(개)
서울	9,763	192	2.0
광역시	12,383	169	1.4
중소도시	20,891	193	0.9
농어촌	4,005	18	0.4

### 자. 성산업 업종별 성매매 실태

<표 III-37>는 지역별·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을 요약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6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지역의 마사지업, 중소도시 지역의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간이주점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20% 가까운 알선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단위 : %)

지 역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서울	52.0	53.4	2.1	-	11.8	10.2	68.6	28.5
광역시	51.0	54.4	1.7	-	22.0	7.2	58.0	32.3
중소도시	61.3	58.3	3.3	22.5	22.1	19.3	62.1	19.8
농어촌	52.4	56.2	5.8	42.6	10.6	2.5	33.3	25.0

<표 III-38>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관련업소 분포

(단위 : 개)

지 역	일반유흥 주점	무도유흥 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서울	3,817	465	376	-	780	393	651	192
광역시	5,579	623	418	-	2,450	434	433	169
중소도시	11,643	1,382	1,231	2,513	3,507	1,754	780	193
농어촌	1,692	603	286	2,072	263	72	17	18

다음으로 각 지역별·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결과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의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 <표 III-39>와 같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56.2%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성매매 알선 비율은 56.3%로 추정되었고, 간이주점은 2.7%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다방의 경우, 28.6%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노래방 19.4%, 이용업 12.2%이며, 안마시술소와 같은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62.7%,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25.5%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성매매 알선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마사지업이며, 그 다음으로 무도유흥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중소도시, 농어촌) 다방,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토대로 해서 전국의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일반유흥주점 업소가 22,731개, 무도유흥주점 업소가 3,074개, 간이주점 업소가 2,310개, 다방이나 찻집이 4,585개, 노래방이 7,000개, 이용업 2,653개, 마사지 업소가 1,880개,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이 571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를 모두 더하면 44,804개가 된다.

<표 III-39> 업종 유형별 규모 추정

지 역	추정 비율	추정비율 신뢰구간 (95%)		모수 (개)	추정치 (개)	추정치 신뢰구간 (95%)	
일반유흥주점	0.562	0.523	0.600	40,482	22,731	21,164	24,298
무도유흥주점	0.563	0.489	0.637	5,460	3,074	2,669	3,478
간이주점	0.027	0.017	0.037	84,564	2,310	1,466	3,154
다방	0.286	0.232	0.339	16,056	4,585	3,727	5,444
노래방	0.194	0.162	0.226	36,080	7,000	5,840	8,159
이용업	0.122	0.087	0.156	21,832	2,653	1,893	3,413
마사지업	0.627	0.537	0.716	3,001	1,880	1,613	2,148
기타미용	0.255	0.188	0.322	2,241	571	420	722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별 사업체수를 10만 명당 인구수로 환산하면, 일반유흥주점 업소는 48.3개소, 노래방이 14.9개소, 다방이 9.7개소, 무도유

홍주점이 6.5개소, 이용업 5.6개소, 간이주점 4.9개소, 마사지업 4.0개소,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이 1.2개소로 나타났다(<표 III-40>, <표 III-41>).

<표 III-40> 업종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업체의 분포

(단위 : 개)

업종	성매매 업소수	10만 명당 업소수
일반유흥주점	22,731	48.3
무도유흥주점	3,074	6.5
간이주점	2,310	4.9
다방	4,585	9.7
노래방	7,000	14.9
이용업	2,653	5.6
마사지업	1,880	4.0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571	1.2

<표 III-41>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성매매 알선업소 분포

(단위 : 개)

지역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업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서울	39.1	4.8	3.8	-	8.0	4.0	6.7	2.0
광역시	45.1	5.0	3.4	-	19.8	3.5	3.5	1.4
중소도시	55.7	6.6	5.9	12.0	16.8	8.4	3.7	0.9
농어촌	42.2	15.1	7.1	51.7	6.6	1.8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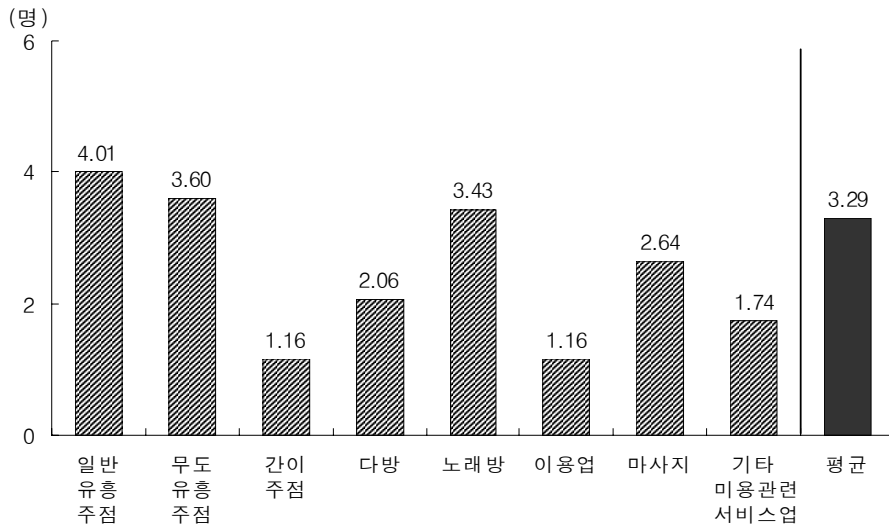
#### 4. 성매매여성 규모

다음으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성매매여성의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성매매여성'이란 전업형 혹은 겸업형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 성을 파는 자를 말하며, 해당 업소에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부를 수 있는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표 III-42> 업종별 성매매여성 수의 평균값 추정

(단위 : 개, 명)

업종	모수(Nh)	표본(nh)	표본평균 ( $\bar{y}_h$ )	표준편차 ( $\sqrt{S_h^2}$ )	모평균 추정치	모평균 신뢰구간(95%)	
일반유흥주점	22,731	377	4.03	3.56	4.01	3.63	4.39
무도유흥주점	3,074	99	3.62	3.19	3.60	2.98	4.23
간이주점	2,310	32	1.13	0.42	1.16	0.96	1.35
다방	4,585	90	2.04	1.36	2.06	1.76	2.37
노래방	7,000	114	3.41	2.14	3.43	3.04	3.82
이용업	2,653	49	1.27	0.60	1.16	1.05	1.27
마사지	1,880	81	2.69	2.49	2.64	2.20	3.08
기타미용	571	41	1.76	1.51	1.74	1.30	2.18
합	44,804	883	3.22	2.99	3.29	3.08	3.50



<그림 III-9> 업종별 평균 성매매여성 수

<표 III-42>에는 업종별 성매매여성 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업종별로 평균 성매매여성 수를 살펴보면, 일반유흥주점 업소가 4.01명, 무도유흥주점 업소가 3.60명, 간이주점이 1.16명, 다방/찾집이 2.06명, 노래방이 3.43명, 이용업이 1.16명, 마사지 업소가 2.64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이 1.74명으로 나타났다.

다. 평균 성매매여성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무도유흥주점업, 노래방의 순이었다. 각 업종별 성매매여성 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해서 8개 업종 전체에 대한 성매매여성 수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3.29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업종별 성매매여성 수와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 규모를 이용해 전체 성매매여성 수의 추정치를 구하면 147,392명으로 계산된다. 요약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소,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 147,000여 명의 여성이 고용되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은 137,000여 명에서 156,000여 명이다(<표 III-43>).

이러한 추정 모수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유흥주점 업소에 근무하는 성매매여성 수는 91,000여명, 무도유흥주점 업소에 근무하는 성매매여성 수는 11,000여명, 간이주점에는 약 2,700명, 다방 9,400여명, 노래방에 24,000여명, 이용업 약 3,100명, 그리고 마사지업에 약 5,000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에 약 1,000명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1)</sup>

<표 III-43> 성매매여성 규모추정

(단위 : 명)

업종	모집단(개)	모평균	모합	모합 신뢰구간(95%)	
일반유흥	22,731	4.01	91,116	82,426	99,807
무도유흥	3,074	3.60	11,071	9,144	12,999
간이주점	2,310	1.16	2,678	2,227	3,130
다방	4,585	2.06	9,463	8,051	10,876
노래방	7,000	3.43	24,025	21,277	26,773
이용업	2,653	1.16	3,079	2,784	3,373
마사지	1,880	2.64	4,965	4,139	5,791
기타미용	571	1.74	993	741	1,246
합	44,804	3.29	147,392	137,946	156,837

31) 이 수치는 겸업형 8개 업종 전체 여성직접원 규모인 224,468명과는 다른 의미이며, 그 중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에 의해 추정된 성매매 알선 사업체에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 추정치이다.



한편 통계청에서 집계한 2007년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여성인구 수는 약 760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실적으로 업소를 매개로 해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20~30대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8개 업종에 분포해 있는 성매매여성 수는 전체 20~30대 여성의 약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20~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평균 약 4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32)</sup> 이에 비추어 봤을 때, 20~30대의 100명중 약 3명은 현재 8개 성매매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44> 20-30대 여성 인구수 및 경제활동 인구수

(단위 : 천명)

연 령	인구수	여성 취업자 수			
		8월	9월	10월	평균
20-29세	3,559	2,075	2,073	2,102	2,083
30-39세	4,083	2,181	2,238	2,238	2,219
합	7,642	4,256	4,311	4,340	4,302

\*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 2007년 8월-10월 고용동향

\* 주 : 여성취업자 수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뜻한다.

## 5.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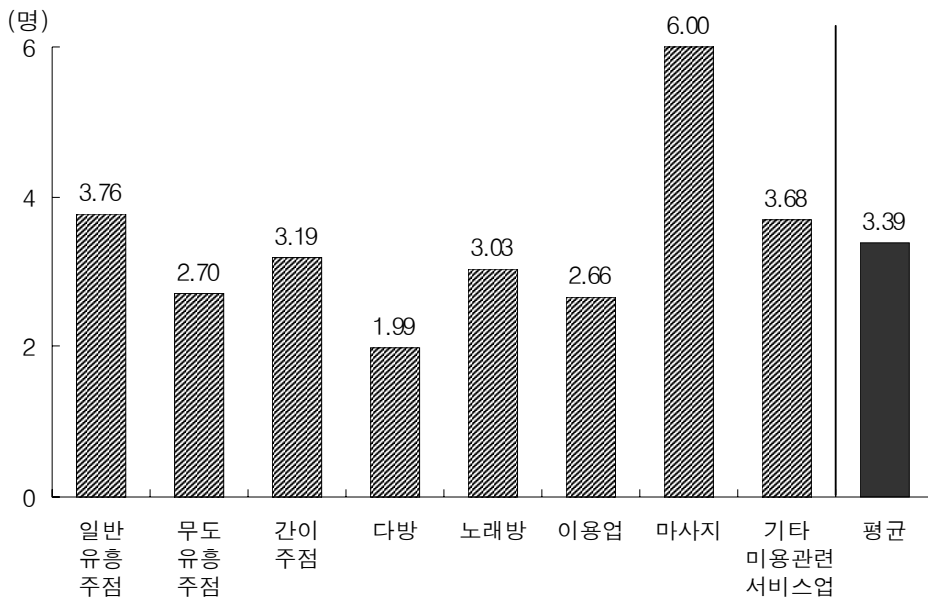
성적 서비스 구매자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업종 유형별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일반유흥주점 업소는 3.76명, 무도유흥주점 업소는 2.70명, 간이주점은 3.19명, 다방 1.99명, 노래방 3.03명, 이용업 2.66명, 그리고 마사지 업소가 6.00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68명으로 집계되었다(<표 III-45>). 1일 평균 성구매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마사지업이며, 그 다음으로 일반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8개 업종 전체의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3.39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3.28명에서 3.49명이다.

32) 본 조사가 8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에서 10월까지의 여성 취업자수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33) 성적 서비스 구매자는 겸업형 8개 업종별 각 분포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대표값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표 III-45> 업종별 유형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의 추정 (단위 : 개, 명)

업종	모집단 (성매매 알선업체)	표본	업종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표준편차	모평균 추정치	모평균 신뢰구간(95%)	
일반유흥주점	22,731	377	3.81	1.57	3.76	3.60	3.92
무도유흥주점	3,074	99	2.70	0.70	2.70	2.57	2.84
간이주점	2,310	32	3.30	1.20	3.19	2.65	3.73
다방	4,585	90	1.99	0.05	1.99	1.98	2.01
노래방	7,000	114	3.04	1.12	3.03	2.83	3.22
이용업	2,653	49	2.32	2.75	2.66	1.73	3.59
마사지	1,880	81	6.00	1.81	6.00	5.58	6.41
기타미용	571	41	3.68	2.70	3.68	2.74	4.61
합	44,804	883	3.37	1.71	3.39	3.28	3.49



<그림 III-10> 업종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이러한 평균값을 8개 업종의 성매매 알선업체의 추정치(44,804개)에 곱하면, 151,803명이 된다(<표 III-46>). 즉 우리사회에서 하루에 ‘전업형’을 제외한 소위 ‘겸업형’ 성매매 업소로부터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사람이 150,000여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은 146,000여명에서 156,000여명이다. 한편 통계청 추계인구수에 따르면 2007년의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인구는 약 2,434만으로 추산된다. 앞에서 추정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20세에서 64세 남성 인구의 약 0.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20세 이상 64세 이하 남성의 1,000명 중 6명은 매일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sup>34)</sup>

<표 III-46> 1일 성구매자 수의 규모 추정

(단위 : 개, 명)

업종	모집단(성매매 알선업체)	1일 평균 성구매자수	모함(1일 성구매자수)	모함 신뢰구간(95%)	
일반유흥	22,731	3.76	85,367	81,742	88,992
무도유흥	3,074	2.70	8,314	7,900	8,728
간이주점	2,310	3.19	7,375	6,128	8,621
다방	4,585	1.99	9,139	9,074	9,203
노래방	7,000	3.03	21,194	19,816	22,572
이용업	2,653	2.66	7,032	4,571	9,494
마사지	1,880	6.00	11,282	10,499	12,065
기타미용	571	3.68	2,100	1,565	2,634
합	44,804	3.39	151,803	146,995	156,612

34) 참고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성문화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자료(여성가족부, 2007)에 의하면 10명중 4명은 성매매방지법 시행후 성구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애 1회 이상 성매매경험자 중 42.4%는 최근 3년간 성매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성구매 횟수의 감소가 그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82.9%로 최근 1년간 성구매 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이후 성구매 횟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 6.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다음으로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구매비용을 보면 일반유흥주점은 166,286원, 무도유흥주점은 193,712원, 간이주점은 150,000원, 티켓다방은 100,000원, 노래방 162,786원, 이용업 75,659원, 마사지 업소는 113,524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95,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서비스 비용은 약 151,52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50,730원에서 152,310원이다.

<표 III-47> 업소 유형별 성적 서비스의 평균 구매비용 추정  
(단위 : 개, 원)

업종	모집단 (성매매 알선업체)	표본	평균 성적 서비스 비용	표준편차	모평균 추정치	95% 신뢰구간	
일반유흥주점	22,731	377	168,369	25,820	166,286	164,726	167,846
무도유흥주점	3,074	99	193,485	6,246	193,712	193,712	193,712
간이주점	2,310	32	150,000	0	150,000	150,000	150,000
다방	4,585	90	100,000	0	100,000	100,000	100,000
노래방	7,000	114	161,316	16,908	162,786	162,786	162,786
이용업	2,653	49	76,837	3,912	75,659	75,659	75,659
마사지업	1,880	81	116,235	21,236	113,524	112,979	114,069
기타미용	571	41	95,000	0	95,000	95,000	95,000
합계	44,804	883	149,371	39,209	151,520	150,730	152,310

### 제3절 인터넷 성매매 실태

#### 1.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인터넷 성매매 단속 현황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지의 확산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일부 성매매는 줄어드는 반면에 인터넷 등의 다른 매체를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는 각 지자체에 의해 폐쇄되거나 단속이 강화되어 감소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집중단속 및 심의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8>. 이러한 통계 지표는 과거 성매매를 알선하고 매개하던 보도방이나 직업소개소 등의 역할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퍼져가는 인터넷성매매의 추정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는 인터넷성매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정부의 각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인터넷성매매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로 가장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통계를 들 수 있다<표 III-48>. 최근 경찰은 2006년 5월 「인터넷 성매매 전담반」을 보강 편성하여 기존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성매매 알선 카페, 채팅사이트, 성매매 정보업소 공유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 강화하였으며, 인터넷(청소년)성매매 단속을 위해 방학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테마단속 주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경찰청, 2007).

<표 III-48>에 의하면 경찰은 2005년부터 인터넷성매매를 집중 단속하여 2005년 1~2월 734명을 입건하였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0월에는 10,300명을 입건한 바 있다.

<표 III-48>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단속 추진실적

'05년 1~2월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집중단속(734명 입건)
'05년 7~10월	청소년(인터넷)·장애인·도서지역 등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10,300명 입건)
'05년 12~2006년 2월	동계방학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단속(2,405명 입건)
'06년 8월	하계방학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1,796명 입건)
'06년 12월~2007년 2월	동계방학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4,734명 입건)
'07년 7월 16일~8월 24일	하계방학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8,240명 입건)

\* 출처: 경찰청, 2007.

다음 <표 III-49>는 2007년도 하계 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의 일부 내용을 분석한 자료로 업소 유형별로 분류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230건 중에서 198건(86.1%), 925명 중 853명(92.2%)을 차지하는 등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성매매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9> '07년 하계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분석결과

계	인터넷	유흥·단란주점	티켓다방	숙박업소	기타
230건	198(86.1%)	0	20(8.7%)	3(1.3%)	9(3.9%)
925명	853(92.2%)	0	47(5.1%)	11(1.2%)	14(1.5%)

\* 출처: 경찰청, 2007.

인터넷성매매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로 다음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식 자료이다<표 III-5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법 혹은 청소년 유해정보에 관한 심의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실적은 1995년도부터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심의 강화 역할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0>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1995~2007. 10)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심의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시정요구	598	2,137	6,346	12,682	19,729	15,440	21,502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0	합계
심의	32,221	79,134	69,292	119,184	156,734	187,194	760,864
시정요구	11,033	18,031	34,035	42,643	44,289	98,345	326,810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중, 불법성·음란성·폭력성·시행성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른 심의·의견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 출처: www.kiscom.or.kr, 2007.11.

그 중에서도 화상채팅, 애인대행, 유흥업소사이트 등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실적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III-51>과 같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2004년 495건에서 2007년 10,383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시정요구 건수도 2004년도 건수에 비하여 약 29배가 증가하여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III-5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성매매유도 인터넷정보 심의실적

구분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2004	495	187	44
2005	1,087	118	63
2006	2,887	271	23
2007.10월	10,383	5,462	35
총계	14,852	6,038	165

\* 출처: 다시함께센터, 2007; 재인용.

## 2. 인터넷 성매매 유형

본 연구에서 인터넷 성매매의 유형 분류는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다시함께센터(2007) 등의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행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모니터링은 매해 상·하반기에 걸쳐 채팅, 커뮤니티, 모바일, 게임의 4개 분야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채팅과 커뮤니티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성매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가. 채팅포털 사이트

채팅포털 사이트 내 (화상)채팅, 1:1쪽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채팅포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와 관련된 유형은 음란대화, 폰(캠)섹스, 키스알바(조건만남), 애인대행 등이 있었다.

주로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고가는 형식의 음란대화가 지속되다가 휴대폰이나 웹캠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몸을 보여주거나 성적 행위의 묘사 등을 요구하고, 여기서 발전하여 직접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키스알바(조건만남), 기타만남 등으로 이어지는 행태를 나타냈다. 보통 음란대화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적인 단어 등에 대하여 금칙어 표시가 나타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금칙어 표시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며, 한 글자씩 치고 엔터를 누르는 등 인터넷 성매매의 범주가 대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일반 포털사이트

일반 포털사이트는 각종 성인음란사이트와의 연결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성구매와 성판매를 원하는 각각의 사람이 연결되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 연결 고리로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장인 것이다. 또한 일반 포털사이트를 통한 성인음란사이트로의 연결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성매매의 확산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



로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은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반 포털사이트도 자구책으로 “유홍업소”, “룸살롱”, “호스트바”,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호빠”, “안마시술소” 등의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성인음란사이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매개체 역할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관리자들은 금칙어 설정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검색 단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들로는 성인전용 사이트, 유홍업소 사이트, 유홍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등의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 내 개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성인음란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작화면이나 기사검색 배너를 통해 성인채팅사이트나 비노기과를 광고하는 등 해당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 누구나 음란성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유홍업소 사이트 및 유홍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최근 유홍업소도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유홍업소 사이트는 업소 시설, 종사자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업소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위 ‘밤문화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유홍업소의 후기, 가격 등을 공유하고 업소 홍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홍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는 룸살롱, 안마시술소, 나이트, 호스트바, 집결지 등의 각종 유홍업소 구인구직을 위한 사이트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는 “유홍업소”라는 단어 검색하게 되면 대부분은 금칙어 설정으로 검색 자체가 안되지만, 검색 자체는 허용되지만 불건전 사이트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 검색이 허용되지만 검색 사이트를 접속하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검색 가능하여 많은 성인 음란사이트가 검색 연결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홍업소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이 있는 반면 유홍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는 대부분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작화면에 선정적 사진

이 많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20세 이상’으로 제한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보여진다. “나이 제한도 없고, 자격조건도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곳”, “학생도 가능” 등의 광고가 되어 있고, 커피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어 클릭했더니 다방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도 하다.

다시함께센터 인터넷성매매감시단(2007)에 의하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회원간 정보공유를 명목으로 선불금사기(일명 탕치기)라 하여 업소 여성들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수법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공연히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으나 사이트는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이와 같은 행위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역할대행(애인대행) 사이트

역할대행 사이트는 최근 2-3년 전부터 등장하여 결혼식 하객이나 부모, 친구 등 특정역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행인을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다시함께센터 인터넷성매매감시단(2007)은 역할대행 사이트는 인터넷성매매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처음 순수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애인대행, 스폰, 동거, 묻지마 연애” 등을 알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역할대행 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성인을 비롯하여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사이트 초기화면에는 성별, 지역, 아이디, 목적 등이 포함된 애인대행인 및 의뢰인 목록을 선정적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목록의 제목을 클릭하면 애인대행, 여행동행, 스폰구함 등의 목적, 지역, 성별, 나이, 신체사이즈, 급여수준, 연락방법, 본인사진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대행인 또는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연락처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추가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마. 성인(채팅)사이트

성인(채팅)사이트는 회원제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 초기화면에는 선정적 사진과 동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는 초기화면에 대부분 성인증이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이겠다. 특히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의 경

우, 여성회원들의 선정적 이미지 또는 닉네임이 제공되고, 클릭 후 화상채팅 메신저 다운로드되어 이후 휴대폰, 카드, ARS결제를 통한 포인트 충전과 채팅을 지속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회원들은 남성회원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 닉네임을 사용하고 상대방과의 채팅시간 및 일대일 독점여부에 따라 이용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슴, 성기 노출 등 보다 선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 3.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성매매의 단속 및 검거 건수, 그리고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소극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경찰수사의 대응방법이 침단화되고 있지만 단속의 주체는 일선 경찰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다른 업무들이 산재하여 상시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테마 단속의 형식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다시함께센터, 2007). 게다가 인터넷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역시 미흡하다. 인터넷 성매매 및 개인정보침해 등의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등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단속 및 처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관련 법규의 검토 및 개정,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접근제한어(예를 들어 조건만남 등)를 정하여 '청소년 접근 제한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한어 자체만으로도 정보보호등법상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사이트에 폐쇄에 대한 관련 규정에 있어서 인터넷성매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거부, 정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관계자의 인식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와 더불어 요건사실의 입증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알선 권유유인,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위 사이트의 폐

쇄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사이트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운영진에 대한 대한민국국적여부, 국외서버를 둔 곳의 범죄성립여부 등 국제공조에 의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다시함께센터, 2007).

##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 1.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 가.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경로 및 실태

##### 1)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경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의 미국 유입 경로와 실태는 현지 수사당국이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워 경찰, 관련 NGO단체,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들과 관련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미국은 외국인의 입국이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언어적 환경이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미국 유입은 알선업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경찰은 2007년 초 미국 성매매 알선 이민 브로커 조직을 적발하였는데 이들은 1,000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7).

미국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여성 유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미국 내 한인 교민사회 유흥업소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관심이 큰 마사지업소(Massage Parlors)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한국여성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과 결혼한 후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한 후 다시 성매매 업계로 복귀하는 것도 미국내 한국여성 성매매 규모와 관련 있다. 이들 여성의 이혼율은 80% 수준에 달한다(Moon, 1997).

북미대륙의 동북부인 밴쿠버와 시애틀은 아시아 지역 외국인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밀입국 라인인데, 최근 체포되는 한국인 밀입국자는 가이드와 운전사 외에는 전부 20-3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밀입국 여성들은 브로커에게 5,00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여성들은 이것을 성매매 수입으로 갚아야 한다. 성매매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성은 인터넷, 광고, 브로커의 말을 듣고 온다(변화순, 2007a).



<그림 III-11> 미국 성매매 경로

<그림 III-11>에 의하면 여성들은 인터넷에 고소득을 보장하는 취업, 유흥업소 취업 광고에 유인되어 미국행을 결정한다. 알선자들은 범죄경험이 있는 소규모 조직 구성원으로 위조서류나 캐나다·멕시코 밀입국으로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온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3만~5만 달러의 빚을 진다. 성매매 알선조직과 업주는 미국 전역에 연계망을 형성하고 미국 전역의 업소로 여성을 이동시킨다. 여성들은 미국에서 업주에게 여권 등을 압수당하고 성매매를 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추방되고 인신매매 피해자는 미국정부의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알선책이 인터넷을 통해 고소득과 자유로운 생활보장을 선전하며 월 2,000-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여 이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을 끌어들이고 있다. 입국방법은 서류 위조를 통하거나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시키거나 현지 브로커가 운영하는 위장회사를 통해 위조 영주권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모집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들은 캐나다 및 멕시코 현지 밀입국 담당자에게 인계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자동차 화물칸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도보로 국경을 넘는다.<sup>35)</sup>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알선자로 적발된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의 조직범죄 집단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집단으로 알선하는 사람이다. 인신매매에는 이민사기, 신분증 위조, 사문서 위조, 돈세탁 등의 다른 유형의 범죄가 관여되어 있다(변화순, 2007a).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경로를 잘 보여주는 자료는 주로 해당 여성들이 관련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미국 현지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언급된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검거된 한국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황금새장 작전

2006년 2월 16일 이민, 돈세탁,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두 명의 여성이 기소되었다.<sup>36)</sup> 이들의 이름은 방○○(Bang, 56)과 임○○(Yim, 45)이다. 이들의 국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송출된 성매매 여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의 ‘○○ 오리엔탈 마사지’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방씨는 이전에 양○○(Yang, 37)이라는 사람과 공동 피의자로 기소된 경험이 있다. 양씨는 대규모 성매매 조직의 주요인물로 생각된다. 양씨는 인신매매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최대 중신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2005년 6월 연방 요원들은 샌

35) 변화순. 2007. “해외성매매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 연구는 해외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07년 3월 미국을 현지 방문했던 「한인여성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 마련 국회대표단 결과 보고(미간행)」에 근거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36) <http://abclocal.go.com/kgo/story?section=local&id=3940021>

프란시스코와 인근지역에서 10개의 성매매 의심 업소와 마사지업소를 급습하여 100명의 한국여성을 업소에서 데리고 나왔다. 같은 해 7월 1일 연방검사는 위의 검거와 관련하여 29명을 기소하였다. 위의 기소는 방씨와 임씨가 외국인 여성을 ‘○○ 오리엔탈 마사지’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방씨는 브로커를 고용하여 여성을 조달하고 인신매매에 소요된 비용을 여성들이 갚게 하기 위해 ‘○○ 오리엔탈 마사지’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방씨와 임씨는 한국에서 온 여성을 ‘숙회’ 옆에 위치한 아파트에 기거하게 하였다. 두 여성은 여성들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여권을 압수하였다. 위 검거는 미국 FBI, 이민국, 샌프란시스코 경찰, 국세청, 국무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연방차원에서 전개하는 ‘황금새장(Gilded Cage)’ 작전의 일부로 임씨와 양씨는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최근 기소된 피의자이다. 방씨와 임씨를 기소한 측은 벌금외에 5년-20년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11명의 성매매업소 주인과 27명의 다른 피의자와 함께 104명의 한국여성은 이민 관세집행부(Immigration, Customs, and Enforcement, ICE)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기광고에 속아서, 일부 소수는 물리적 강요에 의해서 미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했다.<sup>37)</sup>

#### 나) 로스엔젤레스에서 진행된 황금새장 작전

2005년 7월 성매매업소로 생각되는 곳에서 일하는 50명의 여성이 구금되었다.<sup>38)</sup> 이들 업소는 마사지업소, 스파(Spas), 카이로프랙틱 클리닉(Chiropractic Clinics)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미국에 입되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 이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미국에 밀입국하는데 들었던 비용 미화 16,000달러를 갚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23명이 공모자로 기소되었다. 조직의 보스로

37) San Francisco Chronicle. July 3, 2005.

38) <http://www.knbc.com/print/4677140/detail.html>

다음은 한국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발견된 사례에 대한 미국 NBC방송 뉴스 보도에서 얻은 내용이다.



생각되는 정○○(Jung)은 구금 중이지만 5명의 피의자중 1명인 김○○(Kim)은 아직 신병확보를 못했다. 조직은 택시운전사를 통해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택시운전사들은 여성들을 텍사스, 콜로라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이동시켜 이들이 성매매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택시운전사를 이용한 것을 볼 때 조직이 정교하고 조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담당 검사는 전했다. 200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사범죄로 검거된 29명의 경우를 볼 때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두 개의 조직이 필요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담당검사는 추측한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 중 일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협력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추방된다. 담당검사는 여성들이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넘어오거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 같다고 전한다.

#### 다) 달라스에서 체포된 한국 성매매 여성

미국 연방 요원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인 성매매업소를 급습하여 수십명의 한국인 알선자 및 성매매 여성을 체포하였다.<sup>39)</sup> 구금된 사람들 중 42명이 한국인 성매매여성이다. 체포된 42명의 성매매 여성 중 일부는 미국에 오기 전 서울에서 성매매에 종사했고 미국에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반면 나머지 여성들은 자신들이 레스토랑이나 바(Bars)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마사지업소에 보내졌다고 했다. 대부분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광고, 신문광고, 소개자의 말에 넘어가 미국에 왔다고 했다. 이들 이 본 광고에서는 미국 '괌(Guam)에서 일하면 한 달에 5천달러'<sup>40)</sup> 'LA에서 일하면 월 7천2백달러와 정부 직업학교 입학'을 약속하고 있었다. 이들은 광고가 제공하는 환상에 빠져 미국행을 결심한 것이다.

39) Dallas Morning News, May 8, 2006

40) 미국 달러를 의미한다.

## 2)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실태

미국무부가 발간한 2005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1,500~2,200명의 사람이 매년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인신매매되어 들어온다.<sup>41)</sup> 이들 전부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캐나다 서부지역의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상당수의 한국여성들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어 들어오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덴버 포스트(Denver Post)에 따르면 상당수의 한국여성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수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밴쿠버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의 수보다 25%가 적다. 2000년 이후 수 백명의 한국 여성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국의 여성이 선진국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인 한국의 여성들이 미국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특이하게 보고 있다. 한국 주둔 미군병사와 결혼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인 신부는 1980년대 연 3,500명 정도로 미국에 입국하여 총 25,000명 수준에 달한다.<sup>42)</sup> 이들의 80%는 이혼으로 결혼을 마감한다. 영어도 잘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들 여성은 이혼후 성매매로 돌아오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미국 입국 전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 과거에는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들어온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정부단속에 적발된 여성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 주요 통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단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내에 1,000개가 넘는 한인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인데 5,000여명의 한국인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일보 2007년 3월 14일). 미국내 합법적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는 곳 중 90% 이상이 한인 업소 소유라는 자료가 공개되었다(한국일보 2007년 3월 14일). 2004년 이후 성매매 의심 여성의 유입규모가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LA 한인타운 내에는 마사지업소, 러브호텔 등 한국식 성매매업소가 있다. 2006년 5월 LA지역

41) U.S. Department of State. 200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42) Katherine H. S. Moon.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43) 2007년 미국 현지 방문시 LA 경찰국을 통해서 얻는 내용이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7).

한인타운내 성매매여성은 전일제 성매매여성 300명, 시간제 성매매여성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변화순, 2007a).

샌프란시스코 성매매 관련 업소는 90여개로 추정된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90%는 30-40대였고, 대부분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다. 2004년 이후 젊은 여성이 몰려왔다. 2003년도 마사지업소 단속에서 20-40대가 주 연령층이었으나 2006년 단속에서는 20대가 주를 이루었는데 2004년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성매매여성 연령층이 젊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실시된 이후 마사지업소 고객의 한국인 비율이 증가하여 이전 10%에서 30%로 증가하였다(변화순, 2007a).

인권단체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 Project)에 따르면 워싱턴 D.C. 내 성매매 업소는 총 80여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성매매를 하는 80여개 마사지업소 중 95%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인권단체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 Project)는 200여명의 한국여성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매달 밀입국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LA, 뉴욕, 텍사스, 인디애나, 버몬트 등 미국 전역에 걸쳐 한인 성매매 업소가 산재해 있다고 전한다(우먼타임즈, 2007년 3월 23일).<sup>44)</sup> 과거 30-50대가 주를 이루었던 마사지업소 및 룸살롱 여종업원들의 연령이 최근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7년 3월 20일).

LA, 샌프란시스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성매매 업소가 많고 이곳에 한국인 여성이 많이 있지만 미국 전역의 소규모 도시에도 이들 여성이 산재해 있다. 미국의 언어나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 여성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은 성매매 관련 조직에 의해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소 주인들에 의해 여성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는데 이유는 남성고객에게 새로운 얼굴을 제공하기 위한 업주들의 목적 때문이다(변화순, 2007a).

미국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한국여성 17명 인터뷰에 의하면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수입이 높기 때문이다.<sup>45)</sup> 식당의 월급여는 250만원이지만 방석집은 월1천만원이라고 한다. 마사지업소는 손님당 100-200달러를 받는데 마사지업소의 손

44) 주진기. 2007. 우먼타임즈. 3월 23일.

45) 2007년 미국 워싱턴의 한인 여성단체 면담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7).

님 90%는 외국인이다. 방석집은 상호를 내걸지 않고 영업하는데 손님 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워싱턴 D.C. 지역 80개 업소에 평균 3-4명 일하는 것으로 보면 성매매여성은 24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기보다는 다수가 밀입국자로 들어 왔다(변화순, 2007a). 이민관세집행부(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에 의하면 ‘황금새장’ 작전에 의해서 구금된 104명 한국여성들은 캘리포니아 남부와 북부를 오갔고,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와 콜로라도까지 성매매를 위해 이동되었다<sup>46)</sup>. 여성들은 택시로 이동되었는데 택시운전사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성매매업소 주인과 알선업자 중간의 연락책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밀입국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들 모두는 미화 1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달하는 빚을 안고 있다고 한다.<sup>47)</sup> 업소주인에게 여성을 데려오느라고 밀입국에 소요된 비용이다. 이들은 여성들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여권과 기타 서류를 빼앗는다. 업소주인은 집값, 식사대, 기타 생활비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요구하여 이들을 빚에 얽매이게 한다. 때문에 자의로 온 여성도 빚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 3) 미국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

미국 의회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sup>48)</sup> 이 법에 따라 인신매매자 조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T비자(T-visa)를 제공한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2005년까지 미국 행정당국이 피난처를 제공한 외국인은 25개국 1,300명이다. 2005년 피난처를 제공받은 외국인 총 230명 중 한국인은 54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태국, 페루, 멕시코 순서이다.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사실과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추방당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된다. 한인여성 54명 대부분은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T비자를 발급받은 후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s, 2005).

2005년 6월 ‘황금새장(Gilded Cage)’<sup>49)</sup>이라 불리는 작전에서 10개의 성매매업소

46) <http://www.ice.gov/graphics/newsreleases/articles/0507141osangeles.html>

47) <http://www.ice.gov/graphics/newsreleases/articles/0507141osangeles.html>

48) [http://www.fundforward.org/uswomenwithoutborders/featureed/archives/2005/10/we\\_mobilize\\_to.html](http://www.fundforward.org/uswomenwithoutborders/featureed/archives/2005/10/we_mobilize_to.html)

를 연방요원들이 급습하였을 때 100명 이상의 한국여성들이 발견되었다.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에게는 미국 정부의 보호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이거나 ‘본인의 의지’로 성매매업소로 유입된 경우로 판명된 50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추방 예정된 여성들이 인신매매 범죄로 기소된 업소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나(Hannah, 가명)라는 이름의 한국여성은 2005년도 달라스의 8개 스파(Spas) 검거 중 구금되었다.<sup>50)</sup> 인터넷 광고에서 클럽에서 일하면 한달에 미화로 1만달러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인되어 결국 성매매로 유입되었다. 광고에는 성매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달라스에 도착했을 때 한나는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처음 성매매를 하고 나서 한 달간 울었다. 영어도 모르고 환경도 낯설었다. 한나는 캘리포니아로 한 번 탈출하였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에 돌아가는 방법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달라스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업소주인에게 한 달 동안 구타를 당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지현(가명)이라는 이름의 30세 한국여성은 2001년 미국에 도착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푼(Poon)’이라는 업소에서 일했다.<sup>51)</sup> 그녀는 밀입국자들에게 속았고 자신이 원해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현의 변호사는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에게는 자유나 자기결정권이 없었다고 한다. 지현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자를 수사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은 이민비자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지현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49) ‘황금새장’ 작전은 2005년 6월 LA·샌프란시스코 두 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50) Dallas Morning News May 6, 2006.

51) [http://www.sanfran.com/content\\_areas/home/view\\_printable.php?story\\_id=557](http://www.sanfran.com/content_areas/home/view_printable.php?story_id=557) Bernice Yeung, 2005. The secret life of the Avenues. San Francisco Magazine.

#### 나.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의 목적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일시 체류비자를 소지한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와 관련된 경로 및 실태 파악하는데 있는데, 해당 사안에 인신매매 등 불법적 행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획득이 쉽지 않았다. 호주 관련기관 담당자들은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성매매여성과 접하게 된다. 한국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법자인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호주 현지의 면담 대상자들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였다. 이런 이유로, 호주 현지방문에서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얻는 것이 어려웠는데, 최대 성과는 호주 성매매에 합법적,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한국 국적자 숫자를 얻은 것이다.

호주방문에서의 면담과정은 다음과 같다<sup>52)</sup>. 호주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를 방문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의 경로 파악,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로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호주연방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을 방문하여 한인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 문의하였다. 또한 호주범죄수사국(Australian Crime Commission)을 방문하여 한인 성매매 여성의 호주 유입 경로와 호주 성매매 정책의 효과에 대해 문의하였다. 호주 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대학교 성매매 분야 연구자, 호주 동아일보 사 편집국장을 만나서 호주교민사회 성산업 업소 실태와 교민 사회내 한인 성매매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였다.

호주방문을 통하여 한인여성의 성매매 경로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관련 이슈가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경로와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한국과 상이한 성매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호주에서 외국인이 합법적 체류 상태에서 합법적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법 기준으로 볼 때 자국민의 해외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호주 성매매 주요 경로 중 하나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인 것을 고려하여 양국정부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체류 중 성매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비자에

52)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호주 성매매 경로 및 실태와 관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호주 현지의 면담자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 협조해주신 호주의 면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한 규정을 두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1)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경로

#### 가) 호주의 성매매 관련 제도

호주의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호주수도 영토(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sup>53)</sup> 퀸스랜드주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다.<sup>54)</sup> 호주에서 성매매 단속은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거나 불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불법적인 경우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거나 불법적 체류신분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에서 이민국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은 성매매와 관련된 단속을 할 때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호주 연방경찰이 발간한 2005-2006년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목적지라고 밝히고 있다. 호주정부는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와 아동대상 섹스관광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경찰내 국제 성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팀(the Transnational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Teams, TSETT)의 활동에 사용된다(호주연방경찰, 2005-2006).

성매매가 호주의 일부 주(states)와 영토(territories)에서 합법적이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합법적 영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외국인의 비자조건에 달려 있다. 비자조건을 위반하며 성산업에 종사하다 적발된 사람은 비자가 취소되거나 구금 혹은 추방된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성산업에 종사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자조건 개선과 같은 반인신매매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면서 인신매매 조사와 기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호주법무부, 2007).<sup>55)</sup>

53) 호주에서 영토(territory)는 주(state)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54) 호주의 연방정부는 국가적 수준에서 성산업 관련 법안(prostitution industry legislation)을 집행하지 않는다. 각각의 주정부나 영토(territory) 수준에서 각각의 법안을 만든다. 1984년 빅토리아 주(the State of Victoria)가 호주 4개 주들 중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호주수도 영토(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는 199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하였고 뉴사우스 웨일즈 주(the State of New South Wales, NSW)는 1995년, 퀸스랜드 주(the State of Queensland, QLD)는 1999년에 합법화하였다. 호주 연방정부는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Sullivan, 2007).

55) 이것은 호주법무부 Assistant Secretary Anthony Coles가 2007년 11월 9일 작성하여 본

## 나)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경로

호주 이민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상당수의 한국인이 호주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 기간 동안 530명의 한국 국적 소지자들이 호주 성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5명의 한국 국적자가 해당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다 적발되었다(호주법무부, 2007). 한국인 여성들은 대체로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를 통해서 호주에서 성매매에 종사한다. 대체로 자신이 알고 원해서 오는 편이며, '호주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던가 '호주 사람은 매너가 좋다'는 식의 환상을 가지고 온다.<sup>56)</sup>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을 데려오려는 이유는 마사지업소에서 한국식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해당 여성들을 스폰서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데려오는 데 비용이 든다.

<그림 III-12>에 의하면 여성들은 고소득 보장, 일하며 영어 배우기 등의 광고에 유인되어 호주로 유입된다. 알선자는 여성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권하는데 이들 중에는 대학생, 학원강사, 회사원 등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다. 호주에 도착하면 알선업자와 업주가 소개하는 숙소에서 여성들은 공동으로 생활한다. 호주에 입국하면서 만 달러<sup>57)</sup> 정도의 빚을 지는데 성매매를 통해서 갚아야 한다. 업주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출이 통제되며 감시당한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다. 호주에서 불법성매매업소나 불법체류자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이민국이나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 업주는 기소되어 처벌되고 불법체류로 혹은 불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추방된다. 단 인신매매피해자는 호주정부의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

연구진에 보낸 편지에 근거한 내용이다.

56) 이것은 본 연구진의 연구자가 2007년 9월 호주 현지를 방문하여 시드니 총영사관 영사, 호주동아일보 편집국장, 성매매 경험 여성 연구자와 면담하여 얻은 내용이다.

57) 호주 달러를 의미한다.





<그림 III-12> 호주 성매매 경로

2003년 8월부터 호주이민부(DIAC)은 성매매와 관련된 한국인의 사례를 보면서 인신매매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민간단체 프로젝트 리치(Project Reach)에 의하면 태국 성노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한 이후 인신매매범들은 한국여성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성산업 종사자들이 말하고 있다.<sup>58)</sup> 호주범죄위원회(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ACC)에 의하면 성노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 조사가 실시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동위원회는 총107명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추가로 50여명에 대해서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

58) <http://www.humantrafficking.org/updates/10> "Sex Slavery in Australia," September 2005.

하였다. 조사는 시드니, 멜버른, 아델레이드, 퍼스, 브리즈번, 칼고리에서 진행되었는데 면접대상자의 3분이 1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여성들 대부분은 한국, 태국, 중국에서 온 여성들이었다. 인신매매 알선자 대부분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인데 이들 중 다수는 호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시드니는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이 호주로 입국하는 주요 통로였다. 호주범죄위원회는 매년 300여명의 여성이 인신매매로 호주로 들어오고 2005년 현재 1,000여명 여성이 성노예로 일하고 있고 추산한다. 이것은 위원회가 의회공동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호주 성매매의 주요 통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한 알선이다. 최근에 성매매여성 호주알선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고 있는 사건의 경우를 통해서 이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호주 취업을 광고해 한국여성을 호주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자들이 검거되었다. 한국 경찰은 2007년 87명의 한국여성을 호주 성매매업소에 소개한 알선업자 3명을 입건하였다(세계일보, 2007년 4월 24일). 한국의 알선업자와 호주의 유흥업소 주인이 공모하여 한국여성을 호주로 불러들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알선업자들은 비자수수료와 알선료 명목으로 7천2백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해 호주취업 및 호주 영어 학습 등을 약속하는 광고에 유인되어 호주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 대부분은 대학생과 학원강사 등 한국에서 성매매 경험이 없었던 여성들이었다. 알선업자는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호주에 도착하여 알선업자에게 소개받은 사업체는 성매매업소였다. 일부 여성은 여권을 빼앗기고 24시간 감시를 당하며 성매매를 해야 했다(중앙일보 2007년 4월 24일). 이들 여성이 취업한 성매매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호주경찰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해 호주로 건너간 여성들은 현지에서 브로커와 연락이 된다. 호주에 처음 오는 경우는 브로커에 의존하지만 정보가 많은 경우는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성매매 하고 있는 한국 여성 중 성매매가 처음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현지의 전문가들은 말한다.<sup>59)</sup> 브로커는 보통 80여명을 한국에서 호주로 송출한다. 호주의 업주가 관련 비용을 제공한다. 업소 주인이 1만

달러를 성매매 하러 올 여성에게 주지만, 브로커가 떼어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여성들의 성매매 종사가 늘어나면서 비자의 원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하였다.<sup>60)</sup> 2000년부터 해당 비자발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것은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 관광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는다. 해당 비자 소지자에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수입을 호주의 문화, 풍습,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기회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비자의 목적이다. 대다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하면서 호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경험을 쌓고 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다고 현지 전문가는 전한다.<sup>61)</sup>

## 2)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 보호

### 가)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실태

2004년도 호주상원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호주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여성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경자 2006).<sup>62)</sup> 호주내에서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다 적발된 여성들의 국적별 분포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별로 적발된 한국여성의 수를 보면 2002~2003년 37명, 2003~2004년 90명, 2004~2005년 5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3)</sup>

59) 2007년 87명의 여성을 호주 성매매업소로 알선한 3명의 알선업자를 경찰이 검거한 사건을 앞에서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조사된 피해자들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여성이 다수였다. 그러나 호주 현지 방문 시 만난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들 다수가 호주 입국 전부터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한다. 전반적으로 본 보고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성매매 한국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 사례 수집과 정보 수집을 통해 해외 성매매와 관련된 전반적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60) 한국인에게 발급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현황을 보면 2000-'01년도에는 76,570명, 2003-'04년도 93,760명에서 2006-'07년도에는 134,61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관련 내용은 시드니 총영사관 내부자료 협조를 통해 얻은 것이다.

61) 호주동아일보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내용이다.

62) 정경자. 2006. “호주의 인신매매현황과 방지를 위한 정책”.

63) 호주에서 적발된 불법 성매매 종사 한국인의 수가 호주 상원위원회의 보고서와 호주 이민부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2-'03년도 해당 항목 한국인의 수는 상원위원회 보고서에는 39명으로 이민부 자료에서는 37명으로 발표되고 있다.

<표 III-52> 호주내에서 불법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여성들의 국적별 분포  
(단위:명, %)

국가	2002~2003 <sup>64)</sup>		2003~2004		2004~2005	
	명	%	명	%	명	%
태국	99명	39%	112명	32%	73명	25%
말레이시아	48	19	34	10	26	9
중국	37	14	49	14	63	22
한국	37	14	90	25	56	19
홍콩	-	-	47	13	52	18
총계	257명		353명		291명	

\* 출처: 호주이민부 내부자료 (IMIRS, DIMIA)<sup>65)</sup>

호주이민부에 의하면, 2004년 7월~2005년 6월 1년 기간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로서 합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한 한국인은 222명인데, 이 중 시드니 등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160명이 있다. 이전 기간인 2003년 7월~2004년 6월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한 합법적 취업자는 63명에 불과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한국인의 성매매 종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3월~2006년 2월 한국여성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로서 비자조건을 위반하여 호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다가 38명이 적발되었다.<sup>66)</sup> 호주이민부에서는 2004년도까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가가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후 취소하였다. 이유는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sup>67)</sup>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체류조건을 준수하면서 성매매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류조건을 위반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불법적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경

64) 호주의 정부 통계의 1년 단위는 2개의 연도에 걸쳐있다. 예를 들면, 2005-2006년도 통계는 2005년 7월에서 2006년 6월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5) 호주이민부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시드니 총영사관 영사가 제공하였다.

66) <http://www.hojuonline.net/>  
호주온라인뉴스. 2005년 12월 31일.

67) <http://www.hojuonline.net/>  
호주온라인뉴스. 2005년 12월 31일.

찰 및 이민부의 단속 대상이 된다. <표 III-53>은 3개년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국여성의 수와 전체 적발된 자 중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2002~2003년도에는 37명이었으나 2003~2004년에는 90명으로 급증하다가 2004~2005년도에는 56명으로 감소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어서 한국 국적자는 해당 기간 15%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2003~2004년에서 2004~2005년도에 그 수가 감소하였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성매매의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급증하였다. 2003~2004년도 63명에서 2004~2005년도 22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3~2004년도와 2004~2005년도의 변화를 요약하면 불법 성매매 여성의 수는 줄었지만 호주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 사람의 수 전체는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합법적 성매매는 호주의 기준이지만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해당 기간 불법적 성매매 여성은 153명에서 278명으로 증가하였다.

호주에서 성매매여성을 인터뷰하는 한 연구자에 의하면 한국인 성매매종사 여성들은 빅토리아(Victoria)주보다 호주수도영토(ACT)나 뉴사우스웨일즈(NSW)에서 일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sup>68)</sup> 불법 성매매업소는 대부분 아시아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성들은 대체로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호주에 오기 전 성매매와 관련된 환경을 알고 있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호주에서 하는 성매매가 경제적으로 수익이 더 많은 것은 아니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에 한 번 나가서 구경도 하고 돈도 벌해보자는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성매매업소(Brothels)는 노래방에 비해서 급여가 센 편이지만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을 꺼리는 등 여성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 연구자가 면접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학, 어학연수로 왔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68) 이 내용은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한 것이다.

&lt;표 III-53&gt; 호주내 한인 성매매여성

연도	불법성매매 <sup>69)</sup>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 <sup>70)</sup>
	인원	구성비	
2002/03	37명	15%	-
2003/04	90명	25%	63명
2004/05	56명	19%	222명

\* 출처 : 호주이민부. 2005. 불법이민단속통계.  
호주이민부. 2005. 워킹홀리데이 비자운영 실태

호주에는 합법적 성매매 업소가 있지만 한국여성들은 외국인을 고객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호주의 교민사회 자체가 크지 않아 한인 관련 성산업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으며, 한국 업소도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 온 성매매 관련 여성들은 대체로 한국 업소로 간다.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Brothels)에 한국인 매니저를 두고 한국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노래방은 시간당 40달러로<sup>71)</sup> 한국보다 높지만, 성매매업소(Brothels)는 한국과 가격이 유사하다.

한국 여성의 호주 현지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적 조건을 갖추어도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sup>72)</sup> 2007년도 6월 호주 서부지역의 퍼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여성 7명이 강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시드니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서부의 퍼스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일하는 성매매업소에 침입한 3인조 강도에 의해 손발이 묶이고 재갈이 물렸다. 이들 중 한 명이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일을 통해 이들의 취업비자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성매매로 법정에 섰던 한국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sup>73)</sup> 2007년 25세, 32세,

69) <http://www.hojuonline.net/> 2005년 12월 31일에서 재인용.

호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한국인의 수이다. 이들은 호주정부에 의해 추방되었다. 호주이민부 불법이민 단속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70) 호주이민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에 근거한 것이다.

<http://www.hojuonline.net/> 2005년 12월 31일.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에 취업한 여성의 수이다.

71) 호주 달러를 의미한다.

72) <http://www.hojuonline.net/> 2007년 6월 11일.

31세 한국 여성 세 명은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 전까지 불법 성매매로 하루에 2천달러를 벌었다고 한다. 경찰은 2007년 2월 지역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성매매 고객으로 가장하여 이들 여성과 약속을 잡아 놓았다. 이들은 유죄를 시인하고 1,4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여성은 30분에 120달러를 요구하였다. 경찰은 이들 여성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검거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소로 향하였다. 업소 수색에서 6개의 이동전화와 수많은 신문광고가 발견되었고 날짜, 성매매여성의 이름, 예약시간, 성매매여성들의 급여가 적힌 노트들도 발견되었다. 이외에 6천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한 은행 영수증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호주 동부 휴양지인 골드코스트에서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들 중 한 여성은 법정출두 명령에도 불구하고 호주를 떠나 도망쳤다. 이들의 변호인은 해당 여성들이 자신의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재판장의 선처를 구했다. 호주 동북부 지역의 퀸스랜드주의 골드코스트는 유명한 휴양지인데 이곳에 주 전체의 23개 허가된 성매매업소 중 5곳이 위치하고 있다. 주법에 의하면 성매매업소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1만8천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후 업주는 추가의 수수료를 내면 최대 5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 나) 호주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

2004년 이후 총 110개 인신매매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20개 경우는 2005-2006년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sup>74)</sup> 보고서에서 국가별 피해자 수를 밝히지는 않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출신이고 태국여성이 제일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연방경찰 2005-2006). 그 다음으로 많이 피해자를 배출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가나, 우즈베키스탄, 체코 공화국이다. 한국 피해자의 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73) Australian Crime Commission에서 면담한 Dr. Keith Ogborn이 협조한 내용이다.

Melanie Pilling court reporter. 2007. Feb. 15. "High-rise hookers Korean sex girls busted"

74) 호주의 정부 통계의 1년 단위는 2개의 연도에 걸쳐있다. 예를 들면, 2005-2006년도 통계는 2005년 7월에서 2006년 6월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 출신의 인신매매 피해자 규모는 큰 편이다(호주연방경찰, 2005-2006).

인신매매 조직의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the Victims of Trafficking Care, VoTCare)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에게 통역, 보호, 의료 및 상담 지원,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인신매매 알선자 기소 과정에서 제공된다. 피해자이며 호주 체류가 필요한 여성은 관련 비자(Bridging Visas, Criminal Justice Stay Visas)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예산’이 지원된다. 2006-’07년 기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예산은 36명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증언자를 지원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 총 66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는데 이들 중 13명에 대해서는 2006-’07에 지원이 제공되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호주로 인신매매되기 전에 이미 송출국에서 성산업에서 종사했거나 호주에서 성산업에 종사할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호주 도착 전까지는 이들의 작업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착취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호주법무부, 2007). 호주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8월 현재 4명의 한국국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호주법무부, 2007).<sup>75)</sup>

75) 호주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괄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사례별로 관리를 하는데 피해자로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비자(Bridging F Visa)가 제공되고 비자 유효기간 동안이나 이들이 호주를 떠나기를 원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일시적 거처, 의료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서비스, 훈련 및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다. 이후 체류비자 (Criminal Justice Stay Visa)를 부여받은 피해자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자 기소와 관련된 수사에 협조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 신변의 위협이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 증인보호비자(Temporary or Permanent 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 호주정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인신매매 피해자 사회재통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관여하는 부서는 여성국, 호주연방경찰, 호주원조기구, IMO, 이민다문화부이다. 호주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하게 되는 경찰, 이민부 직원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관련된 훈련도 제공한다. 훈련의 목적은 담당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신매매의 지표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한 여건에서 조사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Australian Government, 2004). 이 내용은 “Australian Government’s Action Plan to Eradicate Trafficking in Persons”를 참고한 것이다.



호주 범죄위원회 (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ACC)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호주에서 발견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100명 이하이다. 유엔 인신매매 인용 지표 (The United Nations Trafficking Citation Index)에서 한국,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는 호주에 성산업 여성을 송출하는 주요국가로 언급되고 있다. 호주 범죄연구소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는 2007년 6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호주에 불법적으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송출하는 국가로 언급되고 있다(호주법무부, 2007). 이것은 호주범죄수사국 자료와 대체로 일치하는데 호주의 인신매매 피해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출신으로 태국 출신이 가장 많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다 적발되었다(호주법무부, 2007). 호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성매매 피해에 연루된 한국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하지 않는다. 관련 업소주인, 업소종사자들은 비자 적법 여부에 따라서 처리된다. 체류자격이 불법이면 추방된다. 2007년 9월까지 성매매 종사 한국 여성 중 1명이 호주에서 체류비자를 부여받았다.<sup>76)</sup>

호주 수사당국과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한국여성 성노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자.<sup>77)</sup> 한국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1세의 말레이시아 여성과 43세와 49세의 남성이 성노예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호주연방경찰은 21세의 말레이시아 여성을 체포하였고 이들이 한국여성에게 빚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빚은 한국여성을 호주로 데려올 때 발생한 비용인데 그녀가 처음 호주에 올 때는 시드니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약속 받고 왔다고 한다. 한국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업소에서 43세 남성을 체포하고 49세 남성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는 2개월에 걸쳐 수행된 경찰의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호주에서 더 나은 삶을 약속한 사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노예를 강요한 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호주 경찰의 주요 업무이다.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세 사람은 타인을 성노예화 한 것과 성노예 사업체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는데 최대 15년 형을 받을 수

76) 시드니 총영사관 주재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내용이다.

77) [http://villagevoice.com.au/article/20070111/NWS07/701110519/Three Face Sexual Servitude Charges](http://villagevoice.com.au/article/20070111/NWS07/701110519/Three+Face+Sexual+Servitude+Charges)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되어 호주정부의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 1)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경로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주일 한국대사관 어느 기관에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일본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5만 여명이고 이들 중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국여성들은 3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A).

성매매와 관련하여 일본으로 한국여성을 알선하는 주요 통로는 인터넷 카페이다. 해외성매매 알선 조직은 카페에 가입한 여성에게 고수익과 개인 신상정보 보장을 약속한다. 이들은 위조된 여권으로 여성들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소개시켜주거나 인신매매도 한다. 2007년 3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한국여성 140명을 일본 출장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인신매매 조직원 12명이 구속되고 일본 밀항을 시도한 31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오마이뉴스, 2007년 4월 2일)<sup>78)</sup>

<그림 III-13>에 의하면 여성들은 인터넷 카페나 광고를 통해 고소득 보장광고에 유인된다. 일본은 체류여건이 편리하고 지리적·문화적으로 한국과 근접하여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양국을 왕복하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많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주부도 포함되어 있다. 알선조직에 의지해 여권을 위조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체류하면서 성매매 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알선료가 낮다. 알선자나 업주의 안내로 공동 숙소에서 기거하며 지정된 업소에 출입하거나 출장 성매매를 한다. 호주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찰은 인신매매 및 불법성매매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 도쿄 유흥업소 지역에 설치된 광고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면 어디서든 1시간 내 한국여성과 성매매가 가능하다. 성매매 여성들은性病과 에이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출장성매매의 경우 납치 사건도 발생한다. 신체

7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175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1752)

적 학대나 임금체불도 감수해야 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림 III-13> 일본 성매매 경로

일본 성매매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 광고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월 1,000만원+알파, 처음 비자 기간 석 달 동안 목돈 벌게 해줌’ ‘일본어 공부하면서 목돈 벌 언니 구함’ ‘매너 좋은 일본인, 한인 상대라 일본말 못해도 상관없음’ ‘가실 분들 출국 도와줌’ 2006년 말부터 2007년 4월까지 2개의 포털사이트에서만 일본 성매매 업소 알선 관련 정보를 제공한 카페가 70여개이고 2007년 4월까지 활동하고 있는 카페는 41개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 2007년 4월 2일).

한국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한국인과 유사한 동양적 정서를 갖고 있으며 수입이 많다. 단속이 되어도 가까운 사람이 모르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알선료가 비싸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 더해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 상대로 한국여성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A). 단기 체류를 하며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주부나 대학생등 평범한 여성의 자발적 일본 해외 성매매가 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A).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업주는 2004년 9명, 2005년 15명, 2006년 39명으로 증가하였다. 도쿄 우구이스다니 지역에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200여개의 출장 성매매업소가 있는데 적발 건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철저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호적이 위조되어 성매매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어도 여성들은 브로커에게 500만원만 주면 위조된 서류를 받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A).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성매매 경로와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9)</sup> 22세의 한 여성은 2007년 11월 일본 나리타공항에 처음 도착하였다. 도착한 후 그녀는 다른 한국여성 7-8명과 함께 대기하던 승합차에 타고 도쿄의 우구이스다니의 맨션에 도착한다. 이곳은 일본 유흥업소 종사 한국여성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김씨는 성매매 여성 10명과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업소에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맨션에 머물면서 출장 성매매를 한다. 김씨는 음대 학생인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일본에 왔다. 그녀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3개월 동안 2천만원을 벌어서 귀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녀는 도쿄 아카사카의 '데이트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이 업소는 술보다는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고객은 5만엔(40만원)에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위 업소에는 한국여성 20여명이 일하고 있다. 밤 10시가 넘어 일본남성이 업소로 들어와 실물이나 모니터를 통해 파트너를 구하여 호텔로 간다. 김씨가 일하는 업소 '마마'는 과거에는 유흥업소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수였지만

79)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최근에는 김씨처럼 단기간에 큰돈을 벌려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한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B).<sup>80)</sup>

## 2)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 보호

### 가)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실태

중국 및 동남아 여성의 일본 성매매 시장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남성들은 성매매 상대로 한국여성을 선호하고 있어 일본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B).<sup>81)</sup>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007년 3월 ‘나라 망신시키는 해외원정 성매매-일본편’ 자료를 통해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일본내 한국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여성이 도쿄, 신주쿠, 아카사카, 긴자 등 고급 유흥주점 밀집지역과 오사카, 고베 등에 퍼져 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2007년 4월 2일).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한국에서 온 주부와 대학생은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본에서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보면 20대 대학생에서 30대 주부에 이르기까지 100여명의 사진이 올려져 있다. 사진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면 도쿄 어디에서든 1시간 이내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B).

출장성매매가 성행하는 도쿄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성매매 여성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도쿄 우그이스다니에는 일본 전체에서 출장 성매매인 ‘데리바리’ 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다. 한국의 브로커를 통하거나 일본에서 발행되는 무료 정보지에 실린 전화번호에 연락하면 이 지역 데리바리 업소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잡지나 인터넷에 올릴 성매매 여성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 운영, 업소 경영,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주는 일 모두 한국인이 하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2년전부터 한국여성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약 200여개 업소에 1천여명의 한국여성들이 성매매자로 일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여성들은 이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B).<sup>82)</sup> 도쿄 우그이스

80)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B. 김연기. “일본 유흥가 뒷골목 한국인 주부·대학생 넘쳐난다” [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294.html](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294.html)

81)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A.

“일본 성매매 왜 몰리나” [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292.html](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292.html)

다니역 주변에 한국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무료정보관’이 여러 곳 있는데 이곳은 컴퓨터를 통해서 성매매 여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무료정보관에 제시된 전화번호에 연락을 하면 30분도 안 돼 묵고 있는 호텔로 여성이 찾아온다.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도쿄 우그이스다니에서 데리바리 생활을 하는 24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 100차례 고객의 지명을 받는데 10차례 출장을 나간다고 한다. 일주일 6일을 이렇게 하면 월 80만엔(약 640만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모집광고에는 ‘한국에 비해 편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생활비를 제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술에 빠져 돈을 모아 귀국하기는 어렵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B). 일본에서 유흥업계에 10여년 있었던 35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년전 위장 결혼으로 일본에 정착한 그녀는 10년 넘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2006년 자신의 업소를 차렸다. 현재 20여명의 한국여성이 그녀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정씨에 따르면 과거에는 성매매 알선 브로커에 속아 일본으로 와 성매매에 종사했지만 최근에는 고수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러 오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정씨는 11월 말 한국에 들러 함께 일할 여성을 구해 이들과 함께 2008년 초 일본으로 돌아 올 계획이라고 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0일 B).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24세의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경찰 단속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치면 애인사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돈은 직접 주고받기보다는 텔레뱅킹이나 카드로 미리 계산한다고 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A).<sup>82)</sup>

#### 나) 일본에서의 성매매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의 인권 및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장성매매를 제공하는 우그이스다니 지역에서는 고객들이 콘돔을

82)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B. 김연기. “일본 ‘데리바리(출장성매매)’ 업주 상당수 한국인” [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581.html](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581.html)

83)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A. 김연기. “성매매 여성 ‘브로커에 500만원 주면 다 해결” [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576.html](http://www.ha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576.html)

착용하지 않아 여성들은 성병이나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06년 여름에는 출장성매매에 나갔던 여성이 일본 남성에게 납치되었다 경찰 도움으로 풀려났지만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여성은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 잠적해버렸다. 데리바리 여성 상당수는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위험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구할 수 없다. 이들 여성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신체적 학대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B). 인신매매로 일본에 온 여성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업주들은 도항<sup>84)</sup>, 결근, 지각을 이유로 벌금을 매겨 여성들이 빚을 지게하거나 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다. 취업 6개월 이내 성매매를 그만둘 경우 벌금 50만엔을 물리는 등 다양한 벌칙으로 여성을 빚에 묶이게 하여 마침내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만든다(오마이뉴스, 2007년 4월 2일).

곤경에 처한 성매매 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다. 성매매 여성 구조 활동을 벌이는 ‘플라리스 프로젝트’의 캐서린 천 공동대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도쿄 지부로 끊임없이 전화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을 두려워하여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한다. 일본 내 한국인 성매매 여성보호단체는 ‘여성상담센터’와 ‘나눔터’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현지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24시간 ‘영사콜센터’도 불법체류자 신분의 성매매 여성에게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곳이다. 일본내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 ‘사라의 집’의 한 활동가는 한일 양국 경찰 단속이 유명무실하여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업소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양국 경찰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고 여성들은 신체학대, 임금체불, 인신매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성매매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1일 A).

84) 도항(同伴)이란 여성이 손님을 받지 못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2. 한국남성의 해외 성구매 경로 및 실태 파악

### 가. 한국남성의 중국 성구매 경로 및 실태

최근 중국 및 동남아로 가는 골프여행이 성구매관광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중 중국으로 가는 골프관광의 수요가 가장 많다. 중국 하이난(海南) 섬의 경우 골프여행지로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골프가 어려운 늦가을부터 이른 봄 하이난 섬에 한국 관광객 많이 오고 있다. 하이난 섬에서 한국인 골프관광객의 성구매가 확산된 것은 3-4년 전부터라고 한다(월간조선, 2007년 5월호)<sup>85)</sup>.

하이난과 칭다오는 한국인이 즐겨 찾는 골프 관광지이다. 하이난은 중국정부 주도로 개발된 관광특구로 유흥업소가 발달된 곳이다. 하이난 섬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여행 상품은 25여 가지가 있는데 골프여행과 관련하여 하이난 섬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두 달 사이 7,000여명이었는데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에는 1만2천600여명에 달하였다. 하이난 섬에는 17개 골프클럽 손님 중 90%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칭다오에 다녀온 한국인들도 골프여행과 더불어 유흥업소에 들르는 것이 흔한 일이다(경향신문, 2007년 1월 24일).

<표 III-54> 2000년-2005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15,791	596,992	867,522	694,918	1,191,691	1,638,838

\* 출처: 한국관광통계, 2006.

관광특구로 지정된 하이난섬의 하이커우(海口) 시내의 호텔에서는 30대-50대 한국남성과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는 20대 여성이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또 하이난 섬을 찾은 남성 골프여행객이 가이드에게 여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고 전한다(월간조선, 2007년 5월호). 현지에서 관광가이드를 하는 한 조선족은 남자들만 오는 관광객의 80-90%는 여자를 찾으며 접대골프의 경우 꼭 성매매 여성을 붙여준다고

85) 「월간조선」, 2007년 5월호. 지해범. 「현장고발」 하이난(海南) 섬의 추한 한국인들.



말한다. 여행가이드는 일반적으로 한국남성은 유흥 등 밤문화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하이난 성을 찾는 중년 40-50대 중년남성들은 2인1실이 아닌 1인1실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성구매를 하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이라고 한다(경향신문, 2007년 1월 24일).

하이난 섬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도시의 호텔과 달리 성매매 여성의 호텔 출입이 단속되지 않는다. 중국 다른 지역 호텔과는 달리 객실 화장실에 콘돔 한 박스가 제공되고 있고 호텔 지하 2-3층에 노래방과 술집을 두어 관광객의 성구매를 유도한다.(월간조선, 2007년 5월호).

<그림 III-14>에 의하면 중국 성구매는 여행사 단체관광이나 현지 가이드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이난과 칭다오의 단체 골프관광은 인기가 높는데 관광 일정 이후 성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하이, 하얼빈 등 현지 도착 후 인터넷 광고로 연결된 가이드가 소개하는 24시간 '동행 밀착가이드'와 동행한다. 단체관광객은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에서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 보도방을 통해 호텔로 여성을 부르기도 한다.



<그림 III-14> 중국 성구매 경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중국 성매매 알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2007년 3월 중국 해외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는 33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하얼빈, 칭다오, 웨이하이, 단둥 등의 현지 가이드들이 중국 해외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업체는 칭다오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중국 해외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데 ‘밀착가이드’<sup>86)</sup> 손님에게 소개해 준다(연합뉴스, 86) 밀착가이드는 낮 시간 손님의 쇼핑과 관광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호텔에 함께 숙박하는 가이드를 말한다.

2007년 4월 8일).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유홍업소 탐방 여행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곳은 칭따오였다(박재완 의원실 자료, 2007).<sup>87)</sup>

칭따오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밀착가이드’를 활용한 성매매 알선, 유홍업소 출입 안내를 하는 업체나 8명 이상 그룹으로 고객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 있다. 일반 가이드는 낮에만 관광, 식사, 쇼핑을 돕지만 ‘밀착가이드’는 밤에도 손님과 호텔 등에 함께 숙박한다. 밀착가이드는 유홍업소 여성들이 업소 일을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다수며 대학생도 가끔 있다. 한국인 중 현지 대학생 밀착가이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밀착가이드’는 ‘밀착도우미’ ‘중국미녀 가이드’로도 불린다(박재완 의원실 자료).

여행사를 통해 하이난 섬으로 골프여행을 가는 경로와 관련하여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팀이 되는 4명을 구성하여 여행일정을 밝히고 송금하면 현지 공항에 비자를 받는다. 하이난 섬 골프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밤중에 하이난 공항에 도착한 후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호텔로 이동한다. 다음날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7시 30분에 로비에 모여 18홀 골프코스를 두 번 돈다. 골프장은 시내 호텔에서 1시간-1시간 30분 떨어져 있다. 피곤하여 두 번째 라운드를 포기하는 경우 환불받지 못한다. 골프가 끝나면 가이드의 안내로 단체로 발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3-4명이 한 방에서 마사지를 받기에 건전한 편이다. 그 다음 가라오케로 이동하는데 중국의 가라오케에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수십에서 수백명 대기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파트너를 정해 옆자리에 앉힌다. 팀은 300위안(한화 4만 2천 원) 내외이다. 술, 노래, 춤이 진행된다. 2차, 즉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200달러를 업소에 지불해야 한다. 100달러는 업소 마담이 100달러는 가이드의 몫이다. 2차 손님 1명당 가이드는 1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공장노동자 한달치 월급이다. 이런 이유로 여행사 가이드는 최대한 한국관광객을 술집으로 안내하려는 것이다(월간조선, 2007년 5월호).

베이징이나 상하이 호텔에서는 중국인이 호텔에 출입하려고 할 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만 하이난 섬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관광객은 어렵지 않게 20대 초반의 여성을 데리고 호텔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장면은 호텔로비와 각 층에 설치

87) 연합뉴스. 2007년 4월 8일. “박재완 ‘인터넷을 통한 중국 성매매 심각’”.

된 CCTV로 전부 촬영된다.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만나 호텔로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방에서 여성을 부르기도 한다. 조선족 가이드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을 공급해 주는 ‘보도방’이 있어서 손님이 요구하면 여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한국관광객이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지 가이드의 역할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매매 대가는 100달러에서 250달러에 달하는데 대학학비를 벌기 위해 농촌출신 여대생들도 온다(월간조선, 2007년 5월호).

한국남성의 중국 성구매와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중국원정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의 해외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원의 이익을 얻은 32살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중국전문 성인여행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138명에게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칭다오(靑島) 등지에서 성매매관광을 알선해주고 여행 참가비로 130만~200만원씩 받아 2억원을 챙겼다. 김씨는 회원에게서 받은 참가비, 성매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중국에 보냈다. 경찰관계자는 해외에서 성구매를 한 사람들을 모두 소환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인일보, 2006년 6월 5일).<sup>88)</sup>

중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서 직원 2명을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07년 6월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와 청도에서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현지 여성에게 13만원씩을 주고 성구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조직이 국내와 중국 현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노컷뉴스, 2007년 8월 10일).<sup>89)</sup>

#### 나. 한국남성의 태국 성구매 경로 및 실태

태국 방콕과 파타야는 한국 남성들이 관광을 위해 찾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광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여행사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골프 접대 관련 해외출장을 위한 것이다. 여행패키지 상품으로 파타야를 찾는 남

88)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68>

89)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2007. 8월 10일.

성 관광객들이 ‘아고고’<sup>90)</sup>를 찾아서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가이드는 밤거리 외출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여행객에게 주지시킨다고 말한다. 두 번째 경우는 골프접대를 위한 해외출장이 많아지면서 낮에는 골프, 밤에는 향응을 하는 스케줄이 제공된다. 한국인이 많고 골프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성구매를 목적으로 온 한국 남성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

<표 III-55> 2000년-2005년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89,291	375,909	500,654	493,657	666,673	565,771

\* 출처: 한국관광통계, 2006.

관광을 목적으로 온 한국남성 대다수는 단체여행객으로 태국에 오는데 성구매와 관련하여 가이드가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듯하다. 바(Bar)의 경우 유럽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의 비중이 높고 단체관광객보다는 개인관광객이 주로 많이 이용하며 한국 관광객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황제골프’라는 것인데 이는 골프관광 상품에 성매매가 추가된 것이다. 황제골프를 경험한 39세의 사업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입국하면 바로 20대 초반 태국여성과 파트너를 정한 다음 한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여성과 함께 한다고 한다. 이들 여성은 관광가이드, 골프장 경기보조원, 잠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의 역사는 10년이 넘는 듯하다. 현지 가이드는 태국에서 골프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한국남성 대다수는 섹스관광 옵션이 추가된 상품을 선택하는데 매번 상품이 매진된다고 한다(경인일보, 2006년 12월 16일).<sup>91)</sup>

현지 가이드에 의하면 패키지여행으로 파타야에 온 남성들은 밤에 숙소에서 나와 아고고에서 아가씨들과 2차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고고 업소에서는 여성의 시중을 받기도 하고 2차를 원하는 경우 가격홍정을 한다. 일부 가이드들은 이

90) 퇴폐성과 선정성을 보이는 유흥업소를 태국에서는 ‘아고고’라고 지칭한다.

91) 경인일보, 2006년 12월 16일. 조영상. “나라망신 어글리 코리언, 해외원정 섹스관광 실태”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68>

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여행객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애쓴다고 한다. 그러나 관광객 남성들은 파타야에 오기 전 성구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아고고에 찾아와 여성들과 호텔로 향한다(레이디경향, 2007년 5월).<sup>92)</sup>

한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남성들은 태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의 파타야 지역 현지조사에서 면접한 여성 20명 중 14명이 19세 미만으로 이들 중 일부가 한국남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나이트 한국 남성들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선호한다고 했다.

<그림 III-15>에 의하면 태국의 경우 여행사의 골프단체여행을 통한 성구매가 주를 이룬다. 골프관광에 성매매를 추가한 ‘황제골프’라는 상품의 인기가 높다. 공항 입국에서 출국할 때까지 태국여성이 24시간 동반하기도 한다. 개별적으로 ‘아고고’라는 유흥업소에서 파트너를 찾기도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확인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서 마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남성이 과도한 성적 요구를 하며 자신들을 무시하고 마리화나 및 아이시 등 마약을 강요한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인의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92) 조재진. 2007년. 레이디경향 5월호.



<그림 III-15> 태국 성구매 경로

조사대상 여성의 상당수가 간단한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아는 것으로 보아 파타야 지역에서 한국남성들의 성구매가 빈번히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다. 파타야 현지 호텔 로비나 인근 업소에서 한국 남성이 성매매 여성으로 짐작되는 여성들과 늦은 밤 혹은 새벽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남성을 경험한 태국 파타야 지역성매매 여성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한국 남성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거칠게 나온다. 성매매 여성을 무시하고 비난한다. 성매매여성에게 마리화나, 아이시 등의 마약을 강권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싫어하는 성적 요구를 과도하게 한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 다. 한국남성의 필리핀 성구매 경로 및 실태

최근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여 이들은 미국과 일본 방문객을 앞서 필리핀 최다 외국인 관광객이 되었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의 필리핀 현지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의 한국남성 고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 부류는 관광객이고 다른 한 부류는 유학 및 어학연수생이다.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에 의하면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남자들만 오는 한국 단체관광객은 거의 대부분 성구매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가이드 들은 공식 일정과는 별도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성들이 시중드는 가라오케로 관광객을 안내한다. 현지 가이드에 의하면 한국 남성 단체관광객의 특징은 2차를 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2차비용은 한국에 비해 낮다(서울신문, 2006년 12월 6일).

<그림 III-16>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성구매를 하는 남성은 두 집단인데 하나는 단체관광객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다. 현지 가이드는 단체관광객을 바(Bar), 마사지, 가라오케, 디스코 클럽으로 안내하는데 이곳에서 파트너를 만난다. 단체로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단체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3일-5일의 여행일정 동안 필리핀 여성과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가 확인되고 있다. 유학생들은 단란주점을 통해 성구매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6개월-8개월 동거하며 성매매를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 ‘코피노’라는 자녀가 출생하기도 한다. 성적 학대, 성노예 취급, 가학적 성행위 요구, 마약 강요로 한국남성에 대한 비난이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서 높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그림 III-16> 필리핀 성구매 경로

한국남성들은 바(Bar), 마사지, 가라오케, 디스코 클럽을 통해서 성구매를 한다. 가이드로 안내로 단체로 업소에 방문한 경우 호텔이나 기타의 장소로 가 성구매를 한다. 세부의 한 업소의 경우 200여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데 한국관광객이 단체로 와서 여성을 선택하여 성구매를 한다. 3일-5일간 한국관광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표 III-56> 2000년-2005년 필리핀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0,771	142,999	214,105	226,979	303,564	391,848

\* 출처: 한국관광통계. 2006.

필리핀의 경우 현지에 공부하러 온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들의 성구매가 나타나고 있다. K-TV라는 단란주점이 유명한데, 현지 물가가 싸서 한국 학생들은 성구매를 쉽게 하고 있다.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의 경우 성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 여성과 지속적 관계를 가지며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10대 후반에서 20세 초반에 이르는 남학생들이 성구매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 여성을 현지처럼 삼고 6-8개월 동안 매주 평균 세 차례 정도 성구매를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서울신문, 2006년 12월 8일; 한겨레신문, 2006년 12월 7일). 한 여성의 경우 유학생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일부 여성의 경우 성매매로 번 돈으로 한국남성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필리핀 성매매 여성과 유학생 관계에서 임신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 남성은 임신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임신중절 비용이 높아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데 그 결과 코피노로 불리는 한국인의 성을 가진 필리핀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5).

마닐라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한국남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돈을 인색하여 서비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가 세부지역에서 면접한 필리핀 성매매 여성 25명 중 8명은 한국남성들이 자신을 성노예처럼 대했다고 한다. 한국남성들은 콘돔 쓰기를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성적서비스 제공을 강요한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가 세부지역에서 면접한 필리핀 성매매 여성 25명 중 16명이 자신의 성기에 플라스틱병을 집어넣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도 한국남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을 복용하고 여성에게도 강요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2006). 엘포트 ECPAT 필리핀 사무국장은 자신이 접수한 사례에 의하면 한국 사업가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구매행위를 하고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술집과 클럽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한다. 아동성매매는 현지 경찰의 단속 대상이며 단속 후 해당 업소는 문을 닫는다(우먼타임즈, 2005년).

필리핀에 영어연수를 목적으로 간 한국 남학생들에 의한 성매매 여성 학대도 알려지고 있다. 이 업소 성매매 피해여성 다수는 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05). 이 업소 여성들 상당수는 한국 남학생과 교제중인데 남성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영어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한

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05).

### 3. 소 결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 여성의 성매매 종사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호주, 일본을 살펴보고 한국 남성의 성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태국, 필리핀을 살펴보았다.

호주의 경우 젊은이들의 문화체험을 독려하기 위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이 호주 공식 통계로 기록되고 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호주의 주요도시 및 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체류와 관련하여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 성매매는 호주법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들이 호주에서 성매매하는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며 합법적 업소에서 성매매 하는 경우와 비자조건 및 업소의 합법성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는 후자만 문제가 되며 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그러하지 않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의 합법적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의 행위는 국내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한국과 호주 양국의 관련 기관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직업 활동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불법적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한국 여성의 수는 적지 않다. 호주 당국에서도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단체의 개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호주에서 불법적 성매매에 종사하다 적발된 여성과 관련된 브로커의 기록을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 공유하여 이들에 의한 해외 성매매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 성매매 여성의 미국입국은 브로커 알선에 의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거리, 문화 및 언어적 환경이 생소한 미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와 브로커의 목적에 따라 착취되기 일쑤이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미국 동부와 서부의 주요도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련 조직들의 치밀한 공조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연방 정부가 성매매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인신매매자를 색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당국의 공동

작전에 의해 검거된 인신매매 조직과 피해자들 중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검거에는 범죄자와 피해자 두 집단이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미국에서 추방된다. 이들 여성의 미국 성매매 알선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많다. 광고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미국 성매매 행을 선택했던 것이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아울러 미국에 있는 한국 성매매 여성의 비참한 실상을 널리 홍보하여 해외성매매 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3개월간 일본 체류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한국여성의 일본 출입국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환경이 유사하여 여성들 입장에서는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낮다. 호주나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경우는 성매매에 대해서 경찰의 단속이 소극적인 편이다. 이런 환경에서 유흥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번성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의 신변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색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 수사 당국의 공조가 요구된다.

중국, 태국,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단체로 이들 나라에 관광을 가는 남성 관광객의 성구매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적 행위이다. 그러나 이들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규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본 절에서 논의된 사례는 남성들이 단체 관광객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서 성구매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한 관광객 입장에서는 성구매와 관련된 정보는 가이드를 통해서 얻게 된다. 물론 한국의 여행사와 현지의 가이드가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한국에 소재한 여행사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현지 가이드를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가이드와는 국내여행사가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태국과 필리핀 성매매의 경우 마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사범당국의 개입이 요구된다.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구매가 보고되고 있다. 2007년도 미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남성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sup>93)</sup> 동 보고서는 이러한 행위가 한국 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단 한 건의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가한다.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민의 해외 미성년자 성매매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가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국과 필리핀에서 자행되는 한국인의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정부의 경우는 연방 경찰을 아동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주시켜 자국민에 의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발하고 조사하여 호주내의 법정에 세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노력은 호주가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남성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구매와 관련된 추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할 따름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한국 남성의 성구매 행위를 통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다. 철저한 법집행이 최고의 예방이라고 한다. 법무부와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

93) U.S. State Department. 200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http://www.gvnet.com/humantrafficking/SouthKorea-2.htm>

제4장

## 한국의 성매매 시장분포 및 규모추정

제1절 지역별 분포 상황	149
제2절 성매매의 경제규모	172
제3절 성매매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177

## 제1절 지역별 분포 상황

### 1. 유흥업소의 전국 분포

이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8개 유흥업종<sup>94)</sup>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성매매 산업의 규모와 현황을 추정하고자 한다. 성매매 알선 사업체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겸업형 8개 업종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전국 수준에서 8개 업종의 분포를 살펴본 후, 16개 시/도별로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8개 업종 사업체의 분포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에 나오는 사업체 규모를 겸업형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실질 사업체 규모로 적용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수정한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 가. 유흥업소의 전국 현황

유흥업 관련 사업체의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성매매 알선 가능 사업체로 대표되는 8개 업종의 사업체수는 20만여 개이다. 16개 시도별로 절대수의 측면에서 성매매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해당 행정구역의 규모, 즉 인구수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전체 인구의 과반수 수준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사업체 규모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38,843개, 그리고 서울이 38,299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부산의 사업체수가 17,118개, 경상남도의 사업체수가 16,954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94) 본 조사의 8개 유흥업종은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일 뿐이며, 따라서 모든 유흥업소가 성매매 알선 업소는 아니다.

<표 IV-1> 16개 시도별 8개 유흥업종 분포(실질사업체 기준)  
(단위: 명, 개)

구분	인구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간이 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합계
서울	9,762,546	7,646	890	17,696	-	6,763	3,825	1,030	449	38,299
부산	3,512,547	4,763	507	6,086	-	3,508	1,898	228	128	17,118
대구	2,456,016	1,788	248	5,054	-	2,254	1,276	71	91	10,782
인천	2,517,680	1,872	141	5,344	-	1,972	1,044	128	79	10,580
광주	1,413,644	625	59	3,545	-	1,309	752	124	41	6,455
대전	1,438,551	1,010	89	2,228	-	1,177	601	87	62	5,254
울산	1,044,934	1,018	115	1,993	-	1,190	496	63	38	4,913
경기	10,341,006	6,657	679	15,722	3,953	7,308	3,446	736	342	38,843
강원	1,460,770	2,114	454	3,126	1,277	1,077	856	64	48	9,016
충북	1,453,872	934	301	2,361	1,074	1,130	744	119	32	6,695
충남	1,879,417	1,077	275	3,314	1,521	1,484	1,032	59	67	8,829
전북	1,778,879	1,135	153	2,742	1,088	1,048	1,043	52	45	7,306
전남	1,815,174	2,274	304	3,546	1,503	1,254	1,285	103	27	10,296
경북	2,594,719	2,193	561	5,313	2,821	2,060	1,552	63	60	14,623
경남	3,040,993	4,005	588	5,351	2,518	2,619	1,685	71	117	16,954
제주	530,686	1,397	123	981	410	492	274	46	30	3,753
합계	47,041,434	40,508	5,487	84,402	16,165	36,645	21,809	3,044	1,656	209,716

유흥업종 사업체의 실질적인 밀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 IV-2>는 전국 시도별 사업체수의 인구 1,000명당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수준에서 인구 비례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로 인구 1,000명당 7.07개 업소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강원도가 6.17, 전라남도 5.67, 경상북도 5.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대전이 3.65개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lt;표 IV-2&gt; 8개 유흥업종의 시도별 분포(1천명당 사업체수)

(단위 : 개)

구분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간이 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합계
서울	0.78	0.09	1.81	-	0.69	0.39	0.11	0.05	3.92
부산	1.36	0.14	1.73	-	1.00	0.54	0.06	0.04	4.87
대구	0.73	0.10	2.06	-	0.92	0.52	0.03	0.04	4.39
인천	0.74	0.06	2.12	-	0.78	0.41	0.05	0.03	4.20
광주	0.44	0.04	2.51	-	0.93	0.53	0.09	0.03	4.57
대전	0.70	0.06	1.55	-	0.82	0.42	0.06	0.04	3.65
울산	0.97	0.11	1.91	-	1.14	0.47	0.06	0.04	4.70
경기	0.64	0.07	1.52	0.38	0.71	0.33	0.07	0.03	3.76
강원	1.45	0.31	2.14	0.87	0.74	0.59	0.04	0.03	6.17
충북	0.64	0.21	1.62	0.74	0.78	0.51	0.08	0.02	4.60
충남	0.57	0.15	1.76	0.81	0.79	0.55	0.03	0.04	4.70
전북	0.64	0.09	1.54	0.61	0.59	0.59	0.03	0.03	4.11
전남	1.25	0.17	1.95	0.83	0.69	0.71	0.06	0.01	5.67
경북	0.85	0.22	2.05	1.09	0.79	0.60	0.02	0.02	5.64
경남	1.32	0.19	1.76	0.83	0.86	0.55	0.02	0.04	5.58
제주	2.63	0.23	1.85	0.77	0.93	0.52	0.09	0.06	7.07
합계	0.86	0.12	1.79	0.34	0.78	0.46	0.06	0.04	4.46

8개 유흥업종의 분포 요약 자료를 살펴보면, 간이주점업이 40% 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유흥주점업(19.3%), 노래방(17.5%)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서는 사업체 수가 많은 간이주점업과 일반유흥주점업 종사자 규모가 많았으며, 사업체당 종사자 규모는 무도유흥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마사지업 등이 사업체당 평균 3명 이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 8개 유흥업종의 전국분포

업종(시점 : 2005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 비율(%)
일반유흥주점업	40,508	150,028(3.70)	19.3
무도유흥주점업	5,487	23,016(4.19)	2.6
간이주점업	84,402	155,734(1.85)	40.2
다방	16,165	34,982(2.16)	7.7
노래방	36,645	60,747(1.66)	17.5
이용업	21,809	28,660(1.31)	10.5
마사지업	3,044	9,458(3.11)	1.5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1,656	3,830(2.31)	0.8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괄호안의 숫자는 사업체당 종사자수(여기에는 성매매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수가 모두 포함됨).

### 나. 업종별/지역별 유흥업소 현황

#### 1) 일반유흥주점업

<표 IV-4>는 일반유흥주점의 16개 시도별 분포이다. 서울의 일반유흥주점 사업체가 7,646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6,657개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가 일반유흥주점 비율이 1.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 일반유흥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7,646	29,822	18.88	강 원 도	2,114	7,471	5.22
부산광역시	4,763	16,643	11.76	충 청 북 도	934	4,185	2.31
대구광역시	1,788	6,972	4.41	충 청 남 도	1,077	3,372	2.66
인천광역시	1,872	6,804	4.62	전 라 북 도	1,135	3,895	2.80
광주광역시	625	2,344	1.54	전 라 남 도	2,274	7,128	5.61
대전광역시	1,010	4,560	2.49	경 상 북 도	2,193	6,225	5.41
울산광역시	1,018	3,487	2.51	경 상 남 도	4,005	13,764	9.89
경 기 도	6,657	28,390	16.43	제 주 특별자치도	1,397	4,966	3.45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2)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에도 일반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서울(16.2%)과 경기(12.4%) 지역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10.7%)와 경상북도(10.2%)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무도유흥주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무도유흥주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lt;표 IV-5&gt; 무도유흥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890	5,569	16.22	강 원 도	454	1,308	8.27
부산광역시	507	2,166	9.24	충 청 북 도	301	872	5.49
대구광역시	248	1,314	4.52	충 청 남 도	275	784	5.01
인천광역시	141	831	2.57	전 라 북 도	153	473	2.79
광주광역시	59	385	1.08	전 라 남 도	304	838	5.54
대전광역시	89	423	1.62	경 상 북 도	561	1,519	10.22
울산광역시	115	596	2.10	경 상 남 도	588	1,802	10.72
경 기 도	679	3,589	12.37	제주특별자치도	123	547	2.24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3) 간이주점업

간이주점업은 8개 업종 중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 서울(21.1%)과 경기(18.6%)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사업체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 인천, 경북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가 1%대로 간이주점업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울산, 대전, 충북 등이 3% 미만의 사업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6> 간이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17,696	37,489	20.97	강 원 도	3,126	4,991	3.70
부산광역시	6,086	10,995	7.21	충 청 북 도	2,361	3,941	2.80
대구광역시	5,054	9,301	5.99	충 청 남 도	3,314	5,616	3.93
인천광역시	5,344	9,579	6.33	전 라 북 도	2,742	4,675	3.25
광주광역시	3,545	6,861	4.20	전 라 남 도	3,546	5,488	4.20
대전광역시	2,228	4,349	2.64	경 상 북 도	5,313	8,434	6.29
울산광역시	1,993	3,219	2.36	경 상 남 도	5,351	8,899	6.34
경 기 도	15,722	30,037	18.63	제주특별자치도	981	1,860	1.16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4) 다방운영업

검업형 조사에서 다방의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만 해당되었다. 따라서, 다방운영업의 분포도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도지역의 분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경기도가 24.5%로 가장 다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2.5%)와 충청북도(6.6%)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lt;표 IV-7&gt; 다방운영업의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경기도	3,953	8,908	24.45
강원도	1,277	2,869	7.90
충청북도	1,074	2,322	6.64
충청남도	1,521	3,424	9.41
전라북도	1,088	1,839	6.73
전라남도	1,503	3,281	9.30
경상북도	2,821	6,377	17.45
경상남도	2,518	5,030	15.58
제주특별자치도	410	932	2.54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5) 노래방운영업

아래의 표는 노래방의 전국 분포 현황이다. 노래방의 경우, 경기도가 약 2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1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 등이 7%대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제주도(1.3%), 강원도(2.9%) 등은 3%대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노래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IV-8> 노래방운영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6,763	11,678	18.46	강 원 도	1,077	1,682	2.94
부산광역시	3,508	5,774	9.57	충 청 북 도	1,130	1,800	3.08
대구광역시	2,254	3,845	6.15	충 청 남 도	1,484	2,551	4.05
인천광역시	1,972	3,109	5.38	전 라 북 도	1,048	1,735	2.86
광주광역시	1,309	2,236	3.57	전 라 남 도	1,254	1,983	3.42
대전광역시	1,177	1,915	3.21	경 상 북 도	2,060	3,196	5.62
울산광역시	1,190	2,055	3.25	경 상 남 도	2,619	4,084	7.15
경 기 도	7,308	12,348	19.94	제주특별자치도	492	756	1.34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6) 이용업

이용업의 경우 서울(17.5%), 경기(15.8%), 부산(8.7%)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제주(1.3%), 울산(2.3%), 대전(2.8%)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lt;표 IV-9&gt; 이용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3,825	5,742	17.54	강 원 도	856	1,020	3.92
부산광역시	1,898	2,484	8.70	충 청 북 도	744	851	3.41
대구광역시	1,276	1,682	5.85	충 청 남 도	1,032	1,168	4.73
인천광역시	1,044	1,401	4.79	전 라 북 도	1,043	1,231	4.78
광주광역시	752	998	3.45	전 라 남 도	1,285	1,558	5.89
대전광역시	601	724	2.76	경 상 북 도	1,552	1,804	7.12
울산광역시	496	715	2.27	경 상 남 도	1,685	2,131	7.73
경 기 도	3,446	4,765	15.80	제주특별자치도	274	386	1.26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7) 마사지업

마사지업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 마사지 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7.5%), 인천(4.2%), 광주(4.1%) 등 상대적으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1.5%), 전북(1.7%), 충남(1.9%) 등은 2%대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10> 마사지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1,030	3,540	33.84	강 원 도	64	155	2.10
부산광역시	228	502	7.49	충 청 북 도	119	354	3.91
대구광역시	71	187	2.33	충 청 남 도	59	170	1.94
인천광역시	128	376	4.20	전 라 북 도	52	120	1.71
광주광역시	124	356	4.07	전 라 남 도	103	250	3.38
대전광역시	87	275	2.86	경 상 북 도	63	149	2.07
울산광역시	63	164	2.07	경 상 남 도	71	179	2.33
경 기 도	736	2,579	24.18	제주특별자치도	46	102	1.51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8)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마지막으로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과 경상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라남도(1.6%), 제주도(1.8%), 충청북도(1.9%)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11>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비율(%)
서울특별시	449	1,282	27.11	강 원 도	48	101	2.90
부산광역시	128	330	7.73	충 청 북 도	32	66	1.93
대구광역시	91	193	5.50	충 청 남 도	67	152	4.05
인천광역시	79	154	4.77	전 라 북 도	45	77	2.72
광주광역시	41	73	2.48	전 라 남 도	27	48	1.63
대전광역시	62	119	3.74	경 상 북 도	60	111	3.62
울산광역시	38	73	2.29	경 상 남 도	117	224	7.07
경 기 도	342	781	20.65	제주특별자치도	30	46	1.81

\* 주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년)의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질 사업체 기준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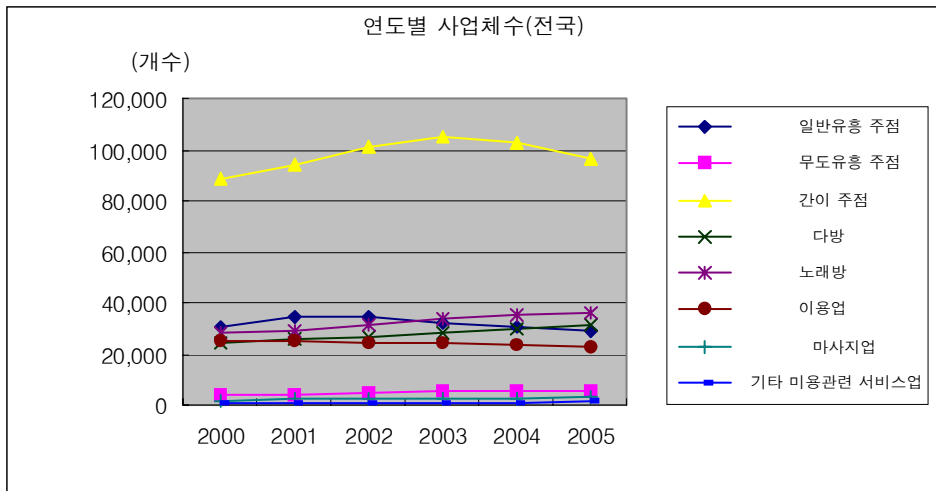
\*\* 주 : 전체 업체수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 2. 연도별 유흥업소 현황 변화

### 가. 업종별/연도별 유흥업소 현황 변화(전국)

이 절에서는 각 연도별로 8개 유흥업종의 사업체 수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업종별 증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성관련 유흥 산업의 변화 경향을 일정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사업체 수 관련 자료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2000~2005년 동안의 전국의 사업체 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V-1>과 같다. 무도유흥주점, 다방, 노래방,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이용업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일반유흥주점업소, 간이주점업소의 경우 각각 2001년, 2003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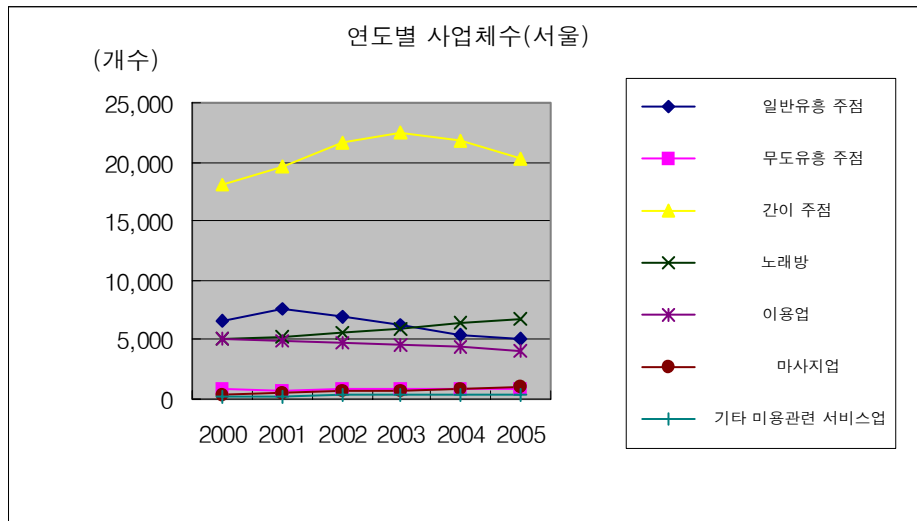


<그림 IV-1>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전국)

### 나. 업종별/연도별 사업체 현황 변화(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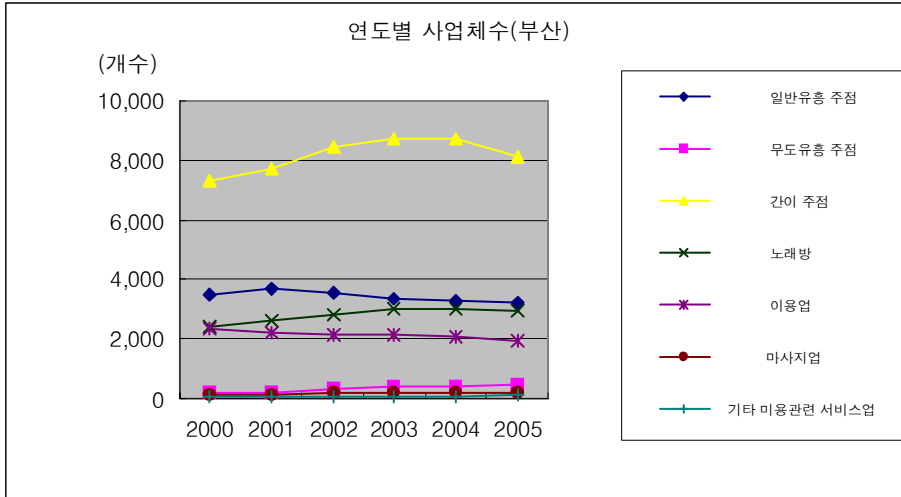
업종별, 연도별 8개 유흥업종의 사업체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의 경우 노래방, 마사지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이용업은 감소세

를 보였다. 일반유흥주점, 간이주점업의 경우 각각 2001년, 2003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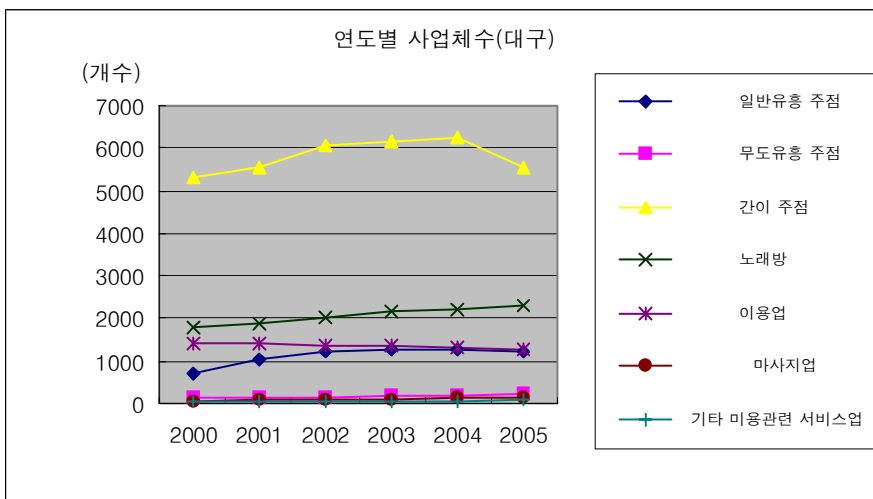
<그림 IV-2>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서울)

부산의 업종별 사업체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간이주점업, 노래방, 마사지업의 경우 각각 2004년, 2003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하였고, 일반유흥주점은 200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200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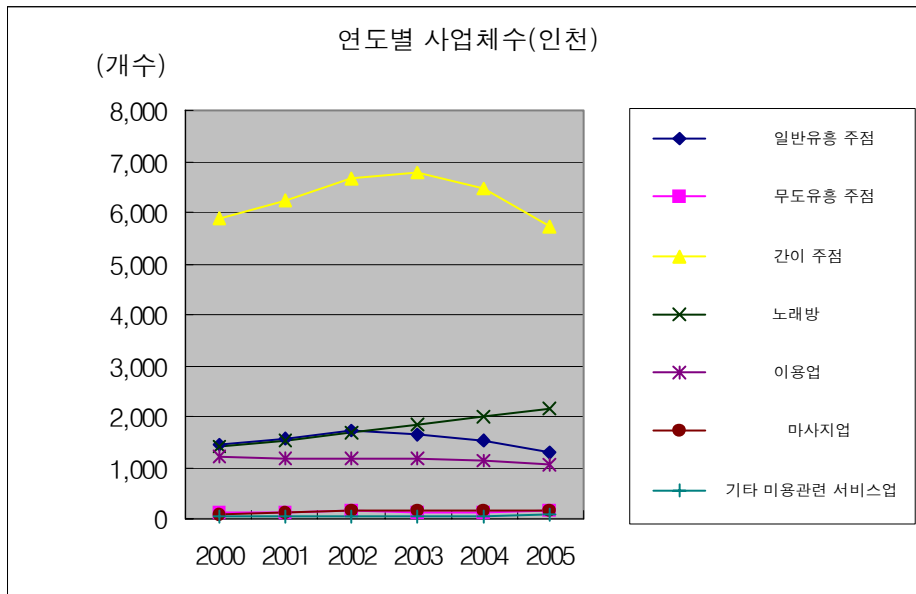
<그림 IV-3>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부산)

대구의 경우 노래방, 마사지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이용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유흥주점, 간이주점은 2004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무도유흥주점은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4년 이후 업소수가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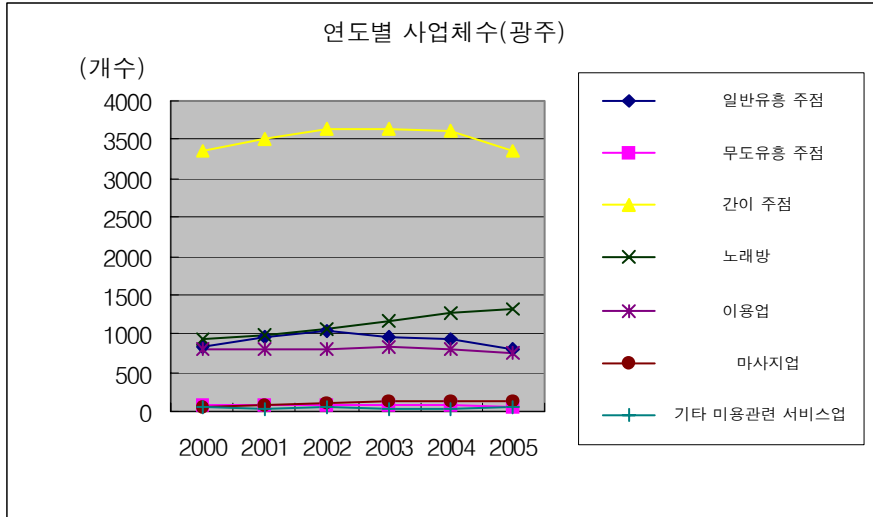
<그림 IV-4> 연도별 업종별 업체 현황(대구)

인천의 경우 노래방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 간이주점은 각각 2002년, 2003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를 보였고,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무도유흥주점, 마사지업, 이용업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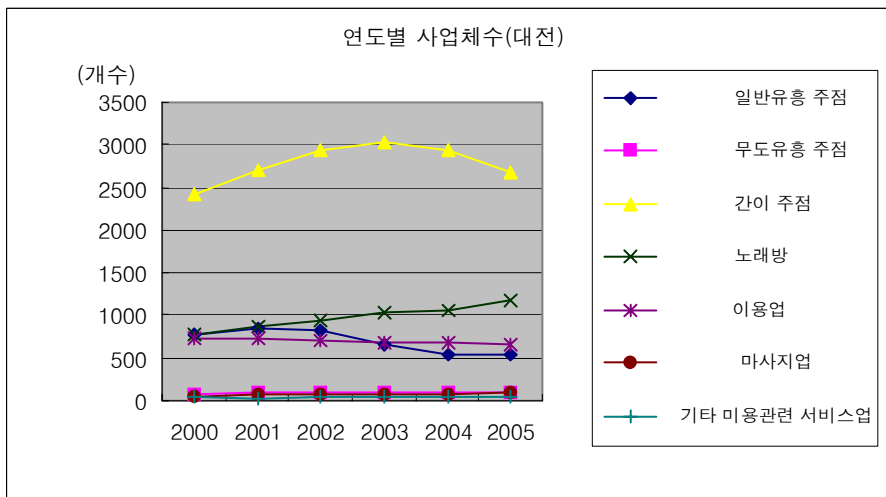
<그림 IV-5>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인천)

광주광역시의 경우 노래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200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마사지업은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용업, 간이주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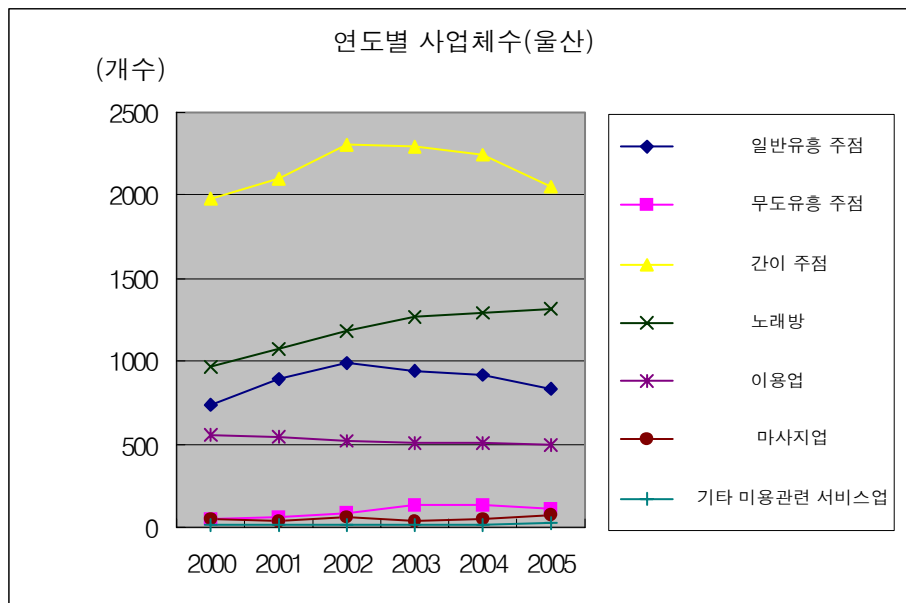
<그림 IV-6>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광주)

대전광역시의 경우 노래방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이용업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의 경우 200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하였고, 간이주점의 경우 2003년 이후 감소하였다. 무도유흥주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마사지업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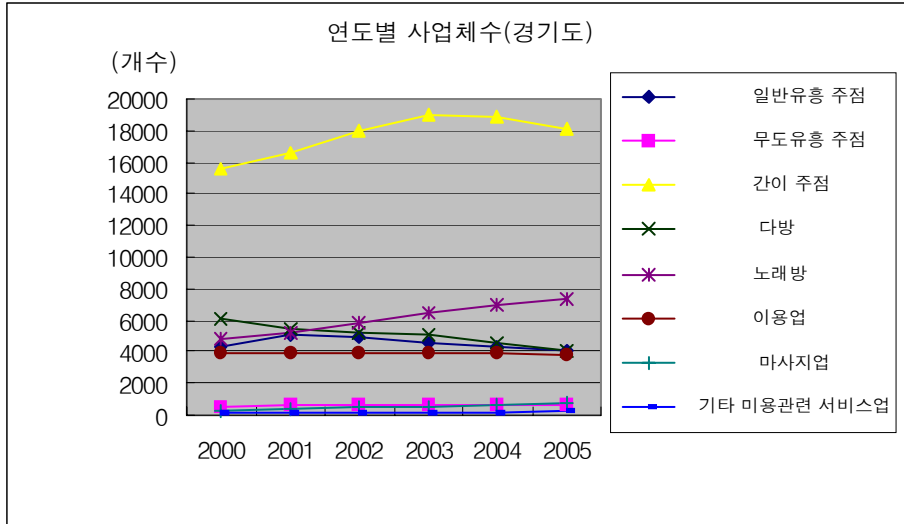
<그림 IV-7>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대전)

울산광역시는 노래방은 증가한 반면, 이용업의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희주점, 간이주점의 경우 2002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무도유희주점은 2004년 이후 감소하였다. 마사지업과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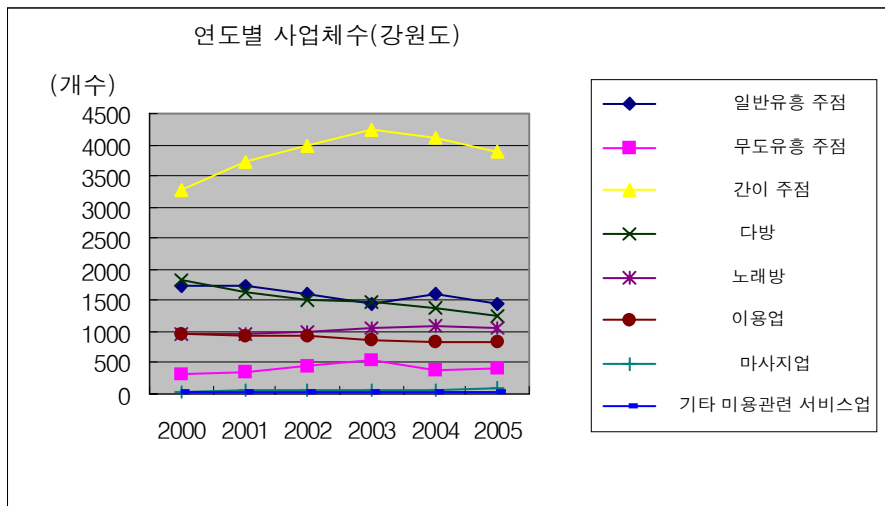
<그림 IV-8>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울산)

경기도에 위치한 노래방,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다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희주점의 경우 2001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이주점, 이용업은 2003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무도유희주점, 마사지업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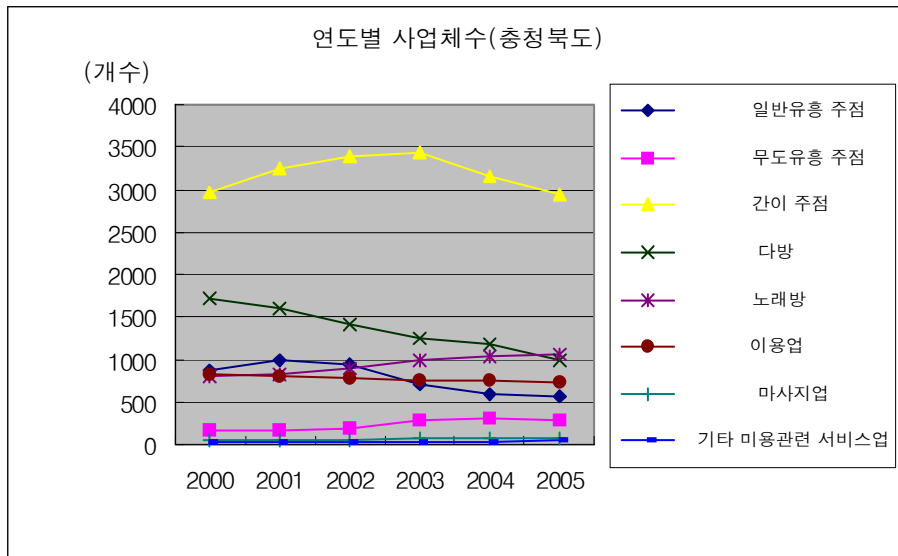
강원도의 마사지업소는 증가한 반면, 이용업, 다방은 감소하였다. 간이주점업의 경우 2003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노래방은 2004년 이후 감소하였다.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의 경우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0>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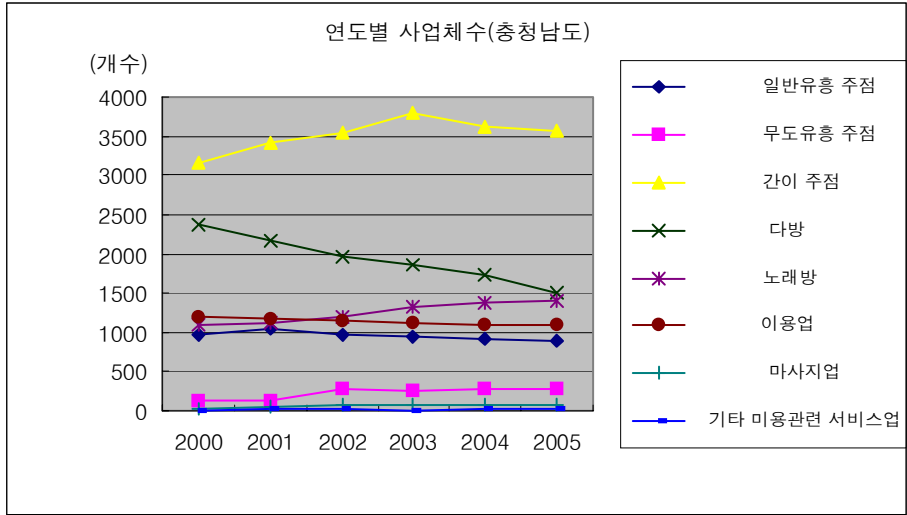


충청북도에 위치한 노래방, 마사지업소는 증가하였으며, 이용업, 다방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간이주점은 2003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무도유흥주점업소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는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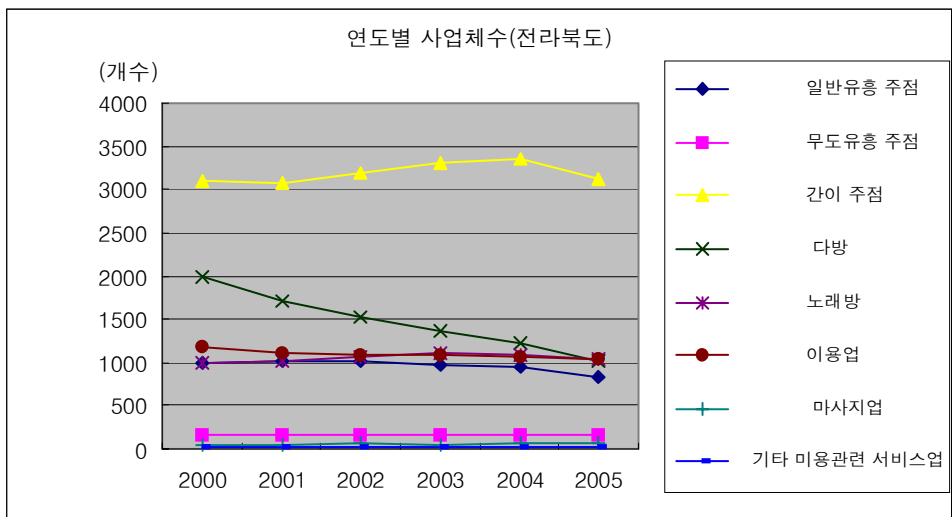
<그림 IV-11>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충북)

충청남도의 노래방, 마사지업소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용업, 다방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은 2001년 이후부터, 간이주점업의 경우 2003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었고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업소는 2004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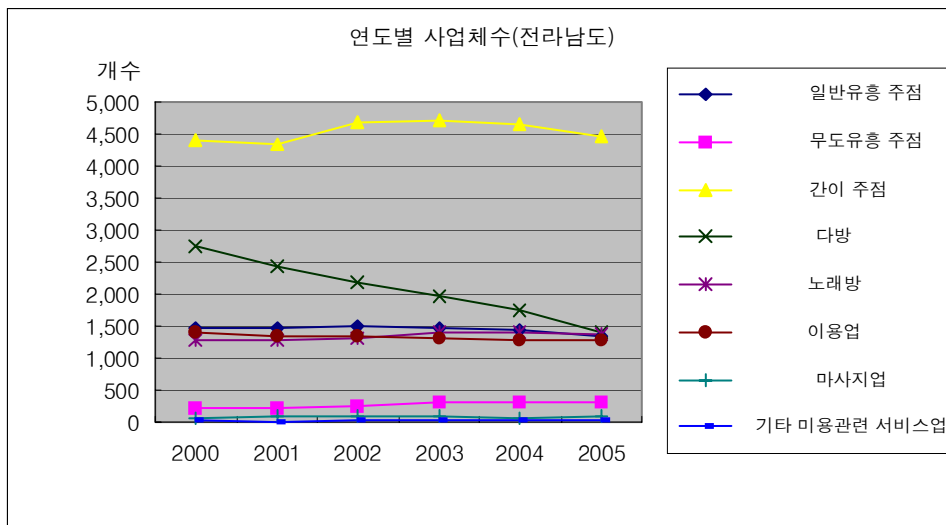
<그림 IV-12>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충남)

전라북도의 다방, 이용업 관련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유흥주점업소의 경우 2002년부터, 노래방은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무도유흥주점업소, 마사지업소, 간이주점업소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기타미용 관련 서비스 업소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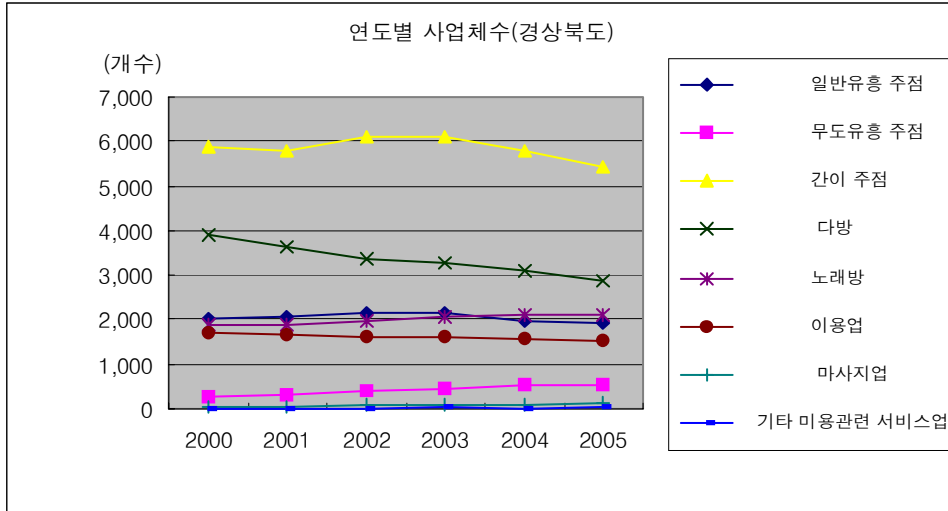
<그림 IV-13>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전북)

전라남도에 위치한 다방, 이용업 관련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업의 경우 증가하다 2002년부터,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 2004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마사지업소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간이주점 업소, 노래방,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업소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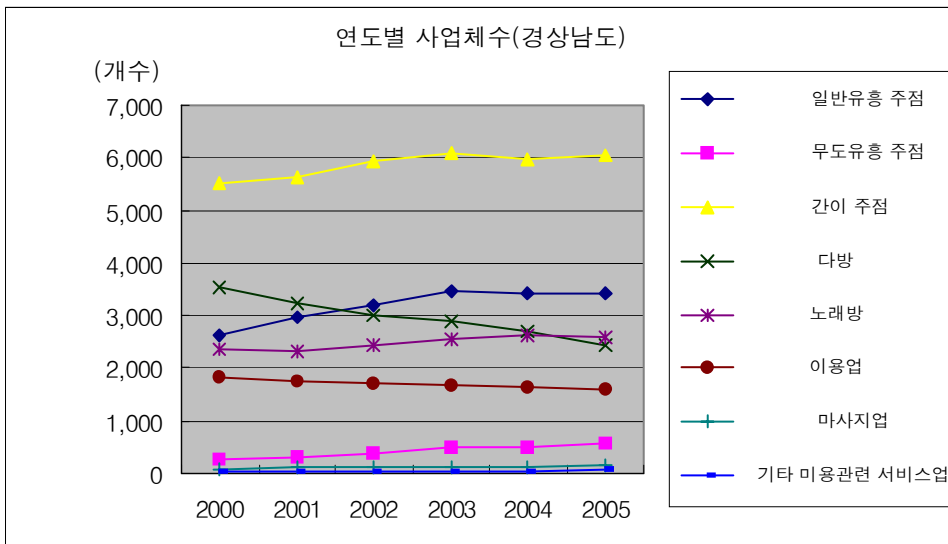
<그림 IV-14>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전남)

경상북도의 무도유흥주점업소, 노래방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다방, 이용업 관련 업소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흥주점업소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다 2002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마사지,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업소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4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간이주점 업소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다가 2004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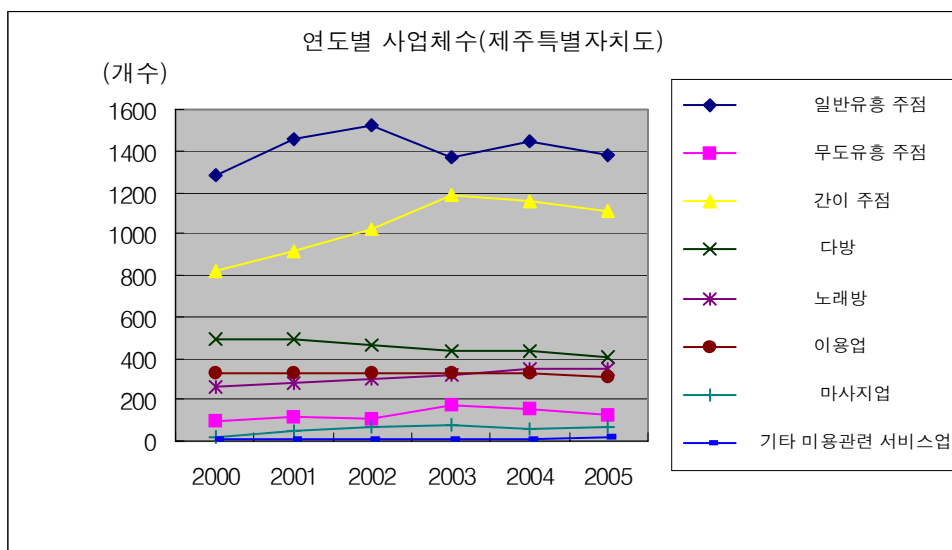
<그림 IV-15>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경북)

경상남도에 위치한 간이주점업소, 일반유흥주점업소, 무도유흥주점업소, 노래방, 마사지업소,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업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방, 이용업 관련 업소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경남)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노래방,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 마사지업소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방은 감소하였다. 무도유희주점업소, 간이주점업소는 2003년 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용업 관련 업소는 2004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희주점업소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7> 연도별 업종별 사업체 현황(제주)

## 제2절 성매매의 경제규모

본 절에서는 앞의 3장에서 살펴본 전업형 및 겸업형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이용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각 성매매 유형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경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매매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매매 관련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는데, 지리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업형 및 각종별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겸업형, 그리고 전업형이나 겸업형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성매매의 경제규모 추정

#### 가. 전업형 성매매

전업형 집결지역의 연간 거래액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집결지역은 39개이며, 전체 업소수는 1,443개이며, 성매매여성 수는 3,644명으로 나타났다. 전업형 집결지역 업소들의 영업일수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00일로 가정하고, 연간 성구매자 수는 약 25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인 82,251원을 이용해 연간 거래액을 추정하면 약 2,068억 원으로 거래액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표 IV-12>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전업형)

구분	조사결과
지역 수(개)	39
전체 업소 수(개)	1,443
전체 성매매여성 수(명)	3,644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2.3
연간 성구매자 수(천명)	2,514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원)	82,251
연간 거래액(억원)	2,068

## 나. 겸업형 성매매

겸업형 8개 업종의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겸업형 8개 업종 전체 사업체 중에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적으로 약 44,804개이며,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151,803명으로 나타났다. 겸업형 업소들의 평균 영업일수는 본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330일(월평균 휴일 수 약 2일)로 가정을 할 경우, 연간 성구매자 수는 약 5,0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것을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과 곱해서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하면 전체적으로 약 7조 6,865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업이 4조 6,849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래방운영업이 약 1조 1,393억 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이 658억 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3>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명)	1일 전체 성구매자 수 (명)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 (만원)	1일 평균 성매매 거래액 (만원)	연간 성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 (억원)
일반유흥주점업	22,731	3.76	85,367	16.63	1,419,653	2,817	46,849
무도유흥주점업	3,074	2.70	8,314	19.37	161,042	274	5,314
간이주점업	2,310	3.19	7,375	15.00	110,625	243	3,651
다방운영업	4,585	1.99	9,139	10.00	91,390	302	3,016
노래방운영업	7,000	3.03	21,194	16.28	345,250	699	11,393
이용업	2,653	2.66	7,032	7.57	53,232	232	1,757
마사지업	1,880	6.00	11,282	11.35	128,051	372	4,227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571	3.68	2,100	9.50	19,950	69	658
합계	44,804	3.39	151,803	15.15	2,329,193	5,010	76,865

## 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본 조사에서는 전업형 집결지역과 겸업형 업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업형과 겸업형의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해서 전업형 집결지역과 겸업형 업소 외에 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은 출장마사지 등 비업소형 성매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이용한 성매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업형과 겸업형에 포함되지 않은 성매매 관련 부분을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규모 및 실태 관련한 통계자료는 수사/재판기록, 단속자료 이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sup>95)</sup> 이러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이 전체 성매매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전국 17개의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 사범(총 16,730건) 중 5% 임의표집 결과에서 추출한 성매매 단속 비율을 이용해 기타 성매매 유형의 비율을 추정하기로 하였다. 성매매 업소 단속 자료에서 기타 성매매에 해당하는 출장마사지 등 비업소형 형태, 그리고, 인터넷, 전화 등의 경로형 형태 등의 단속 비율이 약 44%<sup>96)</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영역의 비중으로 가정하고 전체 성매매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안정법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직업소개소 및 보도방은 제외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앞의 조사결과에서 추정한 전업형과 겸업형 결과,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영역의 규모 추정 결과는 다음 <표 IV-14>와 같다. 단, 기타 성매매 영역은 단속 비율을 반영하여 전체 성매매 규모의 44%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기획수사, 테마수사 등으로 인터넷 성매매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이 비율은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95) 200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타 성매매’ 추정근거로 2001년 성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결과를 통해 기타 유형이 전체 성매매 범죄단속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추정 유형은 전자형(출장마사지, 전화방, PC방) 및 비업소형(고객의 집, 사무실, 차), 그리고 ‘기타/미상’의 3가지 유형이었으며, 관련법으로는 유흥행위등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삼았다(pp.355~356)

96) 단속 비율 관련 자료는 본문 제6장 제3절에 나오는 <표 VI-15> 자료를 참고할 것. 기타 성매매에 해당하는 유형은 비업소형, 경로형, 기타, 미상이며, 비업소형 23건, 경로형 255건, 기타 36건, 미상 10건으로 총 324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등과 청소년성보호법등에 근거한 전체 727건 중에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4.6%로 산출되어 이를 약 44%로 추정하고자 한다.



&lt;표 IV-14&gt; 성매매 규모 추정

	업소수(개)	성매매 여성수(명)	연간 성구매자수(만명)	연간 거래액(억원)
전 업 형	1,443	3,644	251	2,068
겸 업 형	44,804	147,392	5,010	76,865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	118,671	4,134	62,019
합 계	46,247	269,707	9,395	140,952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여성수, 성구매자수, 연간 거래액의 경우, 단속실적 비율을 고려해서 전체 합계의 44%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값이다.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비업소형이나 경로형 등의 유형으로 업소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업소 수는 추정하지 않았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업형과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 규모는 46,000여 개 수준이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규모는 약 270,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여성 수는 약 120,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성구매자 수는 약 9,395만 명이며, 성매매로 인한 연간 거래액은 약 14조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기타 성매매 중 인터넷 성매매 규모를 <표 VI-15>의 '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의 유형'에 의거하여 추정할 경우, 종사 여성 수는 83,070명, 연간 성구매자 수는 2,894만 명, 연간 거래액은 4조 3,4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sup>97)</sup>

## 2. 성매매 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평가

앞에서 살펴본 성매매 관련 산업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업소수는 46,247개(기타 성매매 제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수 약 300만개(2005년 기준)의 약 1.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sup>98)</sup> 한편, 성매매여성의 수는 약 27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

97) 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 유형에 의하면 인터넷 성매매는 경로형의 인터넷채팅에 속하며, 이는 성매매매처벌법등 위반건수 145건, 청소년성보호등 위반건수는 80건으로 총 225건이며, 경로형의 약 70%에 해당한다.

98) 2002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성매매 사업체 규모(기타 성매매 포함)는 중소기업 수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나라 20~30대 여성 인구 7,642천명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이러한 규모는 같은 연령대의 취업여성 인구 약 430만 명의 약 6.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sup>99)</sup>

다음으로 연간 성구매자의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20~64세 남성 약 2,434만 명 중에서 약 20%가 1년에 한번 성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이 20%의 남성 성인인구가 월평균 1.6회 정도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규모에 해당한다.<sup>100)</sup> 이러한 성산업 거래액 규모는 약 14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것은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847조 9,000억 원의 약 1.7%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sup>101)</sup>

---

99) 2002년 실태조사의 경우, 20~30대 여성인구의 4.1%, 같은 연령대 취업 여성인구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100) 성인 남성 인구의 20%로 가정한 것은 2002년 실태조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2년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02년의 경우 20%의 남성이 월평균 4.5회 정도 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 2002년의 GDP 대비 비율은 약 4.1%로 나타났다.

### 제3절 성매매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1.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의의 및 효과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경제의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른 경우나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외부불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세나 부담금, 혹은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한다. 성공적인 정책 수단 선택 및 시행은 정책 목표인 사회적 순손실을 감소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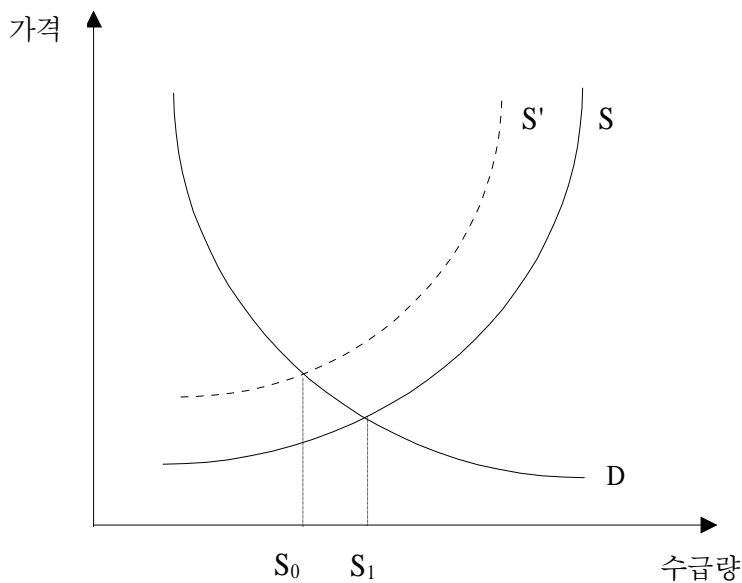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은 특정 민간 서비스 산업에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태, 과도한 음주 및 부작용, 비합법적 조세 관행 등의 사회적 손실 혹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외부성을 교정하는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규제 강화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된 산업의 위축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킨다. 해당 서비스 산업의 위축이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후생의 규모에 비하여 적다면 이러한 규제정책은 경제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특정 서비스업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익은 상대적으로 추정이 용이하지만, 사회적 손익은 대부분 화폐를 통하여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손익을 먼저 추정한 후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다단계 평가를 통하여 사회적 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은 사적한계비용에 따른 성매매처벌법 관련 민간서비스의 시장공급곡선 및 수요곡선을 설명하고 있다. 민간서비스업의 사적인 공급곡선을  $S$ , 사회적 한계비용에 따른 공급곡선을  $S'$ 라고 할 때, 별도의 정부개입이 없으면 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공급량( $S_0$ )을 초과하는 수준( $S_1$ )으로 공급되지만,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규제정책을 통하여 공급곡선을 좌측 방향인  $S'$ 로 이동시키게 되면 적정 사회적공급량( $S_0$ )만큼 해당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전체 혹은 제삼자가 입는 피해를 보상하

거나 그 행위를 줄일 목적으로 부과되는 규제정책으로서 성매매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보다 적절한 수준이나 성격으로 유흥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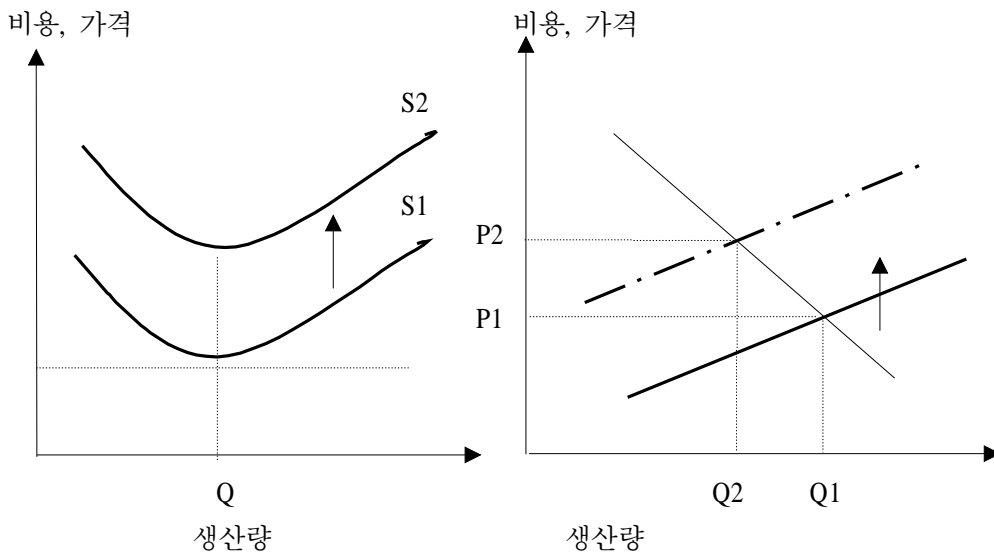


<그림 IV-18>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는 성매매처벌법 규제의 효과

그러나 실제 사회적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중복 성격의 규제정책은 <그림 IV-18>의 공급곡선 S'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과소 수준의 서비스 공급량을 초래하는 한편, 전반적인 후생의 저하를 야기한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이 갖는 경제적 규제 정책으로서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한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 정책으로서 성매매처벌법은 이러한 순경제적 손실 가능성 문제를 인식하고, 성매매처벌법 내부의 규제 수준 조절 등의 조치를 통하여 공급곡선을 적절한 선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경제 전체의 후생증대를 달성하는 경제적 의의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규제정책의 시행과 피규제자의 준수 및 이행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개별 경제주체, 특히 개별 성매매 관련 산업, 단란주

점업, 마사지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의 서비스 공급방식 및 서비스 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내 서비스 산업경쟁력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소 규제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기존의 사회적 손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IV-19> 규제 준수비용 증가의 영향

과도한 규제는 해당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단위비용을 상승시킨다. 민간 서비스 부문의 규제 준수비용 증가는 관련 투자 및 경상지출이 발생함으로써 개별 기업 혹은 산업 전체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일부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거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강구한다. 즉, 단기적으로 <그림 IV-19>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평균비용곡선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러한 규제정책 준수비용의 증가로 인한 단기 평균비용곡선의 증가는 완전경쟁시장 및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장기적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특정 서비스 산업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경우 <그림 IV-19>의 오른쪽

그림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장기공급곡선의 상향이동을 유발한다.(S1→S2) 또한, 해당 최종제품의 가격 상승(P1→P2)과 생산량 감소(Q1→Q2)를 초래한다.

## 2.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 가. 기본 방법론

성매매 관련 산업과 같은 특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효과의 정량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규제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부분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효과는 개별산업에 대한 개별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총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 전체의 효과를 일반 균형적 측면에서 시산하여야 한다.

한편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성매매처벌법과 같이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편익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비용이 최소화 되는 경우를 검토하는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적용하기도 한다. CEA는 규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규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비교 및 평가결과를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사회규제의 효과로 나타나는 비용 및 편익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경제주체별 범위 및 구분에 따라 효과규모 추정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 산업에 대한 특정 규제 개혁의 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간적 범위인 기준연도 혹은 규제개혁시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성매매처벌법의 경우에는 2004년 하반기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4년을 기준연도로 2005년 및 그 이후를 비교대상 연도로 설정할 수 있다. 규제정책의 과급 범위는 공간적으로 특정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나 국내 경제 전체를 가정할 수 있고, 경제주체별 구분은 주로 특정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균형적인 효과분석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내 경제 전체의 개별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도 포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우선 비교적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적 연구 방식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장점은 자료의 정량적 데이터의 확보로 효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대상 범위 선정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된 주요 산업에 대하여 일차적 효과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정량적 분석 가능 분야와 정성적 분석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우선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용편익분석 등을 적용하고, 정성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서베이 등 1차 조사방법론과 성매매처벌법 정책효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대표 대리변수(proxy)를 적용한다.

이후 최종 결과로 다기준 방식을 응용하여 정량적 분석 결과의 합계를 제시하고, 정성적인 분석 결과는 보완적, 추가적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 범위 선정의 장점은 성매매처벌법 정책 효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방대한 데이터와 시간 소요, 관련 분야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의 긴밀한 협조 등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분석범위가 설정되면, 다양한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산업과 경제전체에 긍정적(혹은 중립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각각, 2004년과 2005년 및 이후)의 경제적 성과가 이러한 규제개혁에 의하여 이미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서비스업의 경제적 변화는 이러한 비교연도에 규제개혁의 영향을 이미 포함하였다고 가정되는 실적과 비교연도에 수행된 규제개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추정되는 가상의 경제적 실적과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아래의 식 (1)과 <그림 IV-20>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현된 경제적 성과와 가상의 기준안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규제 개혁의 효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성매매 관련 산업 및 경제 전체 효과

=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성과 -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산업별) 경제적 성과)

=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편익 -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비용) (1)

#### 나. 일반균형방식에 의한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효과 추정

특정 정책수행으로 발생하는 거시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산업연관분석, CGE(연산일반모형) 혹은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매매처벌법의 일차적인 효과(비용, 편익항목 추정치)가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경우, 총생산, 부가가치, 투자, 고용, 재정관련 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 내 구조의 변화 등이 도출된다. 경제전체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전체의 산업부문을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전력부문으로 설정하여 세분화된 일반균형모형을 채택하여 구성한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 접근으로는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거시경제분석(Macro-econometric model), 투입-산출분석(Static input-output model), 세대 간 최적화모형분석(Intertemporal optimization analysis), 앞의 접근방식이 부분적으로 채택되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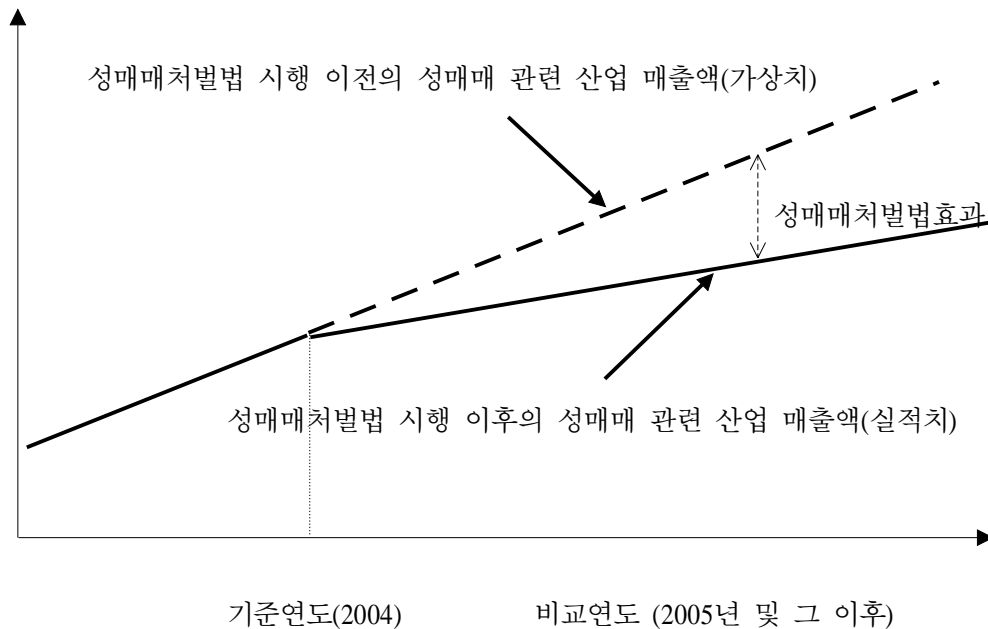
거시경제 계량모형은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경제와 외부충격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접근방식은 특히 경제주체의 종합적인 행위(aggregate behavior)와 반복되는 추세(secular trends) 분석을 효과적으로 모형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산업의 부문선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수추정을 위하여 방대한 양의 과거자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분화된 산업부문의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투입산출모형은 기본적으로 정태적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산업부문간 중간투입재의 기술적 관계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직



접, 간접, 유발효과를 통하여 분석하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대하여 용이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계산가능한 일반모형은 경제의 모든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소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경제구조를 설명하는 모형구조이다. 이 접근방식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에 기초하여 경제전체의 일반균형의 해를 도출하고 산업부문별로도 비교적 세분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특정서비스산업 (성매매 관련 산업 등) 매출



<그림 IV-21> 성매매처벌법 시행 효과 분석 개념도

그러나 기준연도의 일반균형 모형구성에 따른 모수추정을 위하여 세밀한 기준연도 균형달성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기초통계가 미흡한 국가, 가격기구의 왜곡이 심한 국가 등에 대한 실제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는 자료의 부족과 기본가정의 위배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수리적 계획모형은 기업, 산업, 경제전체 단위로 최적화 과정을 전제로 경제구조를 설명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은 최적화 과정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부문별로 세밀한 목표지향적인 정책대안 (target-oriented policies)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유용한 방식이다. 또한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도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CGE 모형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량의 자료를 가지고 시나리오별로 신축적인 모의시행이 가능하다. 투입산출모형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충격에 대해 승수효과 등 일관된 파급영향을 제시하는데 비해 최적화 계획모형은 경제전체의 각 부문이 목적함수의 도입과 외생적인 충격의 제약식 설정을 통해 비용최소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균형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시행이 미치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파일럿 자료를 토대로 특정 서비스의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산업연관분석

한 경제내의 개별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상호거래를 통하여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변수나 특정산업의 변화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각 산업간에 이루어지는 원재료의 매매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한 통계체계이다. 즉 한 경제체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개별산업이 경제 내의 다른 산업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에서는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 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기록한다.

<표 IV-15>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의 기본적인 항목과 개별항목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부문간의 거래내역인  $x_{ij}$ 는  $i$  산업이  $j$  산업에게 공급하는  $i$  산업의 제품을 의미한다. 만일  $i$  산업이 음식점업 가운데 주류업이고  $j$  산업이 성매매 관련 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주류제품을 성매매 관련 산업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때 해당 거래 내역이  $x_{ij}$ 에 기재된다. 이러한 모든 산업

간 중간 거래는 행과 열의 합계를 통하여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나타낸다. 최종 수요 항목에는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투자, 재고의 변화, 순수출(수출-수입) 등이 기재된다. 중간 수요의 합계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모두 포함하는 항목이 총산출이다. 부가가치 항목은 해당 산업의 노동 및 자본에 대한 보상인 임금과 이윤, 감가상각, 간접세 그리고 공제 항목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투입재 공급의 합계와 부가가치의 합계를 모두 포함하는 항목이 총투입을 나타내며 항상 총산출과 같은 값을 갖게된다. 여기서 언급하는 총산출 혹은 총투입이 해당 산업의 시장크기이다.

<표 IV-15>에서 1 산업의 크기는  $(\sum x_{11} x_{12} x_{13} \dots x_{1n} : \text{중간수요}) + Y_1(\text{최종수요}) - M_1(\text{수입})$ 가 되거나  $(\sum x_{11} x_{21} x_{31} \dots x_{n1} : \text{중간투입}) + v_1(\text{부가가치})$ 가 된다. 이들 모두의 결과는  $X_1$ 로 같게 된다. 즉  $X_1$ 은 1산업의 시장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경제현상이 주는 과급효과를 추정할 수도 있다. 특히 과급효과는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 거시경제변수와 개별산업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은 학술적, 정책적 목적(경제정책의 수립, 예측,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연관분석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정한 국제적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평가, 대외무역정책, 기술진보, 환경정책, 그리고 다양한 산업분석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의 최종수요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유사한 산업 혹은 상위 산업의 정보(예를 들면 중간투입계수 등)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종수요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sup>102)</sup>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해당 산업의 총규모(특히 최종수요 규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실제 분석에 있어서 관련 산업 혹은 상위산업의 중간투입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산업에 성매매 관련 산업이 구체적인 산업분류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음식점업’이라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때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의 대체적인 최종수요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확보되면 성매매 관련 산업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성매매 관련 산업 활동의 성격이 차상위의 산업활동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중간투입계수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즉 <표 IV-15>에서 기존 n개의 산업부문 이외에 n+1 번째 산업으로 성매매 관련 산업을 정의·설정한 다음 기존 산업 가운데 가장 유사한 산업 혹은 여타 적용이 가능한 산업의 계수를 그대로 이용하여 새로운 성매매 관련 산업의 행과 열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과 성매매 관련 산업은 투입구조는 동일하다. 아래 식에서 중간투입계수  $a_{1a}(=A_{1a}/X_{1a})$ 와  $a_{1b}(=A_{1b}/X_{1b})$ 의 값은 서로 같다는 의미이다.

$$A_1 = A_{1a} + A_{1b}, Y_1 = Y_{1a} + Y_{1b}, VA_1 = VA_{1a} + VA_{1b}$$

A: 중간거래, Y: 최종수요, VA: 부가가치

1: 음식점업

1a: 음식점업 -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

1b: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

둘째, 새로운 산업의 정보(예를 들면 투입계수)를 추출·사용하는 방식이다. 물

102)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산업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기도 한다.

론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을 기존 상위 산업에서 분리할 경우,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고유한 중간투입관계와 최종수요 그리고 부가가치에 대한 가정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행과 열을 도출한 다음 이를 기존 상위개념의 산업(운동 및 경기단체)에서 차감하여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결과적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성매매 관련 산업 등에 의해 기존 산업의 투입구조가 다소 변화하게 된다. 즉 위의 식에서 중간투입계수  $a_{1a}/X_{1a}$ 와  $a_{1b}/X_{1b}$ 의 값은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두 번째 접근이 보다 실사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산업분류에 따른 영향이 기존 산업과 새롭게 분리된 산업에 따라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추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추정은 상위산업의 중간투입계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추정작업에서는 자료 요구량 증대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 3.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가.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을 전후하여 우리 경제는 1998년 IMF 이후 2000년대 초반의 반등에 의한 빠른 성장을 경험한 후 안정적 성장 단계로 진입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2001~2002년 기간 중 우리 경제는 명목 GDP 기준 연평균 6.83% 성장하였다. 한편 서비스업의 매출액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7.7% 증가하여 경제 전체에 비하여 조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IV-16&gt; 2005년 서비스업 및 성매매처벌법 관련 산업 주요 지표

산업별	사업체수 (천개)	종사자수 (천명)	남자 (천명)	여자 (천명)	매출액 (1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서비스산업	2,287	9,092	4,473	4,619	1,221,099	129,833
도매 및 소매업	828	2,366	1,293	1,074	497,781	50,232
숙박 및 음식점업	575	1,586	511	1,075	53,353	13,941
숙박업	43	141	67	74	7,101	1,328
관광 숙박시설	39	133	63	70	6,813	1,228
호텔업	1	36	22	15	3,717	266
여관업	27	65	25	40	1,919	858
휴양 콘도	0	9	6	3	768	-5
기타관광숙박	10	19	9	10	234	102
음식점업	532	1,445	443	1,002	46,253	12,613
주점업	117	274	82	192	8,113	2,669
일반유흥 주점	25	94	27	67	2,798	839
무도유흥 주점	5	20	10	10	641	183
간이 주점	87	161	45	115	4,673	1,648
오락, 문화 및 운동	117	370	226	144	31,036	4,487
영화, 방송 및 공연	5	63	42	22	10,096	790
기타오락, 문화/운동	112	307	185	123	20,940	3,697
마사지업	3	9	4	6	269	85

\*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추계」, 2006; 통계청, 「서비스사업체 총조사」, 2001, 2005.

&lt;표 IV-17&gt; 2001~2005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산업별	사업체수 (천개)	종사자수 (천명)	남자 (천명)	여자 (천명)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서비스산업	9.3	8.4	5.8	11.4	7.7	4.1
도매 및 소매업	-0.2	0.5	0.4	0.6	4.3	-1.4
숙박 및 음식점업	1.6	1.9	1.4	2.2	6.9	3.8
숙박업	5.6	2.6	2.8	2.4	1.6	-0.2
관광 숙박시설	4.4	1.9	2.0	1.8	1.0	-1.4
호텔업	-1.1	-4.6	-4.9	-4.3	-4.4	-12.2
여관업	1.8	1.8	3.5	0.9	6.1	2.9
휴양 콘도	13.6	12.9	12.4	13.8	18.0	
기타관광숙박	13.6	16.0	14.5	17.5	24.5	25.7
음식점업	1.3	1.9	1.2	2.2	7.8	4.3
주점업	1.8	0.4	0.0	0.6	4.9	3.1
일반유흥 주점	-2.4	-3.7	-4.3	-3.4	0.3	-1.5
무도유흥 주점	11.5	0.6	-1.1	2.6	-2.1	-6.8
간이 주점	2.8	3.2	3.4	3.2	9.6	7.5
오락, 문화 및 운동	3.9	6.3	4.4	9.8	9.2	1.0
영화, 방송 및 공연	1.2	4.5	2.4	9.5	8.1	-9.3
기타오락, 문화/운동	4.0	6.7	4.9	9.8	9.7	4.1
마사지업	17.7	14.6	15.4	14.1	18.5	13.8

2005년 기준 서비스 산업 전체의 경우 사업체 수는 총 237만 개, 고용인원 909만 명, 매출액 1,221조로 2001년 대비 연평균 각각 9.3%, 8.4%,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대상 관련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반성매매 관련 산업, 무도성매매 관련 산업 등은 매출액 기준 같은 기간 중 각각 0.3%, -2.1%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 수의 경우에는 -3.7%, 0.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 산업의 변화는 경기 변동에 따라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속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소비 지출 내부 구조의 변화 요인으로는 유흥주점에 대한 소비 비중이 기초적으로 감소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포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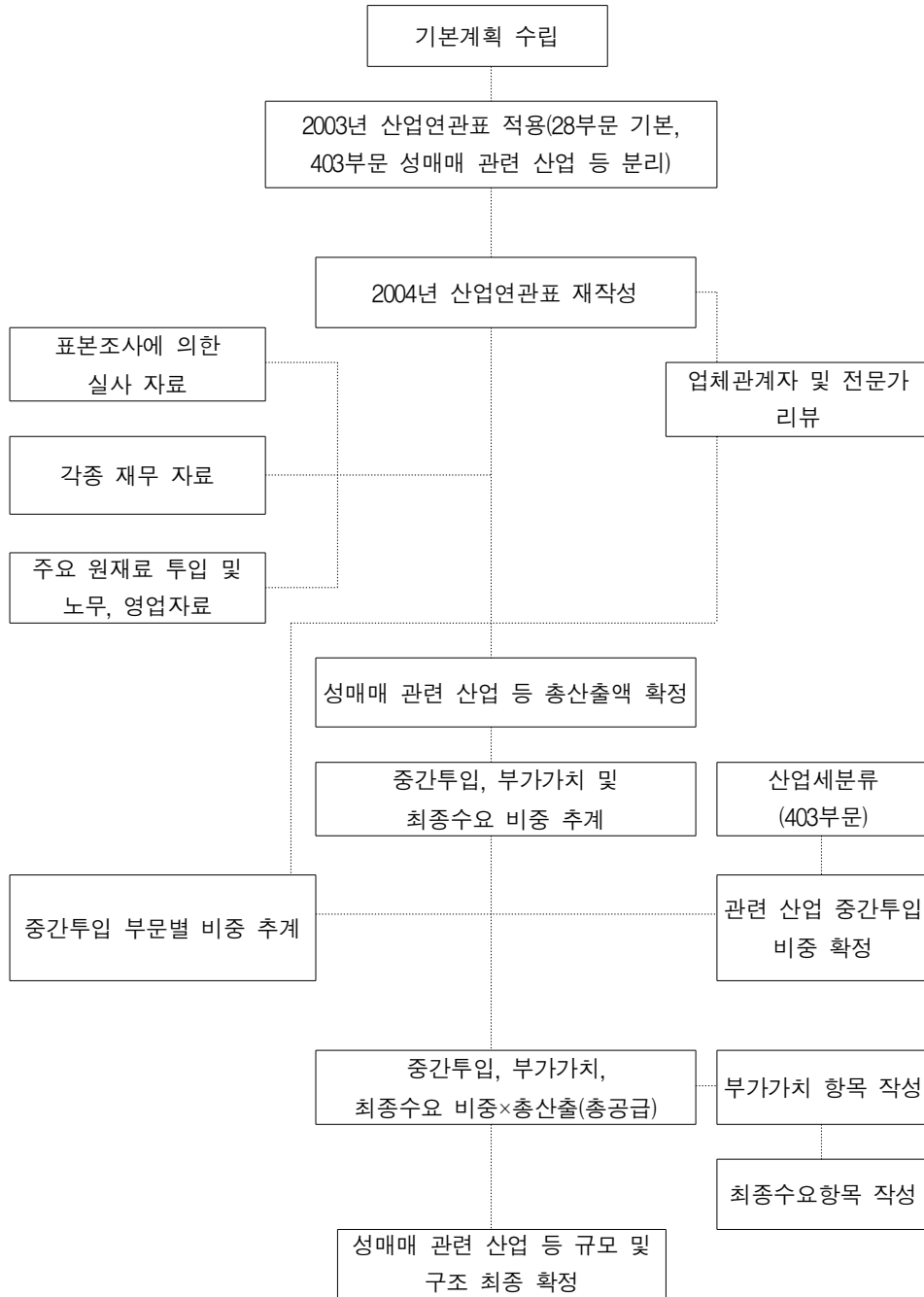
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자체의 업종전환, 유사 성매매 관련 산업 등으로의 대체 현상, 탈세를 목적으로 한 매출액 과소보고 가능성 등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규제 효과의 영향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시행대상이 되지만 구체적 규제 수단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마사지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사업체수, 고용인원, 매출액에 있어서 각각 17.7%, 14.6%, 18.5%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또한 오락 및 문화, 운동 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연평균 93.8%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관련 분야 혹은 대체 분야의 빠른 성장의 소비구조의 변화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규제 등으로 인한 서비스 개별 부문에 대한 비용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를 이용하여 성매매처벌법의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2005년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매출액 추이를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의 산업 활동 수준으로 가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매출액 하락이 발생한 부분을 다른 요인과 함께 성매매처벌법의 영향으로 가정하여 성매매처벌법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즉 앞서 제시된 <그림 IV-20>의 성매매처벌법 효과 부분을 시산하여 경제 전체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기본추세선상을 벗어나는 오차항의 증가를 효율성의 감소 혹은 규제효과의 영향으로 판단하는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의 기본 이론을 따르는 접근방법이다.

#### 나. 성매매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및 구조 분석과 조사방법

앞서 설명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성매매처벌법 경제적 효과 추정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에 대한 산업 분리 및 독자 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기본으로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성매매 관련 산업에 대한 실사자료(분석대상 연도의 매출활동, 투입 및 지출구조 등을 기준으로 설정)를 이용하여 국내 대상 업종 등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한다. 단계별 접근방법과 최종 결과는 각각 <그림 IV-2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22>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의 산업 구조 및 규모 추정방법

이 때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의 2003년 조사자료(2007년 발표)를 기준연도인 2004년으로 확장한 28부문 추계치에 성매매 관련 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작성된다.

조사 방법으로 첫째, 성매매 관련 산업의 전체의 매출액 변화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소매업 및 서비스 총조사의 대상업종의 매출액 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매출액 규모 및 구조변화의 실사 조사에 있어서는 성매매 관련 산업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표본 선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표본 추출이 필요하다. 이는 각 해당업종의 협회 등을 통하여 층화추출법에 의거한 표본을 선정하고 지역별, 업종별 개별기업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 다.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활동 변화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한 산업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이용한 경제 분석 방법이다. 앞 절에서 제시된 중간투입재를 이용하여 도출되는 각 산업부문의 원재료 투입구성비중인 투입계수의 산출로부터 산업연관분석이 시작되며 그 투입구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각 부문의 직·간접 생산과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단위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부가가치율(소득율)이라고 한다.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 매출 감소의 국민 경제적 효과는 최종수요의 감소, 혹은 해당 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GDP) 감소, 고용감소, 총산출액의 감소 등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상대적 물가변화효과,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국내생산과급효과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

발계수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 혹은 여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변화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X = (I - Ad) \cdot Yd$$

X: 산업별 생산액

Ad: 중간투입계수

Yd: 최종수요(투자, 소비, 수출 등)

최종수요가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과정도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유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 - Ad) \cdot Yd$ 형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부가가치 벡터를 V, 부가가치계수 행렬을 AV라고 하면  $V = AvX$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 - Ad) \cdot Yd$ 를 대입하면  $V = Av(I - Ad) \cdot Yd$ 의 식을 얻게 된다. 이 식에서  $Av(I - Ad) \cdot 1$ 을 부가가치 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며, 이  $Av(I - Ad) \cdot 1$ 형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낸다.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에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이나 노동의 산업간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매우 고용집약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등 사회 전체의 후생 및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의 산업활동 변화 혹은 위축은 국민경제 내 관련 산업 이탈이라는 산업연관효과를 의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에서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성매매 관련 산업에 대한 외생화가 필요하다. 이는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n \times n$  산업연관표를  $(n-1) \times (n-1)$  산업연관표로 재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특정 산업 k를 외생화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 k의 행과 열을 외생부분으로 새롭게 포함시키면 되는데, 이는 아래의 <표 IV-18>에 제시되어 있다.

$a_{ij}$ 를 투입계수라고 하면,  $X_{ij} = a_{ij} X_j$ 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부문별 총투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_{11}^d X_1 + a_{12}^d X_2 + \dots + a_{1n}^d X_n + a_{1k}^d X_k + F_1^d = X_1$$

.....

$$a_{n1}^d X_1 + a_{n2}^d X_2 + \dots + a_{nn}^d X_n + a_{nk}^d X_k + F_n^d = X_n \quad (1)$$

식(1)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d X + A_k^d X_k + F^d = X \quad (2)$$

<표 IV-18> 특정산업의 외생화를 위한 산업연관표 구조 분석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총 산출
						k산업	최종 수요		
국산품 중간 투입액	$X_{11}^d \dots X_{1,k-1}^d \dots X_{1,k+1}^d \dots X_{1n}^d$	$X_{1k}^d$	$F_1^d$		$X_1$				
	$X_{k-1,1}^d \dots X_{k-1,k-1}^d \dots X_{k-1,n}^d$	$X_{k-1,k}^d$	$F_{k-1}^d$		$X_{k-1}$				
	$X_{k+1,1}^d \dots X_{k+1,k+1}^d \dots X_{k+1,n}^d$	$X_{k+1,k}^d$	$F_{k+1}^d$		$X_{k+1}$				
	$X_{n1}^d \dots X_{n,k-1}^d \dots X_{n,k+1}^d \dots X_{nn}^d$	$X_{nk}^d$	$F_n^d$		$X_n$				
수입품 중간 투입액	$X_{11}^m \dots X_{1,k-1}^m \dots X_{1,k+1}^m \dots X_{1n}^m$	$X_{1k}^m$	$F_1^m$	$M_1$					
	$X_{k-1,1}^m \dots X_{k-1,k-1}^m \dots X_{k-1,n}^m$	$X_{k-1,k}^m$	$F_{k-1}^m$	$M_{k-1}$					
	$X_{k+1,1}^m \dots X_{k+1,k+1}^m \dots X_{k+1,n}^m$	$X_{k+1,k}^m$	$F_{k+1}^m$	$M_{k+1}$					
	$X_{n1}^m \dots X_{n,k-1}^m \dots X_{n,k+1}^m \dots X_{nn}^m$	$X_{nk}^m$	$F_n^m$	$M_n$					
k산업	$X_{k1} \dots X_{k,k-1} \dots X_{k,k+1} \dots X_{kn}$	$X_{kk}$	$F_k^d$		$X_k$				
부가 가치	$X_1^v \dots X_{k-1}^v \dots X_{k+1}^v \dots X_n^v$	$X_k^v$			$v$				
총투입	$X_1 \dots X_{k-1} \dots X_{k+1} \dots X_n$	$X_k$							

\* 자료: 한국은행,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002. 5  
 \* 주: 본 연구에서는 표에서 제시된 k산업을 성매매 관련 산업으로 가정함.

$$\text{단, } A^d = \begin{bmatrix} a_{11}^d & \cdots & a_{1n}^d \\ \cdots & \cdots & \cdots \\ a_{n1}^d & \cdots & a_{nn}^d \end{bmatrix}, \quad F^d = \begin{bmatrix} F_1^d \\ \cdots \\ F_n^d \end{bmatrix}, \quad X = \begin{bmatrix} X_1 \\ \cdots \\ X_n \end{bmatrix}, \quad A_k^d = \begin{bmatrix} a_{1k}^d \\ \cdots \\ a_{nk}^d \end{bmatrix}$$

다시 식(2)를 총투입 X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I - A^d)^{-1} (A_k^d X_k + F^d) \tag{3}$$

식(3)의  $(I - A^d)^{-1}$ 은 k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투입계수의 역행렬이고, k산업의 투입구조  $A_k^d$ 는 k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투입계수 벡터이다. 이때  $A_k^d X_k + F^d$ 는 k부문을 외생화할 경우의 전체 최종수요가 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외생화를 하지 않았을 때의 최종수요  $F^d$ 와 외생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k부문 구성요소의 최종수요 감소금액  $A_k^d X_k$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k부문을 외생화하여 전체구조에서 분리하면, k부문을 구성하는 각 투입요소의 최종수요가 k부문에 해당하는 만큼 더 감소하여야 한다.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인 k부문의 최종수요 감소로 인한 산업부문별 생산유발효과는 식(3)에서 최종수요( $F^d$ )를 0으로 함으로써 유도된다.

**라. 국민경제적 유발효과 실증 시나리오 분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된 겸업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산업부문은 대표적인 성매매 관련 산업으로 겸업형 표본조사 업종인 8개 관련 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노래방운영업, 다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산업은 3개 주점업을 포함하는 주점관련 산업과 5개 여타 산업을 포함하는 기타관련 산업 등 2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모집단 전체 규모로 상정하고 이 가운데 성매매 알선비율을 근거로

성매매 관련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파악되는 8개 산업의 전체 산업규모에 대하여 실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성매매 알선율을 곱하여 표준산업분류 상에 제시되는 일반 산업구분을 성매매와 관련되어 유효한 산업활동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8개 산업 가운데 특정산업의 총매출액(산출액)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성매매알선율이 0.5로 제시되면,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 특정산업의 성매매 관련산업으로서의 규모를 5천만 원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에 의거한 산업규모의 조정방식이다.

물론 산업의 성매매 관련성을 알선율로만 파악하는데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알선율 자체의 신뢰성 문제, 실제 알선하는 업체의 허위 매출 보고 등은 앞서 설명된 성매매 관련산업의 범위 규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 신뢰성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성매매 처벌법과 같은 규제의 효과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의 반응이 알선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알선을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인식과 반응이 알선을 하고 있는 업체로 간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충청권(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광역지구에 대하여 2004~2006년 매출액 변화와 매출구조, 투입 및 배분구조를 실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2004~2006년 전체 매출액 추정치와 2003년 산업연관표를 확장한 표를 이용하여 가상의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여 전체 규모를 도출하였다.<sup>103)</sup> 여기서 실사결과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 총 97개 개별 기업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58개가 본 연구의 실증결과 도출을 위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표본의 수는 4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추출된 58개 자료이다.

우선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비율을 적용한 성매매 관련 산업의 규모

103) 여기서는 2007년 12월 현재 2006년 기준 8개 업종의 총매출액 자료에 대한 공식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2004년과 2005년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8개 성매매 관련 산업의 모집단 전체 규모(알선율 적용 이전 총 산업규모)는 약 11조 7,8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본연구의 실사조사 결과에 의하여 획득된 개별 산업별 지역별 성매매 알선율을 적용하면 총 성매매 관련 산업의 규모는 약 2조 9,4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액 기준으로 성매매 관련 산업의 규모는 모집단 8개 산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 산업은 성매매처벌법 등 사회 규제의 강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산업으로 간주된다.

권역별, 산업대분류별로는 수도권의 주점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의 성매매 관련 산업의 규모가 감소하였다. 실사결과에 따른 2004년, 2006년 거래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2005년 기간에는 연간 4.5%, 2005~2006년 기간에는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서비스산업의 일반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 들어 일반 유흥주점업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주점업의 거래액 감소가 2004~2006년 기간 중 12% 감소한 2,583억 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유흥주점업 등 해당산업이 성매매처벌법 등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이유와 함께 함께 규제 회피를 위하여 여타 유사업종으로의 전환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0년대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노래방, 마사지업 등은 2004년 이후 2006년 들어 단속강화 등에 의하여 크게 감소하여 기간 중 22%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IV-19>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규모추정 (백만원)

권역별	산업 대분류	2004	2005	2006	2004~2006 변화
수도권	주점	928,949	918,907	979,163	50,213
	기타	393,482	373,007	343,629	-49,853
강원 충청권	주점	261,792	249,456	197,372	-64,420
	기타	111,883	101,385	90,783	-21,100
전라권	주점	275,530	247,977	192,871	-82,659
	기타	86,653	86,593	52,016	-34,637
경상권	주점	658,225	613,011	496,745	-161,480
	기기	225,776	218,878	151,284	-74,492
전체		2,942,291	2,809,213	2,503,862	-438,428



&lt;표 IV-20&gt;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거래액 변화율: 전국

성매매 관련 산업	비중			변화율	
	2004	2005	2006	2005/04	2006/05
일반유흥주점업	0.52	0.52	0.48	-6.3	-22.5
무도유흥주점업	0.12	0.12	0.14	-2.1	-2.1
간이주점업	0.04	0.05	0.07	9.6	9.6
차집	0.17	0.15	0.16	-11.8	-16.6
노래방 운영업	0.08	0.08	0.09	-7.4	-11.3
이용업	0.02	0.02	0.02	-5.9	-3.5
마사지업	0.05	0.05	0.04	-0.2	-35.3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0.01	0.01	0.01	0.0	0.0
합계	1.00	1.00	1.00	-5.7	-16.7

한편 성매매 관련 세부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유흥주점업이 2004년 52%에서 2006년 들어 4%포인트 비중 감소를 나타내어 전체 성매매 관련 산업 가운데 48%를 차지하였고, 마사지업이 같은 기간 동안 5%에서 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 세부산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성매매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는 한편, 성매매처벌법의 효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비교적 적은 표본에 근거하여 시산한 결과이지만 대체적으로 최근 서비스 산업, 특히 성매매 알선에 참여하는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 변화를 일관성 있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정된 성매매 관련 산업의 최근 연도 변화율, 실사에 근거한 매출 및 수요구조 정보 등에 근거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성격을 시산한 결과가 <표 IV-20>에 제시되어 있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산업 총산출액(매출총액)은 2004년 2조 9,423억 원에서 2005년에는 4.5% 하락한 2조 8,092억 원, 2006년에는 10.6% 하락한 2조 5,039억 원으로 각각 해당연도 기준 국내 총산출액의 0.18% 및 0.13%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잠정적으로 추정된 2006년의 성매매 관련 산업 총산출액은 전년대비 10.6% 감소한 약 2조 5,039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가치(GDP)는 2004년, 2005년, 2006에 각각 1조 1,357억 원, 1조 254억 원, 8,588억 원으로 해당연도 국내 총GDP의 0.15%, 0.14%, 0.11%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 중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매출하락과 GDP 비중의 감소는 전반적인 관련 서비스 경기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에서 국내 총GDP가 4% 상승(총산출 7.2%)하고 민간소비가 3.2%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4.5% 및 10.6%의 하락은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외생화를 통한 국민경제적 유발 효과 도출에 있어서 일차적인 효과는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이 경제 전체에서 중간 및 최종수요의 감소로 파악된다.

&lt;표 IV-21&gt;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산출액 도출 결과

부문명칭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백만원)	비중 (%)	금액 (백만원)	비중 (%)	금액 (백만원)	비중 (%)
농림수산물	52,961	1.8	50,566	1.8	42,566	1.7
광산품	0	0.0	0	0.0	0	0.0
음식료품	800,303	27.2	758,488	27.0	668,531	26.7
섬유 및 가죽제품	0	0.0	0	0.0	0	0.0
목재 및 종이제품	0	0.0	0	0.0	0	0.0
인쇄, 출판 및 복제	23,538	0.8	22,474	0.8	17,527	0.7
석유 및 석탄제품	0	0.0	0	0.0	0	0.0
화학제품	11,769	0.4	11,237	0.4	7,512	0.3
비금속광물제품	0	0.0	0	0.0	0	0.0
제1차금속제품	0	0.0	0	0.0	0	0.0
금속제품	11,769	0.4	14,046	0.5	12,519	0.5
일반기계	0	0.0	0	0.0	0	0.0
전기 및 전자기기	0	0.0	0	0.0	0	0.0
정밀기기	0	0.0	0	0.0	0	0.0
수송장비	0	0.0	0	0.0	0	0.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1,769	0.4	11,237	0.4	10,015	0.4
전력, 가스 및 수도	85,326	2.9	87,086	3.1	82,627	3.3
건설	0	0.0	0	0.0	0	0.0
도소매	141,230	4.8	137,651	4.9	122,689	4.9
음식점 및 숙박	0	0.0	0	0.0	0	0.0
운수 및 보관	50,019	1.7	50,566	1.8	45,070	1.8
통신 및 방송	47,077	1.6	42,138	1.5	32,550	1.3
금융 및 보험	141,230	4.8	151,698	5.4	150,232	6.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29,537	11.2	359,579	12.8	358,052	14.3
공공행정 및 국방	0	0.0	0	0.0	0	0.0
교육 및 보건	0	0.0	0	0.0	0	0.0
사회 및 기타서비스	97,096	3.3	98,322	3.5	92,643	3.7
기타	0	0.0	0	0.0	0	0.0
일반유희주점	0	0.0	0	0.0	0	0.0
중간투입계	1,803,624	61.3	1,783,850	63.5	1,642,534	65.6
피용자보수	582,574	19.8	584,316	20.8	545,842	21.8
영업잉여	123,576	4.2	30,901	1.1	-50,077	-2.0
고정자본소모	0	0.0	0	0.0	0	0.0
간접세(보조금공제)	429,574	14.6	410,145	14.6	363,060	14.5
부가가치계	1,135,724	38.6	1,025,363	36.5	858,825	34.3
총투입액	2,942,291	100.0	2,809,213	100.0	2,503,862	100.0

성매매처벌법 시행 등 사회규제의 시행에 따른 성매매 관련업종의 산업활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과 같이 오차항 가운데 명백하게 추세선을 이탈한 부분에 대하여 회귀분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가상 실증 모형분석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시나리오1은 성매매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 가운데 50%가 사회규제 효과로 포착되며, 경제 내에 다른 분야에 대한 이전효과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직접적 효과 추정을 위한 대리변수인 단속의 강화, 영업단축, 적발 건수의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규제의 흐름을 가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여타 경제부문에 수요를 진작시키는 경우를 배제하여 사회규제효과가 가장 큰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서 가정하였던 여타 부문에 대한 이전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성매매처벌법 시행, 정부의 행정적 조치 강화, 전국민적인 관련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식 증대 등 사회규제의 여파로 인하여 규제 대상업종의 경제활동은 감소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거래비용 및 가격구조의 변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 활동이 규제가 없거나 덜한 분야로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오락, 문화 및 운동산업으로 총액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의 경제활동 증대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증가된 금액의 산업별 배분의 경우에는 투입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의 감소와 대비하여 산업별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의 증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편 국민경제적 효과의 분석은 주로 매년 단위로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관련 산업의 시차적 효과를 감안하여 2005년과 2006년의 효과를 합산하여 결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 제시되는 표와 설명의 주요 실증결과는 2개 년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효과 시나리오 1: 대상 업종의 경제활동 감소

여기서는 4개 권역별로 성매매 관련 산업을 주점관련 산업과 기타관련 산업으로

나누어 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시나리오1 가정에 따라 2004~2006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요 감소는 대부분이 주점관련 산업의 경우 유흥 및 기타 주점이 포함되는 음식 및 숙박업과 기타관련 산업의 경우 노래방, 마사지, 이용업 등이 포함되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의 중간 및 최종수요감소를 크게 유발한다. 한편 도소매, 통신서비스 등 성매매 관련 업종과 업종 종사자에 대하여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에서도 수요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점관련 산업의 매출감소효과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004~2006년 기간 중 1,095억 원의 수요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주점관련 산업의 수요감소액 가운데 기여율로 70.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주점관련 산업의 주요 원재료 공급관련 산업인 음식료품이 전체 기여비중의 14.9%를 차지하는 232억 원의 매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외에 도소매, 농림수산업, 전력수도가스산업이 주점관련 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주요 투입요소를 공급하는 이유로 각각 2.9%, 2.8%,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상권의 주점관련 산업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전라권과 강원충청권이 다음 순서대로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여타산업의 감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2004~2006년 규제에 따른 주점관련 산업 중간 및 최종수요 감소  
(단위: 억 원, %)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비중
농림수산물	9.7	-1.9	-37.9	-13.0	-43.2	2.8
음식료품	52.0	-10.4	-203.4	-70.0	-231.8	14.9
석유화학제품	2.2	-0.4	-19.2	-4.1	-21.5	1.4
가구 및 기타제조업	2.1	-0.3	-18.0	-3.9	-20.1	1.3
전력, 가스 및 수도	27.5	-5.4	-43.0	-10.3	-31.2	2.0
도소매	4.7	-0.7	-40.9	-8.8	-45.7	2.9
음식점 및 숙박	-0.9	-355.9	-458.4	-280.0	-1095.1	70.2
운수 및 보관	1.2	-0.2	-10.6	-2.3	-11.8	0.8
통신 및 방송	6.2	-1.2	-9.6	-2.3	-7.0	0.4
금융 및 보험	1.4	-0.2	-12.5	-2.7	-13.9	0.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3.0	-9.6	-100.1	-12.6	-29.4	1.9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	-0.2	-8.7	-1.9	-9.7	0.6
합계	200.1	-386.4	-962.2	-411.9	-1560.4	100.0

\* 주: 2004년~2006년 성매매 관련 산업 등 매출 감소에 따른 일차 영향 추정치

한편 수도권외의 주점관련 산업은 2005년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들어 다시 상승하여 2004~2006년 기간 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규제 유효성과 관련하여 수도권이 성매매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다수 업소에 대한 규제 수행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소득 등 기본적인 경기 상황과 서비스 산업의 활동이 여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도 관련 산업의 상승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3> 2004~2006년 규제에 따른 기타관련 산업 중간 및 최종수요 감소  
(단위: 억 원, %)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비중
농림수산물	-5.3	-2.8	-0.6	-1.1	-9.7	0.7
음식료품	-26.4	-13.9	-3.2	-5.5	-49.0	3.7
석유화학제품	-6.2	0.1	-0.6	-0.2	-6.8	0.5
가구 및 기타제조업	-5.5	0.1	-0.5	-0.2	-6.0	0.5
전력, 가스 및 수도	-8.9	-4.0	-6.5	-6.2	-25.6	1.9
도소매	-1.7	0.0	-0.2	0.0	-1.9	0.1
음식점 및 숙박	-28.9	-19.0	-81.7	-136.3	-265.9	19.9
운수 및 보관	-0.3	0.0	0.0	0.0	-0.3	0.0
통신 및 방송	-10.0	-4.5	-7.3	-7.0	-28.8	2.2
금융 및 보험	-3.2	0.1	-0.3	-0.1	-3.5	0.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1.5	-5.1	-25.3	-40.7	-122.6	9.2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1.3	-56.7	-246.4	-409.2	-813.6	61.0
합계	-249.3	-105.5	-372.5	-606.5	-1333.7	100.0

\* 주: 2004~2006년 성매매 관련 산업 등 매출 감소에 따른 일차 영향 추정치

기타관련 산업의 매출감소효과에서는 노래방, 마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업이 2004~2006년 기간 중 814억 원의 수요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기타관련 산업의 수요감소액 가운데 기여율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

타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이 전체 기여비중의 19.9%를 차지하는 266억 원의 매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외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료품, 통신서비스업 등이 기타관련 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주요 투입요소를 공급하는 이유로 각각 9.2%, 3.7%,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이유는 노래방, 마사지 등 기타관련 산업의 경우 주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료 등 부동산 관련 비용이 높은 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전라권의 기타관련 산업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경상권과 수도권이 순서대로 산업감소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매출 감소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점관련 산업의 경우 주류, 안주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음식료품과 기타산업의 경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및 방송의 수요 감소와 부동산관련 서비스의 수요 감소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체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하여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의 유효성도 일부 영향이 있으나 해당 지역의 상대적인 경기변동상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2006년 기간 중 성매매관련 산업 등 매출감소(수요 감소)의 총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주점관련 산업과 기타관련 산업별로 각각 <표 IV-22>와 <표 IV-23>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전체효과와 4개 권역별 국민경제적 효과는 부록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별로 총생산활동, 부가가치 창출,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러한 매출 감소는 여타 산업에 대한 중간 및 최종수요의 감소를 유발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매매 관련 산업과 같이 기존 특정 서비스 산업의 국민경제 내 퇴출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산업 간의 연계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추정한 것이다.

<표 IV-24>에 제시된 2004~2006년 기간에 각종 사회규제에 의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 주점관련 산업 매출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생산활동유발 감소액, 부가가치 감소액, 고용감소효과는 각각 3,476억 원, 1,568억 원, 4,677명으로 추정되었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부문은 성매

매 관련 산업 등 자체의 감소효과가 일차효과로 포함된 음식점 및 숙박업으로 총 산출 및 부가가치 감소액이 각각 1,122억 원, 487억 원 감소하였고, 해당 산업의 높은 고용집약도를 반영하여 고용규모도 약 3,179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4> 성매매 관련 주점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단위: 억 원, 명)

부문명칭	총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농림수산물	-385.9	-235.2	-158
광산물	-75.0	-49.8	-34
음식료품	-659.2	-204.2	-202
섬유 및 가죽제품	-15.7	-5.0	-13
목재 및 종이제품	-46.3	-12.7	-20
인쇄, 출판 및 복제	-9.7	-4.5	-8
석유 및 석탄제품	-129.5	-46.6	-2
화학제품	-137.3	-29.3	-36
비금속광물제품	-16.3	-5.3	-6
제1차금속제품	-35.7	-7.2	-4
금속제품	-21.6	-7.4	-12
일반기계	-18.2	-5.5	-9
전기 및 전자기기	-24.1	-6.2	-7
정밀기기	-2.8	-0.8	-2
수송장비	-11.5	-3.1	-4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7.9	-6.2	-12
전력, 가스 및 수도	-94.7	-59.7	-17
건설	-27.6	-12.5	-33
도소매	-131.1	-80.1	-477
음식점 및 숙박	-1,121.7	-486.9	-3,179
운수 및 보관	-78.3	-37.2	-85
통신 및 방송	-38.3	-23.0	-13
금융 및 보험	-79.7	-53.5	-6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2.4	-162.7	-190
공공행정 및 국방	-1.8	-1.3	-2
교육 및 보건	-27.4	-18.5	-60
사회 및 기타서비스	-7.1	-3.6	-23
기타	-49.1	0.0	0
합계	-3,475.8	-1,567.8	-4,677



한편 각종 제조업 제품 가운데 유흥주점, 간이주점 등에 대한 원재료 공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음식료품의 경우 주류, 안주 등을 구매하는 주점관련 산업 매출 감소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가 각각 659억 원, 204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용감소효과도 20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부분의 주점업이 임대 등 부동산 서비스를 수요하는 현황이 반영되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주점업 산업활동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총산출량, 부가가치, 고용이 각각 212억 원, 163억 원, 190명 감소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주점업의 원재료 공급, 기타 유통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소매업 경우에는 총생산활동유발 감소액, 부가가치 감소액, 고용감소효과는 각각 131억 원, 80억 원, 477명으로 추정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2개년 간 규제효과가 주점업 이외의 노래방, 마사지, 이용업 등 성매매 기타관련에 미치는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생산활동유발 감소액, 부가가치 감소액, 고용감소효과는 각각 3,147억 원, 1,141억 원, 3,516명으로 추정되었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부문은 성매매 관련 산업 등 자체의 감소효과가 일차효과로 포함된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총산출 및 부가가치 감소액이 각각 827억 원, 20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각종 제조업 제품 가운데 농수산물, 음식료품, 석유화학제품 등에서는 기타 관련 산업 매출감소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가 각각 134억 원/110억 원, 229억 원/91억 원, 148억 원/27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등 주점관련 산업이 포함된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에도 총생산활동유발 감소액, 부가가치 감소액, 고용감소효과는 각각 444억 원, 187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또한 해당 산업의 높은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고용감소도 동 산업부문에서 1,27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경우 기타관련 산업의 총산출 등 경제유발효과의 규모가 주점관련 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소효과에 비하여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4~2006년 기간에 걸쳐서 371억 원의 총산출량 감소가 기타관련 산업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와 고용의 하락규모는 각각 189억 원, 241명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성매매 관련 기타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단위: 억 원, 명)

부문명칭	총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농림수산물	-134.1	-109.6	-74
광산품	-67.3	-38.3	-26
음식료품	-228.8	-90.9	-93
섬유 및 가죽제품	-19.5	-4.6	-12
목재 및 종이제품	-32.8	-8.3	-13
인쇄, 출판 및 복제	-27.0	-7.1	-14
석유 및 석탄제품	-90.1	-25.3	-1
화학제품	-148.3	-27.4	-30
비금속광물제품	-13.2	-3.5	-4
제1차금속제품	-49.4	-7.1	-4
금속제품	-18.8	-5.2	-8
일반기계	-21.7	-4.7	-7
전기 및 전자기기	-51.8	-9.5	-11
정밀기기	-4.2	-0.9	-2
수송장비	-67.9	-9.2	-1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5.3	-4.2	-8
전력, 가스 및 수도	-95.2	-40.4	-15
건설	-31.8	-10.5	-28
도소매	-63.9	-37.9	-227
음식점 및 숙박	-444.3	-186.9	-1,272
운수 및 보관	-47.2	-18.8	-46
통신 및 방송	-74.9	-35.3	-19
금융 및 보험	-77.5	-44.9	-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70.7	-189.1	-241
공공행정 및 국방	-1.7	-0.9	-1
교육 및 보건	-22.7	-12.8	-42
사회 및 기타서비스	-827.3	-207.1	-1,310
기타	-99.7	0.0	0
합계	-3,147.1	-1,140.5	-3,576

마지막으로 2004~2006년 기간 동안 성매매처벌법 및 기타 관련 규제의 일차적인 경제 총효과는 앞서 설명된 성매매 관련 산업으로서 주점관련 산업 및 기타관련 산업 추정결과의 합계이며, <표 IV-25>에 제시되어 있다. 2004~2006년 기간동안 성매매처벌법 등의 규제 효과는 국내 경제전체를 기준으로 총산출액(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항목에서 각각 6,623억 원, 2,708억 원, 8,253명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표 IV-26> 성매매 관련 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총효과  
(단위: 억 원, 명)

부문명칭	총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농림수산물	-520.0	-344.8	-233
광산품	-142.2	-88.1	-59
음식료품	-888.0	-295.1	-295
섬유 및 가죽제품	-35.3	-9.5	-26
목재 및 종이제품	-79.1	-21.0	-33
인쇄, 출판 및 복제	-36.7	-11.6	-22
석유 및 석탄제품	-219.6	-71.9	-4
화학제품	-285.6	-56.7	-67
비금속광물제품	-29.5	-8.8	-10
제1차금속제품	-85.1	-14.3	-9
금속제품	-40.5	-12.7	-20
일반기계	-39.9	-10.2	-16
전기 및 전자기기	-76.0	-15.7	-18
정밀기기	-7.0	-1.7	-4
수송장비	-79.3	-12.3	-14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33.2	-10.4	-20
전력, 가스 및 수도	-189.9	-100.1	-32
건설	-59.3	-23.0	-61
도소매	-194.9	-117.9	-704
음식점 및 숙박	-1,566.0	-673.8	-4,451
운수 및 보관	-125.5	-56.0	-131
통신 및 방송	-113.3	-58.4	-32
금융 및 보험	-157.2	-98.4	-1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83.2	-351.8	-431
공공행정 및 국방	-3.5	-2.1	-3
교육 및 보건	-50.0	-31.3	-102
사회 및 기타서비스	-834.4	-210.6	-1,333
기타	-148.7	0.0	0
합계	-6,622.9	-2,708.4	-8,253

## 2)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효과 시나리오 2: 대상 업종의 경제활동 감소 및 대체업종 증가

위의 시나리오2 가정에 따라 성매매 관련업종산업의 수요 감소분을 영화, 오락 및 운동 산업 등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으로 대체되었을 경우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가정은 최근 우리나라 개인소비지출, 특히 남성의 소비지출 변화 실사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체 산업으로 소득의 이전 지출이 실현된 경우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여기서는 대체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본 연구모형의 특징상 최종수요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sup>104)</sup> 민간 소비자의 수요가 영화, 오락, 운동산업 등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이전하고 해당 산업분야가 활성화되는 경우의 순 국민경제적 효과는 총산출의 경우 대체산업의 활성화가 없는 경우 6,623억 원 감소에 비하여 423억 원 증가로 반전하고, 고용효과도 8,253명 감소에서 절반 수준인 3,814명으로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시나리오 가정의 성격상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이 포함된 음식 및 숙박 등의 산업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대체 산업이 활성화되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의 산업 활동 증대가 상당한 수준의 상쇄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대체 산업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은 성매매 관련 산업이 대체로 고용효과가 매우 큰 음식 및 숙박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과 산업유발효과가 큰 음식료 제조업 등에 집중하고 있어, 대체산업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부문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대상이 되는 해당 분야의 고용 인력이 여타 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유연한 노동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04) 이는 산업연관분석이 단기적으로는 중간투입계수 등 경제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안정성 가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관분석에 동태적 조건을 고려하는 경우 결과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체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중간투입계수 등 기술적 요인이 변화하는 경우 최종수요의 효과도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표 IV-27> 대체 산업 활동 증가를 고려한 성매매처벌법시행의 국민경제적 효과  
(단위: 백만 원, 명)

부문명칭	주점관련 산업		기타관련 산업		전체	
	총산출액	고용	총산출액	고용	총산출액	고용
농림수산물	-171.0	-70	-53.4	-21	-224.3	-91
광산품	53.4	24	42.1	18	95.6	42
음식료품	-297.1	-91	-109.0	-33	-406.1	-124
섬유 및 가죽제품	22.3	19	20.0	17	42.2	36
목재 및 종이제품	13.6	6	18.4	8	31.9	14
인쇄, 출판 및 복제	31.8	25	21.9	18	53.7	43
석유 및 석탄제품	64.6	1	66.6	1	131.2	2
화학제품	204.0	54	182.3	49	386.3	103
비금속광물제품	11.8	4	11.6	4	23.4	9
제1차금속제품	90.6	11	86.0	10	176.6	22
금속제품	23.6	13	23.2	13	46.9	26
일반기계	42.6	20	39.8	19	82.4	40
전기 및 전자기기	118.9	36	118.7	36	237.6	71
정밀기기	10.4	8	9.8	8	20.2	15
수송장비	215.0	66	198.9	59	413.8	125
가구 및 기타제조업	19.1	13	21.3	14	40.4	27
전력, 가스 및 수도	51.5	9	8.2	1	59.6	11
건설	26.0	31	16.1	19	42.1	50
도소매	8.5	31	37.0	128	45.6	159
음식점 및 숙박	-1,014.9	-2,876	-178.4	-507	-1,193.4	-3,383
운수 및 보관	27.6	30	40.2	43	67.8	73
통신 및 방송	57.4	19	17.7	6	75.1	24
금융 및 보험	61.5	53	54.3	46	115.8	1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0.0	250	94.4	82	374.4	332
공공행정 및 국방	1.1	1	0.8	1	1.9	2
교육 및 보건	19.8	43	21.4	48	41.2	92
사회 및 기타서비스	67.6	216	-576.9	-1,849	-509.4	-1,632
기타	97.2	0	58.0	0	155.3	0
합계	136.9	-2,052	291.0	-1,762	427.9	-3,814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시행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회의 건전화라는 사회 규제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된 <그림 IV-18>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억제하여야 하는 외부불경제를 조정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 성격의 조치가 필요하며, 일정 수준의 가격상승 및 비용부과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경제적 변화로 판단된다.

한편 본 방법론 적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의 특징적 결과로 부가가치 혹은 GDP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체산업의 활성화는 국민 경제 전체의 GDP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상 업종의 산업 활동 감소 효과를 대체 산업이 충분히 상회하는 경제증진효과(economic boosting effects)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의 기술적 노력과 부가가치 증대 노력을 통하여 경제적 순효과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분석방법론에 따른 GDP 증대 효과는 우선 성매매처벌법 대상 업종보다 활성화되는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에서 기인한다. 또한 경제전체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소비지출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되는 경우도 반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지하경제효과를 고려할 경우 경제적 평가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하경제는 기본적으로 불법적 경제활동, 비공시적 경제부문, 조세회피, 탈세 등 세원포착이 불가능한 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이 이러한 포착되지 않는 경제부문의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하여 공식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것은 조세정의 등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성매매 관련 산업 및 이에 대한 정책수행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대표 서비스 산업인 일반성매매 관련 산업 등이 성매매처벌법의 시행으로 일정 부분 매출 감소를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만을 추정한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서비스 산업 일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논의이다.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의 전통적 부문, 탈세, 비합법적 거래 등 다양한 이유로 정확한 거래액 산정이 매우 어렵다. 특히 성매매 관련 산업에 대한 사회규제의 강화는 지하경제로 인하여 실제 매출규모가 과소 추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일차적인 경제적 효과를 적게 추정하게 하거나 실제와는 다르게 과다추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둘째, 성매매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는 일반적으로 성매매 관련 산업에 대하여 규제준수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서비스 산업 이용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즉 경제학적 의미로는 규제를 통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거나 상대가격이 하락한 다른 서비스업에 대한 대체 수요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규제 강화 이후에 건강관련 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 산업내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6>과 <표 IV-17>에 제시된 서비스 부문의 주요 업종별 경제 지표 추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서비스업 전체로는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7.7%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서비스 부문별로는 일반성매매 관련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같은 기간 중 견조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 무도주점업 등 대상업종은 각각 0.3% 상승하거나 -2.1% 하락하여 여타 서비스업과 크게 대조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일반성매매 관련 산업 등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데다 성매매처벌법 등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04~2005년 기간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평균 1.7% 상승한 것에 비하여 성매매 관련 산업 등의 경우 12.1% 하락한 것은 성매매처벌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매매 관련 산업 등과 대체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1~2005년 기간중 평균 9.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은 8.2%,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은 8.7% 상승하여 대조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규제 정책은 특정 서비스 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서비스 부문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보다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실증적 분석의 대상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을, 관련된 유사 서비스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성매매 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파일럿 수준의 표본수를 가지고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효율성 혹은 통계처리비용의 경제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sup>105)</sup>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지역별 유흥관련 산업 세부 업종별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효과에 노출된 일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된 것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업종에 대한 체계적 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사후적 평가 결과 도출과 함께 향후 정책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론은 매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바탕으로 실사자료를 획득하여 법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효과 분석의 특성상 성매매처벌법 시행과 같은 사회적 규제 수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주체의 반응이 단기적, 고정적으로 포착된다는 측면에서 동태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법 시행에 따라 경제 주체는 기존의 소비지출행태에 있어서 보다 구조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생산자의 경우에도 기술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 방법론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제 주체의 탄력적인 적응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학, 행정학, 소비자경제학 등 여타 분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의 적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경제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5) 본 연구와 비교될 수 있는 기존 연구결과로는 여성부에서 작성한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2002(a)”와 여성부의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 2002(b)”를 들 수 있다. 두 보고서는 경제적 관점 이외에도 사회학적 접근으로 성산업 및 성매매 실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실사조사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경제변수 및 산업연계효과 등 경제적 측면의 분석은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5장

## 성매매여성의 실태

제1절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7
제2절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220
제3절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의 변화	243

## 제1절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면접은 총 20명의 성매매피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은 20대 14명, 30대 5명, 40대 1명으로 나타나 20대가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전문대 혹은 대학 재학 이상 3명, 고등학교 졸업 3명, 고등학교 중퇴 13명, 중학교 중퇴 1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혹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의 경우, 탈성매매 이후 자활지원정책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고등학교 중퇴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과 관련하여 가출경험 유무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이에 전체 20명중 13명이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연령 20대이며 고등학교 중퇴의 경험을 가진 성매매여성의 경험이 중점적으로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성매매 경험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면접 대상자 20명 중 12명은 10대에, 8명은 20대에 성매매로 유입되었다. 가장 나이가 적은 경우는 15세로 중학교 때 유입된 경우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는 29세였다.

이들 대부분은 집결지, 다방, 룸살롱, 술집 등을 통해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경험한 성매매 업소는 업소형 성매매의 전형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연구진은 비업소형 성매매를 경험한 면접대상자도 연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도방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티켓다방이나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시작하고 이후 성매매집결지로 이동되었는데 업소형 성매매의 전형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종사기간의 경우, 4개월에서 20여년에 이르기까지 큰 분포를 보여 다양한 경험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의 탈성매매 여부를 볼 것 같으면 18명이 탈성매매하거나 이후 자활 과정에 있었고, 2명은 현재에도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1명은 현재 성매매집결지를 탈업소하였으나 아르바이트 형식(△)의 성매매를 하고 있다.

탈성매매 연령으로는 30대 4명, 25세 이상 10명, 20세 미만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명은 일반지원시설 또는 임시 쉼터에 거주하고 있고, 9명은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기타로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경우,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의 정책수급기간은 1개월부터 3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탈업소 한 이후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게 되어 뒤늦게 정책수급을 받은 경우에서 상담소 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불규칙적으로 지원을 받아오다가 본격적인 지원정책의 수급자가 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면접대상자들은 다양한 정책수급 경험을 갖고 있었다.

<표 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현재연령	학력	가출 경험	유입연령	경험 업소 유형	중사기간	탈성매매 여부	탈성매매시 연령	현재거주 상태	자활지원정책 수급기간
A	43	고졸	X	29	집결지	10년	X	-	성매매집결지	-
B	36	고중퇴	O	18	유흥주점, 집결지	11-12년	X	-	혼자 생활	5-6개월
C	34	고중퇴	O	17	룸살롱, 다방, 집결지	12-13년	O	34	혼자 생활	8-9개월
D	25	고중퇴	O	18	다방, 노래방	5년	O	23	일반지원시설	5개월
E	25	고중퇴	O	16	티켓다방, 룸살롱	7년	O	23	일반지원시설	13개월
F	24	고중퇴	O	20	티켓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4년	O	24	일반지원시설	1개월
G	27	대재	X	27	다방, 술집	2-3년	O	25	일반지원시설	2-3년 가량
H	28	대재	X	20	룸살롱, 집결지	3-4년	O	25	혼자 생활	13-14개월
I	36	대재	O	17	룸살롱, 여관바리, 집결지	18년	O	34	혼자 생활	11개월
J	39	중중퇴	O	15	다방, 룸살롱, 노래방, 집결지	20여년	O	36	일반지원시설	3년 가량
K	25	고중퇴	X	18	다방, 룸살롱, 보도방	7년	O	25	일반지원시설	6개월
L	25	고중퇴	O	17	다방	7-8년	O	25	일반지원시설	10개월
M	23	고중퇴	O	15	룸살롱, 티켓다방, 보도방	6년	O	22	일반지원시설	2개월
N	31	고중퇴	O	24	집결지	6-7년	O	31	아는 동생 집	3개월
O	25	고중퇴	O	15	티켓다방, 집결지	6-7년	O	25	혼자 생활	2개월
P	26	고중퇴	O	18	티켓다방, 떡집, 집결지	5년	O	26	임시 쉼터	4개월
Q	29	고졸	X	26	단란주점, 집결지	3년	O	29	혼자 생활	11개월
R	28	고중퇴	O	17	단란주점, 집결지	7개월	△	27	혼자 생활	6개월
S	28	고졸	X	24	룸살롱, 집결지	4개월	O	27	부모님 집	4개월
T	28	고중퇴	X	20	술집, 집결지	2년	O	28	혼자 생활	4-5개월

## 제2절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 1.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

#### 가. 유입이전: 성장배경

<표 V-2>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장배경

사례	유입연령	처음 유입 업소 형태	가출경험
A	29	집결지	X
B	18	유흥주점	O
C	17	룸살롱	O
D	18	다방	O
E	16	티켓다방	O
F	20	티켓다방, 단란주점	O
G	27	다방	X
H	20	룸살롱	X
I	17	룸살롱	O
J	15	다방	O
K	18	다방	X
L	17	다방	O
M	15	룸살롱	O
N	24	집결지	O
O	15	티켓다방	O
P	18	티켓다방	O
Q	26	단란주점	X
R	17	단란주점	O
S	24	룸살롱	X
T	20	술집	X

심층면접에서는 성매매여성의 가출경험 여부와 학력 등을 중심으로 성장배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출경험 여부에 있어서 면접대상자 20명 중 13명이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불안정한 가정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13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중퇴로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로 처음 유입된 연령대 역시 10대가 다수를 차지하여 기존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기 쉬운 청소년기에 성매매로 쉽게 유입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면접한 심층면접대상자 대부분의 유입 시기는 2004년 법 제정

이전이므로 법 제정 이후 혹은 최근 성매매로의 유입 현황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웠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는 티켓다방 등을 통한 청소년의 유입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 등 보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유입과정

<표 V-3>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유입과정

사례	내용
A	-유입이전 가정주부로 다른 취업경험 없음. 29세 이혼 후, 생계수단으로 성매매 시작. -친구 소개로 성매매 집결지로 들어감. -성매매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민하다가 성매매 결심.
D	-처음 유입업소는 다방이며 이후 다방, 노래방, 룸살롱 등 경험하였음. -유입이전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었으나 호기심에 친구 따라서 다방에서 일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다방일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F	-성매매 유입 이전 취업 경험으로는 미성년자일 때 나이를 속여 오락실 등에서 일한 적이 있음. -20세 때 단란주점에서 성매매로 유입. 친구를 통해 '술만 따라주면 되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로 알고 시작.
H	-유입이전 직장생활을 하다가 카드빚으로 룸살롱에서의 생활을 시작함.
J	-처음 유입은 15세로 술집(방석집)이었음. 이전 취업경험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어린 시절 집결지가 바로 집 옆이었기 때문에 오가면서 많이 보았음. 성매매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음.
K	-17세에 집을 나왔으며 유입이전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 있음. -아버지와 오빠에게 돈을 부쳐주었으며, 주유소 월급이 적었고 어린 나이에 받아주는 일자리가 다방 밖에 없었음. -어머니가 다방을 했기 때문에 다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나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해 놀랐다고 함.
M	-가출은 잦았고, 가출한 뒤 일하고 있는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노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일했음. -돈을 주는 것이 그냥 좋았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라거나, 이후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음.
P	-취업반이던 선배의 권유로 다방으로 유입하였으며 이후 집결지 등을 경험하였음, -처음엔 배달만 하다가 후에 티켓 다방을 시작으로 성매매에 유입되었음. 이후 성매매집결지에 있게 됨. -성매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서술은 없었으나, 긍정적이진 않음.
Q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자반도체에서 소위 '공순이 생활' 하였음. 회사 기숙사 생활에 힘들고 지쳤고, 나이가 많아져 그만두어야 했으며, 당시 삶의 목표도 없어 그만두게 됨. -직장을 그만둔 이후, 친구와 함께 신문 구인 정보 보고 룸살롱에 들어감
T	-회사에서 경리 업무 취직 경력 및 인포메이션에서 업무 본 적 있음. -20세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술집에서 성매매 시작했고 이후 집결지에 있었음.

유입과정으로 유입이전 취업경험, 유입동기, 유입시기, 유입시 성매매에 대한 생각, 유입 업소 형태를 질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대상자의 유입 시기는 대부분 2004년 법 제정 이전이었다. 이들의 유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미성년자로 가출하여 숙식해결을 위해 성매매로 유입되었으며, 유입이전 취업 경험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음식점 등을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였다. 상당수가 청소년기 때 성매매로 유입되며,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성매매임을 알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유입된 경우는 개인의 생애사에 있어 특정 사건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가정주부, 직장인 등의 삶을 살았지만 카드 빚, 이혼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입시 성매매에 대한 생각으로는 ‘성매매를 안 해도 되는 곳’, ‘커피 배달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 ‘술만 따라주면 되는 일’ 등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만 일하고 나가려고 했던 일’ 등으로 생각해 유입 당시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현재 상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성매매여성으로서의 생활

### 가. 업소 이동

법제정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이동한 업소 형태, 이동 요인, 이동 과정, 제3자의 개입 여부 및 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업소이동의 대부분이 법 제정이전과 이후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법 제정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업소이동과 관련하여 법제정 이전과 이후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업소 이동

사례	내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빛이 점점 많아지자 소개소를 통해 다른 업소로 옮기는 것을 반복함.</li> <li>-업소이동을 반복하면서 빛은 더욱 많아져서 두세 달만 고생하면 금방 빛을 갚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집결지로 가게 됨.</li> <li>-‘성매매집결지’는 ‘진짜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곳으로 생각했었음.</li> <li>-한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주변 사람이 찾지 않게 되거나, 업주 등 대인관계의 불편함으로 업소를 이동하게 됨.</li> <li>-소개소를 통해 업소를 이동하는 경우, 업주는 여성이 3달을 일한다는 조건하에 300만원 소개비를 소개소에 지급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 생기는 돈은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감.</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소이동이라기 보다는 성매매 재유입되었음. 룸살롱을 다니다가 돈을 벌어 옷가게를 열었으나 큰 빛을 지게 되어 성매매집결지로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음.</li> <li>-기존에 있었던 업소가 문을 닫거나, 업주와 관계가 나빠져 업소이동을 함.</li> <li>-같은 지역 내에서 여성의 의사에 따라 업소 이동을 할 경우,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하는 것이 해당지역 업주들 사이 약속임. 업주들끼리 자신들의 ‘룰’을 가지고 있음. 단, 업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을 경우는 제외함.</li> </ul>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함.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서 섬에 있는 업소를 소개하였지만 나올 수 없었음.</li> </ul>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스토랑(몇개월)-&gt;룸살롱(몇개월)-&gt;호텔이나 모텔에서 여관바리-&gt;다찌(외국 사람들 대상으로)-&gt;A지역 집결지(1-2년정도)-&gt;B지역 집결지(13년)-&gt;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나와서 술집(노래방, 단란주점)-&gt;B지역 집결지(아르바이트 식)</li> <li>-경찰 단속에 걸려 보호시설에서 한 달 정도 거주한 적 있음.</li> <li>-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는 빛을 갚기 위한 것이었음.</li> <li>-B지역에서 있었던 13년 중 결혼하여 신 적이 있었으나, 곧 집결지로 돌아옴.</li> <li>-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집결지에서 나와 한 달 후 술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돈 때문이었음.</li> <li>-술집에서 다시 집결지 아르바이트(라 표현)한 이유는 이전에 일하던 업주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임.</li> <li>-제3자 개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다른 부분에서 혼자 다녔다는 식으로 언급.</li> </ul>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술집(방석집)-&gt;C지역 집결지-&gt;(오빠 만나서 잠시 집에 감)-&gt;C지역 집결지로 재유입-&gt;(사촌오빠 만나서 잠시 집)-&gt;이후 다방, 룸살롱, 노래방 등을 다니다가 27세 경 결혼-&gt;D지역 집결지-&gt;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빈손으로 업소를 나와(쫓겨남) E지역 다방-&gt;다시 D지역으로 와서 상담소와 연결됨.</li> <li>-처음 술집에서 일하던 당시 친구와 며칠 놀러나갔는데, 경비가 들었다는 명목으로 술집주인이 나를 C지역 집결지로 보냈음.</li> </ul>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 업소형태는 처음에 다방이었다가 룸살롱으로 옮기고 다시 다방으로 옮긴 후 다방(티켓다방), 보도방을 옮겨 다님. 자주 지역을 옮김.</li> <li>-옮기는 과정에서는 업주들 간의 연계를 이용함. 업주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소개료가 추가되지는 않고 빛을 떠넘기는 식임.</li> <li>-업주들이 여성들을 업소 이동시키는 이유는 1)빛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2)아가씨들이 계속 바뀌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등이 있음.</li> </ul>

업소이동은 직업소개소, 업주들끼리의 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면접대상자들에 의하면 직업소개소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업소 이동을 통해 여성은 빛을 더 많이 지게 되거나 폭력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반면, 직업소개소 자체



가 업주와 여성 간 매개적인 역할을 하여 업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업소 이동으로 빛이 많아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지만 업소이동이 잦아 업주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직업소개소의 삼촌 등을 더 의지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업소이동 요인으로는 주로 특정지역 혹은 특정 업소에서 '성상품'으로서 가치가 하락하면 소위 '물같이' 차원에서 업소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업주와의 관계, 보수 등에 있어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업소를 이동하거나, 혹은 업소가 문을 닫아 업소이동을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집결지 여성의 경우, 법제정 이후 집결지 단속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그만두기도 하나 이후 룸살롱, 다방 등의 1종 혹은 마사지 업소, 이발소 등의 2종 성매매로 자발적 성매매 유입이 있기도 하다.

#### 나. 피해실태

피해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신체적, 심리적 피해 정도, 불합리한 계약(일에 대한 공지 여부, 차용증 작성 여부, 수입의 분배구조,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 여부, 신분증 압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법 제정 이후, 단속이 강화된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다. 법제정 이후 1주일만 강요당하지 않았을 뿐 성매매는 여전히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업주들은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에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 강요는 성매매여성에게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주고 불합리한 계약으로 이어지게 한다.

기본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은 음주와 잦은 성관계로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손님으로부터 폭력이나 욕설 등의 피해를 입고 있게 된다. 또한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각서 쓰는 것을 강요당하거나 신분증을 압수당하기도 한다.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종된 형태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최근 들어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법 제정 이후 이러한 피해 실태가 다소 개선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법제정 이후 일하는 시간이 줄거나 업주가 신분증을 압수하는 일은 없어졌으며 남자 손님 역시 처벌이 두려워 이전보다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V -5>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피해실태

사례	내용
B	-법제정 이후, 신분증 압수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C	-욕을 하는 등 무시하던 손님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
D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룸살롱을 같이 하던 업주는 빚을 핑계로 2차를 강요함. -비싼 양주를 사는 룸살롱의 손님들 경우, 성매매 등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 하며, 손님이 불만족시 여성이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함. -법제정 이후 단속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만 성매매를 강요당하지 않았을 뿐, 그 뒤로는 전과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함.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의 폭력은 예측할 수 없음. -다방이 문을 닫게 되어 소개소 삼촌을 통해 업소이동하는 과정 중, 친구 둘이 도망쳐서 뺨을 맞아 고막이 찢어지는 등 폭행과 감금을 당함.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으나 손님의 수에 따라 퇴근시간은 늦어지기도 함. 술값은 모두 업주에게 가므로 비밀관적인 출퇴근시간 적용함.
E	-과다한 음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 -티켓다방에서 일할 당시 오토바이 사고가 났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차 배달을 해야 했음. -낙태한 바로 다음 날 성매매를 해야 했음. -보통 생리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휴일을 결정하는 것이나 근무시간 등은 업주의 마음에 달려 있음. -분실 신고하여 신분증을 하나 더 발급받은 이후, 하나는 본인이, 다른 하나는 업주가 갖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명의를 동용하기도 함. -업주는 미성년자가 5명 정도 있어 가게 문을 잠궈놓고 나가기도 함.
F	-룸살롱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2차를 선택할 수 있었음. -티켓다방에서의 일은 일의 내용이나 선불금 등과 관련하여 들었던 사항과 크게 차이가 있었음. '술 같이 먹고 노래방만 같이 가면 되는 일'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함.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질에 솜을 끼기도 함. -술로 인해 신장에 염증이 생기기도 함.
G	-‘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업주와 지역주민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동에 있어 항상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되며 감금당하기도 하였음. 112 등에 신고를 ‘십’ 자체 내에서 무마시키기도 하였음. -성매매를 거부했다가 손님으로부터 심한 모욕적 행위를 당하기도 함. -‘죽고 싶은’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음. -낮에는 식당 아줌마로, 밤에는 술집 여자로 일함. 성매매 이외에도, 업소 내 기타 다른 노동을 병행해야 했음. -업주의 가사 일을 하는 등 ‘업주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음.
I	-감금당한 적은 없음. 손님을 가려 받고, 근무 시작과 종료도 자신이 결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주변에서 감금당했다는 케이스를 본 적 있다고 하나 이후 달라진 점 있음. -업주에게 맞은 적은 없고, 손님에게는 맞은 적 있음. -들은 바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남자 손님들의 횡포는 더 심해졌다고 함. 업주는 집결지 여성들에게 덜 가혹해졌다고 봄. -이동 시에는 차용증(빛이진)을 씀. -수입은 55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4 가량 됨. -근무일은 자신이 정하였음. 한 달에 10일 가량 일하고 20일 가량 쉬었음.

사례	내용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주에게 맞은 적 한번 있음(나중에 다른 일로 고백). 이외에는 업주들이 때리기 보다는 말(욕)로 위협하였음.</li> <li>-최초 다방에서는 근무 시 하게 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빛이 없거나 적어 가게 옮길 때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음. 수입은 7대3(업주) 정도로 나눔.</li> <li>-감금당하거나 부자유스러웠던 기억은 없고 핸드폰도 계속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함.</li> <li>-신분증은 업주가 맡아놓는 경우가 많음.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감. 이전의 이력(전과, 사기 등) 조회와 이후 신고용으로 사용한다고 함.</li> </ul>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정 이전에는 목욕탕을 단체로 가야한다거나, 술이나 외출을 함부로 못하는 등 비교적 감시나 규제가 심한 편이었음.</li> <li>-법 제정 이전에는 간혹 '진상'부리는 손님, 협박하며 사정 후 돈을 돌려받고 간다 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 집결지를 중심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으며 단속에 걸릴까봐 무서워함.</li> <li>-성매매방지법 제정 후로 일하는 시간 줄어들었음(12시간→10시간 정도).</li> <li>-수입의 분배는 제정 전과 비슷하게 55이지만, 방값 등을 따로 받는 것은 많이 없어진 편임.</li> <li>-법제정 이후,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주는 것보다는 사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짐.</li> </ul>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주에 의한 폭력은 없었고, 잘 대해 줬다고 함. 손님에 의한 폭행이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냥 방임하는 식의 태도를 보임.</li> <li>-업주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순탄하였던 것으로 보여짐.</li> </ul>

#### 다. 사회적 관계 형성

법제정 이후 업주와의 관계의 변화, 혹은 동료, 가족, 기타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 변화를 파악해 보았다.

우선 업주의 태도의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에 의하면 법 제정 직후 업주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이야말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에게 있어 하나의 큰 사건인 것이다.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성매매여성의 빛이나 이자를 없애주는 등의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망가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감금도 어려워지면서 업주들은 점차 선불금 없는 성매매여성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법제정 직후 잠깐은 업주가 성매매여성에게 잘해줬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치 않는 손님을 거부하는 등의 성매매여성의 선택권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과거 손님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었지만 성구매 남성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이러한 일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홍보로 성구매 남성들은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지 정도가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폭력과 모욕이 다소 줄었으며 때로는 성매매여성을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표 V-6>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사회적 관계 형성

사례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여성이 업주를 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업주 역시 다른 업주와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음.</li> <li>-기본적으로 외출과 외박은 업주에게 미리 말해야 함.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한 경우, 벌금이 있기도 함. 빛이 있는 여성에게는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li> <li>-법제정 이후, 업주들은 선불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빛이 없는 여성들을 선호함.</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빛이 없는 경우)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거나, 원치 않는 손님을 거부하기도 함.</li> <li>-법제정 이후 감금이 어려워져 도망가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업주들은 선불금을 주지 않거나 액수를 줄임.</li> <li>-동료들과의 관계는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이로,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없음을 느낌.</li> <li>-법제정 이후, 손님들은 성매매여성을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미안했어요, 수고했어요’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음.</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정 이후, 상대적으로 업주와 남성손님이 단속에 많이 걸리자 이를 의식하기 시작함.</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해짐. 이를 숨기기 위해 업주는 성매매여성과 일련의 합의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지위가 다소 향상되게 됨</li> <li>-업주와 성매매여성과의 관계는 초반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나, 일정기간이 지나 ‘성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관계가 나빠지고 이는 업소이동으로 이어짐.</li> <li>-이에 업주와 손님을 중심으로 새로 들어온 성매매여성과 기존에 있었던 성매매여성은 경쟁적 관계에 있게 됨.</li> </ul>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한된 인간관계 형성하였음. 섬 지역 사람들은 업주와 ‘한통속’으로 생각함.</li> </ul>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업주</li> <li>-업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자 함. ‘값아야 하는 돈, 선불금’</li> <li>-성매매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긴급업주회의 소집.</li> <li>-법제정 직후 잠깐은 업주가 성매매여성에게 잘해줬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음.</li> </ul>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으로 좋은 관계였는데, 현재 소송중인 업주만 나빴다고 기억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발언들을 보면 감금된 적도 있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음.</li> <li>-동료들과는 가까워도 서로 도울 수 없고, 돕지 않는다고 설명함.</li> </ul>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양호함.</li> </ul>

**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여성들은 성매매에 대해서는 주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죽도록 하기 싫은 일’로 인식하며,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일’로 인식하며 이 일을 도모하는 업주가 성구매 남성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생산수단으로서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다. 한 조사 대상자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즈음 반대 시위를 하러 다녔으며 법이 제정되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아가씨들이 빠져 나가면서 본인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매매를 통해서 돈다고 생각하며,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표 V-7>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매매에 대한 인식

사례	내용
A	-‘인간적으로 황량한’, ‘술에 취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일’, ‘생각보다 돈이 벌리지 않고, 몸은 몸대로 상하는’로 생각함.
D	-성매매: ‘노리게 감’, ‘나라는 사람이 없는 느낌’, ‘진짜 하기 싫은 일’이나 결근비 등을 통해 빛이 커지므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일로 생각함.
E	-성매매를 말하면서 ‘더럽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함.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일’로 인식하며 이 일을 도모하는 업주가 성구매 남성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함. -그러나 남성의 성적 본능 때문에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H	-‘돈을 벌기위한 성매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를 통한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울해짐. 막막함.
I	-성매매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대해 불만이 있음. 그러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
J	-성매매방지법 시행 즈음 반대 시위를 하러 다녔음. 법이 제정되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음.
K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아가씨들이 빠져 나가면서 본인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함.
O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음. 성매매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고 싶어서 탈업 소 하였음.
R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매매를 통해서 돈다고 생각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함.
T	-생계를 위해서(돈벌이) 유지해 온 여성이라 생계를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 됨.

### 마. 수입과 지출

본 조사에서는 법제정 이후 성매매여성의 수입 및 지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입의 종류와 내역, 소비생활(월평균 생활비), 빚과 이자, 업주와의 분배구조의 변화의 소항목을 두었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응답자의 거부감이 큰 부분으로 각각의 소항목의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법 제정 이후 변화에 대해 묻는 방식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한 면접대상자에 의하면 90년대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로 인한 수입은 대략 500만 원이라고 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직전이 800-1,000만 원 선으로 가장 높았는데 성매매로 인한 경제 규모가 커져서 법 제정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는 평균 300만 원선 같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지금도 1,500만 원을 버는 등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수입의 분배에 있어 최근 변화로는 과거에 비해 성매매여성을 위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입 분배 비율은 5:5나 6:4가 기본이며 법제정 이후에 크게 변한 것은 없으나 업주 개인에 따라 6:4였던 것이 5:5로 바뀌거나 그날그날 버는 대로 업주와 수입을 분배하는 등의 다소 변화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법제정 직후 업주들이 여성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일들이 많았고, 이후로도 선불금을 주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했던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불금은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적은 금액만을 주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외에도 지각비나 결근비를 받지 않는 등 기존의 수입분배가 업주 위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성매매여성을 위주로 다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집결지의 경우는 법제정 이후 단속이 심해져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집결지 폐쇄 및 자활지원정책 등 젊은 여성들이 쉽게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3-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1-2년 정도만 견디다가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한다.

<표 V-8>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수입과 지출

사례	내용
A	-A지역은 하숙비, 방세 150만원과 전체 수입의 10% 때는 '와리'만을 지불하였음. -B지역은 5:5로 수입을 분배하고 50만원의 방세를 지불함. -벌은 돈을 '약착같이 모았으므로' 빚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음.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므로 1년 단위로 저축해서 돈을 모으고 있음. -매달 250-300만원정도 자녀양육비로 돈을 붙여왔음. -성매매여성들의 수입은 90년대 500만원선, 성매매방지법제정 직전이 800-1000만원선, 현재는 300만 원 선인 것 같음. 그러나, 지금도 1,500만원을 버는 등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B	-버는대로 그날그날 업주와 수입을 분배함. -업주와의 수입 분배는 6:4가 기본임. 법제정 이후에도 수입 분배 비율은 크게 변한 것이 없음. 그러나, 법 제정 직후, 업주들이 여성들의 빚을 줄여주는 일은 많았음. -법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기타 성매매로 많이 옮겨갔음. -법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심화되어 젊은 여성들이 쉽게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3-40대가 주를 이룸. 이들은 1-2년 정도만 견디다가 그만둘 생각을 함. 성매매를 그만두고자 하는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지각비, 결근비 등은 없어졌으며 선불금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함.
D	-업주에게 돌아가는 비용: 성매매여성의 시간비 2만원의 10%, 결근비(30만/1일), 지각비(2만/1일), 숙소비 20-25만원 가량, 노래방비, 술값 등 -룸살롱의 경우, 테이블비가 7만원, 2차가 15만원으로 합이 25만원을 받게 됨. 단,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테이블비의 일정 비율은 업주에게 줌.
H	-업주는 계를 들어 이후에 목돈으로 주기로 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해 업주를 고소하게 되었음.
K	-미성년자로 다방에 처음 유입된 때에는 주인이 위험부담 때문에 월급을 적게 줌. -룸살롱에 있을 당시 월급제인 곳은 기본급 150 만 원 정도에 2차비용 건당 15만원, 월급제 아닌 곳은 일주일에 약 100-150만 원가량 수입이 있었음. -마담과의 연계를 통해 사우나, 훌복, 화장품 등을 사게 됨.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거나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이후에도 빚은 해당업소 내에서 갚았다고 함. 빚으로 인해 업소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마지막에 카드빚이 있었으나 탈업소 전에 갚음. 카드빚도 어머니 이를 해드리는 등의 용도로 씬. -마지막에 일한 룸살롱에서는 2차비용 30만원을 3:7로 나누고, 여기에 TC비(테이블비)를 더해 한 번에 25만원 정도를 받았음. 업주는 13만원과 술을 판매하여 이익을 올린것임.
O	-수입은 성매매로 이루어 짐. -화장품과 의류 구입, 휴대폰 비용에 주로 사용(이 곳 여성들은 많게는 대략 월 200만원 쓰는 것으로 추정 됨). -5:5 반씩 나누고, 지내야 할 방 값 50만원 따로 지급. -법시행 이전에는 선불금 1,000만원도 다 받아주었으나 법 시행 이후, 선불금 있는 여성을 받지 않으려고 함. 선불금이 있는 여성의 경우, 직업소개소를 타고 오는 경우만 500만원 선에서 받아줌.
P	-일할 때 물품 구매, 의상, 식료품 용도로 200-300만원 정도 사용함. -수입에 상관없이 빚으로 소비를 하는 것에 익숙해짐. -티켓다방에서 빚이 많았고, 그에 대한 사체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힘듦(현재도 갚고 있는 중임). -수입의 분배는 제정 전과 비슷하지만, 방값 등을 따로 받는 것은 많이 없어진 편임. -법제정 이후,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주는 것보다는 사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짐.
R	-주로 수입은 성매매와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벌은 것으로 보이고, 소비 생활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빚과 이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업주와의 분배는 원래는 5:5로 나뉘었으나,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로 영업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6:4, 7:3까지의 분배도 있었다고 함.

### 3. 탈성매매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

#### 가. 현재 상태

현재의 거주지, 성매매방지정책에 의한 수급여부,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20명 중 2명은 현재 성매매여성으로 상담소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활지원정책의 직접적인 수급자로 숙식, 직업훈련, 진학 등의 자활과정에 있었다. 수급기간은 1개월에서 많게는 2-3년으로 이는 지원시설에서 몇 년을 거주하거나 그 이전 상담소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을 받은 기간을 합산한 것이다. 정책수급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전문대학에 진학하기도 하며, 학원비 지원으로는 검정고시, 공인중개사, 요리사, 교통사고 감별사, 애견관리사, 네일아트, 은공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등의 진학 및 취업훈련도 있으며, 각종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등도 있었다.

<표 V-9>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현재 상태

사례	내용
A	-상담소 이용 경험만 있음.
B	-현재 5-6개월 째 상담소를 통해 정책수급 중임. -혼자 집에 거주. 월세 내고 있음. -학원지원(공인중개, 요리, 교통사고 감별), 의료(치과치료), 생활비 44만원 등
C	-현재 정책수급 받은 지 8-9개월째 -학원(애견관리), 생계지원44만원 -애견관리사 B급 취득. A급 자격증 준비중
D	-현재 5개월째 쉼터에 거주하면서 정책수급을 받고 있음.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과정중에 있음.
E	-2006년 9월부터 일반지원시설에 거주. -숙식, 학원지원(검정고시) 등 지원받음.
F	-현재 정책수급 1개월째이며 일반지원시설에 거주.
G	-현재 일반지원시설 거주.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재학중에 있음.
H	-일반지원시설에서 13-14개월 거주 경험 있음. -현재 전문대학에 재학중이면서 성매매피해 상담소 직원으로 근무 중.
I	-2005년 5월에 쉼터에 들어가서, 2006년 4월에 검정고시를 한번 치고, 5월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음.



사례	내용
	-의료, 직업훈련(검정고시학원), 상담을 받았고, 법률지원은 받지 않음. 자활기금은 500여만원 남았다고 함.
J	-현재 쉼터에 거주하고 있음. 3년 이상 되었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중임. -법률지원, 의료, 직업훈련비 받음(은공예 자격증).
K	-현재 일반지원시설에 거주하면서 숙식 제공받음. 지원시설 거주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비밀이며, 어머니가 집에 내려오라거나, 돈을 벌라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함. 혼란스러워하는 듯. -탈업소 후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원시설을 스스로 찾아 들어온 경우임. -의료지원, 직업훈련. 직업훈련으로써 검정고시 학원과 플로리스트 학원을 다님. -2007년 2월 말부터 약 6개월째임. 내년 4월에 검정고시를 다시 볼 생각.
L	-현재 지원시설에 거주. -법률, 의료, 직업훈련 받고 있음. -2007년 2월 이후 수급.
M	-현재 일반 지원시설 거주. -정책 수급받고 있음.
N	-아는 동생의 집에서 동거 중, 국가 지원 보조금 받고 있음. -생계지원, 의료, 학원(요리, 한식) 지원 받고 있음.
O	-거주할 집을 구했으며, 탈 성매매 한 여성과 함께 지냄. 지원 받고 있으며, 지원 받은 지는 2개월 되었음.
P	-임시 쉼터에서 지냄. -4개월째 정책수급.
Q	-월세로 혼자 살고 있음. 지원 받고 있음. 11개월 째.
R	-자가주택 거주, 수급 지원 받고 있으며 6개월 정도 되었음.
S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정책 수급 받고 있음. 받은 지는 4개월째로 접어 듬.
T	-지난 9월 탈업소 했고, 3-4번 정도 지원 받음.

## 나.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탈성매매를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탈성매매 결심의 장애요인을 질문하였다.

우선 탈성매매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는 ‘보통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매매가 ‘죽도록 하기 싫은 일’로 인식되면서 탈성매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주변의 도

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은 상담소 선생님들이 함께 해줄 거라는 믿음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에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탈성매매를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자활지원정책 홍보지, 상담소 직원과의 만남, 동료들을 통한 관련 정보 입수 등은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업소정지 등의 우발적 상황이나 납치, 인신매매, 감금 등의 급박한 상황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탈성매매 결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대출금 상환’, ‘자녀양육비, 생활비 등 기존 소비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 ‘빚’, ‘업주의 협박’,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등을 들기도 한다. 이밖에 현재도 집안이 어려워 생계를 담당해야 하거나 이미 커져버린 돈의 씹쓸이를 줄일 수 없어서, 혹은 과거 성매매 경험을 숨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탈성매매를 결심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남들에게 당당한 삶’에 대해 동경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제정 이전에는 탈성매매를 결심하나 ‘빚’ 때문에 포기했었으며, 법제정 이후 ‘좀처럼 갚아지지 않는 빚’ 때문에 오히려 탈성매매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법제정이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권익 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제정 당시에는 업주들의 주입식 교육으로 여성단체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일 못하게 하는 재수 없는 존재’라는 불신이 있었지만,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탈성매매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고’, ‘듣는 것과는 너무 틀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표 V-10>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사례	내용
A	-현재로서는 탈성매매에 대한 마음은 없음. 집 장만을 위한 대출금 상환, 자녀양육비 등 지금까지 지속해 온 지출의 규모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지속해야 함.
B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상담소 선생님들이 함께 해줄 거라는 믿음에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시도하게 됨. -탈성매매의 장애요인으로 첫째, 채무관계의 존재, 둘째, 성매매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우선적으로 성매매가 ‘죽도록 하기 싫은 일’로 인식되면서 탈성매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됨. 실제로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C	-탈성매매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자활지원정책은 탈성매매 시도의 발판이 됨.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시작하나, 상담소 워커 등을 통해 지지를 받아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됨. -탈성매매 결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큰 돈이 필요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막막함’이 있음.
D	-어머니가 여성단체에 신고하여 탈업소하게 됨. -‘남들에게 당당한 삶’에 대해 동경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 포기함. -대부분의 경우 업주하고 관계가 좋지 않거나, 일 자체가 힘들어서 탈업소하고자 함.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탈성매매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
E	-아는 동생의 탈성매매 과정을 간접 경험한 것이 탈성매매의 계기가 되었음. -탈성매매를 결심하나 ‘빚’ 때문에 포기했었으며, 이후 ‘좀처럼 갚아지지 않는 빚’ 때문에 탈성매매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음. -탈성매매 결심의 조건: ①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정상적인 삶에 대한 동경, ②‘빚이 갚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 ③법 제정으로 용기를 갖게 됨. ④탈성매매한 동료로부터 정보 입수.
F	-업주의 협박 및 감금 등의 급박한 상황에 탈성매매를 긴급하게 결심하게 됨.
G	-법제정 이전, 탈성매매를 결심하여 112, 1366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 있었으나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실패함. -성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은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지원책을 제공하여 탈성매매와 자활에 이르도록 함.
H	-업주들의 주입식교육으로 형성된 여성단체에 대한 불신 있었음. 여성단체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일 못하게 하는 재수 없는 존재’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입수하면서 탈성매매를 생각하게 됨. ‘신기하고’, ‘듣는 것과는 너무 틀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
I	-건강 문제와 일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탈성매매 하게 됨. -장애요인으로서는 생활비, 인간관계, 업주나 주변사람들에게 진 빚,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 등을 들었음.
L	-1366과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음. -마지막 업소 옮기기 전 빚 문제로 1366에 신고하려 했으나, 업주의 협박으로 신고하지 못했음.
M	-탈성매매의 개인적인 결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업소가 문을 닫은 후 이전 사장이 납치, 인신매매 하려는 상황에서 1366에 지원을 요청하여 탈업소하게 되었음. -경찰이나 공무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자활 시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어차피 경찰과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생각하게 됨.

사례	내용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불안감과 앞으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매매를 그만두었음. 조그만 식당을 차려 평범하게 살고 싶음.</li> <li>-상담소의 아웃리치를 통해 상담소직원과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음. 이후 탈성매매를 생각해 보게 됨.</li> <li>-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됨(자신의 의지 결여).</li> </ul>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에 대한 권태와 훗날 결혼과 사회에 알려질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탈성매매를 결심하였음.</li> <li>-탈성매매 결심의 장애요인은 1)집안이 어렵거나, 2)이미 커져버린 돈의 쓰쓰이를 줄일 수 없어서, 3)과거 성매매 경험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li> <li>-탈성매매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 구체적인 결심을 하지 못하나, 상담소 직원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이로 인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충 작용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됨.</li> </ul>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울증이 있기는 했으나, 성매매로 인해서 더 심화되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만 두자고 생각함.</li> <li>-결심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온 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은 있음.</li> <li>-탈성매매 결심의 장애요인: 1)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2)성매매 이외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서, 3)돈 사용에 있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li> </ul>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몸이 아파서(허리+패혈증) 체력의 한계 때문에 탈성매매 하게 됨.</li> </ul>

#### 다. 공권력에 대한 인식

법제정 이후 경찰 및 검찰의 변화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법제정 이전에는 경찰과 업주 사이에 강한 연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 즉, 경찰에게 성상납하거나 경찰이 손님인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 단속 전에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법제정 이후 경찰단속이 심해지고, 법 집행 정도도 일반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은 여전하다고 보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경찰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표 V-11>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공권력에 대한 인식

사례	내용
D	-같은 지역 경찰은 업주와 유착되어 있을 것 같아 불신함.
G	-업소에서 만났던 경찰에 대한 경험으로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적 태도를 갖고 있음. -현재 경찰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기 보다는, 마지못해 협조하는 듯함.
H	-업주와 경찰 간 유착관계, 경찰에 대한 불신. -법제정 이후 경찰의 태도와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소속 지역 경찰을 불신함.
I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경찰단속이 심해짐. -단속 외에도 집결지 주변의 의경들에 대해 안쓰럽다고 표현함.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거라고 봄.
M	-경찰과 업주 사이에 강한 연계가 있었음. 경찰에게 성상납하거나 경찰이 손님인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 단속 전에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고 함. -초기(성매매방지법 제정이전)에 업소단속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던 당시 경찰로부터 모욕을 받고 경찰을 고발한 적 있음.
N	-경찰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뉨.
O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고 함.
R	-좋은 형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라.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공받는 급여의 종류에 대한 적절성 인식, 담당 직원과의 관계와 의미,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있어 자활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경제적 의미의 자활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이를 위해 진학하는 것이며 이는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달해야 될 최종의 목표를 ‘안정적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자활의 개념은 ‘보통사람이 되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것’ 등으로 일반인과 같은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 심한 성매매를 그만두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양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사회적 차원의 자활과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자활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 ‘자활’은 과거 성매매 경험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물리적인 여건을 넘어 심리적 여건까지도 자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이 외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그 자체’, ‘자활과정 그 자체’, ‘도전, 불안, 성취감의 과정’, 등의 의견도 있었는데 성매매업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하여 취업 등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보통사람’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자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의식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 생활양식도 변하게 된다고 한다.

자활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종합해 보면 ‘생활비가 너무 적음’, ‘수중에 담배 살 돈 조차 없어 비참함을 느낌’, ‘시설규제 혹은 처음 해보는 단체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느낌’, ‘기간이 짧아 자활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원지원, 의료지원(치과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받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실제적인 생계비 지원은 적다고 느끼거나 의료지원의 폭을 넓혀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불신하였으나 점차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다. 시설 직원을 설명하면서 ‘모델’, ‘엄마 같은’, ‘지지자’, ‘사랑’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점차 ‘정서적 지지자’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삶의 모델’, ‘엄마, 부모’, ‘지지,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신뢰적 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탈성매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이미 씹씹이가 커져 있는 상태인지라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이 지내온 배경을 고려해서(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에서의 사업자등록증 제시 부분도 창피하다 함)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담당 직원들이 여성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지원금을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생계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사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의 경우 좀 더 간소한 절차와 넓은 보장을 바라고 있다.

결국 법제정과 자활지원정책의 존재는 성매매여성에게 있어 탈성매매의 직접적인 기회와 발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 제정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현재의 자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갖게 되는데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V-12>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사례	내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의 권유로 상담소를 방문하게 됨.</li> <li>-처음에는 자신들의 일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거부감이 컸지만, 현재는 ‘속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힘들겠다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상담소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낌.</li> <li>-정책수급 받은 지는 5-6개월정도 되었음. 학원지원, 의료지원(치과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음.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생계비 지원은 좀 적다고 느낌.</li> <li>-현재까지 공인중개, 요리, 교통사고 감별과 관련된 학원지원을 받았음.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였고 현재는 교통사고 감별과 관련된 학원을 준비중에 있음.</li> <li>-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도전하지만 ‘실패’를 경험하며, ‘버스를 타는 일’ 그 자체도 ‘모험이며 쉽지 않은 일’이므로 ‘매사 도움을 주는’ 상담소 직원의 존재는 ‘버팀목’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li> <li>-실질적인 자활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의 성매매 중사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자활과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잘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됨.</li> <li>-침터를 들어가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없음.</li> <li>-‘자활’은 첫째, 경제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 둘째,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떳떳해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임.</li> <li>-성매매업소에서는 시키는 일에 복종하였으나 상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을 연습하고 있음.</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은 ‘약간의 지지와 함께 내가 커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에 갈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음.</li> <li>-탈성매매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자활지원정책은 탈성매매 시도의 발판이 됨.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시작하나, 상담소 워커 등을 통해 지지를 받아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됨.</li> <li>-‘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것’, ‘내 생활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자활에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에 기쁨을 느낌.</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소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수중에 돈’이 없는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음.</li> <li>-‘자활’: 자기가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여자가 되는 것’, ‘자격증 취득’.</li> <li>-숙식, 의료(치과), 법률지원, 직업지원(네일아트), 사회적응비 3만 원 등을 지원받고 있음.</li> <li>-자활지원정책에 대부분 만족하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단체생활이 다소 어렵기도 함.</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은 ‘성매매를 안 하는 그 자체’이며 ‘성매매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li> <li>-다른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다른 사람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직장에 다니기</li> </ul>

사례	내용
	<p>어려워 보통 수입이 없음. 용돈을 주는 것 자체는 고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배 살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비참해지기도 함.</p> <p>-용돈 증액, 방당 인원수, 개인사물함의 설치 등 개인의 삶이 보장되었으면 함.</p>
G	<p>-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점차 '정서적 지지자'로 고마움을 표현함. '삶의 모델', '엄마, 부모', '지지,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담당직원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적 태도에서 신뢰적 태도로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함.</p> <p>-법 제정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현재의 자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갖게 되었음.</p> <p>-자활은 성매매업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하여 취업 등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보통사람'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또한, 이전과 다르게 피해의식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변화함. 실제 생활양식도 변하게 됨.</p> <p>-생각하는 양식, 생활하는 양식의 변화.</p>
H	<p>-자활: 첫째, 성매매를 하지 않는 상태, 둘째, 자활과정 그 자체, 셋째, 일반인과 같은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등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음.</p> <p>-사회로의 재유입의 관문인 진학과 자격증 취득: 도전과 실패, 불안함, 노력... 결국 성취감을 경험함.</p> <p>-각 사람에 따라 자활과정에 큰 차이가 있어 자활지원금의 융통성 있는 지출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음.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법률지원으로만 거액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재정적 지원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p>
J	<p>-현재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은공예, 도자기 판매를 통한 수입도 있음.</p> <p>-자활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p> <p>-처음 센터에서 담당직원과 문제가 있었음.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며 '서류작성'등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고 기억하였음. 해당 직원은 이후 퇴출되었고, 현재는 직원들과 관계 원만함.</p> <p>-항목 간 지역차이가 있는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집결지 지원과 이외지역 지원 가능 범위가 다름.</p>
K	<p>-다시 일어서고,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자활을 새로운 생활의 계기로 받아들임.</p> <p>-담당 직원과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말함. 그러나 상담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있음. 거듭되는 상처 드러내기와 말하기가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는 힘들다'는 입장임.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함.</p> <p>-합달 생활비(삼만원)와 시설의 규제에 대한 불만은 학원 등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됨.</p> <p>-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우려하고 있음.</p>
N	<p>-제공받는 급여 및 서비스가 너무 적다고 말함, 자활을 이루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함.</p> <p>-업소에 있는 동안에 지급되는 금액과 기간 보다, 탈성매매 후의 지원금의 액수와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p> <p>-상담소 직원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임.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p>
O	<p>-주니가 감사하지만, 이미 씹씹이가 커져 있는 상태인지라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p> <p>-어려울 때 연락하고, 조언을 구하는 듯함.</p> <p>-성매매 여성이 지내온 배경을 고려해서(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에서의 사업자등록증 제시 부분도 창피하다 함)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Q	<p>-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의 언급이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여성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램. 또한 지원금을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예컨대, 생계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사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생각함.</p>
R	<p>-제공받는 급여는 적으나, 정말 도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함.</p>
T	<p>-의료 지원의 경우 좀 더 간소한 절차와 넓은 보장을 권유 함.</p>



### 마.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

평소 경찰 단속 등에 대한 생각, 수사과정: 수사관(경찰 및 검찰)의 질문 방식 및 태도, 피해자의 경우, 입증 과정에서의 어려움, 증명방법, 피의자의 경우, 구속여부, 처분결과 및 현재 상황, 선불금의 현재 상황, 증명 방법, 주변의 지원(상담소, 변호사 등)에 대한 생각과 경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성매매여성은 업주-경찰 유착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컸다. 대부분 업주들은 지역 인맥이 두터워 성매매여성은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데 있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 면접대상자의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 거주지, 조사내용을 업주에게 알려준 적 있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평상시 단속이 업주와 경찰의 짜여진 각본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탈성매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경찰을 불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면접대상자들의 답변 역시 경찰에 대해서는 불신적 태도가 주를 이루나 최근 수사과정에서 만났던 경찰들이 우호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과거 경찰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가 많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담소 직원과의 동석은 직접적으로는 경찰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성매매여성의 두려움 또한 감소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 또한 많았다. 한 여성은 자신이 혼자 있을 때와 상담소를 통한 협조요청 등이 있을 후 태도가 크게 달라 당황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여성도 완전히 우호적인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곤란하고 불쾌한 질문을 받기도 했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소송을 해도 안 될 것이다”, “성관계할 때 상황은 어떠했는가”, “빛 안 갠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등의 대답하기 어렵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lt;표 V-13&gt;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

사례	내용
D	-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로는 개인이 기록했던 장부 제출, 마담의 진술서, 업주의 자백이 있었음. -업주와의 대질심문 과정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시간임. 대질심문 시간 동안 상담소 선생님이 동석하였음. -지역인맥이 넓은 업주를 염려하여 타지역에서 사건 진행함. -담당검사가 여검사로 편안하였음.
F	-감금을 당해 신고했으나, 보호자가 같이 있으므로 경찰은 감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음. -여성 혼자 있을 때 경찰이 대하는 태도가 나빴으나 이후 상담소를 통한 협조요청 등이 있을 후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함.
I	-수사 받은 적 없음. -상담소에서 신용불량회복 관련 조정해 주었음.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집결지 지원시설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함. 경찰 단속 시 상담소가 방관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음. 시설의 여성들은 주로 탄 지역에서 왔음. (자원요건 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홍보 필요)
L	-경찰을 불신함. 업주보다 경찰이 싫다고 발언.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의 잘못된 처사로 문제가 많았음. -소송을 해도 안될 것이라거나, 빚을 안 갚으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는 등의 유도질문을 함.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 피해자의 조사내용 등 정보를 피의자에게 경찰이 알려줌. -대질심문 시 경찰이 피의자 앞에서 '2차는 어떻게 했는지, 2차를 나가면 돈은 어떻게 받았는지' 등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피해자에게 던짐.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로는 불충분하여(경찰의 질문에만 대답하는 형식) 시설에서 단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첨부.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적 있음. -피의자는 구속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조사받으려 '온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구속되지 않은 듯함. -소송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고,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중임.
M	-평소 경찰 단속에 대한 생각은 극히 부정적임 -수사과정에서 만났던 경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부분적으로 보였음.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며, 사기죄로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음.
N	-평소 경찰 단속이 나와도 성매매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함. -재판과정: 해당사항 없음 -선불금 몇 십 만원에 불과함.
P	-사채로 인한 개인회생 소를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선불금이 차용증 대신, 사채로 빌리게 되어서 이자 갚고 있는 중. -좀 더 폭 넓은(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담당하는 등) 지원이 있길 바라고 있음.
Q	-법 제정 후 변화는 전혀 없다고 말함. 단속 할 당시에만 잠깐 그런 듯 하지,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변화를 전혀 못 느끼겠다고 말함.

## 바. 성매매 재유입 요인

성매매 재유입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당장 담배 살 돈이 없어서', '자신의 커진 씹뽀이를 줄일 수가 없기에' 등으로 탈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된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은 카드빚, 숙식 해결 등의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성매매로 유입되어 이런 개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가져도 재유입으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매매로 인한 고소득 혹은 빚에 의존한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정상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유입된다는 것이다.

재유입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다른 일에 익숙지 않아서’,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자활하였으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신감 없어서’, 등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오랫동안 사회와는 격리된 채로 성매매 현장 내에서만 생활해왔으므로 인간관계 그 자체가 제한적이다. 또한 성인이면 스스로 해내는 사회활동들, 즉 경제활동, 대인관계 형성, 가사노동 등의 일체를 업주 등 제3자에게 위임해 생활하다시피 하여 버스타기, 은행계좌를 만드는 일조차도 무섭고 두렵다고 지적하였다.

<표 V-14>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매매 재유입 이유

사례	내용
A	-성매매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만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돈벌이가 그만큼 되지 않아 다시 성매매로 유입됨.
C	-재유입의 가장 큰 요인은 ‘돈’
D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가장 큰 요인은 ‘돈’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함.
E	-‘돈’ 때문임. 당장 ‘담배 살 돈’이 수중에 없어서 재유입을 하기도 함. 내 돈이 아닌 빚을 내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재유입된다고 생각함.
J	-현재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여성 많음. 실질적으로 생활이 힘들고, 나와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 -또 나와서 주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함.
N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의 불확실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재유입이 가능하게 됨.
O	-경제적인 부분을 사회에 나와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여성의 경우는 당장 숙식할 곳이 없음. 또한 가정에 돈을 보내 주는 경우, 자신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유입 가능성이 큼.
P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커진 빚을 줄일 수 없기에.
Q	-경제적인 측면이 크고, 성매매 이후, 사회에서 다시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염려 때문.
R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의 요인이 크다고 봄.
T	-건강상의 사유, 재정적인 사유, 사회에 부적응 등에 대한 사유를 나열 함.

### 제3절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의 변화

#### 1.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2002년도 연구를 중심으로

성매매여성의 생활상에 관한 연구는 2002년도 실태조사에서 수행된 바 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여성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여성은 업주와 손님에 의해 행해지는 성적·신체적 폭력에 익숙하다. 업주에 의한 폭력은 업주와 성매매여성 간의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빛의 정도에 따라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신 구속 및 감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업주는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매매여성들 상호간 맞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공동숙소를 사용하게 하는 등 상호간 감시체계를 형성하였다.

성매매업소의 손님인 성구매 남성의 경우, 여성을 돈을 주고 샀기에 성매매여성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성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강간, 서비스 요금 미지불, 변태적 성행위 등의 성적·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 성구매 남성은 성매매여성은 처벌받는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헐박하는 일이 잦아 성매매여성은 손님의 어떠한 모욕도 참아야 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은 여러 가지 차원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 및 최소한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자신들을 ‘열외의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업주의 폭력과 착취를 알면서도 업주와 우호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현실이기에 업주에게 의존적 태도를 취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 동료 여성과의 관계 역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감시자로 불신관계에 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이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데에는 삶에 대한 의욕, 빛을 갚는 일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점, 제3의 지원자의 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시 되었다. 그러나 탈성매매의 장애물 역시 존재하였다. 그것은 빛, 업주의 헐박과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빛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과 생각

등으로 도출되었다. 탈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차용증 등을 통한 채무관계의 미해결, 업주의 협박, 사기죄 고소 등으로 인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환경 변화

2002년도 실태조사 당시 2007년 현재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황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2004년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으로 인한 성매매 현실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사문화된 윤락행위등 성매매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 처벌법은 ‘윤락행위’에서 ‘성매매행위’로 그 개념을 바꾸었고, 알선행위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여 수사 및 재판상의 보호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조항에서 관련 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한국 성매매 현실과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우선 성매매여성과 업주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업주와 성매매여성은 폭력과 감금 등을 통해 지배종속적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경찰 단속 강화와 채권무효 관련 조항 등으로 성매매여성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졌다. 선불금이 없다는 것은 업주의 지배와 통제를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과거보다 쉽게 탈성매매를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수입 분배 차원에서도 기존에 업주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일정 부분 변하여 성매매로 인한 수입에 대한 업주의 심각한 착취가 다소 개선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여성과의 관계는 남성의 성적 요구와 협박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이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이 전 국민 차원에서 알려지면서 성구매 남성 역시 과거보다 강력해진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과 모욕도 다소 줄었다.

여성이 성매매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 측면에서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각종 전달체계가 신설되어 성매매 현장으로 투입되는 등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이루었다. 특히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피해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에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결심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처음에는 상담소나 지원시설의 종사자를 불신하였으나 점차 신뢰하게 되어 정서적 지지자 혹은 원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그로 인한 자활지원정책의 수립은 성매매여성에게 있어 탈성매매의 직접적인 기회와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과 생활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는 기회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6장

##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제1절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의미	249
제2절 공식통계에 따른 성매매 사건 처리 현황	251
제3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에 따른 성매매사건 처리현황(2004-2007)	257
제4절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와 한계	292
제5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개선방안	310

## 제1절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의미

2004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하 윤방법)과 동일하나 법의 목적이나 처벌 범위가 확대 및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우선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절차상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산업의 붕괴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윤락행위에서 성매매행위로 개념을 바꾸고, 성교행위 뿐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에 포함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게 하였으며, 성을 팔게 하기 위해 위계, 협박, 폭력을 동원해 대상자를 꼼짝 못하게 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인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방법에서 규제되었던 알선행위에 광고행위, 소개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수사·재판상 보호절차를 규정하였고,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조항과 관련하여 관련 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성매매행위자(성구매자, 성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가장 큰 시행성과는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성매매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고, 전통형 집결지의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교육제도의 시행이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면제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의 도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 등 신종, 변종 성매매업소 유형의 확대나 인터넷 성매매, 해외성매매 증가 등 성매매경로의 다양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실정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집행수준이 과거 윤방법 시행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비판은 성매매처벌법이 전제하고 있는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의 이분법에 있다. 성매매 피해자와 성판매여성(성매매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형법적 틀 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폭행·협박, 강요, 위계·위력 등의 강제력의 개념이 너무 좁게 해석되어 다양한 경로의 경제적, 심리적, 구조적 강제의 메커니즘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법 시행 3년이 지나면서 법 집행수단의 마련과 철저한 집행을 통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올라야 할 시점이다. 법 제정 당시 성매매정책에 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은 원활한 법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 유입을 자발과 강제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조에 관한 지적 역시 해결할 지점이기도 하다. 성매매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하는, 성판매행위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제5, 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내린 최종권고에서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sup>106)</sup>.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성매매처벌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정 당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공식통계에 따른 성매매처리현황을 통해 대략적인 성매매 사건의 발생 및 검거현황, 검찰 및 법원의 처리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매매 관련 범죄를 다루는 수사 및 재판기관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공식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매매 사건의 행위요소들, 예를 들어 성매매 범죄의 형태, 피의자 및 성매매 업소의 유형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기관의 처리현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불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법에 규정된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년 율방법 시행 당시 성매매 사건의 처리현황과 비교·분석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지점을 살펴보고,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성매매를 근절하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검토해보았다.

106) CEDAW/C/KOR/CO/6의 우려 및 권고사항(Principal areas concern and recommendations) 19항 참조.

## 제2절 공식통계에 따른 성매매 사건 처리 현황

### 1. 성매매사건의 발생 및 검거현황

다음은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3년간의 성매매처벌법, 윤방법,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한해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 보여 주고 있다.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성매매알선, 강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이후는 성매매처벌법이 규율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윤방법이 이를 담당하였다. 성구매행위의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연나이)인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2005년, 2006년에 윤방법이 적용된 것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윤방법이 시행된 때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본연구의 목적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실태를 살펴보고,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성매매처벌법, 윤방법 위반사건의 공식통계를 통해 성매매사건처리 현황을 볼 것이며, 청소년성보호법은 성구매,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성매매사건처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다.

<표 VI-1> 성매매사건의 발생·검거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남	여
성매매처벌법	2004	830	821	2,475	1,513	962
	2005	3,439	3,368	13,093	9,638	3,455
	2006	6,886	6,833	26,631	21,920	4,711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2,910	2,886	8,295	4,607	3,688
	2005	365	368	997	777	220
	2006	56	66	141	87	54
청소년 성보호법	2004	2,863	2,815	3,705	3,355	350
	2005	1,874	1,792	2,824	2,656	168
	2006	1,584	1,497	1,357	1,325	172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7.

여기서 발생건수는 실제 발생건수가 아니라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인지나 관계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라 할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을 보면 2004년 9월 23일부터 법이 시행된 관계로 2004년에는 발생, 검거건수가 8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05, 2006년에 이를수록 발생이나 검거건수가 크게 늘어나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2005년 3,368건, 2006년에는 6,833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검거건수가 6,833건에 검거인원이 26,631명으로, 1건당 평균 약 4명 정도의 피의자가 관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윤방법은 반대로 2004.9.23부터 폐지됨으로써 2005년, 2006년으로 갈수록 발생, 검거건수가 줄고 있다. 윤방법의 경우는 검거인원의 남녀성비가 비교적 비슷한 반면, 성매매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남녀성비가 남자 쪽이 몇 배나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윤방법때는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이나 검거가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 성매매처벌법 이후에는 성구매자 단속이 증가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 2. 수사기관의 처분현황

다음은 최근 3년간 성매매사범에 대한 경찰,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여준다.

검찰의 처분은 먼저 기소와 불기소로 구분되며, 기소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그리고 약식기소처분으로 구분된다. 불기소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분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20세미만 소년사범에 대해 소년법상 소년법원에 보호송치를 행할 수 있으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매매보호송치 등을 행할 수 있다.

&lt;표 VI-2&gt; 성매매사건의 처분현황

(단위 : 명(%))

		계	기소				소년 보호 송치	가 정 보 호 송치	성 매 매 보 호 송치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 가 안 됨	공 소 권 없 음	기 소 중 지	참 고 인 중 지
				구속	불구 속											
성 매 매 처 벌 법	2004	51 (100.0)	39 (76.5)	8	7	24	-	-	1	11 (21.6)	7	3	-	-	1	-
	2005	325 (100.0)	187 (57.5)	15	15	157	-	-	6	124 (38.2)	97	26	-	1	7	1
	2006	25,331 (100.0)	4,839 (19.1)	224	338	4,277	28	15	324	19,361 (76.4)	17,172	2,027	4	158	688	76
윤 방 법	2004	9,869 (100.0)	4,248 (43.0)	199	235	3,814	13	-	-	5,366 (54.4)	4,399	545	-	422	157	85
	2005	2,008 (100.0)	770 (38.3)	18	49	703	2	-	6	1,122 (55.9)	851	235	1	35	54	54
	2006	151 (100.0)	52 (34.4)	2	6	44	-	-	-	85 (56.3)	36	31	-	18	9	5
청 소 년 성 보 호 법*	2004	2,242 (100.0)	1,683 (75.0)	474	471	738	24	-	-	390 (17.3)	108	176	-	4	47	55
	2005	1,248 (100.0)	862 (69.0)	185	143	534	26	-	-	276 (22.1)	112	82	-	15	35	32
	2006	1,115 (100.0)	799 (71.6)	92	135	572	38	-	-	210 (18.8)	53	71	-	15	39	22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7; 「검찰연감」, 2005-2007.

\*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성구매, 알선영업행위, 강요행위 위반 사건을 합산함(검찰연감 참조).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2004년 76.5%였던 것이 2005년 57.5%, 2006년 19.1%로 갈수록 기소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처분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년의 경우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76.4%)은 성구매자에 존스쿨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많아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2006년의 경우 기소 인원 4,839명 중 구약식인원이 4,277명(88.3%)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벌금을 선고받는 인원이 많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상황을 보면, 2006년의 경우 구속인원에 비해 불구속 인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2005, 2006년으로 갈수록 구속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성매매처벌법 시행초기에 비해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공식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4년에 비해 2006년으로 갈수록 검찰단계에서의 불구속, 불기소, 구약식기소의 부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한편으로 성매매처벌법 시행초기의 수사기관의 의지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상으로는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 통계가 제시되므로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통계내용에 관해서는 제3절 이하에서 서술될 기록조사결과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윤방법 역시 기소율이 2004년 43.0%, 2005년 38.3%, 2006년 34.4%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기소율은 2004년 75.0%, 2005년 69.0%, 2006년 71.6%로 거의 70%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06년 전까지 구속인원 역시 불구속인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만큼 청소년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법원의 처리현황

법원의 성매매사건처리 현황과 관련해서는 제1심법원의 선고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윤방법 위반사범 중 2004년에 처리된 989명 중 집행유예 454명(45.9%), 재산형 362명(36.6%), 유기징역 84명(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2004년까지의 법원선고 추이를 보면, 집행유예(50.9% → 48.2% → 48.1% → 45.9%), 실형(14.1% → 12.5% → 6.4% → 8.5%) 선고비율은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재산형 선고비율(30.2% → 32.7% → 35.4% → 36.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lt;표 VI-3&gt; 윤방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건수	처 리														
		합계	사 형	자유형			자 격 형	재 산 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 의 면 제	면 소	관 할 위 반	공 소 기 각	소 년 부 송 치	기 타
				무 기	유 기	집 행 유 예										
2001	1,015	949 (100.0)	-	-	134 (14.1)	483 (50.9)	-	287 (30.2)	4	-	-	-	-	1	4	36
2002	949	1,080 (100.0)	-	-	135 (12.5)	521 (48.2)	-	342 (32.7)	2	2	-	-	-	3	9	65
2003	888	878 (100.0)	-	-	56 (6.4)	422 (48.1)	-	311 (35.4)	10	8	-	-	-	2	-	69
2004	962	989 (100.0)	-	-	84 (8.5)	454 (45.9)	-	362 (36.6)	9	11	-	-	-	2	1	66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2007.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중 2005년에 처리된 765명 중 집행유예 323명(42.2%), 재산형 294명(38.4%), 유기징역 39명(5.1%)의 순으로, 2006년에 처리된 845명 중 집행유예 367명(43.4%), 재산형 324명(38.3%), 유기징역 53명(6.3%)의 순으로 이와 같이 벌금에 비해 실형,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강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유기징역(1.2%), 집행유예(1.2%)가 늘고, 재산형 즉 벌금은 약간 줄었다(0.1%). 다만, 여기서의 수치는 성매매강요, 알선, 구매, 판매행위 등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유형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법원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뒤에서 나오는 수사·재판기록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표 VI-4>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처 리														
		처리	사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무기	유기	집행유예										
2005	796	765 (100.0)	-	-	39 (5.1)	323 (42.2)	-	294 (38.4)	6 (0.8)	4 (0.5)	-	-	-	6 (0.8)	-	93 (12.2)
2006 <sup>107)</sup>	1,062	845 (100.0)	-	-	53 (6.3)	367 (43.4)	-	324 (38.3)	13 (1.5)	5 (0.6)	-	-	-	-	-	83 (9.8)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6-2007.

107) 2007년 발간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으로 1심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2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인원이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 법원행정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수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정된 수치를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법원행정처(2007), 「사법연감」, pp.15-16.

### 제3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에 따른 성매매사건 처리현황(2004-2007)

#### 1. 조사내용 및 방법

##### 가. 조사의 범위

##### 1) 내용적 기준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이후 성매매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통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중 아래의 성매매관련법의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매매 행위에 관한 처벌법규는 2004년 9월에 폐지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6801호)」 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7404호)」 이 있다. 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자와 알선자인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8634호)」 로 규율되며,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법률 제7943호)」 로 규율된다.

본 기록조사는 성매매처벌법 및 운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성판매 및 성구매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건과 성구매 및 알선행위를 규율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에서 제7조, 제9조 위반사건, 그리고 청소년유해행위를 규율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2) 공간적 기준

전국 주요검찰청 중 성매매사건의 접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등 총 17개의 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VI-5> 검찰청별 성매매사건 접수현황(2004-2005)

(단위 : 명)

년도	지청별	성매매 위반	성매매위반 (청소년)**	지청별성매매 접수수비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청소년)**	지청별윤방법 위반접수비율 (%)
		접수	접수		접수	접수	
2004	서울중앙	290	1	12.6	1,940	0	16.6
	서울동부	96	0	4.2	207	0	1.8
	서울남부	136	0	5.9	359	0	3.1
	서울북부	185	3	8.1	702	0	6.0
	서울서부	105	1	4.6	374	3	3.2
	의정부	52	0	2.3	530	0	4.5
	인천	118	0	5.1	416	0	3.6
	수원	183	0	8.0	1,144	0	9.8
	춘천	43	0	1.9	299	0	2.6
	대전	51	0	2.2	801	1	6.8
	청주	42	0	1.8	326	0	2.8
	대구	165	0	7.2	1,365	4	11.7
	부산	337	0	14.7	923	5	7.9
	울산	140	0	6.1	455	0	3.9
	창원	63	1	2.7	449	2	3.8
	광주	192	0	8.4	814	2	7.0
	전주	95	0	4.1	424	2	3.6
제주	1	1	0.0	183	0	1.6	
총계	2,294	6	100	11,711	19	100	
2005	서울중앙	2,868	1	19.5	175	0	6.5
	서울동부	580	0	3.9	30	0	1.1
	서울남부	535	0	3.6	8	0	0.3
	서울북부	651	7	4.4	54	0	2.0
	서울서부	391	0	2.7	27	0	1.0
	의정부	348	0	2.4	144	0	5.3
	인천	930	0	6.3	136	0	5.0
	수원	1,727	0	11.7	275	0	10.2
	춘천	510	0	3.5	54	0	2.0
	대전	745	0	5.1	172	0	6.4
	청주	501	0	3.4	73	0	2.7
	대구	1,523	1	10.4	607	0	22.5
	부산	1,218	2	8.3	127	1	4.7
	울산	202	1	1.4	122	0	4.5
	창원	796	0	5.4	251	0	9.3
	광주	624	5	4.2	237	1	8.8
	전주	442	0	3.0	109	0	4.0
제주	123	0	0.8	94	0	3.5	
총계	14,714	17	100.0	2,695	2	100.0	

\*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5~2006.

\*\* 범죄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말함. 극히 예외적으로 청소년을 입건하는 경우가 있음.

### 3) 시간적 기준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시점인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말까지 검찰로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 4) 2002년 실태조사와의 비교

2002년 실태조사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는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법적 대응현황의 변화와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주된 대상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인터넷 성매매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성구매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조사에서는 성매매알선가능업소에 대한 행정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포함하여, 「직업안정법」, 「건축법」, 「학교보건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2년 실태조사의 경우, 성매매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과정과 특성 및 결과, 피의자의 특성과 행태, 업소행태 등을 조사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으며, ‘사건조사표’와 ‘피의자조사표’ 이외에 ‘피해자조사표’와 ‘업소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성매매 사건의 특성보다는 피의자와 사건의 특성과 요소가 검찰 처분과 법원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에 성매매처벌법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피의자와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건조사표’와 ‘피의자조사표’만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건 및 피의자의 특성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처리현황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2년 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피의자 수 1,369명보다 더 많은 수의 피의자 2,938명을 조사하였다.

### 나.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표본추출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2004년 9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접수된 성매매 관련 사건번호 목록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확정판결된 사건의 목록을 표집틀로 이용하였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인 경우,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사범 접수건수 총16,730건(71,288명) 중 5%를 임의표집하였다. 표집기준은 피의자가 아닌 사건수이다. 표집방법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3~6건당 1건씩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로 표집된 사건의 지청별, 분기별 배분을 위해, 표집시 검찰청별 접수비율<표 VI-5>과 분기별 접수비율<표 VI-6><sup>108)</sup>을 반영하였으며, 기소 및 불기소, 보호사건송치 사건을 모두 포함하였다.

<표 VI-6> 분기별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기간	접수실적(건)	검거인원(명)
2004. 9~12	1,956	7,279
2005. 1~3	737	2,719
2005. 4~6	1,023	2,705
2005. 7~9	1,068	4,316
2005. 10~12	1,173	7,508
2006. 1~3	941	3,528
2006. 4~6	888	3,058
2006. 7~9	1,651	10,675
2006. 10~12	3,679	16,486
2007. 1~3	2,678	9,138
2007. 4~5	936	3,876
합 계	16,730	71,288

\* 출처 : 검찰청 자료.

108) 검찰청별 성매매사건 접수비율은 2005년, 2006년 발간된 「검찰연감」에 의한 2004, 2005년 현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2006, 2007년 현재 비율은 기록조사 당시 2007년판 「검찰연감」이 발간되기 전이어서 2005년 현재 비율을 적용하였음.

청소년성보호법 등 청소년관련 성범죄인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관련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가 많아 임의표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성매매처벌법과의 관련성을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분기별로 1건, 각 지청당 11건을 임의추출하여 선정하였다. 표집된 결과는 다음의 <표 VI-7>과 같다.

<표 VI-7> 표집된 조사사건 수 및 실제 열람건수

(단위 : 건)

기관	조사 사건수(A)	열람건수(B)	B/A*100(%)
서울중앙 검찰청	77	32	41.6
서울동부 검찰청	42	36	85.7
서울남부 검찰청	44	32	72.7
서울북부 검찰청	55	39	70.9
서울서부 검찰청	41	28	68.2
의정부 검찰청	42	27	64.3
인천 검찰청	60	50	83.3
수원 검찰청	76	58	76.3
춘천 검찰청	41	30	73.2
대전 검찰청	48	41	85.4
청주 검찰청	42	37	88.1
대구 검찰청	77	63	81.2
부산 검찰청	76	59	77.6
울산 검찰청	43	30	69.8
창원 검찰청	47	40	85.1
광주 검찰청	38	29	76.3
전주 검찰청	33	28	84.8
총 계	882	659	74.7

기록조사는 2007년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검찰청 집행과의 협조를 받아 각 검찰청에 보존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훈련된 연구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사 및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성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항목표>[부록]를 작성하였다.

원래 표집된 조사 사건수는 총 882건이었으나 실제 열람한 사건수는 659건으로,

계획한 대상사건수의 74.7%의 조사가 이루어졌다<표 VI-7>.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우선 표본추출의 대상이 된 사건을 1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항소 등을 이유로 재판계류 중인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표본추출된 사건목록 중 대출중이거나 성매매관련 사건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 사건인 사건번호가 포함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몇몇 검찰기관은 본래의 업무 중에도 본 기록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그에 반해 해당 검찰청의 특수사정으로 인해 협조에 미흡했던 검찰청도 있어 요청한 사건목록의 반 이상이 누락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각 검찰청에서는 수사기록 중 판결문을 수사기록과 분리하여 편철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 열람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검찰청의 도움을 받아 따로 편철된 판결문을 보거나 검찰청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iccis.spo.go.kr)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선고현황은 판결문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통계수치를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PSS에 의한 통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다. 조사 내용

본 조사는 하나의 형제번호(사건번호)에 대해 사건조사표와 피의자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조사표는 각 사건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의자조사표는 하나의 형제번호에서 다루고 있는 수명의 피의자들의 개인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사건조사표와 피의자조사표에서 조사했던 항목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 1) 사건조사표[부록]

사건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분류를 위해 형제번호(1)와 접수일자(2), 그리고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3)을 조사하였다. 접수일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일자로, 이 접수일자를 토대로 조사된 사건의 시간적 분류를 하

였다. 그리고 해당사건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위반했는지 성판매, 성매매알선, 성구매로 구분하여 사건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4).

사건조사표를 통해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단속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단서(5)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기획수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성매매처벌법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이 기획수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신고, 탐문, 제보 등의 인지사건인지 등을 파악하여 성매매 사건 수사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건조사표에서 피의자 인원, 기소인원, 불기소인원 등 검거인원의 현황(6-1)을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성매매 위반 사건의 단속 및 검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건조사표의 피의자수와 기소, 불기소 인원의 경우, 한 사건의 실제 피의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된 경우 한 형제번호 사건의 피의자 인원이 200명이 넘는 사건이 있는 관계로 조사과정에서 실제 피의자수보다 적은 수의 피의자만의 피의자조사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피의자조사표상의 피의자 수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피의자 수나 기소율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한 사건에 어떤 피의자 유형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6-2)하여, 성매매 유형이나 위반법률에 따라 어떤 유형의 피의자들이 검거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업소의 유형(7)을 조사함으로써 해당사건의 성매매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성매매 업소는 크게 업소형, 비업소형, 경로형,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업소형(7-1)은 ①특정지역 성매매집결지, ②숙박업소, ③유흥주점, ④다방, ⑤음식점, ⑥노래방, ⑦맥주양주집/선술집, ⑧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⑨이발소, ⑩기타 미용관련으로, 비업소형(7-2)은 ①출장맛사지, ②고객의 집/사무실/차, 경로형(7-3)은 ①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②인터넷채팅, ③소개로 분류하였다. 거리 성매매와 보도방은 기타유형(7-4)에 포함시켰다.

## 2) 피의자조사표[부록]

피의자 조사표는 사건조사표 아래 번호를 달아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사건당 평균 3-4명의 피의자조사표를 작성하였다. 피의자조사표 역시 형제번호(1-②)와 접수일자(2)를 표기하여 사건조사표의 분류와 일치시켰으며, 주민번호 앞자리(1-①)를 표시하여 피의자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의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전, 피의자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문을 상세표시하였으며, 위반법률이 수개인 경우 모두 표시하였다(3). 이는 검찰의 공소장 내지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기준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별, 교육정도, 직업, 연령 등 피의자 인적 사항(4)을 조사하였다. 연령 및 성별은 주민번호를 통해 파악하였고 교육정도와 직업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직업에서, 유흥업소 업주인 경우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성판매 여성은 기타 피고용자로 분류하였다.

피의자의 범죄경력(5)을 조사함으로써 과거 성매매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의자였던 경험이 있는 자의 전회처분내용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였다(5-2).

피의자가 연루된 성매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의 역할을 알선자, 판매자, 구매자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알선자인 경우 ①성매매강요자, ②성매매알선자, ③모집자, ④직업소개자, ⑤장소제공자, ⑥건물주, ⑦광고업자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다(6-2). 성구매자거나 성판매자인 경우 어떤 유형의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①성교행위, ②유사성교행위, ③그외의 성적 서비스, ④미수, ⑤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6-3). 수사기관의 단속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속여부(6-1)를 조사하였으며, 변호사 선임여부가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7)에 대해 파악하였다.

검찰의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기소, 불기소로 나누어 그 내용과 형량 등 상세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8-1-1, 8-2),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역시 내용과 형량(8-1-2), 보호사건송치(8-3)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타란(9)을 두어 사건의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사 및 재판 기록의 특성상 단순히 양적 조사만으로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 라. 조사방법의 한계

본 조사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사건과 피의자의 특성 및 요소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선고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각각의 형사사건이 동일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등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처지와 상황, 행적 등에 따라 구형과 양형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양적 데이터와 달리 형사법적 대응 및 현황에 관해서는 변수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만큼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 및 수사·재판과정의 특성상 형사법적 대응을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만을 사용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공식통계, 관례경향 그리고 기타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고 보충하였다.

## 2. 성매매 사건의 특성 및 주요내용<sup>109)</sup>

본 연구에서 기록 조사한 성매매 사건수는 총 659건이며, 피의자수는 총 2,938명이다<표 VI-8>.

109) 이하에서는 사건조사표의 결과를 분석한다.



&lt;표 VI-8&gt; 기록조사된 지청별 성매매사건수 및 피의자수

(단위 : 건/명)

기관	조사사건수	피의자수
서울중앙 검찰청	32	160
서울동부 검찰청	36	128
서울남부 검찰청	32	150
서울북부 검찰청	39	203
서울서부 검찰청	28	128
의정부 검찰청	27	106
인천 검찰청	50	201
수원 검찰청	58	366
춘천 검찰청	30	82
대전 검찰청	41	158
청주 검찰청	37	190
대구 검찰청	63	318
부산 검찰청	59	327
울산 검찰청	30	97
창원 검찰청	40	117
광주 검찰청	29	106
전주 검찰청	28	101
총 계	659	2,938

### 가.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현황

성매매위반사건의 당사자는 크게 성매매 알선자, 성판매자, 성구매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성판매자가 성인일 경우 성매매처벌법 내지 율방법이, 성판매자가 청소년일 경우 성판매자는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표 VI-9> 성매매관련 법률의 규율대상

성판매자에 의한 분류 규율대상에 따른 분류	성판매자가 성인인 경우	성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매매 알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처벌법 제18조~20조, 22조, 24~25조</li> <li>윤방법 제24조~2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7조</li> <li>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li> </ul>
성판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li> <li>윤방법 제26조 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제15조의2</li> </ul>
성구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li> <li>윤방법 제26조 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성보호법 제5조</li> </ul>

\* 청소년성보호법은 2005.12.29 법률 제7801호 개정 법률 기준임.

성판매자가 성인일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간의 단순성매매가 아닌 중간착취자가 개입하여 알선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의 형태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우선 알선등행위의 개념에 윤방법에서 규정했던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고의로 성매매를 위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확장시켜<sup>110)</sup> 중간착취자를 세분화하였다.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제18조<sup>111)</sup>는 폭행 및 협박, 강요,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위

11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111) 제1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계·위력이 결합된 성매매알선행위와 인신매매에 대해 10년 이하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sup>112)</sup>는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 및 영업상 성매매 알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모집한 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성매매 광고 내지 성매매 모집 광고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를 제작하거나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광고를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제20조). 또한 성매매 알선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의 예가 적용되고(제22조), 알선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부과하거나(제24조) 성매매로 얻은 불법수익을 몰수·추징(제2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112)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했던 자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했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검거가 된 시점이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라 하더라도 알선행위를 한 시점이 성매매처벌법 시행전인 경우 윤방법의 적용을 받는데, 윤방법에 의하면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4조), 단순 성매매알선행위 및 영업상 알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조).

성관매자와 성구매자는 성매매자로, 성매매처벌법과 윤방법 모두 이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자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은 윤방법보다 강화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자는 윤방법과 차이없이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0> 성매매처벌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정형 비교

항 목	성매매처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	포주 등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 간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모든 윤락여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 시킨 자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감금과 낙태 강요 등	3년이상 유기징역	없 음
폭력조직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5년이상 유기징역	없 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년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건물주 포함)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없 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게재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없 음
성매매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없 음

성판매자가 청소년일 경우, 성판매자는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적용된다.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성매매처벌법과 유사하게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제6조)<sup>113)</sup>,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매매처벌법보다 강화된 법정형이 규정되었다(제7조)<sup>114)</sup>. 또한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여성인 청소년과 남성에게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자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8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도 한다(제50조)<sup>115)</sup>.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3)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4) 제7조 (알선영업행위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5)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

으로 성매매처벌법보다 강화된 형에 처해진다(제5조).

이번에 조사된 성매매위반사건의 위반법률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578건, 유흥행위등방지법 위반이 35건으로 성판매자가 성인인 성매매위반사건은 전체 613건이다. 성판매자가 청소년인 청소년성보호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인 경우는 전체 100건을 조사하였다<표 VI-11>.

<표 VI-11> 위반법률별 건수\*

(단위 : 건)

	유흥행위등 방지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보호법
건수	35	578	100
합계	613		100

\*중복체크

#### 나. 사건별 피의자 수 및 기소·불기소 현황

위반법률별 피의자수<표 VI-12>를 살펴보면 각 법률의 수사와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성매매처벌법 위반사건 578건의 피의자수는 3,758명으로 사건당 평균 피의자수는 6.50명이고, 유흥행위위반사건인 35건의 피의자

1.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  
의 유흥을 돋구는 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수는 306명으로 사건당 평균 피의자수는 8.74명으로, 성판매자가 성인인 성매매의 경우 평균 6.62명이 접수된다. 이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전체 100건의 피의자수는 314명으로 사건당 평균 피의자수는 3.14명으로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사건보다 사건당 피의자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lt;표 VI-12&gt; 위반법률별 피의자수

	접수사건수 (A)	피의자수 (B)	사건당 평균 피의자수(B/A)
성매매처벌법 위반	578건	3,758명	6.50명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35건	306명	8.74명
청소년성보호법(성구매 등) 위반	100건	314명	3.14명
합계	713건*	4,378명**	6.14명

\* 조사된 659건(표VI-7) 중 위반법률이 두가지 이상 중복된 사건이 있어 위반법률별 사건 수는 713건이 된다.

\*\* 위의 피의자수는 조사된 659건의 전체 피의자수이며, 본 조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한 실제 조사한 피의자 수는 그 중 67.1%인 2,938명이다.

여기에는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의 검거 및 수사과정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주로 청소년 성매매인 경우 업소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개인 성매매가 큰 비율(80.0%)을 차지하고 성을 판매한 청소년 한 명이 검거되는 경우 그 청소년을 통해 성구매자 1~2명, 장소제공자(숙박업소 주인) 1명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등 업소형태의 성매매가 큰 비율(62.7%)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업소 전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알선업자 1~2명, 성판매 여성 1~2명, 성구매자 다수가 검거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사건당 평균 피의자수가 청소년 성매매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표VI-15>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의 유형 참조) 특히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인 경우 사건 하나당 피의자수가 2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방식이 업소의 신용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있다.

<표 VI-13> 조사사건의 기소인원 및 기소율

(단위 : 명)

	전체 피의자수(A)	기소인원 (B)	불기소인원	기소율 (B/A*100)
성매매처벌법등 위반	4,064	1,933	2,131	47.6%
청소년성보호법등 위반	314	196	118	62.4%
합계	4,378	2,129	2,249	48.6%

사건조사표에 나타난 기소율<표 VI-13>을 살펴보면,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 사건의 실제 피의자수가 총 4,064명, 기소인원은 1,933명으로 성판매자가 성인인 성매매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47.6%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 사건의 실제 피의자 총 314명 중 기소인원은 196명으로 기소율은 62.4%를 차지한다. 이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의 기소율 42.5%,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 69.1%에 근사한 수치로,<sup>116)117)</sup> 본 연구의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여준다.

116) 검찰연감(2006)에 따르면, 2005년 한해동안 성매매위반과 성매매(청소년)위반을 합산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총 인원 12,155명 중 기소된 자의 수는 5,157명으로 기소율은 42.5%이다. 또한 성보호(강요행위), 성보호(성구매), 성보호(알선영업행위)를 합산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총인원 1,248명 중 기소된 자의 수는 862명으로 기소율은 69.1%이다.

<『검찰연감(2006)』 기소인원 및 기소율>

(단위 : 명)

죄명별	총인원(A)	기소인원(B)	기소율 (B/A*100)
성매매처벌법 위반	12,115	5,157	42.5%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248	862	69.1%

\* 출처: 대검찰청(2006), 『검찰연감(2006)』, 714~715면 참조

117) 이 표에 의한 기소인원이 <표 VI-2>의 2005년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사건의 기소인원 187명과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범죄분석」과 「검찰연감」의 두 통계자료의 차이에 근거한다. 그러나 동일한 연도의 통계가 이처럼 다른 것은 의문이다.



### 다. 수사단서 현황

<표 VI-14> 위반법률별 수사단서

(단위 : 건(%))

	인지		고소, 고발	기타	미상	전체(A)
	기획수사	신고 등				
성매매처벌법등 위반	316 (51.5%)	268 (43.7%)	24 (3.9%)	4 (0.6%)	1 (0.1%)	613 (100.0%)
청소년성보호법등 위반	38 (38.0%)	53 (53.0%)	7 (7.0%)	1 (1.0%)	1 (1.0%)	100 (100.0%)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사건의 수사단서<표 VI-14>를 살펴보면, 고소·고발(3.9%)보다는 수사기관의 인지(95.2%)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인지 중 기획수사(51.5%)가 신고, 탐문, 제보, 진정, 탄원(43.7%)보다는 약간 큰 비율을 차지한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역시 고소·고발(7.0%)보다는 수사기관의 인지(91.0%)가 수사단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성인의 성매매보다는 기획수사(38.0%)가 신고, 탐문, 제보, 진정, 탄원(53.0%)보다 적은 편이다.

### 라. 성매매업소 유형 및 현황

조사된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사건이 발생하는 성매매 업소 유형<표 VI-15>을 살펴보면, 업소형 성매매가 전체 중 62.7%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서 ‘업소형’ 성매매는 이른바 ‘집결지’라 부르는 특정지역의 성매매집결지 등 전통형 성매매부터 유흥주점, 숙박업소, 다방, 음식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 산업형 성매매까지 일정한 서비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매매 유형은 경로형(27.5%)으로,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의 성매매도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개별유형으로 분류해보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을 통해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성인 인터넷 사업의 성장, 성매매처벌법 발효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장마사지나 고객의 집/사무실/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업소형’ 성매매의 경우 검거·단속된 비율이 매우 적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비업소형 성매매가 단속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경로형' 성매매가 접수된 성매매유형 중 절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80.0%). 이 중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76.2%로, 이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의 테마단속이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lt;표 VI-15&gt; 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의 유형\*

(단위 : 건 (%))

		성매매처벌법등 위반	청소년성보호법등 위반
업소형	소계	390(62.7)	13(12.4)
	특정지역 성매매집결지	32(5.1)	0(0.0)
	숙박업소	68(10.9)	9(8.6)
	유흥주점	77(12.4)	0(0.0)
	다방	32(5.1)	4(3.8)
	음식점	3(0.5)	0(0.0)
	노래방	1(0.2)	0(0.0)
	맥주양주집/선술집	2(0.3)	0(0.0)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136(21.9)	0(0.0)
	이발소	21(3.4)	0(0.0)
	기타 미용관련	18(2.9)	0(0.0)
비업소형	소계	21(3.4)	2(1.9)
	출장마사지	17(2.7)	1(1.0)
	고객의 집/사무실/차	4(0.6)	1(1.0)
경로형	소계	171(27.5)	84(80.0)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23(3.7)	4(3.8)
	인터넷채팅	145(23.3)	80(76.2)
	소개	3(0.5)	0(0.0)
기타		31(5.0)	5(4.8)
미상		9(1.4)	1(0.0)
합계(A)		622(100.0)	105(100.0)

\* 중복체크

기타의 유형은 대부분 길거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이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성인PC방이나 화상대화방, 유리대화방, 전화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기타에서 최근 성장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본 조사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모두 포함해 비업소형, 경로형, 기타, 미상을 합한 건수의 전체 차지비율인 44%를 인터넷 및 기타성매매영역의 성매매 규모추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표 VI-16> 분기별 최대접수된 성매매업소 유형 및 테마단속 유형 비교

	<성매매업소 유형>	<테마단속 유형*>
2004. 5 ~ 8.	인터넷채팅	
2004. 9. ~ 12.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2005. 1. ~ 3.	인터넷채팅	청소년(인터넷)
2005. 4. ~ 6.	인터넷채팅	
2005. 7. ~ 9.	인터넷채팅	청소년(인터넷)
2005. 10. ~ 12.	인터넷채팅	청소년(인터넷)
2006. 1. ~ 3.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청소년(인터넷)/노래연습장
2006. 4. ~ 6.	인터넷채팅	노래연습장/마사지업소
2006. 7. ~ 9.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청소년(인터넷)
2006. 10. ~ 12.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노래연습장/청소년(인터넷)
2007. 1. ~ 3.	인터넷채팅	청소년(인터넷)
2007. 4. ~ 6.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출처: 경찰청, 2007.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업소형 성매매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검거·접수된 성매매업소가 성매매 집결지(5.1%)가 아닌 안마시술소/스포츠 마사지 업소(21.9%)라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성매매처벌법 발효 이후 성매매집결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sup>118)</sup>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검거의 유형이 인터넷

118) 경찰청은 9월10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31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수는 995개, 종업원 수는 2,508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23일 당시(업소 수 1,679개, 종업원 수 5,567명)와 비교할 때 업소는 41%, 종업원은 55% 줄어든 것이다. (“불 꺼진’ 흥등가? ‘불 가린’ 흥등가!”, 한국일보, 2007.9.26.)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나 미아리의 경우 문을 연 곳이 세 집 중 한 곳일 정도로 한산해졌으며, 최근 미아리등 집결지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 업소·여종업원 크게줄어”, 대전일보, 2007.9.27; “집창촌 문 연 업소는 세 곳 중

채팅(23.3%)과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21.9%)에 집중되어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수사기관의 기획수사가 이러한 인터넷과 마사지업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매매처벌법 발표 이후 경찰의 테마단속은 주로 인터넷과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검거시기와 접수시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기별로 가장 많이 접수된 성매매업소 유형과 비교해볼 때 연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수사기관의 단속태도와 의지가 성매매 사건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매매의 변화된 실태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파악하고 단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3. 성매매 피의자의 특성 및 주요내용<sup>119)</sup>

#### 가. 피의자 유형 분포

<표 VI-17> 성매매피의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총 계	비율
성매매알선자	741	25.2
성매매강요	56	1.91
성매매권유 및 유인	639	21.7
모집자	9	0.3
직업소개자	2	0.0
장소제공자	100	3.4
건물주	16	0.5
광고업자	12	0.4
성판매자	617	21.0
성구매자	1558	53.0
기타	22	0.7
합 계	2,938	100.0

피의자 유형별 분포<표 VI-17>를 살펴보면, 성구매자가 전체 53.0%로 가장 많

하나”, 내일신문, 2007.9.21 등 참조.

119) 이하에서는 피의자조사표의 결과를 분석한다.

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 알선자(25.2%), 성판매자(21.0%) 순으로 분포되어있다. 성구매자가 많은 이유는 업소형 성매매를 검거하는 경우 하나의 업소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때 그 업소를 이용한 구매자들 모두가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소가 아닌 한 명의 성판매자가 검거된다 하더라도 그 성판매자의 진술 내지 장부가 있는 경우 그 성판매자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한 다수의 성구매자들이 검거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유형별 분포로 보았을 때 성구매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타의 유형에는 보도방과 관련된 자료, 운전기사나 전화 대여자 등이 있다.

<표 VI-1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성비

(단위: 명(%))

	남	여	합계
성매매알선자	417 (56.3)	324 (43.7)	740 (100.0)
성매매강요	34 (60.7)	22 (39.3)	56 (100.0)
성매매권유 및 유인	359 (56.2)	280 (43.8)	639 (100.0)
모집자	7 (77.8)	2 (22.2)	9 (100.0)
직업소개자	1 (50.0)	1 (50.0)	2 (100.0)
장소제공자	48 (48.0)	52 (52.0)	100 (100.0)
건물주	10 (62.5)	6 (37.5)	16 (100.0)
광고업자	9 (75.0)	3 (25.0)	12 (100.0)
성판매자	5 (0.8)	613 (99.2)	618 (100.0)
성구매자	1,553 (99.7)	5 (0.3)	1,558 (100.0)
기타	18 (81.8)	4 (18.2)	22 (100.0)
합 계	1,993 (67.8)	946 (32.2)	2,938 (100.0)

전체 성매매 피의자의 성별 분포<표 VI-18>를 살펴보면, 남자는 1,993명으로 67.8%, 여자는 946명으로 32.2%를 차지한다.

성매매 피의자의 성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구매자인 경우 전체 1,558명 중 남자 1,553명으로 약 99%이상이 남성이며, 성판매자인 경우 전체 618명 중 여자 613명으로 약 99%가 여성이다. 이는 성판매와 성구매의 역할이 여전히 성별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자인 경우 총 740명 중 남자 417명(56.3%), 여자 324명(43.7%)으로 성별 구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위반법률별 적용현황

성판매자나 성구매자의 경우 모두 성매매자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내지 운방법 제26조 3항(청소년성매매일 경우 성구매자만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와 법정형이 세분화되었는데, 다양해진 성매매 알선행위 등과 관련된 위반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I-19>를 보면, 성매매 알선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단순성매매 알선 내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이다(91.7%). 이는 운방법 제25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운방법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이 세분되고 직업소개자와 모집자가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VI-19> 성매매처벌법 위반법률 현황

(단위 : 명, %)

위반법률	피의자수	비율
성매매 강요 (제18조)	15	1.9
단순 성매매 알선 (제19조)	739	91.7
알선 등 미수 (제23조)	6	0.7
성매매 광고 (제20조)	16	2.0
양벌규정 (제27조)	31	3.8
합계	806*	100.0

\* 중복체크

그러나 성매매 중간착취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강화되고 인신매매 규정이 신설된 제18조의 적용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한 성매매광고에 관한 규정인 제20조 역시 적용 비율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제18조 3항 3호는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다.

#### 다. 성매매 행위태양

성매매처벌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성매매 개념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킨 것이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성교행위의 해석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있었으나,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되고 있다.<sup>120)</sup>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성매매의 행위태양을 볼 때 성교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9%로 여전히 크나,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단속도 13.8%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표 VI-20>.

120) 대법원 2006. 10. 26, 2005도8130. 대법원은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보기에 너그러우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 VI-20>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성매매행위태양\*

(단위 : 명(%))

	성판매자	성구매자	합계
성교행위	491 (78.9)	1,371 (87.3)	1,862 (84.9)
유사성교행위	115 (18.5)	188 (12.0)	303 (13.8)
그 외의 성적 서비스	6 (1.0)	0 (0.0)	6 (0.3)
미수	10 (1.6)	11 (0.7)	21 (1.0)
기타	0 (0.0)	1 (0.1)	1 (0.0)
합계	622 (100.0)	1,571 (100.0)	2,193 (100.0)

\*중복체크

<표 VI-21> 성매매업소의 유형별 성매매자의 성매매 행위\*

(단위 : 명(%))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업소형	소계	977	256
	특정지역 성매매집결지	62	1
	숙박업소	182	11
	유흥주점	133	10
	다방	71	0
	음식점	2	0
	노래방	2	0
	맥주양주집/선술집	4	0
	안마시술소/스포츠타사지	433	157(51.4)
	이발소	33	48(15.7)
	기타 미용관련	55	29
비업소형	소계	71	5
	출장맛사지	61	3
	고객의 집/사무실/차	10	2
경로형	소계	764	32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95	2
	인터넷채팅	667	30
	소개	2	0
	기타	92	1
	미상	20	11
	합계	1,924	305(100.0)

\*중복체크



성매매행위 태양을 업소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성교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역시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51.4%), 이발소(15.7%) 순이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주로 유사성교행위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교행위(73.3%)가 유사성교행위(26.7%)에 비해 약 3배가량 많이 일어났다는 점이다<표 VI-21>.

#### 4. 성매매 사건 처분 현황

##### 가. 검찰처분의 현황 및 특징

###### 1)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속 및 불구속 현황

성매매 피의자의 수사 초기 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성매매 피의자 전체 2,938명 중 158명이 구속되어 성매매 피의자의 구속율은 5.4%이다. 여기에서 성판매자의 경우 617명 중 7명이 구속되어 구속율은 2.4%, 성구매자의 경우 1,558명 중 38명이 구속되어 구속율은 2.4%이나, 이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전체 741명 중 111명이 구속되어 구속율이 15.0%에 달한다. 성매매 알선자를 유형별로 살펴볼 때, 성매매 강요(제18조 위반)의 경우 56명 중 12명이 구속되어 구속율이 21.4%로 매우 높은 편이며, 단순성매매 알선 및 영업 성매매 알선(제19조 위반)의 경우 역시 639명 중 104명이 구속되어 구속율이 16.3%로 높은 편에 속한다(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직업소개자의 경우 구속율이 50%로 나오나 이는 표본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구속율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VI-22>에서는 공식통계에서 구속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공판 구속율을 검토했는데, 성판매자의 구공판 구속율이 0.3%, 성구매자의 구공판 구속율이 1.7%인데 반해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율은 12.8%로 높은 편이다. 『검찰연감(2007)』상 전체 형사사건의 구공판 구속율이 2.0%라는 점을 볼 때, 성판매자에 대한 구공판 구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 알선자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강요자의 구공판 구속율이 17.9%, 단순성매매알선자의 구공판 구속율이 14.1%이다.

<표 VI-22>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계(명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종지	각하	미상	소년보호사건송치			
		구속	불구속	미상				단순	존스쿨										
성매매알선자	71.9	12.8	13.1	0.1	45.9	26.6	9.6	12.1	1.3	0.4	1.2	0.9	0.5	0.3	0.1	0.0	0.5	100.0 (741)	
성매매강요	71.4	17.9	5.4	0.0	48.2	28.6	19.6	5.4	0.0	1.8	0.0	1.8	0.0	0.0	0.0	0.0	5.4	100.0 (56)	
단순성매매알선	74.6	14.1	14.7	0.2	45.7	24.1	8.6	11.0	1.4	0.2	1.1	0.9	0.5	0.3	0.2	0.0	0.0	100.0 (639)	
모집자	22.2	0.0	0.0	0.0	22.2	77.8	22.2	5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9)	
직업소개자	0.0	0.0	0.0	0.0	0.0	100.0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2)	
장소제공자	76.0	11.0	10.0	0.0	55.0	22.0	6.0	12.0	0.0	1.0	2.0	0.0	1.0	0.0	0.0	0.0	0.0	100.0 (100)	
건물주	81.3	12.5	0.0	0.0	68.8	18.8	12.5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6)	
광고업자	41.7	8.3	0.0	0.0	33.3	50.0	8.3	33.3	8.3	0.0	0.0	0.0	0.0	0.0	0.0	0.0	8.3	100.0 (12)	
성판매자	37.6	0.3	0.8	0.0	36.5	57.4	5.3	46.4	3.4	0.0	0.3	1.6	0.2	0.0	0.2	1.3	3.9	100.0 (617)	
성구매자	42.6	1.7	3.1	0.0	37.9	57.0	6.7	11.2	37.7	0.1	0.4	0.4	0.5	0.0	0.0	0.1	0.1	100.0 (1,558)	
기타	27.3	9.1	0.0	0.0	18.2	68.2	45.5	18.2	4.5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2)	
합계	48.8	4.3	5.1	0.0	39.4	49.5	7.4	18.9	21.1	0.1	0.6	0.8	0.4	0.1	0.1	0.3	1.0	100.0 (2,938)	

2)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기소·불기소 현황 및 특징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매자의 경우 피의자 617명 중 232명(37.6%)이 기소되고 354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5명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성구매자의 경우 피의자 1,558명 중 664명이 기소(42.6%), 888명이 불기소, 3명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전체 741명 중 533명이 기소(71.9%), 197명이 불구속, 2명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연감(2007)』 상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4.3%라는 점을 볼 때 성매매 알선자의 기소율 71.9%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성매매위반 사건의 기소처분상 주요한 특징은 약식기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경우 약식기소율은 기소인원을 전체로 볼 때 97.0%, 성구매자의 경우 88.9%이다.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도 약식기소율은 63.8%를 차지하며, 유형별로 볼 때 건물주의 경우 84.6%, 광고업자의 경우 80.0%, 장소제공자의 경우 72.4%, 심지어 제18조 위반 성매매강요자의 경우에도 67.5%에 달하고 있다.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소유예 처분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성판매자 617명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354명(57.4%)이고 그 중 307명(49.8%)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전체 성구매자 1,558명 중 57.0%인 888명은 불기소 처리되었으며 이중 762명(85.8%)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특히 2005년 8월부터 존스쿨(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구매자 762명 중 588명이 존스쿨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은 197명 중 100명(50.8%)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단순 성매매 알선 및 영업 알선인 제19조 위반인 경우 51.3%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제18조 위반인 성매매 강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18.8%에 머물렀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 중 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가 존스쿨 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인다. 실제 인원수는 보면, 성매매알선자 741명 중 10명, 성판매자 617명 중 21명이 이에 해당된다. 존스쿨은 초범의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재량으로 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에 대해서도 존스쿨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sup>121)</sup>

### 3) 보호사건 송치 현황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자에게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내지 제17조). 검사와 법원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

121) 더 정확한 판단은 수사기록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본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상 범죄자의 특수사정 등은 조사표의 조사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에게 존스쿨 처분이 내려진 이유나 그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판단은 어렵다고 하겠다.

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1,2항)<sup>122)</sup>.

그러나 조사된 성매매 피의자 중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전체 2,938명 중 30명으로 1%에 지나지 않아 실제 성매매 보호처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보호처분보다는 기소유예를 통해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을 해결하는 경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매자 24명(3.9%), 성구매자 2명(0.1%)이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성매매알선자의 경우 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성판매와 알선을 동시에 한 경우였다<표 VI-22>. 보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2호), 성매매지역 출입금지(1호) 순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치료위탁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의자 유형별로 볼 때 성매매보호처분은 주로 성판매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I-23>.

<표 VI-23>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성매매보호처분 현황

(단위 : 명)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성매매지역출입금지(1호)	보호관찰(2호)	사회봉사명령(3호)	수강명령(3호)	상담위탁(5호)	치료위탁(6호)
성판매자 겸 성매매알선자	1	2	1	0	0	0
성판매자	5	9	10	0	0	0
성구매자	0	0	2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6	11	13	0	0	0

122)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4) 구형 현황

<표 VI-24>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형 현황

(단위 : 명(%))

	기소인원 (A)	자유형		벌금형	몰수 및 추징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자	533 (100.0)	158 (29.6)	15 (2.8)	356 (66.8)	56 (10.1)
성매매강요	40 (100.0)	11 (27.5)	0 (0)	27 (67.5)	0 (0)
단순성매매알선	477 (100.0)	154 (32.3)	14 (2.9)	306 (64.3)	51 (10.7)
모집자	2 (100.0)	0 (0)	0 (0)	2 (100.0)	0 (0)
직업소개자	0 (100.0)	0 (0)	0 (0)	0 (0)	0 (0)
장소제공자	76 (100.0)	17 (22.4)	1 (1.3)	58 (76.3)	5 (6.6)
건물주	13 (100.0)	2 (15.4)	0 (0)	11 (84.6)	0 (0)
광고업자	5 (100.0)	0 (0)	0 (0)	4 (80.0)	0 (0)
성판매자	232 (100.0)	4 (1.7)	0 (0)	221 (95.3)	7 (3.0)
성구매자	664 (100.0)	65 (9.8)	2 (0.3)	584 (88.0)	1 (0.2)
기타	6 (100.0)	2 (33.3)	0 (0)	4 (66.7)	1 (16.7)
합계	1435 (100.0)	299 (16.0)	17 (1.2)	1165 (81.2)	63 (4.4)

성매매 피의자별 구형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매자의 경우 기소된 자 232명 중 벌금형이 211명으로 전체 기소인원 중 95.3%를 차지하며 실형이 4명(1.7%)로 매우 적고, 성구매자의 경우 역시 기소인원 664명 중 벌금형이 584명으로 전체 88.0%를 차지하며 실형은 65명(9.8%)로 적은 편이다. 이는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법정형이 매우 낮은 데에 기인한다.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검찰의 구형현황을 보면, 전체 기소인원 533명 중 실형은 158명(29.6%), 집행유예는 15명(2.8%)이며 벌금형의 경우 356명으로 전체 66.8%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강요의 경우 실형은 전체의 27.5%, 벌금형은 67.5%를 차지하며, 단순 성매매 알선의 경우 실형은 전체 32.3%, 집행유예는 2.9%, 벌금형은 36.3%를 차지한다. 모집자의 경우 2명이 기소되었는데 모두 벌금형이 구

형되었으며, 장소제공자나 건물주, 광고업자는 실형을보다는 벌금형 구형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몰수 및 추징의 경우 성매매알선자의 10.1%에게 구형이 되어, 몰수 및 추징 규정이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평균 실형 구형량 17.80개월, 집행유예를 구형한 자유형 구형량 11.07개월이, 벌금형의 경우 300.76만원이 구형되었다. 성구매자의 경우 평균 실형 구형량은 15.74개월, 집행유예를 구형한 자유형 구형량은 8개월, 벌금형의 경우 115.79만원이 구형되었다. 특이하게 성판매자의 평균 실형 구형량이 23.50개월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의 평균 실형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으나,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겸한 성판매자(1명)와 동종재범으로 전회처분사항이 있는 성판매자 3명이 포함되고, 성판매자 중 실형이 구형된 자가 총 4명으로 표본이 매우 적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VI-25>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자	17.80	11.07	300.76
성매매강요	21.27	0	274.07
단순성매매알선	17.56	11.14	313.76
모집자	0	0	250.00
직업소개자	0	0	0
장소제공자	23.29	10.00	246.40
건물주	24.00	0	210.91
광고업자	0	0	100.00
성판매자	23.50	0	118.37
성구매자	15.74	8.00	115.79
기타	18.00	0	150.00

나. 1심 법원의 판결 내용 및 특징

1) 제1심 판결의 현황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로 제1심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기소인원 533명 중 26명인 4.9%가 실형선고를 받았고, 106명인 19.9%가 집행유예를, 353명인 66.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판매자의 경우 기소인원 232명 중 3명인 1.3%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1명인 0.4%가 집행유예를, 217명인 93.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구매자의 경우 기소인원 664명 중 15명인 2.3%가 실형을, 27명인 4.1%가 집행유예를, 603명인 90.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표 VI-26>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 명(%))

	기소 인원	자유형		벌금형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감 명령	선고 유예	몰수 및 추징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자	533 (100.0)	26 (4.9)	106 (19.9)	353 (66.2)	10 (1.9)	31 (5.8)	1 (0.2)	0 (0)	56 (10.5)
성매매강요	40 (100.0)	4 (10.0)	9 (22.5)	27 (67.5)	0 (0)	0 (0)	0 (0)	0 (0)	0 (0)
단순성매매알선	477 (100.0)	24 (5.0)	101 (21.2)	306 (64.2)	9 (1.9)	30 (6.3)	1 (0.2)	0 (0)	50 (10.5)
모집자	2 (100.0)	0 (0)	0 (0)	2 (100.0)	0 (0)	0 (0)	0 (0)	0 (0)	0 (0)
직업소개자	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소제공자	76 (100.0)	2 (2.6)	13 (17.1)	55 (72.4)	2 (2.6)	2 (2.6)	0 (0)	0 (0)	5 (6.6)
건물주	13 (100.0)	1 (7.7)	1 (7.7)	11 (83.6)	0 (0)	0 (0)	0 (0)	0 (0)	0 (0)
광고업자	5 (100.0)	0 (0)	1 (20.0)	4 (80.0)	0 (0)	0 (0)	0 (0)	0 (0)	0 (0)
성판매자	232 (100.0)	3 (1.3)	1 (0.4)	217 (93.5)	3 (1.3)	2 (0.9)	0 (0)	0 (0)	2 (0.9)
성구매자	664 (100.0)	15 (2.3)	27 (4.1)	603 (90.8)	3 (0.5)	9 (1.4)	3 (0.5)	1 (0.2)	1 (0.2)
기타	6 (100.0)	0 (0)	2 (33.3)	4 (66.7)	0 (0)	0 (0)	0 (0)	0 (0)	0 (0)
합계	1,435 (100.0)	44 (3.1)	136 (9.5)	1,177 (82.0)	16 (1.1)	42 (2.9)	4 (0.3)	1 (0.1)	54 (3.8)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성매매위반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전체 기소인원의 2.9%, 보호관찰은 1.6%, 수강명령은 0.1%에게 선고되었다. 선고 유예는 성구매자 1명에게만 선고되었다. 몰수 및 추징의 경우 대부분 검찰의 구형 대로 되었으나, 검찰이 몰수·추징을 구형한 성판매자 중 5명은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 성매매로 인한 수입에 대해 몰수를 제외한 추징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조사된 1심 재판 결과 평균 추징금액은 약 4,600만원이며, 최대 10억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금액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보면, 검찰은 전체 기소인원의 16%에게 실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것은 3.1%였으며, 검찰이 자유형을 구형한 성구매자 중 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일반적인 형의 감경(법률상의 감경, 작량감경 등)으로 인해 형량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 비례하여 이루어졌으며, 성매매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내린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제1심 판결의 선고형량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로 제1심 법원의 평균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실형 선고형량이 평균 10.58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자유형 선고형량이 평균 9.38개월, 벌금형은 평균 274.99만원이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등을 선고받은 자에게 보호관찰 평균 15.50개월, 사회봉사명령 평균 109.68시간, 수강명령 평균 40시간이 병과되었다. 성판매자의 경우 실형 선고형량이 평균 1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자유형 선고형량이 평균 12개월, 벌금형은 평균 114.22만원이며,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에겐 보호관찰 평균 6개월, 사회봉사명령 평균 65시간이 병과되었다. 성구매자의 경우 실형 선고형량이 평균 13.70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자유형 선고형량이 평균 7.56개월, 벌금형은 평균 130.08만원이며,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에겐 보호관찰 평균 5.33개월, 사회봉사명령 평균 95.89시간, 수강명령 66.67시간이 병과되었다.



<표 VI-27>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평균 제1심 선고형량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보호관찰 (개월)	사회봉사 명령 (시간)	수감 명령 (시간)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자	10.58	9.38	273.99	15.50	109.68	40.00
성매매강요	12.50	11.33	277.78	0	0	0
단순성매매알선	10.21	9.25	282.22	14.56	110.67	40.00
모집자	0	0	250.00	0	0	0
직업소개자	0	0	0	0	0	0
장소제공자	19.00	9.08	260.18	18.00	120.00	0
건물주	8.00	10.00	201.82	0	0	0
광고업자	0	8.00	50.00	0	0	0
성판매자	16.00	12.00	114.22	6.00	65.00	0
성구매자	13.70	7.56	130.08	5.33	95.89	66.67
기타	0	8.00	160.00	0	0	0

검찰의 평균 구형량과 법원의 평균 선고형량을 비교해 볼 때, 대체로 구형에 비해 선고형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나 벌금형의 경우 성매매 강요 및 장소제공자, 성구매자의 형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검찰의 평균 구형량에 비해, 법원의 평균 선고형량은 자유형의 경우 실형은 평균 6.5개월 감소하였고, 벌금형의 경우 평균 7.2만원 감소하였다.

<표 VI-28>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평균 구형량 및 선고형량의 비교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자	-7.23	-1.69	-26.77
성매매강요	-8.77	11.33	3.70
단순성매매알선	-7.36	-1.90	-31.54
모집자	0.00	0.00	0.00
직업소개자	0.00	0.00	0.00
장소제공자	-4.29	-0.92	13.79
건물주	-16.00	10.00	-9.09
광고업자	0.00	8.00	-50.00
성판매자	-7.50	12.00	-4.15
성구매자	-2.67	-0.44	14.30
기타	-18.00	8.00	10.00

이에 반해 벌금형에서 성매매 강요의 경우 평균 3.7만원, 장소제공자의 경우 평균 13.8만원, 성구매자의 경우 평균 14.3만원 양형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매매 강요행위, 장소제공을 통한 알선행위, 성구매자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제4절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와 한계

### 1. 수사 및 단속의 변화

#### 가. 성매매 단속의 강화

2004년 11월 4일 대검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사범 단속 지시를 시달하면서, 조직적 성매매 알선사범 및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조직적 알선·강요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sup>123)</sup> 이러한 단속과 수사의 강화로 인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2005.9.15까지 1년간 16,260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윤방법 시행 당시보다 같은 기간 2,262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 VI-29> 성매매처벌법 시행 전후 총 검거인원 및 처분현황(2003.9.-2005.9.)  
(단위: 명)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 (2003.9.23~2004.9.15)	성매매처벌법시행 (2004.9.23~2005.9.15)
전체 피의자 수	13,998	16,260

\* 출처 : 경찰청(2005), “성매매방지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 1) 신종·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청이 그동안 13회에 걸친 테마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 중 6회(46%)가 인터넷 상에서의 청소년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3회의 단속(23%)이 노래연습장이나 마사지업소 등 겸업형 및 신종 성매매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머지 4회의 단속은 일반적인 성매매 단속이었다.

123) 안미영,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 법무부의 성과 및 평가, 그리고 향후과제’, <성매매 방지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자료집, 2007, 42면.

&lt;표 VI-30&gt; 경찰청 테마단속 추진실적

시 기	테마단속	입건수
2004. 9. 23~10.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1,664명
2005. 1.~2.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집중단속	734명
2005. 7.~10.	청소년(인터넷)·장애인·도서지역 등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단속	10,300명
2005. 12.~2006. 2.	동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단속	2,405명
2006. 3.~4.	노래연습장 등 성매매 의심업소 특별단속	1,539명
2006. 4.	번태 마사지업소 특별단속	1,600명
2006. 6.~7.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1차 특별단속	14,688명
2006. 8.	하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	1,796명
2006. 9.~11.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2차 특별단속	19,017명
2006. 12.~2007. 2.	동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	4,734명
2006. 10.~2007. 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행위 및 성매매알선행위 집중단속	9,026명
2007. 7. 16.~8. 24.	하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	8,240명
2007. 9. 5.~10. 24.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등 집중단속	

\*출처: 이금형(2007),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자료집, 62면

위의 테마 단속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의 성매매 수사 및 단속의 강화는 특정유형의 성매매에 집중되어왔다. 원래 성매매처벌법이 특정지역 성매매 집결지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시행 이후 신종·변종 성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안마시술소/스포츠 마사지와 인터넷 채팅 등 신종·변종 성매매의 등장에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실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전체 피의자별 성매매업소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인터넷 채팅(23.3%),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업소(21.9%), 유흥주점(12.4%) 순으로 나타난다(<표 VI-15>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의 유형 참조). 이에 비해 특정지역 성매매 집결지는 5.2%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검찰청별로 최대 검거된 성매매유형을 보면 몇몇 지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터넷 채팅이나 안마시술소/스포츠 마사지라는 점도 신종·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속이 가능해진 이유는 성매매처벌법이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개념에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됨으로써 각종 신종·변종 성매매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t;표 VI-31&gt; 지청별 최대 검거된 성매매업소 유형

	성매매업소 유형
서울중앙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서울동부	인터넷채팅
서울남부	숙박업소
서울서부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서울북부	인터넷채팅
의정부	전화
인천	인터넷채팅
수원	인터넷채팅
춘천	인터넷채팅
대전	유흥주점
청주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대구	인터넷채팅
부산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울산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창원	인터넷채팅
광주	다방
전주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기존 성매매집결지가 크게 감소한 반면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마사지업소 등 신종·변종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이에 집중되었고, 이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현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성매매에만 집중되어 성매매 업소의 실태와는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 나. 성매매알선자 단속 및 처벌의 강화

조사된 전체 성매매 피의자 중 성매매 알선자는 25.2%로 성구매자(53.0%)보다 그 비율이 적으나, 구속율과 기소율 모두 성구매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구매자의 구속율이 1.7%, 기소율이 42.6%인데 비해,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율은 12.8%, 기소율은 71.9%를 차지하고 있다.

&lt;표 VI-32&gt;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기소 및 구속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약식	검거인원* (전체)
		구속	불구속	미상		
성매매알선자	71.9	12.8	13.1	0.1	45.9	100.0(741)
성매매강요	71.4	17.9	5.4	0.0	48.2	100.0(56)
성매매권유 및 유인	74.6	14.1	14.7	0.2	45.7	100.0(639)
모집자	22.2	0.0	0.0	0.0	22.2	100.0(9)
직업소개자	0.0	0.0	0.0	0.0	0.0	100.0(2)
장소제공자	76.0	11.0	10.0	0.0	55.0	100.0(100)
건물주	81.3	12.5	0.0	0.0	68.8	100.0(16)
광고업자	41.7	8.3	0.0	0.0	33.3	100.0(12)
성판매자	37.6	0.3	0.8	0.0	36.5	100.0(617)
성구매자	42.6	1.7	3.1	0.0	37.9	100.0(1,558)
기타	27.3	9.1	0.0	0.0	18.2	100.0(22)
합 계	48.8	4.3	5.1	0.0	39.4	100.0(2,938)

\* 중복체크

특히 2007년 공식통계(검찰연감)상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율이 2.0%, 기소율이 44.3%라는 점을 볼 때,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율(12.8%)과 기소율(71.9%)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높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다. 신설된 성매매 알선유형 규제의 한계

<표 VI-33> 성매매 알선자의 법조항별 위반현황

(단위 : 명)

성매매처벌법 위반	위반조항	피의자수
성매매 강요 (제18조)	제1항 (폭행, 협박, 위계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및 보호감독자의 성매매강요)	13
	제2항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장애인 성매매 강요 및 범죄단체 등 집단의 성매매강요)	1
	제3항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및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0
	제4항 (마약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0
	제22조 (성매매알선모집목적의 단체)	1
성매매 권유 및 유인 (제19조)	제1항 1호 (성매매 알선행위)	189
	제1항 2호 (모집행위)	4
	제1항 3호 (직업소개알선행위)	2
	제2항 1호 (영업알선행위)	528
	제2항 2호 (영업모집행위)	11
	제2항 3호 (영업직업소개알선행위)	4
알선 등 미수 (제23조)	6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미수	6
성매매 광고 (제20조)	제1항 1호 (성판매광고행위)	2
	제1항 2호 (성매매업소광고행위)	2
	제1항 3호 (성구매광고행위)	4
	제2항 (영업광고행위)	1
	제3항 (영업광고배포행위)	7
업소처벌 (제27조)	31 법인 대표자 내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31
합계	806	806

성매매처벌법은 폭행·협박 및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알선행위를 성매매강요 (제18조)로 규정하고,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에 비해 법정형을 강하게 두고 있다. 또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성매매 광고행위(제20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업소개행위를 제19조에 신설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자의 범조항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매매 알선자 중 성매매 권유 및 유인 등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위반은 91.7%이나, 성매매강요에 관한 제18조 위반은 1.9%이며, 특히 새로이 신설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 성매매광고행위 위반 역시 2.0%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적으며, 직업소개행위의 경우 역시 단 2명이 접수되었으나 이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범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다 하더라도 약식기소율이 높아(광고업자 80.0%, 건물주 84.6%, 장소제공자 72.4%, 성매매 강요자 67.5%) 성매매처벌법의 규정이 세분화되고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관행상 윤방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의 변화

### 가. 검찰 구형의 강화

검찰의 처리현황을 2002년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의 자유형 구형은 2002년보다 약 12.1% 포인트 증가하였고(9.2% → 21.3%), 벌금형 구형은 2002년 보다 약 12.1% 포인트 감소하였다(90.8% → 78.7%). 이는 검찰의 구형이 윤방법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VI-34>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 검찰구형 형태 비교  
(단위 : 명(%))

	윤방법	성매매처벌법
징역형/자유형	80(9.2)	316(21.3)
벌금형	785(90.8)	1,165(78.7)
몰수 및 추징*	-	63(4.3)
소 계	865(100.0)	1,481(100.0)

\*몰수 및 추징은 자유형, 벌금형과 중복으로 선고가능함.



### 나. 법원 선고의 강화

법원의 선고현황을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2002년에 비해 실행 선고율은 1.6% 포인트 증가하였고(1.6% → 3.2%), 벌금형 선고율은 3.3%포인트 감소하였다 (90.0% → 86.7%). 법원의 선고 역시 윤방법 시행 당시에 비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5> 윤방법(2002) 및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선고형태 비교  
(단위 : 명(%))

	윤방법	성매매처벌법
실 형	13(1.6)	44(3.2)
집행유예	70(8.4)	136(9.5)
벌 금	746(90.0)	1,177(86.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등*	-	62(4.6)
몰수 및 추징**	-	59(4.3)
소 계	829(100.0)	1,357(100.0)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중복으로 선고가능함.

\*\*몰수 및 추징은 위의 모든 선고형태와 중복으로 선고가능함.

### 다. 검찰의 구형량 및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윤방법 시행당시와 검찰 구형량 및 법원 선고형량을 비교해보면, 전체 처벌에서 구공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6%에서 20.1%로 9.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알선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고 구공판 기소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구공판의 경우 검찰에 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 증가했으며 법원의 선고형량의 경우 실행은 평균 9.17개월에서 10.7개월로 상승했다. 구약식의 경우도 검찰의 구벌금은 평균 151.26만원에서 171.23만원으로, 법원의 선고벌금은 평균 145.87만원에서 169.57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역시 윤방법 시행 당시에 비해 성매매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lt;표 VI-36&gt;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의 처벌내용과 형량관계 비교

	구 공 판				구 약 식		
	해당 사례	검찰구형량 평균(개월)	법원 선고형량		해당 사례	검찰구벌금 평균(만원)	법원 선고 벌금평균 (만원)
			징역평균 (개월)	집행유예평균 (개월)			
윤 방법	94	17.51	9.17	18.00	794	151.26	145.87
성매매처벌법	276	18.76	10.7	2.24	1096	171.23	169.57

&lt;표 VI-37&gt;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및 제1심 선고형량

	평균 구형량			평균 제1심 선고형량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보호 관찰 (개월)	사회봉사 명령 (시간)	수감 명령 (시간)	
	실형	집행 유예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자	17.80	11.07	300.76	10.58	9.38	273.99	15.50	109.68	40.00	
성매매강요	21.27	0	274.07	12.50	11.33	277.78	0	0	0	
성매매권유 및 유인	17.56	11.14	313.76	10.21	9.25	282.22	14.56	110.67	40.00	
모집자	0	0	250.00	0	0	250.00	0	0	0	
직업소개자	0	0	0	0	0	0	0	0	0	
장소제공자	23.29	10.00	246.40	19.00	9.08	260.18	18.00	120.00	0	
건물주	24.00	0	210.91	8.00	10.00	201.82	0	0	0	
광고업자	0	0	100.00	0	8.00	50.00	0	0	0	
성판매자	23.50	0	118.37	16.00	12.00	114.22	6.00	65.00	0	
성구매자	15.74	8.00	115.79	13.70	7.56	130.08	5.33	95.89	66.67	
기타	18.00	0	150.00	0	8.00	160.00	0	0	0	

## 라. 몰수·추징의 신설 및 적용의 한계

성매매처벌법 시행으로 성매매알선자의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2002년 윤방법 시행 당시에 없었던 몰수 및 추징이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매매 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몰수 및 추징이 그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몰수 및 추징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통한 성매매 알선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마. 성매매보호처분의 신설 및 적용의 한계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도입하여 성매매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2002년 율방범시행 당시에 없었던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몰수 및 추징뿐 아니라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전체 성매매 피고인의 4.6%에 불과하여, 성매매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요청된다.

#### 바.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의 한계

우선 성구매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구매자가 전체 성매매 피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현황을 볼 때 기소유예 비율이 48.9%를 차지한다. 2006년 공식통계상(검찰연감) 기소유예 비율이 13.4%라는 점을 본다면, 성구매자의 기소유예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2005년 8월부터 실시된 존스쿨(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영향으로 보이며, 성구매자의 기소유예 중 단순기소유예가 11.2%임에 비해 존스쿨 처분이 37.7%를 차지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범대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이 성구매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교육 시간의 확대, 교육 내용의 조정 등 성구매자(성매매사범 중 53.7% 차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범시행 이후 성판매자의 수사기관 처리현황을 보면, 성판매자의 경우 구속율은 0.3%, 기소율은 37.6%로, 공식통계상(2007 검찰연감)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율이 2.0%, 기소율이 4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율은 49.8%로 성구매자만큼 높은 편이나, 존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성구매자(11.2%)와 달리 단순 기소유예가 46.4%를 차지한

다. 그러나 기소유예된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없는 바, 단순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과 달리 보호사건의 송치비율 역시 낮은 편으로, 성구매자의 경우 0.1%, 성판매자의 경우 3.9%에 불과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성매매자(성구매자,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충적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표 VI-3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불기소 및 보호사건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불기소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	검거 인원 (전체)
	소계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각하	미상			
			단순	존스쿨									
성 판매자	57.4	5.3	46.4	3.4	0.0	0.3	1.6	0.2	0.0	0.2	1.3	3.9	100.0 (617)
성 구매자	57.0	6.7	11.2	37.7	0.1	0.4	0.4	0.5	0.0	0.0	0.1	0.1	100.0 (1,558)

### 3. '선불금' 관련 판례분석

성매매처벌법 이전 운방법에도 채권무효조항(제20조)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실무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여부를 수사하면서 단순 사기죄로 여겨 성매매여성의 인권이나 강제성 여부는 알아보지 않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 이처럼 형사사법적 실무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차용증' 과 '빚'의 문제를 성매매를 둘러싼 불법적 고용조건과 "착취"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인(私人)과의 관계에서의 "계약" 문제로서만 다루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당국의 태도가 오히려 성매매 착취구조를 더욱 악화시켜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채권무효조항은 물

론 선불금 등의 경제적 예측 관계로 인해 성매매를 한 자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선불금을 강제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이 내린 성매매처벌법 판결 중 선불금 관련 판결의 동향과 의미를 검토하여 윤방법 때와 달리 선불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알선업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행사하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강제의 핵심인 ‘선불금’의 문제에 대한 주요 판결들을 검토함으로써, 성매매처벌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 가. 성매매 행위 관련 업주의 선불금 채권무효

### 1) 대법원 2004. 9. 3, 2004다27488, 27495 판결

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부당이익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방석집을 운영하는 업주(원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방석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여성(피고)을 고용한 후 윤락행위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해 오다가 피고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

한 사안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앞서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판결이다.

#### 나. 금융기관의 선불금 대출관련 채권무효

##### 1) 대구지법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위의 울산지법 판례와 유사하게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판례이다. 즉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본 판결은 사채업자가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은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관계가 무효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성매매 여성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통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선불금무효 규정을 피하고자 했던 관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러한 사채업자와 성매매 영업주와의 공생관계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 업주와 사채업자 등 금융기관의 관계를 반영하여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폭넓게 정

의하고 성매매 알선등의 행위에 조력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려는 법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높은 사채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노예와 같은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은 매우 의미있다 할 수 있다.

## 2) 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유탁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유탁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유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유탁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유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이다.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유탁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은 민법 제103조, 구 유탁행위등방지법 제2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채권관계가 무효라고 명시함으로써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성매매 여성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선불금 무효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업계의 풍토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금 무효의 입법목적은 법해석과 적용에서 현실화하려고 하는 법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판결로, 아래의 대구지법 판결(2004가단39686)과 논지를 같이 한다.

## 다. 유탁행위 한계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선불금 대출 채권의 무효

###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로지 유탁행위만을 하거나 유탁행위

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둘째,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홍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2. 5. 하순(일자불상)경 이 사건 유홍주점의 업주로부터 위 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윤락행위에 종사하도록 할 여성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여성을 면담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그 여성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도록 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 28.경부터 2004. 3. 16. 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9억 9,700만 원을 대여하여 윤락행위 알선자금을 제공하여 기소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영업의 주된 목적이 윤락행위의 장소 제공이나 알선에 있는 자에게 윤락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금 등을 제공하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영업의 주목적이 윤락행위의 장소제공이나 윤락알선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을 함을 기화로 윤락알선 등을 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유홍주점의 업주로부터 여종업원들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홍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은 유홍주점 업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위 금원 대여 당시 이 사건 유홍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소위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금원을 대여해 준 여종업원들이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대여해 준 취업선불금이 윤락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함으로써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다만 부수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에게까지 처벌을 확대한 판결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해석에도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 라. 성매매영업 동업자의 채권무효 관련

### 1)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법원은 본 사안에서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성매매영업 관련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가 깨진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이익배분 및 투자원금의 회수 등의 요구는 성매매영업 관련 동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또 원인이 불법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성매매영업의 동업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계약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마. 집결지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단속의 기본권 침해 여부 관련

##### 1) 헌법재판소 2006. 6. 29 자 2005헌마1167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집창촌<sup>124)</sup>이 아닌 지역에서 다른 목적의 임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할 수 없는 건물 소유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집창촌 지역 내의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여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124) 판결문의 원문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하 동일함.

볼 수 없다.

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 근절 및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둘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 장소제공자가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관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이를 성매매영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선량한 사회풍속의 유지가 개인의 재산권보다도 더 큰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바. 소결

첫째, 성매매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업주가 성매매를 전제로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746조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등을 근거로 채권관계가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을 전제로 대출한 경우 이에 대한 채권관계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행위란 반드시 성매매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해서 하더라도 이를 성매매 알선의 범주로 인정함으로써 일탈적인 성매매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처벌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성매매 영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알선자의 채권관계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른바 이모, 마담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성매매여성과 영업주를 연결하는 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의 채권관계를 말소시켜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이른바 성매매영업의 동업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계약행위라는 점을 확실히 하여 영업의지를 차단시키고 있다.

여섯째,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관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이를 성매매영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인권의 보호 및 선량한 사회풍속의 유지 등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 제5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개선방안

성매매처벌법이 알선자 등의 중간착취자에 대한 행위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율방법이 시행되던 200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알선자 등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이 강화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폭력적인 성매매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성매매의 불법적 수익 구조를 없애려는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은 채 여전히 율방법 당시의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성매매처벌법의 형사법적 대응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개선책이 요구된다.

### 1. 인신매매 등의 중한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어났던 화재사건 등으로 제정당시 문제제기가 되었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감금, 협박, 채무를 이용한 강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규정과 폭행·협박 및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알선행위를 성매매강요(제18조)로 규정하고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에 비해 법정형을 강화한 것은 선불금과 폭력,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중간 착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인신매매, 폭력, 감금 등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 등이 처벌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성매매 알선자의 범조항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매매 알선자 중 성매매 권유 및 유인 등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위반은 91.7%이나, 성매매강요에 관한 제18조 위반은 1.9%이며, 특히 새로이 신설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우선 테마단속 등 기획수사에 성매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반 이상 의존하

고 있는 수사기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성매매업소 단속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성매매와 마사지 업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성매매 여부만을 수사하여 단순성매매만을 처벌할 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요나 폭행, 감금, 내지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졌다. 군산 성매매집결지 화재 참사 이후 성매매 집결지 등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감금이나 폭행은 더 이상 외관상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외부 출입문 밖으로 드리워져 있던 자물쇠나 창문을 막았던 쇠창살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방식의 강제는 존재하고 있고 업소를 둘러싼 감시체제는 보다 정교화되었다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선불금이 합법적인 대출기관을 통해 성매매여성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계약시 업주들은 성판매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각서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간착취자의 강제 및 강요 시스템에 대한 유연하고 철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통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인신매매 등 성매매 강요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 인신매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나 한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외국에 보내지는 한국 여성의 성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수 있는 수사기법과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마련 역시 시급하다.

##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인보호의 강화

인신매매 등 성매매 강요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성매매 여성들의 적극적인 증거 제시와 피해 진술 및 증언이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뿐 아니라 제3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성매매처벌법에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의 보호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신고(고소, 고발을 포함)한 자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신고자 등) 비공개하고, 친족 또는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에 인계하여야 하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의해 보호된다(제6

조).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출판물 게재, 방송매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그리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규정을 통해 법원이 신고자 등을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뢰관계있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의 비공개 근거 규정(제9조)을 마련하여,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보호규정만으로는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자에 대해 검찰측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피해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 입증해야 되나 단체나 변호인등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불금이 성매매 강요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것을 알지 못해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검거되는 성판매 여성들도 있으며, 업소의 형태에 따른 구조적 강요를 강요로 인식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만약 폭행이나 감금 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성매매 강요행위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쉽지 않다.

둘째, 수사 및 심리과정의 비공개를 제외하고 증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편이다. 증인이 인신매매범이나 성매매 강요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 및 심리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증인의 신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심지어 증인이 성매매 피해자인 경우 과거 폭행이나 감금, 협박 등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인 보호를 현실화하고 강화하여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신매매 등에 대한 증언을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증인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신청 이외의 인센티브를 주어 증언을 독려하는 방법도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에 대해 증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단지 수사나 재판 시 강제퇴거명령을 유예하는 것 이외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3. 성매매 광고 내지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강화

성매매처벌법은 운방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성매매 직업소개 행위 및 성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그동안 직업소개소 등이 성매매 여성의 이른바 ‘기획사’의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수입 중 일정부분을 착취하고 그들을 감시하던 역할을 수행해왔던 점에 주목하여, 이를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성매매 광고행위 역시 금지행위로 성매매의 예방을 위해 단순 성매매알선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와 달리 성매매 광고 내지 직업소개행위의 검거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조사결과 성매매광고행위 위반으로 검거된 자는 전체의 2.0%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적으며, 직업소개행위의 경우 역시 단 2명이 접수되었으나 이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성매매 광고 및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성매매 예방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

### 4.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활성화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 중간착취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규정을 신설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제25조). 이러한 몰수 및 추징규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중간 고리를 차단하여 성매매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규정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성매매 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몰수 및 추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다.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성매매



로 얻는 이득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몰수 및 추징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통한 성매매 알선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존스쿨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성구매자의 경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구매자가 전체 성매매 피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현황을 볼 때 기소유예 비율이 48.9%를 차지한다. 2006년 공식통계상(검찰연감) 기소유예 비율이 13.4%라는 점을 본다면, 성구매자의 기소유예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2005년 8월부터 실시된 존스쿨의 영향으로 보이며, 성구매자의 기소유예 중 단순기소유예가 11.2%임에 비해 존스쿨 처분이 37.7%를 차지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은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성매매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이 성구매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우선 존스쿨의 효과로 성구매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현행 50~70명 정도가 되는 교육인원도 효과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지고 있는 교화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존스쿨 프로그램은 규정상 근거가 법률이 아닌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2005. 7)에 있기 때문에, 실제 존스쿨 처분이 초범이 아닌 재범, 삼범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매매사범 중 53.7%를 차지하는 성구매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개발 뿐 아니라 교육시간의 확대, 교육인원의 조정 등이 필요하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의 경우처럼 처벌에 준하는 재정적 부담을 참가자들에게 지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성구매자 초범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재범 이상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아니라 기소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

## 6.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필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판매자 역시 기소유예 처분율은 49.8%로 성구매자만큼 높은 편이나 존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성구매자(11.2%)와 달리 단순 기소유예가 46.4%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기소유예된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없다. 결국 성판매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유예 처분은 그들을 다시 성매매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과 기소유예 후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가능한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표 VI-22>에서의 성판매자에 대한 존스쿨이 검사의 재량에 의한 성판매여성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법령으로 도입하는 등 보다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 2002년도 실태조사와의 비교

제1절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319
제2절 성매매여성의 실태 변화	339
제3절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	342
제4절 정책제언	345

## 제1절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 1.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종합한 성매매 규모 실태 (2007)

#### 가.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우리나라 성산업 규모는 전업형 집결지역 및 겸업형 업소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및 기타 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성매매 경제규모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부분은 정확한 실태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에 나타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성매매 경제규모를 추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단속 실적 비율인 44%(제4장 제2절 다 참조)를 전체 성매매 규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표 VII-1> 성매매 규모 추정

	업소수(개)	성매매여성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연간 거래액(억원)
전업형	1,443	3,644	251	2,068
겸업형	44,804	147,392	5,010	76,865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	118,671	4,134	62,019
합계	46,247	269,707	9,395	140,952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여성수, 성구매자 수, 연간 거래액의 경우, 단속실적 비율을 고려해서 전체 합계의 44%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값이다.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비업소형이나 경로형 등의 유형으로 업소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업소 수는 추정하지 않았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업소 수는 46,000여 개로 나타났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출장마사지, 전화, 인터넷채팅 등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데, 이 경우 업소 형태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에는 업소수를 추정하지 않았다. 성매매여성 수는 전업형 3,644명, 겸업형 147,392명, 인

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118,671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270,000명으로 추정되었다. 연간 성구매자 수는 전업형 251만여 명, 겸업형 5,000만여 명,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4,100만여 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9,395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성매매 산업의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하면 전업형이 2,068억여 원, 겸업형이 7조 6,800억여 원,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6조 2,000억여 원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성매매로 인한 연간 거래액은 약 14조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성매매 알선 비율의 경우 전업형 집결지역의 알선 비율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겸업형 사업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업형 집결지역의 경우 39개 지역에 전체 사업체 수가 약 1,443개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의 겸업형 사업체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21.4%로 나타났으며, 마사지업이 62.7%, 무도유흥주점업이 56.3%, 일반유흥주점업이 5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간이주점업은 2.7%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8개 업종 전체 사업체 209,000여개 중에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약 44,804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업형 업소와 겸업형 업소를 합치면 약 46,247개 사업체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업체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II-2>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겸업형)

업종	알선 비율	사업체 모집단(개)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일반유흥주점업	0.562	40,482	22,731
무도유흥주점업	0.563	5,460	3,074
간이주점업	0.027	84,564	2,310
다방운영업	0.286	16,056	4,585
노래방운영업	0.194	36,080	7,000
이용업	0.122	21,832	2,653
마사지업	0.627	3,001	1,880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0.255	2,241	571
합계	0.214	209,716	44,804

&lt;표 VII-3&gt; 성매매 알선 사업체(종합)

구분	전업형	겸업형	합계
성매매 알선 사업체(개)	1,443	44,804	46,247

#### 다.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

성매매여성의 규모는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接客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전업형의 경우 39개 집결지역내에 1,443개 업소에 있는 성매매여성 규모가 약 3,644명으로 추정되었다.

&lt;표 VII-4&gt; 성매매 종사자 규모(전업형)

(단위 : 개, 명, %)

구분	집결 지역수	지역내 업소수	지역내 성매매여성수
유리방	23(59.0)	916(63.5)	2,375(65.2)
기지촌	2(5.1)	35(2.4)	130(3.6)
여관/여인숙	6(15.4)	229(15.9)	204(5.6)
주점식 전업형	8(20.5)	263(18.2)	935(25.7)
합계	39(100.0)	1,443(100.0)	3,644(100.0)

겸업형의 경우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接客원이 평균 3.29명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하면 147,392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업에 가장 많은 91,11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이 24,025명으로 뒤를 따랐다.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소에는 가장 적은 9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간이주점업소가 2,678명으로 추정되었다.

&lt;표 VII-5&gt; 성매매여성 규모(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개)	업종별 성매매여성 평균 추정치 (명)	업종별 전체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치 (명)
일반유흥주점업	22,731	4.01	91,116
무도유흥주점업	3,074	3.60	11,071
간이주점업	2,310	1.16	2,678
다방운영업	4,585	2.06	9,463
노래방운영업	7,000	3.43	24,025
이용업	2,653	1.16	3,079
마사지업	1,880	2.64	4,965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71	1.74	993
합계	44,804	3.29	147,392

한편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단속 실적 비율(44%)을 반영해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규모를 추정하면 118,671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관련하여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등의 유형을 종합한 성매매여성 규모는 약 270,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lt;표 VII-6&gt; 성매매여성 규모(종합)

구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합계
성매매여성(명)	3,644	147,392	118,671	269,707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규모 : 전체 규모의 44% 수준으로 가정

## 라. 성구매자 규모

먼저 전업형 집결지역에서 성구매자 수를 살펴보면, 39개 집결지역내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평균 5.8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로 살펴보면, 평균 2.3명으로 나타났다.

&lt;표 VII-7&gt; 성구매자 규모(전업형)

구분	유리방	기지촌	여관/ 여인숙	주점식 전업형	전체
지역수(개)	23	2	6	6	39
지역당 평균 업소수(개)	39.8	17.5	38.2	32.9	37.0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명)	4.3	10.0	7.5	7.6	5.8
1인당 1일接客 성구매자수(명)	1.7	2.7	8.5	2.1	2.3

다음으로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를 살펴보면, 평균 3.39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1일 전체 성구매자 수로 추정하면 151,000여명 정도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업소가 85,367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소가 2,100명으로 가장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8&gt; 성구매자 규모(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개)	업소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명)	전체 1일 성구매자 수 (명)
일반유흥주점업	22,731	3.76	85,367
무도유흥주점업	3,074	2.70	8,314
간이주점업	2,310	3.19	7,375
다방운영업	4,585	1.99	9,139
노래방운영업	7,000	3.03	21,194
이용업	2,653	2.66	7,032
마사지업	1,880	6.00	11,282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71	3.68	2,100
합계	44,804	3.39	151,803



위에서 살펴본 성구매자 규모를 연간 규모로 살펴보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겸업형은 영업일수를 330일로 가정하고, 전업형은 영업일수를 300일로 가정하며, 기타 성매매여성 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전체 규모의 44% 비율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업형은 연간 연인원 251만 명, 겸업형은 연간 5,01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4,134만 명으로 추정해 전체적으로 9,39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VII-9> 연간 성구매자 규모(종합)

구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합계
연간 성구매자 규모(만명)	251	5,010	4,134	9,395

#### 마.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전업형 집결지역의 경우, 평균 구매 비용이 82,251원으로 나타났으며, 주점식 전업형이 163,41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관/여인숙 형태가 평균 34,43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I-10>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전업형)

구분	유리방	기지촌	여관/여인숙	주점식 전업형	전체
지역수(개)	23	2	6	8	39
지역당 평균 업소수(개)	39.8	17.5	38.2	32.9	37.0
성적 서비스 평균비용(원)	65,836	122,442	34,434	163,415	82,251

한편,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성적 서비스 구매 평균비용은 약 152,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무도유흥주점업소가 약 194,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유흥주점업소가 약 166,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업이 약 76,000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lt;표 VII-11&gt;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업종별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만원)
일반유흥주점업	22,731	16.63
무도유흥주점업	3,074	19.37
간이주점업	2,310	15.00
다방운영업	4,585	10.00
노래방운영업	7,000	16.28
이용업	2,653	7.57
마사지업	1,880	11.35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71	9.50
합계	44,804	15.15

## 2.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 가. 성매매 경제규모

본 절에서는 2007년 성매매 실태를 2002년 실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성매매 산업 규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종합적인 성매매 경제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별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업형 집결지역을 2002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집결지역은 69개에서 39개로 감소하였으며, 연간 이용 성구매자 연인원 수가 2,100만여 명에서 2007년에 251만여 명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간 거래액 규모는 2002년 1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07년 조사 결과 2,000억여 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약 1조 6,000억여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비교해서 전업형 집결지역의 경제 규모가 감소한 부분은 일정 정도 성매매방지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조사 집결지역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대부분의 업소가 최근 1~2년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 원인으로 '성매매 방지법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46.2%, '경기 때문에(불황)'라는 응답이 3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매매 방지법이 전업형 집결지역의 경제 규모 감소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II-12>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전업형)

구분	추정 결과		
	2002년	2007년	증감
지역 수(개)	69	39	-30
전체 업소수(개)	2,938	1,443	-1,495
전체 성매매여성 수(명)	9,092	3,644	-5,448
연간 성구매자 수(천명)	21,003	2,514	-18,489
성적 서비스 평균비용(원)	73,961~168,647	82,251	-
연간 거래액(억원)	18,318	2,068	-16,250

겸업형의 경우, 겸업형 8개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9,716개이며, 이 중에서 성매매 알선 경험이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겸업형 업소의 연간 거래액 규모는 약 7조 7,000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2년 연간 거래액 규모인 약 16조 5,000억 원 규모에 비해 8조 8,000억여 원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업에서 6조여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 운영업이 약 1,4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5)</sup>

2002년과 비교해서 겸업형 업소들의 경제 규모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성구매자 규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경제 규모가 성매매 알선 비율에 의해 추정된 알선 업체 수, 성구매자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2002년에 비해 알선 비율이 감소하고, 성구매자 수도 감소함에 따라 경제 규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체 수나 성구매자 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유흥주점, 간이주점업, 다방운영업 등에서

125) 2002년 결과와 비교할 때,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에도 약 2,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무도유흥주점업의 실제 업종 성격이 일반유흥주점업과 크게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도유흥주점업이 성매매 관련 매출이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을 무도유흥주점업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을 함께 유흥주점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2002년에 비해 매출 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선 사업체 및 성구매자의 규모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연간 경제 규모의 감소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마사지업 등에서 알선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사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규모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겸업형 업소의 경제 규모 감소 요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간략히 그 원인을 추론해 보면, 본 표본조사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에게 최근 1~2년간 매출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사업체의 73.6%가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그 원인을 물어본 결과, '경기 때문에(불황)'라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방지법 때문에'라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sup>126)</sup>. 실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경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전업형 집결지역에 비해 '경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경기의 영향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26)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경향성은 크게 차이가 없다.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의 75%가 최근 1~2년간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기 때문에'가 82.1%, '성매매방지법 때문에'가 12.0%로 나타났다.

&lt;표 VII-13&gt;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		업종별 전체 1일 성구매자 수(명)		업종별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만원)		연간 거래액(억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 주점업	28,093	22,731	197,772	85,367	18.35	16.63	108,900	46,849	-62,051
무도유흥 주점업	1,461	3,074	5,187	8,314	20.67	19.37	3,216	5,314	+2,098
간이주점업	8,412	2,310	34,828	7,375	15.09	15.00	15,734	3,651	-12,083
다방운영업	9,757	4,585	53,953	9,139	8.34	10.00	13,054	3,016	-10,038
노래방 운영업	5,849	7,000	21,058	21,194	15.82	16.28	9,995	11,393	+1,398
이용업	2,929	2,653	27,475	7,032	9.22	7.57	7,601	1,757	-5,844
마사지업	1,437	1,880	21,972	11,282	13.22	11.35	8,717	4,227	-4,490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571	-	2,100	-	9.50	-	658	-
합계	57,938	44,804	357,739	151,803	15.37	15.15	164,966	76,865	-88,101

위에서 추정한 전업형과 겸업형 결과와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성매매 경제 규모를 2002년과 비교하면 다음 <표 VII-14>와 같다. 각 년도 단속 실적 비율을 반영하여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2002년도에 약 5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07년도 6조 2,000억여 원 규모로 4,100억여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형, 겸업형 그리고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성매매 경제규모는 2002년도 24조여 원에서 2007년도 14조여 원으로 10조여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14&gt;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종합)

구분	업소수(개)		성매매여성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연간 거래액(억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	2,100	251	18,318	2,068	-16,250
겸업형	57,938	44,804	241,114	147,392	10,732	5,010	164,966	76,865	-88,101
인터넷 및 기타	(19,224)	(36,337)	79,012	118,671	4,052	4,134	57,879	62,019	+4,140
합 계	60,876 (80,100)	46,247 (82,584)	329,218	269,707	16,884	9,395	241,163	140,952	-100,211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추정 : 단속실적 반영 비율 2002년도 24%, 2007년도 44%.

####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전업형 집결지역 결과를 비교해보면, 집결지역 수는 2002년 69개에서 2007년은 39개 지역으로 감소했으며, 지역 내 전체 업소수도 2002년 2,938개에서 1,443개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15&gt;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비교(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개)			지역내 업소수(개)		
	2002년	2007년	증감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69	39	-30	2,938	1,443	-1,495

한편, 겸업형의 경우 알선 비율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를 추정하였다.

업종별/지역별 성매매 알선 비율을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반유흥주점업에서 성매매 알선 비율은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도유흥주점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도유흥주점업의 경우, 일반유흥주점업과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거의 차이가 없는 특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무도유흥주점업의 많은 경우가 실질적인 사업 형태에서 일반유흥주점업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의 경우 무도유흥주점업의 알선 비율이 일반유흥주점업의 알선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이 2002년 무도유흥주점업의 알선 비율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간이주점업, 다방운영업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비율이 전지역에서 감소하였고, 노래방 운영업과 이용업은 서울 지역은 감소한 반면에,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증가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사지업은 농촌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VII-16> 성매매 알선 비율 비교(검업형)

(단위 : %)

업종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일반유흥주점업	76.5	52.0	89.5	51.0	76.6	61.3	75.5	52.4
무도유흥주점업	31.4	53.4	52.7	54.4	43.6	58.3	59.9	56.2
간이주점업	4.5	2.1	11.5	1.7	9.6	3.3	8.7	5.8
다방운영업	-	-	-	-	31.4	22.5	54.9	42.6
노래방운영업	20.6	11.8	24.9	22.0	13.9	22.1	12.6	10.6
이용업	17.5	10.2	14.5	7.2	8.4	19.3	4.7	2.5
마사지업	33.5	68.6	42.0	58.0	39.6	62.1	50.0	33.3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28.5	-	32.3	-	19.8	-	25.0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를 비교해보면, 2002년도 성매매 알선 비율은 26%이며, 2007년도는 21.4%로 나타나 4.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마사지업이 37.9%에서 62.7%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는 57,938개 사업체에서 44,804개 사업체로 13,000여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17&gt;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비교(겸업형)

업종	알선 비율			사업체 모집단(개)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2002년	2007년	증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주점업	0.799	0.562	-0.237	35,151	40,482	28,093	22,731	-5,362
무도유흥주점업	0.456	0.563	+0.107	3,207	5,460	1,461	3,074	1,613
간이주점업	0.090	0.027	-0.063	93,814	84,564	8,412	2,310	-6,102
다방운영업	0.387	0.286	-0.101	25,228	16,056	9,757	4,585	-5,172
노래방운영업	0.182	0.194	+0.012	32,220	36,080	5,849	7,000	+1,151
이용업	0.113	0.122	+0.009	25,911	21,832	2,929	2,653	-276
마사지업	0.379	0.627	+0.248	3,787	3,001	1,437	1,880	+443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0.255	-	-	2,241	-	571	-
합계	0.26	0.214	-0.046	219,318	209,716	57,938	44,804	-13,134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의 경우 기타 성매매 비율을 업체 규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19,224개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타 성매매 유형의 특성상 대부분이 비업소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소수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업형과 겸업형 업소들만으로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를 비교할 경우, 2007년도의 경우 46,247개 사업체로 2002년도에 비해 14,000여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7)</sup>

127) 2002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07년도 업소수를 산출하면, 2007년도 기타 성매매의 경우 단속 비율 44%를 적용해서 업소수를 산출하면 약 36,337개의 업소수가 추정된다. 2002년도에 기타 성매매가 19,224개로 전체 업소수가 80,100개로 추정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82,584개로 사업체 수로 추정할 수 있다. 기타 성매매를 포함한 업소 수에서는 약 2,484개의 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18&gt;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종합)

	업소수(개)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1,495
겸업형	57,938	44,804	-13,134
인터넷 및 기타	(19,224)	(36,337)	(+17,113)
합 계	60,876 (80,100)	46,247 (82,584)	-14,629 (+2,484)

※ 합계에서 ( )안의 숫자는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할 경우의 업소수임.

#### 다. 성매매여성 규모

전업형 집결지역내 성매매여성 규모와 관련해서 2002년에는 약 9,100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에서는 39개 지역 3,644명으로 나타나 5,400여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19&gt;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개)		지역내 업소수(개)		성매매여성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69	39	2,938	1,443	9,092	3,644	-5,448

한편, 겸업형 업소의 성매매 알선 경험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소별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치를 2002년과 비교하면 <표 VII-20>과 같다. 업소별 여성接客원평균 추정치가 2002년 4.16명에서 2007년 3.2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여성 규모도 241,000여 명에서 2007년도에 147,000여 명으로 93,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8)</sup>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2002년도에 비해 종사 여성 규모가 감

128) 2002년 실태조사와 2007년 실태조사의 성매매여성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2002년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도우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유흥주점업 및 다방운영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VII-20>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업종별 성매매여성 평균 추정치(명)		업종별 성매매여성 전체 규모 추정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4.97	4.01	139,620	91,116	-48,504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5.53	3.60	8,081	11,071	2,990
간이주점업	8,412	2,310	2.52	1.16	21,199	2,678	-18,521
다방운영업	9,757	4,585	3.36	2.06	32,782	9,463	-23,319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	3.43	-	24,025	-
이용업	2,929	2,653	2.56	1.16	7,498	3,079	-4,419
마사지업	1,437	1,880	7.29	2.64	10,476	4,965	-5,51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571	-	1.74	-	993	-
합계	57,938	44,804	4.16	3.29	241,114	147,392	-93,722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한 전체 성매매여성 규모를 2002년과 비교하면 다음 <표 VII-21>과 같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의 경우 2007년도에 약 120,000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40,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업형과 겸업형은 2002년도에 비해 성매매여성이 모두 감소한 반면,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에서는 규모가 오히려 증가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에 성매매여성 규모가 약 270,000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59,000여 명 정도 감소한

미'를 알선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제외하였으며, 보도방 도우미도 중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성매매여성을 전업직(full-time job)으로 간주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2007년도의 경우, 업소에 고용되어 있거나(상시),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임시) 손님이 요구할 경우 불러주는 도우미를 모두 포함하였다. 업소의 직접 고용 여부보다는 해당 업소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가능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추정하는데 있어서 노래방만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7년에는 노래방을 포함한 겸업형에서 조사한 8개 업종을 모두 포괄하여 성매매여성 규모를 추정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1>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종합)

	업소 수(개,건)		성매매여성 수(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	-5,448
겸업형	57,938	44,804	241,114	147,392	-93,722
인터넷 및 기타	(19,224)	(36,337)	79,012	118,671	+39,659
합 계	60,876	46,247	329,218	269,707	-59,511

**라. 성구매자 규모**

전업형 업소의 경우에는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가 2002년도에는 평균 7.0명<sup>129)</sup>이었으며, 2007년도에는 평균 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성구매자 수는 2007년도에 약 251만 명으로 2002년도 약 2,100만 명에 비해 1,800만 여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2> 성구매자 규모 비교(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개)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69	39	7.0	2.3	2,100	251	-1,849

※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에서 2002년의 경우 7.0명은 단속 통계에서 추정된 값이며, 조사자료에서 추정된 값은 평균 4.3명임.

129) 2002년도에 전업형 집결지역에서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의 경우, 조사 자료에서 추정된 값은 평균 4.3명이지만, 단속 통계에서 평균 7.0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2개의 값을 이용하여 경제규모를 추정하였고, 최종 추정치에는 단속 통계값(7.0명)을 이용하여 상향조정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겸업형의 업종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6.17명에서 2007년도에 3.39명으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마사지업 및 이용업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간 성구매자 수를 추정하면 2007년도에 5,000만여 명으로 2002년도의 1억 7백만여 명에 비해 5,700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유희주점업이 2002년도에 비해 3,100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다방운영업이 1,300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3> 성구매자 규모 비교(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희주점업	28,093	22,731	7.04	3.76	5,933	2,817	-3,116
무도유희주점업	1,461	3,074	3.55	2.70	156	274	+118
간이주점업	8,412	2,310	4.14	3.19	1,045	243	-802
다방운영업	9,757	4,585	5.53	1.99	1,619	302	-1,317
노래방 운영업	5,849	7,000	3.60	3.03	632	699	+67
이용업	2,929	2,653	9.38	2.66	824	232	-592
마사지업	1,437	1,880	15.29	6.00	659	372	-287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571	-	3.68	-	69	-
합계	57,938	44,804	6.17	3.39	10,732	5,010	-5,722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한 전체 성구매자 규모를 2002년과 비교하면 다음 <표 VII-24>와 같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의 경우 2007년도에 4,100만여 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82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에 연간 성구매자 규모가 약 9,400만 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7,50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lt;표 VII-24&gt; 성구매자 규모 비교(종합)

구분	업소 수(개)		연간 성 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2,100	251	-1,849
겸업형	57,938	44,804	10,732	5,010	-5,722
인터넷 및 기타	(19,224)	(33,489)	4,052	4,134	+82
합 계	60,876	46,247	16,884	9,395	-7,489

#### 마.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전업형 업소의 경우, 2002년도에는 성적 서비스 비용을 long time과 short time 을 구분해서 short time이 평균 73,691원, long time이 평균 168,647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단일 금액으로 성적 서비스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평균 82,251원으로 나타났다.

&lt;표 VII-25&gt;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전업형)

구분	2002년		2007년
	short	long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원)	73,691	168,647	82,251

겸업형의 업종별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은 2002년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2년이나 2007년 모두 15만여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I-26&gt;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겸업형)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만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18.35	16.63	-1.72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20.67	19.37	-1.30
간이주점업	8,412	2,310	15.09	15.00	-0.09
다방운영업	9,757	4,585	8.34	10.00	+1.66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15.82	16.28	+0.46
이용업	2,929	2,653	9.22	7.57	-1.65
마사지업	1,437	1,880	13.22	11.35	-1.87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571	-	9.50	-
합계	57,938	44,804	15.37	15.15	-0.22

## 바. 소결

이상으로 2007년 성산업 관련 경제규모 결과를 200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위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조사결과 성매매 관련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매매 알선 비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 유흥산업 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았을 때, 겸업형 8개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와 성매매여성 수(<표 III-4> 참조)의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실태조사에 비해 성산업 관련 경제규모가 감소한 것은 성매매 알선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산업 관련 경제규모의 추정은 성매매 알선 사업체를 기준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비율의 감소에 의해 성매매 알선 사업체, 성매매여성의 규모, 성매매 거래액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성매매 경제규모가 감소한 것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한 사회제도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법집행의 강화, 인식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업형의 경우 겸업형에 비해 성매매 방지

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체적으로 성산업 관련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성산업 관련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산업 관련 유형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로 구분할 때, 전업형이나 겸업형의 경우 2002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에는 연간 거래액이 200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업형이나 겸업형의 감소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성산업 관련 경향성이 업소형보다는 비업소형 부분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소형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전업형 집결지의 경우 감소하고 있지만, 겸업형의 마사지업 등의 형태에서는 성매매 알선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성산업 관련 경향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사지업이나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와 같은 새롭게 변화하는 성산업의 유형에 대한 향후 심도 있는 연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성매매여성의 실태 변화

2002년 실태조사의 성매매여성 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생활상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여성은 업주와 손님에 의해 행해지는 성적·신체적 폭력에 익숙해져 있었다. 업주에 의한 폭력은 업주와 성매매여성 간의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빛의 정도에 따라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감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업주는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매매여성들 상호간 맞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공동숙소를 사용하게 하는 등 상호간 감시체계를 형성하였다.

성매매업소의 손님인 성구매자의 경우, 여성을 돈을 주고 샀기에 성매매여성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성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강간, 성적 서비스 비용 미지불, 변태적 성행위 등의 성적·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성구매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명시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빌미로 협박하는 일이 잦아 성매매여성은 손님이 주는 모욕을 참아야 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은 여러 가지 차원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매매여성은 인권 및 최소한의 안전을 제공해야 할 경찰 등의 공권력이 자신들을 ‘열외의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업주의 폭력과 착취를 알면서도 업주와 우호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현실이기에 업주에게 의존적 태도를 취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 동료 여성과의 관계 역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감시자로 불신관계에 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이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데에는 삶에 대한 의욕, 빛을 갚는 일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함을 인식, 제3의 지원자의 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시 되었다. 그러나 탈성매매의 장애물 역시 존재하였다. 그것은 빛, 업주의 협박과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빛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과 생각 등으로 도출되었다. 탈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차용증 등을 통한 채무관계의 미해결, 업주의 협박, 사기죄 고소 등으로 인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조사와 2007년 현재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황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2004년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으로 인한 성매매 현실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에서 ‘성매매행위’로 그 개념을 바꾸었고, 알선행위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여 수사 및 재판상의 보호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조항에서 관련 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한국 성매매 현실과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우선 성매매여성과 업주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업주와 성매매여성은 폭력과 감금 등을 통해 지배종속적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경찰 단속 강화와 채권무효 관련 조항 등으로 성매매여성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졌다. 선불금이 없다는 것은 업주의 지배와 통제를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과거보다 쉽게 탈성매매를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수입 분배 차원에서도 기존에 업주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일정 부분 변하여 성매매로 인한 수입에 대한 업주의 심각한 착취가 다소 개선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성구매자와 성매매여성과의 관계는 구매자의 성적 요구와 협박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이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이 전국민 차원에서 알려지면서 성구매자 역시 과거보다 강력해진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과 모욕도 다소 줄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 측면에서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각종 전달체계가 신설되어 성매매 현장으로 투입되는 등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이루었다. 특히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피해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결심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처음에는 상담소나 지원시설의 종사자를 불신하였으나 점차 신뢰하게 되어 정서적 지지자 혹은 원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그로 인한 자활지원정책의 수립은 성매매여성에게 있어 탈성매매의 직접적인 기회와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과 생활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는 기회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 제3절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

#### 1. 검찰 구형의 강화

검찰의 처리현황을 2002년 실시한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의 자유형 구형은 2002년보다 약 12.1% 포인트 증가하였고(9.2% → 21.3%), 벌금형 구형은 2002년 보다 약 12.1% 포인트 감소하였다(90.8% → 78.7%). 이는 검찰의 구형이 운방법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VII-27> 운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 검찰구형 형태 비교  
단위 : 명(%)

	운방법	성매매처벌법
징역형/자유형	80(9.2)	316(21.3)
벌금형	785(90.8)	1,165(78.7)
몰수 및 추징*	-	63(4.3)
소 계	865(100.0)	1,481(100.0)

\*몰수 및 추징은 자유형, 벌금형과 중복으로 신고가능함.

#### 2. 법원의 선고의 강화

법원의 선고현황을 2002년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2002년에 비해 실형 선고율은 1.6%포인트 증가하였고(1.6% → 3.2%), 벌금형 선고율은 3.3% 포인트 감소하였다(90.0% → 86.7%). 법원의 선고형량 역시 운방법 시행 당시에 비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8> 윤방법(2002) 및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선고형태 비교

단위 : 명(%)

	윤방법	성매매처벌법
실 형	13(1.6)	44(3.2)
집행유예	70(8.4)	136(9.5)
벌 금	746(90.0)	1,177(86.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등*	-	62(4.6)
몰수 및 추징**	-	59(4.3)
소 계	829(100.0)	1,357(100.0)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중복으로 선고가능함.  
 \*\* 몰수 및 추징은 위의 모든 선고형태와 중복으로 선고가능함.

### 3. 검찰의 구형량 및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윤방법 시행당시와 검찰 구형량 및 법원 선고형량을 비교해보면, 전체 처벌에서 구공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6%에서 20.1%로 9.5%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알선 자들에 대해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공판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 증가했으며 법원의 선고형량의 경우 실형은 평균 9.17개월에서 10.7개월로 상승했다. 구약식의 경우도 검찰의 구벌금은 평균 151.26만원에서 171.23만원으로, 법원의 선고벌금은 평균 145.87에서 169.57로 증가했다. 이 역시 윤방법 시행 당시에 비해 성매매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VII-29>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의 처벌내용과 형량관계 비교

	구 공 판				구 약 식		
	해당 사례	검찰구형량 평균 (개월)	법원 선고형량		해당 사례	검찰구벌금 평균 (만원)	법원 선고 벌금평균 (만원)
			징역평균 (개월)	집행유예평균 (개월)			
윤 방 법	94	17.51	9.17	18.00	794	151.26	145.87
성매매처벌법	276	18.76	10.7	2.24	1096	171.23	169.57

<표 VII-30>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및 제1심 선고형량

	평균 구형량			평균 제1심 선고형량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자유형(개월)		벌금형 (만원)	보호 관찰 (개월)	사회봉사 명령 (시간)	수감 명령 (시간)
	실형	집행 유예		실형	집행 유예				
성매매알선자	17.80	11.07	300.76	10.58	9.38	273.99	15.50	109.68	40.00
성매매강요	21.27	0	274.07	12.50	11.33	277.78	0	0	0
성매매권유 및 유인	17.56	11.14	313.76	10.21	9.25	282.22	14.56	110.67	40.00
모집자	0	0	250.00	0	0	250.00	0	0	0
직업소개자	0	0	0	0	0	0	0	0	0
장소제공자	23.29	10.00	246.40	19.00	9.08	260.18	18.00	120.00	0
건물주	24.00	0	210.91	8.00	10.00	201.82	0	0	0
광고업자	0	0	100.00	0	8.00	50.00	0	0	0
성판매자	23.50	0	118.37	16.00	12.00	114.22	6.00	65.00	0
성구매자	15.74	8.00	115.79	13.70	7.56	130.08	5.33	95.89	66.67
기타	18.00	0	150.00	0	8.00	160.00	0	0	0

## 제4절 정책제언

성매매는 성매매여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편리한 성적 욕구충족이라는 사회적인 원인이 결합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현상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로 인해 주로 성매매여성 개인에게 그 원인을 집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성구매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성구매의 실태 및 현상과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매매의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돈벌이, 가족부양과 같은 빈곤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조사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가정불화, 가족학대와 같은 가정문제도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어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였다.

따라서 현행 '성매매방지대책'의 미흡사항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성매매 금지주의에 따른 사회의식의 확산

첫째, 성매매는 사회적인 범죄행위임을 천명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과 함께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성매매는 성적착취이고 폭력이며, 인권침해 범죄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반드시 추방해야한다. 그동안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이었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성매매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도록 일상생활과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에만 집중되었던 기존 성매매방지정책의 이미지를 쇠퇴시키고, 보다 성산업, 성구매자에 대한 개입과 사후적 개입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범시민운동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행위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홍보해야 하는데 특히 남성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하겠다. 재판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연수원 이수 과정 중 양성평등관련 과목, 여성과 법률 과정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법률 용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심문과정과 판결문 작성과정에서도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판사, 법무 관련자에게도 양성평등 지향적 교육을 정례적으로 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2. 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의 필요성

첫째, 전담인력·부서 증원 및 시민사회 협조를 통해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의식을 제고하는 일이다.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던 한국의 경우 지난 3~40년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성산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협동해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예방, 억제, 처벌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의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단속·처벌(prosecution)의 3차원 모두에서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관련부처·경찰·민간단체 간의 연계 제고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산업 축소 및 수요 차단을 위한 집행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성산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과 성구매자 처벌 등의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신종·변종 성산업 업소를 단속하는 차원의 집행이 필요하며,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정비과정이 필요하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성매매에 관련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 될 수 있다.

넷째, 일단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만연하고 음성화됨으로 인해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성매매가 음성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부와 검찰, 경찰의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다.

다섯째,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지원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해야 사회적 충격과 비용 및 혼란을 줄이고 성매매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실적평가를 활용,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 3. 인터넷성매매 실태조사 및 규모 축소를 위한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속성상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대응에서 나타난 자료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전체 규모의 44%로 추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관련된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 처벌 및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유료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가 성매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시정 보완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수사의 대응방법이 첨단화되고 있지만 단속의 주체는 일선 경찰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다른 업무들이 산재하여 상시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테마 단속의 형식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다시함께센터, 2007). 게다가 인터넷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관련 법규의 검토 및 개정,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접근제한어(예를 들어 조건만남 등)를 정하여 '청소년 접근 제한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한어 자체만으로도 정보보호등법상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사이트에 폐쇄에 대한 관련 규정에 있어서 인터넷성매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거부, 정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관계자의 인식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



하게 할 필요와 더불어 요건사실의 입증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알선 권유유인,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과 처벌, 위 사이트의 폐쇄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사이트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운영진이 대한 대한민국국적여부, 국외서버를 둔 곳의 범죄성립여부 등 국제공조에 의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4. 해외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첫째, 한인 해외성매매에 있어 불법체류 외국여성에 대한 밀입국 알선행위, 불법인신구속 및 성매매 강요와 관련, 국제규범과 달리 인신매매를 성폭력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술홍행 체류자격증 송출업체, 특수관광협회, 연예기획사 등에 의한 강제적 성매매, 임금체불,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 및 외국인피해자 보호시설의 실질적 지원 강화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이는 각국의 인신매매 혹은 성매매 관련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호주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의 관련 기관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직업 활동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불법적 성매매에 종사하다 적발된 여성과 관련된 브로커의 기록을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 공유하여 이들에 의한 해외 성매매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 성매매 알선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많다. 광고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미국 성매매 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미국에 있는 한국 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홍보하여 해외성매매 방지를 도모해야겠다. 이와 더불어 불법 체류 혹은 성매매와 관련된 기록을 미국의 국토안보부, 국무성 등과 한국의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 공유하여 이들에 의한 해외 성매매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경우는 성매매에 대해서 경찰이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호주,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이런 환경에서 유흥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번성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의 신변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색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 수사 당국의 적극적 공조가 요구된다.

다섯째, 한국 남성의 중국, 태국, 필리핀에서의 성구매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적 행위이다. 그러나 이들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규제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은 한국에 소재한 여행사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현지 가이드를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가이드와는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5.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첫째, 전국의 성산업 관련 실태를 보면 서울 등 광역시, 중소도시에서는 마사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에서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농어촌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다방운영업에서의 성매매 알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에 의한 위반 성매매 업소의 유형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검거(23.3%)와 안마시술소/출장마사지(21.9%)의 검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의 특성상 단속의 적발이 어려운 업소보다는 단속·처벌이 수월한 업종에 대한 단속이 행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향후에는 성매매 알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법적 대책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중간매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폐쇄하고 주변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안 마련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음성적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언론 등이 제기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따른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적발 시 영업장폐쇄 근거를 마련하고, 알선업자와 건물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유흥향락업소에 대한 허가제·신고제의 제도정비 및 업종전환을 위한 거시적인 경제정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 원정 성매매의 실태 및 국가위신도 등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이를 파악하고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으며 성매매여성들의 해외 송출 문제와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첫째,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인신매매, 폭력, 감금 등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 등이 처벌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방식의 강제는 존재하고 있고 업소를 둘러싼 감시체제는 보다 정교화 되었다. 그러므로 중간착취자의 강제 및 강요 시스템에 대한 유연하고 철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통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인신매매 등 성매매 강요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또한 국제 인신매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나 한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외국에 보내지는 한국 여성의 성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수 있는 수사기법과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마련 역시 시급하다.

셋째, 인신매매 등 성매매 강요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성매매 여성들의 적극적인 증거 제시와 피해 진술 및 증언이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뿐 아니라 제3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성매매처벌법에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의 보호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보호규정만으로는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자에 대해 검찰측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증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인 보호를 현실화하고 강화하여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신매매 등에 대한 증언을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증인에게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 이외의 인센티브를 주어 증언을 독려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에 대해 증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단지 수사나 재판시 강제퇴거명령을 유예하는 것 이외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넷째, 성매매처벌법은 운방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성매매 직업소개 행위 및 성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와 달리 성매매 광고 내지 직업소개행위의 검거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성매매 광고 및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성매매 예방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 중간착취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규정을 신설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제25조). 그러나 몰수 및 추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다.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성매매로 얻는 이득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몰수 및 추징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통한 성매매 알선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7.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은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성매매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이 성구매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우선 존스쿨의 효과로 성구매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현행 50~70명 정도가 되는 교육인원도 효과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지고 있는 교화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존스쿨 프로그램은 규정상 근거가 법률이 아닌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2005. 7)에 있기 때문에, 실제 존스쿨 처분이 초범이 아닌 재범, 삼범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 8.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필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판매자 역시 기소유예 처분율은 49.8%로 성구매자만큼 높은 편이나 존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성구매자(11.2%)와 달리 단순 기소유예가 46.4%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기소유예된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없다. 결국 성판매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유예 처분은 그들을 다시 성매매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과 기소유예 후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가능한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9.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적극적 홍보

첫째,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긴급구조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성매매현장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추동할 수 있도록 생존권 보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여성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고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다. 단기간 내 자활이 어려운 성매매피해자의 특성을 고려, 자활 이후 임대주택 또는 그룹홈 등 안정적 장기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성매매시장 재유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인식개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려나가야 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에 성공하고 있으며, 상담소 관계자에 대한 신뢰관계는 성립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책이 성공하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탈성매매에 대한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탈성매매 자활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실질적 생존권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경찰의 집중단속이 진행되면서 업주의 통제 하에 있는 일부 여성들은 업주의 동원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법에 저항하고 있다. 문제는 업주와 여성을 분리하면서 성매매산업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대안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10. 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의 시도

성매매 관련산업 및 이에 대한 정책수행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론은 매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바탕으로 실사자료를 획득하여 법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효과 분석의 특성상 특별법 시행과 같은 사회적 규제 수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주체의 반응이 단기적, 고정적으로 포착된다는 측면에서 동태적인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법 시행에 따라 경제 주체는 기존의 소비지출행태에 있어서 보다 구조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생산자의 경우에도 기술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학, 행정학, 소비자경제학 등 여타 분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의 적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경제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광하(1991), 『산업연관분석론』. 비봉.
- 강영수(1988),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연구: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2007),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2007.3.20)」, 경찰청.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다시함께센터(2007),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2007.3.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다시함께센터.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7),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익 환수 및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여성정책포럼(2004),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2004.11.15)』, 국회여성정책포럼.
-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2006), 『성매매특별법 2주년, 그 성과와 과제(2006.9.29)』,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
- 김경애·김성애·전소희(2006), 『아시아·태평양지역 성매매관광(Sex Tourism)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태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김선화(2006),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적침해와 빈곤의 재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22차 추계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
- 김성천(2004),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제16집 제4호, 중앙법학회.
- 김영식·박우영·신관호·정용승(2003), “한국경제의 산업연관성과 실물경기변동모형: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9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 김용규(2002), “IT산업과 한국경제: 전자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산업연관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9권 제2호, 정보통신정책학회.
- 김윤희(2006), “인천 송의동 성매매 집창촌에 대한 연구: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2),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현황 및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6), “성구매자 제범방지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내일신문(2006), “생생마당 - 성매매특별법, 실효성 논란(2006.9.22)”.
- 다시함께센터(2006a), “대딸 행위 알선, 강요 업주 처벌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 협력

- 요청의 건”(2006.1.26 보도자료), 다시함께센터.
- \_\_\_\_\_ (2006b), “대법원 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 3억 9,246만원 확정”(2006.7.28 보도자료), 다시함께센터.
- \_\_\_\_\_ (2007), 「'07 다시함께센터 법률포럼: 인터넷성매매 현황과악과 대책마련(2007.12.7)」, 다시함께센터.
- 대검찰청(2002), 『범죄분석 2002(2001. 1. 1 ~ 12. 31)』, 대검찰청.
- \_\_\_\_\_ (2003), 『범죄분석 2003(2002. 1. 1 ~ 12. 31)』, 대검찰청.
- \_\_\_\_\_ (2004), 『범죄분석 2004(2003. 1. 1 ~ 12. 31)』, 대검찰청.
- \_\_\_\_\_ (2005), 『범죄분석 2005(2004. 1. 1 ~ 12. 31)』, 대검찰청.
- \_\_\_\_\_ (2006a), 『검찰연감 2006』, 대검찰청.
- \_\_\_\_\_ (2006b), 『범죄분석 2006(2005. 1. 1. ~ 12. 31)』, 대검찰청.
- 박재완(2007), “해외원정 성매매·유혹업·마사지업소”, 국회의원 박재완 보도자료 2006-26호 3월 19일.
- \_\_\_\_\_, “해외원정 성매매·유혹업에 한국인 취업알선 카페 극성”, 국회의원 박재완 보도자료 2007-73호 10월4일.
- \_\_\_\_\_, “나라 망신시키는 해외 성매매(II): 중국편”, 국회의원 박재완 보도자료 2007-11호 4월8일.
- \_\_\_\_\_, “중국원정 성매매 여전히 성업”, 국회의원 박재완 보도자료 2007-28호 8월13일.
- 박지현(2005),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안 모색”,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한국교정복지학회.
- 법무부(2004),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방지 종합대책 실시(2004.9.22)”, 법무부.
- \_\_\_\_\_ (2005a), “법무부, 성구매사범 대상 『John School(존스쿨)』 실시(2005.8.27)”, 법무부.
- \_\_\_\_\_ (2005b),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존 스쿨」 도입계획(2005.7.11)”, 법무부.
- \_\_\_\_\_ (2006a), “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2006.3. 13)”, 법무부.
- \_\_\_\_\_ (2006b), 『법무부 여성통계』, 법무부.
- 법무부·여성부(2003), 『2003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 Expert Group Meetion 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rafficking &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Campaigns 자료집』, 법무부·여성가족부.
- 법원행정처(2006), 『사법연감 2006』, 법원행정처.
- 변정애(2004), “성매매의 고착기제 연구: 탈성매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2004),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조국(편), 사람생각.
- 변화순(2006), “성매매방지정책 정착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성매매방지정책 정착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산광역시.
- 변화순(2007a), “한국 여성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내부출장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화순(2007b), “해외 성매매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이익 환수 및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국회여성가족 위원회.
- 변화순·최선희·이계오·조인경(2005), 「2004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분석편」, 여성부.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혜정(2004), “성매매는 왜, 누구의 문제인가”, 『당대비평』 통권 제28호, 생각의 나무 부산광역시(2004), 「성매매 방지대책과 향후과제」,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심포지엄.
- 선중수(2005),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사회과학논집』 제24집 제1호,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005),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외.
- 성매매방지기획단(2004),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2004.3.31)』, 성매매방지기획단.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2004),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05.10.25),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
- 손승영 외(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국회여성위원회.
- 시타(2005),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해외의 전략들”, 언니네트워킹 월례토론회 ‘뜨거운 감자’ 10월 『성매매 특집 - 살얼음판에 배를 띄우자』, 언니네트워킹.
- 양현아(2004), “성매매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특별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한국여성학회.
-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
- \_\_\_\_\_ (2002a),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부.
- \_\_\_\_\_ (2002b),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부.
- \_\_\_\_\_ (20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국외사례 연구: 미국·캐나다』, 여성부.
- 여성가족부(2005), 『성매매 클린지수 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 \_\_\_\_\_ (2006a), “성매매 영업소 폐쇄 조치 등 알선업자 처벌 강화(2006.9.19)”, 여

성가족부.

\_\_\_\_\_ (2006b),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 발표(2006.9. 19)”, 여성가족부.

\_\_\_\_\_ (2007a),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_\_\_\_\_ (2007b),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_\_\_\_\_ (2007c),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문화의식 실태조사(내부자료)”, 여성가족부.

\_\_\_\_\_ (2007d), “성매매방지법 시행3주년의 변화와 향후과제(2007.1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6a),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대안모색』,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정책포럼.

\_\_\_\_\_ (2006b),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오성동(2003),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제39호, 한국해운물류학회.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덕경(2006),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변화순·박선영(2005), 「성매매 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근무·유은주(2006),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이금형(2007),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과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

이나영(2005),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21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이명숙(2004), “성매매피해여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7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상돈(2004),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은·허태주(2005), “‘성매매 근절주의’에 표류하는 집결지 프로젝트”, 『월간 말』 3월호, 월간 말.

- 이정환(2004), “성매매 자발성 논란, 그만 뒤라”, 『월간 말』 12월호, 월간 말.
- 이호용(2005a),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 \_\_\_\_\_ (2005b),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인천발전연구원(2004), 『탈성매매를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2004 여성정책 쟁점토론회(2004.12.22), 인천발전연구원.
- 임동순(2005), 「동해 천연가스생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보고서.
- 임상규(2005),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경식(2007), “인터넷성매매의 현황과 대책: 화상채팅·애인대행사이트 중심으로”, 「다시함께센터 법률포럼: 인터넷성매매 현황과약과 대책마련(2007.12.7)」. 다시함께센터.
- 정경자(2006), 「호주의 인신매매현황과 방지를 위한 정책’ 한국여성의 해외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봄빛 여성재단·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 정수연(2006),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정책 분석 연구: 탈성매매여성의 자활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국(2004), “2004년 성매매처벌특별법 제정의 의의”, 『시민과 변호사』 7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조이여울(2004), “성매매 문제 해결의 열쇠는? -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노동사회』 11월호, 노동사회연구소.
- 조진경(2004), “성매매 현황과 근절을 위한 우리의 실천”, 『시민과 변호사』 7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_\_\_\_\_ (2006a),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현장은...”, 『젠더리뷰』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6b),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어제와 오늘,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1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최홍원영(2002), “왜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성매매방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당대비평』 통권 제18호, 생각의 나무.
- 통계청(2004),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광공업 통계연보, 각년도.
- \_\_\_\_\_,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 \_\_\_\_\_, 도·소매업판매액지수, 각년도.
- \_\_\_\_\_,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_\_\_\_\_,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_\_\_\_\_, 산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_\_\_\_\_,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_\_\_\_\_, 서비스업활동지수, 각년도.
- 캐롤라인 스펜서(2005),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의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유럽의 경험과 교훈(2005.9.2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 한국여성단체연합(2000),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1),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1), 「여성특화자활후견기관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은행(2000), “CGE모형 구축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작성방법 연구”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0. 10.
- \_\_\_\_\_ (200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 5.
- \_\_\_\_\_ (2002),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002. 5.
- \_\_\_\_\_ (2003a),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 파급효과 분석”, 2003. 12.
- \_\_\_\_\_ (2003b)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03. 9
- \_\_\_\_\_ (2004a),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4. 4.
- \_\_\_\_\_ (2004b), 「2000년 산업연관표」, 2004. 1.
- \_\_\_\_\_ (2004c),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2004. 1.
-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07), “여성인권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 - 대(對) 여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 (2007.2.22),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개발원(2005),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제25차 여성정책포럼(2005.3.22),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05),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유럽의 경험과 교훈(2005.9.21)』, 한국여성단체연합·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4), 『“성매매 방지법” 이해를 위한 자료집(2004. 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경미(2005),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현기담(2003), “성매매와 국제인권법”,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

터 4차 팀세미나(2003.5.20)」,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 2. 국외문헌

- Australian Federal Police. 2005-2006 Annual Report.
- Australian-General's Department. 2007. A Letter from Assistant Secretary A. Cole.
- Bajada, Christopher and Friedrich Schneider (Editor), 2005.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nderground Econom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ngland: Ashgate Publishing
- Campbell, Harry F. and Richard P. C. Brown, 2003. *Benefit-Cost Analysis : Financial and Economic Appraisal using Spreadsheets*.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uropean Women's Lobby(2001), *Towards a Common European Framework to Monitor Progress i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 Lim, Dongsoo, 2004.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Bio-industry and Biotechnology in the Korean Economy", submitted to 2nd OECD Ad-hoc Meeting for Economic Impact Analysis for the new technology industries, Room document. No. 12.
- Moon, Katherine H. 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n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ymond, J. G. and Hughes, Donna M. 2001. *Sex Trafficking of Women in the United States*.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Schneider, Friedrich, Johannes Kepler, Dominik H. Enste, 2003. *The Shadow Economy-An International Survey*.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llivan, Mary Lucille. 2007. *Making Sex Work: A Failed Experiment with Legalised Prostitution*. Spinifex: Melbourne.
- U.S. Department of State. 200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http://www.nso.go.kr>
- <http://www.womenlobby.org/PDF/Broch.Uk.pdf>
- <http://villagevoice.com.au>
- <http://www.hojuonline.net>
- <http://www.kiscom.or.kr>



## 부 록

부록 1. 전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365
부록 2. 겸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370
부록 3. 겸업형 심층조사 질문지	376
부록 4. 성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항목표	380
부록 5. 인신매매 근절을 미국정부의 정책	385
부록 6.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호주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392
부록 7-1.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05
부록 7-2.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06
부록 7-3.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07
부록 7-4.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08
부록 7-5.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09
부록 7-6.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10

**부록 1. 전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Gallup 200716034 **2007년 유흥/서비스업 실태조사(A/B형)** ID A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유흥업소의 각종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실태 및 유흥/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님의 의견은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사항은 통계법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담당연구원: 김 종 주 / 서 동 혁

실사연구원: 서울 본사	대전 실사
부산 실사	전주 실사
대구 실사	강원 실사
광주 실사	제주 실사

▣ 구 분 : 1) A형 2) B형

D1) 귀 업소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확인불가

D2) 응답자 성별  
 1) 남성 2) 여성

D3) 응답자 연령 : 만 세

D4) 응답자 직위  
 1) 사장 2) 관리자(매니저, 실장 등) 3) 직원  
 4) 기타 (적을 것 : )

지금부터는 귀 업소의 현황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 귀 업소가 현재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1-1) 귀 업소가 2006년과 2007년에 영업한 기간은 각각 몇 개월 정도 됩니까? 2007년은 6월까지의 영업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06년 : \_\_\_\_\_개월      나. 2007년 : \_\_\_\_\_개월

문1-2) 그럼, 귀 업소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시작 시간과 영업마감 시간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시작시간 : \_\_\_\_\_시 \_\_\_\_\_분      나. 영업마감시간 : \_\_\_\_\_시 \_\_\_\_\_분

문2) 귀 업소는 **한 달 동안** 평균 며칠 정도를 쉬십니까?

월 평균 \_\_\_\_\_일

문3) 귀 업소의 객실(방)이나 객석(테이블) 수는 총 몇 개입니까?

가. 객실 : \_\_\_\_\_실      나. 객석 : \_\_\_\_\_석

문4) 귀 업소의 영업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형태	그렇다	아니다	
㉠ 주류(술) 판매	1	2	65
㉡ 노래, 춤, 기타 여흥 가능	1	2	66
㉢ 여성 접객원 고용	1	2	67
㉣ 유리방	1	2	68
㉤ 2차 서비스용 쪽방	1	2	69
㉥ 칸막이	1	2	71



문5) 귀 업소에는 ○○님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난 3개월간 평균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명

문5-1) 그럼, 귀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여성 접객원이나 도우미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_\_\_\_\_명

문5-2) 귀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님이 요구할 경우 불러주는 여성 접객원이나 도우미의 숫자는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_\_\_\_\_명

문6) 귀 업소의 **월 평균 매출액**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오직 통계적 합산치로만 산정되오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_\_\_\_\_억 \_\_\_\_\_만원

문6-1) 그럼, **월 평균 매출액** 중 카드결제의 비율은 대략 몇 % 정도입니까?

대략 \_\_\_\_\_%

문7) 귀 업소의 **일일 평균** 이용고객의 숫자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가. 평일(월~목) 평균 : 대략 \_\_\_\_\_명

나. 주말(금~일) 평균 : 대략 \_\_\_\_\_명

문7-1) 그럼, 귀 업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층은 어느 연령대입니까?

- |           |                |
|-----------|----------------|
| 1. 20대    | 2. 30대         |
| 3. 40대    | 4. 50대         |
| 5. 60세 이상 | 6. 연령 구분없이 골고루 |



**자료분류용 질문**

D5) 등록된 사업내용(관청에 등록된 사업체 업종)

- |                       |          |           |
|-----------------------|----------|-----------|
| 1) 휴게음식점              | 2) 일반음식점 | 3) 단란주점   |
| 4) 유흥주점               | 5) 숙박업   | 6) 목욕장업   |
| 7) 이/미용업              | 8) 안마업   | 9) 노래연습장업 |
| 10) 기타(적을 것 : _____ ) |          |           |

D6) 실질적인 사업내용

- |            |                       |            |
|------------|-----------------------|------------|
| 1) 단란주점    | 2) 료살롱                | 3) 맥주/양주   |
| 4) 유흥주점    | 5) 비즈니스클럽             | 6) 카바레     |
| 7) 나이트클럽   | 8) 극장식클럽              | 9) 소주방     |
| 10) 호프집    | 11) 토속주점              | 12) 막걸리집   |
| 13) 노래방    | 14) 이용원(이발소)          | 15) 다방     |
| 16) 커피숍    | 17) 안마시술소             | 18) 스포츠마사지 |
| 19) 발관리    | 20) 피부관리              | 21) 휴게텔    |
| 22) 여관/여인숙 | 23) 기타(적을 것 : _____ )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귀하께서 오늘 응답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오직 합산된 통계자료 생산에만 이용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후 기록**

업소명	35-39		
면접원 이름		ID	40-42
Supervisor		검 증 원	
43-44			

**부록 2. 겸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Gallup 200716034

**2007년 유흥/서비스업 실태조사(C형)**

ID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유흥업소의 각종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실태 및 유흥/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님의 의견은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사항은 통계법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김 종 주/서 동 혁  
 실사연구원 박 주 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번지  
 연락처 (전화) 02-3702-2681

6-12  지역 : 

--	--	--	--	--	--	--	--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지역구분 : 1) 밀집지역 2) 분산지역

13

14-18  업종 : 

--	--	--	--	--	--

 \_\_\_\_\_

D1) 19 귀 업소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확인불가

D2) 20 응답자 성별  
 1) 남성 2) 여성

D3) 21-22 응답자 연령 : 만 \_\_\_\_\_ 세

D4) 23-24 응답자 직위  
 1) 사장 2) 관리자(매니저, 실장 등) 3) 직원 4) 기타 (적을 것 : \_\_\_\_\_)

지금부터는 귀 업소의 현황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업소 현황은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 업소가 현재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_\_\_\_\_년<sup>25-28</sup> \_\_\_\_\_월<sup>29-30</sup>

문2) 귀 업소는 **한 달 동안** 평균 며칠 정도를 쉬십니까?

31-32

월 평균 \_\_\_\_\_ 일

문3) 귀 업소의 테이블(객실이나 객석) 수는 총 몇 개입니까?

33-35

\_\_\_\_\_개

문4) 귀 업소의 **일일 평균** 이용고객의 숫자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가. 평일(월~목) 평균 : 대략 \_\_\_\_\_명<sup>36-38</sup>

나. 주말(금~일) 평균 : 대략 \_\_\_\_\_명<sup>39-41</sup>

문5) 귀 업소의 **월 평균 매출액**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오직 통계적 합산치로만 산정되오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_\_\_\_\_억<sup>42-44</sup> \_\_\_\_\_만원<sup>45-48</sup>

문5-1) 그럼, **월 평균 매출액** 중 카드결제의 비율은 대략 몇 %  
 49-51 정도입니까?

대략 \_\_\_\_\_%

문6) 귀 업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층은 어느 연령대입니까?

52

- 1. 20대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세 이상
- 6. 연령 구분없이 골고루

문7) 귀 업소에는 ○○님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난 3개월간 평균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5

\_\_\_\_\_명

문7-1) 귀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여성 접객원이나 도우미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56-58

\_\_\_\_\_명

문7-2) 그럼, 귀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님이 요구할 경우 불러주는 여성 접객원이나 도우미의 숫자는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59-61

\_\_\_\_\_명

문7-3) 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접객원이나 도우미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62-64

\_\_\_\_\_명 ⇒ '0' 명은 문8)로 같 것

문7-4) (문7-3)에서 1명 이상인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 업소에서 일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접객원이나 도우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라별로 각각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피고용인 수(명)	
㉠ 러시아		65-67
㉡ 필리핀		68-70
㉢ 몽골		71-73
㉣ 베트남		74-76
㉤ 중국(조선족 제외)		77-79
㉥ 조선족		80-82
㉦ 기타 구 소련권 (적을 것 : _____ 83-84)		85-87
㉧ 기타 동남아권 (적을 것 : _____ 88-89)		90-92
㉨ 기타 (적을 것 : _____ 93-94)		95-97

문8) 귀 업소의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도우미)에게 소위 "2차"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B6
- 1. 있다 ⇒ **문8-1, 8-2)로 갈 것**
  - 2. 없다 ⇒ **문9)로 갈 것**

문8-1) (문8)에서 '있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 업소의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도우미)에게 소위 "2차" 등을 요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7
- 1. 10% 이하
  - 2. 11~20% 이하
  - 3. 21~40% 이하
  - 4. 41~50% 이하
  - 5. 51~70% 이하
  - 6. 71~90% 이하
  - 7. 거의 모두

문8-2) (문8)에서 '있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 업소는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도우미)에게 "2차"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8-9
- 1. "우리 업소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손님에게 말한다 ⇒ **문9)로 갈 것**
  - 2.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다른 업소를 소개해준다
  - 3. 매상에 영향을 끼치므로 손님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 4. 기타(적을 것 : )

▶ **문8-3, 8-4, 8-5)로 갈 것**

문8-3) (문8-2)에서 2,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 업소에서 "2차" 등을 제공받는 손님들의 **일일 평균**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가. 평일(월~목) 평균 : 명<sup>10-12</sup>
- 나. 주말(금~일) 평균 : 명<sup>13-15</sup>

문8-4) (문8-2)에서 2,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 업소에서 원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2차" 등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가. 현금 : 만원<sup>16-17</sup>
- 나. 카드 : 만원<sup>18-19</sup>

문8-5) (문8-2)에서 2,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 업소에서  
20-21 "2차" 등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위의 다른 업소들은 다 제공하기 때문에
2. 매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3. 실질적으로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4. 손님들이 원래 그런 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 \_\_\_\_\_ )

문9) 귀 업소가 있는 지역의 같은 업종 업소들 중에서 "2차"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2-24 대략 \_\_\_\_\_ %

문10) 그럼 귀 업소의 업종을 제외하고, 귀 업소 지역의 다른 유흥/서비스 업종들 중에서 "2차" 등을 가장 많이 제공할 것 같은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27 \_\_\_\_\_

문10-1) 그럼, 그 업종이 "2차"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30 대략 \_\_\_\_\_ %

문11) 지난 1~2년간 귀 업소의 매출은 증가하였습니까? 혹은 감소하였습니까?  
(증가 혹은 감소하였다면) 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31
1. 증가했다 ⇒ ( 32-34)% 증가 ⇒ **문11)로 갈 것**
  2. 변화없다 ⇒ **문12)로 갈 것**
  3. 감소했다 ⇒ ( 35-37)% 감소 ⇒ **문11)로 갈 것**
  4. 비해당(2007년 이후 개업한 업소) ⇒ **문12)로 갈 것**

문11-1) (문11)에서 '증가 혹은 감소했다'(1,3번)는 응답자에게만  
38-39 그럼, 귀 업소의 매출이 증가(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2. 경기 때문에(호황 혹은 불황이어서)
3.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2) 마지막으로 성매매특별법 관련 규제나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40-42

**자료분류용 질문**

D5) 등록된 사업내용(관청에 등록된 사업체 업종)

43-44

- 1) 휴게음식점                      2) 일반음식점                      3) 단란주점                      4) 유흥주점
- 5) 숙박업                              6) 목욕장업                      7) 이/미용업                      8) 안마업
- 9) 노래연습장업                      10) 기타(적을 것 :                      )

D6) 실질적인 사업내용

45-46

- 1) 단란주점                              2) 룸살롱                              3) 맥주/양주
- 4) 유흥주점                              5) 비즈니스클럽                      6) 카바레
- 7) 나이트클럽                              8) 극장식클럽                      9) 소주방
- 10) 호프집                              11) 토속주점                              12) 막걸리집
- 13) 노래방                              14) 이용원(이발소)                      15) 다방
- 16) 커피숍                              17) 안마시술소                      18) 스포츠마사지
- 19) 발관리                              20) 피부관리                              21) 휴게텔
- 22) 여관/여인숙                              23) 기타(적을 것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귀하께서 오늘 응답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오직 합산된 통계자료 생산에만 이용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후 기록**

리스트번호	47-51
표본그룹번호	52-55
표본구분번호	1. 본표본 2. 예비표본 3. 현장대체표본 56

**부록 3. 겸업형 심층조사 질문지**

Gallup 200716034 2006년 기준 유흥/서비스업 심층 실태조사 ID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006년말 기준으로 국내 유흥/서비스업의 각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해당 업종 및 유흥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체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업체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설문에 최대한 성실히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귀 업소에서 제공해주시는 정보는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비스업 전체의 활로모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이며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작성기관 : 여성가족부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지역 : 

--	--	--	--	--	--	--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업종 : 

--	--	--	--	--	--

 \_\_\_\_\_

D1) 등록된 사업내용(관청에 등록된 사업체 업종)

- 17-18 1) 휴게음식점                      2) 일반음식점 3) 단란주점                      4) 유흥주점  
 5) 숙박업                              6) 목욕장업 7) 이/미용업                      8) 안마업  
 9) 노래연습장업                      10) 기타(적을 것 : \_\_\_\_\_ )

D2) 실질적인 사업내용

- 19-20 1) 단란주점                      2) 룸살롱                      3) 맥주/양주                      4) 유흥주점  
 5) 비즈니스크럽                      6) 카바레                      7) 나이트클럽                      8) 극장식클럽  
 9) 소주방                              10) 호프집                      11) 토속주점                      12) 막걸리집  
 13) 노래방                              14) 이용원(이발소)                      15) 다방                              16) 커피숍

- 17) 안마시술소            18) 스포츠마사지            19) 발관리            20) 피부관리  
 21) 휴게텔            22) 여관/여인숙            23) 기타(적을 것 :            )

## A. 업체 일반 현황

A1. 2006년 말 기준 평균 총 종사자 수

21-23

평균 \_\_\_\_\_명 (업주 및 가족 종사자를 포함)

A2. 객실(석)수

1. 객실(방) 수	2. 객석(테이블) 수
실 24-26	석 27-29

1. 객실(룸)과 객석을 모두 갖춘 사업체는 둘 다 표기
2.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는 객실은 제외

A3. 고객수

1. 1일 평균 총 고객 수	2. 1일 평균 총 부가봉사서비스 구매 고객 수
명 30-32	명 33-35

2. 부가봉사서비스는 유흥접객원을 통해 받는 모든 서비스

A4. 고객 일인당 지불하는 부가봉사서비스 비용

1. 현금지급일 경우	2. 신용카드 지급일 경우
만원 36-38	만원 39-41

## B. 재무 현황

B1. 2004년, 2005년, 2006년의 연간 매출액

연 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2004년						원 42-46
2005년						원 47-51
2006년						원 52-56

B2. 2006년도 연간 순이익(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 혹은 순손실

계정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1. 매출액(서비스 매출액)						원 57-62
2. 주류 구입비						원 63-68
3. 안주재료 구입비						원 69-74
4. 종업원 임금						원 75-80
5. 건물세(부동산 비용 전체)						원 81-86
6. 수도광열통신비(수도, 전기, 도시가스, 전화비, 우편료, 인터넷비 등)						원 87-92
7. 조세						원 93-98
8. 기타 비용(차량유지, 운반비, 인력수수료, 비품 및 소모품비, 기타)						원 99-104
* 연간순이익(순손실)=1-(2+3+4+5+6+7+8)						원
* 순손실의 경우에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표시를 함						원 105-110

## C. 기타질문

C1. 각종 유흥관련 정책 변화(성매매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기타 경제적 효과(영업활동 감소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12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성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항목표

I. 사건조사표

1. ID : 형제번호 < >

2. 접수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사건접수 지방검찰청

- \_\_\_ ① 서울중앙    \_\_\_ ② 서울동부    \_\_\_ ③ 서울서부    \_\_\_ ④ 서울남부
- \_\_\_ ⑤ 서울북부    \_\_\_ ⑥ 의정부    \_\_\_ ⑦ 수원    \_\_\_ ⑧ 전주
- \_\_\_ ⑨ 인천    \_\_\_ ⑩ 대전    \_\_\_ ⑪ 광주    \_\_\_ ⑫ 대구
- \_\_\_ ⑬ 부산    \_\_\_ ⑭ 울산    \_\_\_ ⑮ 제주    \_\_\_ ⑯ 청주
- \_\_\_ ⑰ 춘천    \_\_\_ ⑱ 창원

4. 위반유형(중복체크가능)

- \_\_\_ ① 성매매처벌법 위반
- \_\_\_ ①a 성매매알선    \_\_\_ ①b 성판매    \_\_\_ ①c 성구매
- \_\_\_ ②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 \_\_\_ ②a 성매매알선    \_\_\_ ②b 성판매    \_\_\_ ②c 성구매
- \_\_\_ ③ 청소년성매매(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중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 \_\_\_ ③a 성매매알선    \_\_\_ ③b 성판매    \_\_\_ ③c 성구매

5. 수사단서

- \_\_\_ ① 수사기관의 인지 :
- \_\_\_ ①a 기획수사    \_\_\_ ①b 신고, 탐문, 제보, 진정, 탄원
- \_\_\_ ② 고소·고발
- \_\_\_ ③ 기타 ( \_\_\_\_\_ )

6. 검거인원의 현황 및 성격

6-1. 피의자 인원

- ① 총피의자인원 : ( \_\_\_\_\_ )명
- ② 기소인원 : ( \_\_\_\_\_ )명
- ③ 불기소인원 : ( \_\_\_\_\_ )명

6-2. 피의자 유형별 분포(중복체크 가능)

\_\_\_①알선업자 \_\_\_②성판매자 \_\_\_③성구매자 \_\_\_④기타( )

7. 성매매 및 업소 유형

7-1. 업소형(상호명- \_\_\_\_\_)

\_\_\_① 특정지역 성매매집결지 \_\_\_② 숙박업소 \_\_\_③ 유흥주점  
\_\_\_④ 다방 \_\_\_⑤ 음식점 \_\_\_⑥ 노래방 \_\_\_⑦ 맥주양주집/선술집  
\_\_\_⑧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_\_\_⑨ 이발소 \_\_\_⑩ 기타 미용관련

7-2. 비업소형

\_\_\_⑪ 출장맛사지 \_\_\_\_\_⑫ 고객의 집/사무실/차

7-3. 경로형

\_\_\_⑬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_\_\_⑭ 인터넷채팅 \_\_\_⑮ 소개

7-4. 기타유형

\_\_\_⑯ 기타( ) \_\_\_⑰ 미상







8-2. 불기소

- \_\_\_① 혐의없음 \_\_\_② 기소유예(\_\_\_a단순, \_\_\_b존스쿨) \_\_\_③ 죄가안됨  
\_\_\_④ 공소권없음 \_\_\_⑤ 기소중지 \_\_\_⑥ 참고인중지 \_\_\_⑦ 각하

8-3. 보호사건송치(\* 병과시 중복체크 가능)

- \_\_\_①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소년법 제32조 제1항)  
\_\_\_a귀가조치(1호) \_\_\_b단기보호관찰(2호)  
\_\_\_c보호관찰(3호) \_\_\_d감호위탁(4호) \_\_\_e병원,요양소위탁(5호)  
\_\_\_f단기소년원송치(6호) \_\_\_g소년원송치(7호)
- \_\_\_② 보호처분의 결정(성매매처벌법 제14조 제1항)  
\_\_\_a성매매 우려가 있는 지역 출입금지(1호) \_\_\_b보호관찰(2호)  
\_\_\_c사회봉사명령( )시간(3호) \_\_\_d수감명령( )시간(3호)  
\_\_\_e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위탁(5호) \_\_\_f전담의료기관 치료위탁(6호)

9. 기타 추가할 내용

## 부록 5. 인신매매 근절을 미국정부의 정책<sup>130)</sup>

### I.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2000년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TVPA)은 미국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TVPA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자를 기소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3가지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피해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T비자가 만들어졌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는 전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인신매매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03년과 2005년에 인신매매피해자보호 권한재부여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3, TVPRA 2003,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5, TVPRA 2005)이 미국하원을 통과하였다. 2003년 TVPRA는 외국 국가와의 협력 증진, 피해자 가족 지원, 인신매매자 기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피해자가 형사법정에서 인신매매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에 개입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과의 계약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도에 통과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 권한재부여법에 따라서 2005년부터 향후 2년 동안 3억6천1백만달러의<sup>131)</sup> 예산이 인신매매에 책정되었다. 2005년 TVPRA는 미국시민의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분쟁지역에 분쟁 종결후 등장하는 취약 인구집단의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써 국제 인신매매와 싸우고

130)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에서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참고한 것이다. <http://www.state.gov/g/tip/>

131) 미국달러를 의미한다.

있다. 또 미국정부는 인신매매에 개입된 미국정부 관리나 해외 정부 계약자가 자신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법 관할구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5년 TVPRA는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인신매매 피해자로 있는 여성과 아동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II. 미국국무부 인신매매담당국의 역할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민주주의와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차관 밑에 인신매매담당국(the Office of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부서는 국내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작전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국 방콕의 정부보호소인 반 크레트라칸(Baan Kredtrakarn)은 500명의 여성과 소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받고, 법정 증언을 준비하고, 직업훈련을 받는다. 보호시설의 목적은 이들이 생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향후의 사회재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인신매매와 싸우는 정부들의 정책에 대한 것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보고서이다.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신매매 근절에 각 국가가 효과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 외교 도구(the primary diplomatic tool)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미국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외국 정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성적 착취나 여타 종류의 인신매매 종결에 대한 이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인신매매담당국(th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IP Office)은 2007년도에 반인신매매 정책을 위해서 1천6백5십만달러의 예산을 부여

받았다. TIP Office의 전체 예산 중 46개 국가의 63개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금액은 1천3백5십5만달러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유럽과 유라시아, 중동,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반구지역에 위치한 6개의 지역 프로젝트에 1백1십만달러, 4개의 국제프로젝트에 1백만3십달러, 4개의 연구프로젝트에 5십만달러가 투입되었다. TIP Office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300개의 프로포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대략 20%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도 전체 1천6백5십만달러 중 1백5십만달러가 8개 프로젝트에 제공되었다.

### III. 인신매매와 싸우는 미국정부 기관들의 역할

미국정부 내 여러 기관이 인신매매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다양한 정부기관이 “인신매매 관련 고위 정책 운용팀(the Senior Policy Operating Group on Human Trafficking)”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팀은 활동결과를 “대통령 산하 기관간 인신매매 Task Force(the President’s Interagency Trafficking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에 보고하고 있다. “인신매매 관련 고위정책 운용팀”은 미국부의 인신매매 담당국 국장(the Director of the State Department’s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이 의장을 맡고 있다. 기관들이 협력하여 TVPA 법집행을 수행하고 등장하는 정책, 계획, 예산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 1. 미국 국제개발원조 (USAID)

USAID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 반인신매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 관할 사법체계에 있는 관리들의 훈련을 통해서 범죄자 기소를 지원한다. USAID는 경제발전, 교육, 건강, 인권 지원 원조를 통해서 반인신매매를 위한 환경조성을 하고 동시에 각 국가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정부, 법집행 기관의 협력적 틀 지원을 통해서 인신매매에 대처하려고 한다.

## 2.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DOD)는 TIP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훈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 군사법원 매뉴얼을 개정하여 성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국방부 조달과 관련된 문서에서 해외의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반인신매매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2006년 11월 DOD의 총감독관(Inspector General)은 인신매매를 예방하려는 DOD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완성하고 공개하였다. 2007년 2월 인신매매와의 전쟁에서 미국 군대와 전투사령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부 규정을 확립하였다.

## 3.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DoEd)는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담당자나 방과후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의 “안전하고 마약 없는 학교 담당국(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s)”을 통해서 “미국에서 아동 인신매매: 학교를 위한 관련 정보 정리”와 같은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 4.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HHS)는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가 확인되면 각종 혜택과 관련된 수혜자 자격 증명에 책임을 지고 있다. 난민(Refugee)과 같은 정도로 연방과 주정부의 프로그램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비미국인 성인에게 발급한다. 이들이 받는 혜택과 서비스에는 주거지원, 음식지원, 소득지원, 고용지원, 영어교육, 건강 지원, 정신건강 지원, 고문 희생자 지원이 포함된다. HHS는 미국인이 아닌 18세 미만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유사한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아동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HHS가 통보받으면 즉각적으로 난민과 같은 수준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HHS의 예산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미국내 외국인 혹은 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확인과 의식 고양에 집중되어 있다. HHS는 핫라인을 개설하여 “전국 인신매매 자원 센터

터”와 “구조와 복원”라는 대중 의식 고양 캠페인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5.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안보부(DHS)는 이민관세집행부(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가 수행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한다. ICE는 국내외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한다. 핫라인을 설치하여 인신매매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ICE는 반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법집행 기관에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권이민서비스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T비자를 제공하고 지속적 체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ICE의 가석방 및 인도적지원국(Parol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ffice)과 협력한다.

#### 6.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법무부(DOJ)의 시민권리국의 형사과(Civil Rights Division's Criminal Section)는 강제된 노동,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비자발적 노예지위와 관련된 일에 책임을 지고 있다. 법무부는 FBI, DHS/ICE, 여타 연방과 지방 법집행기관, 미국연방 검찰, 형사국의 아동착취와 외설과(the Criminal Division's Child Exploitation and Obscenity Section, CEOS)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노동자 착취나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한다. 시민권리국은 전국의 핫라인을 설치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CEOS는 미국내 아동성매매나 아동섹스 관광과 같은 아동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 초점을 두고 연방과 지방 법집행기관과 공동으로 일하고 있다. 사법정의지원국(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은 반인신매매 기동대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희생자국(the Office of Victims of Crime)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수혜자격 증명서 발급 이전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국립사법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사법통계국(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은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법정책국(the Office of Legal Policy)은 미국하원과 미국정

부에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정부활동과 이것에 대한 평가를 담은 법무부 장관의 연간보고서를 미국하원과 미국정부에 제출한다.

## 7.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노동부(DOL)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HHS 증명서가 발급된 후 이용 할 수 있는 “원스톱 커리어 센터(One Stop Career Center System)”를 통해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교통, 아동보육, 주거와 같은 지원서비스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구직 및 구직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OL의 직업훈련기관(Job Corps)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청소년에게 고용, 추가의 교육기회, 의미 있는 직업 확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 직업기술교육 습득을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를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임금 및 시간 부서(the Wage and Hour Division)”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DOL은 또 인신매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인신매매되어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아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제 반인신매매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한다.

## 8.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DOS)

국무부(DOS)는 반인신매매 정책과 프로그램 조정에 책임이 있는 장관급 수준의 Task Force와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기관간 작전팀(interagency working team)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인구·난민·이민국(PRM)과 인신매매방지국(th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G/TIP)은 국제 반인신매매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한다. G/TIP은 또한 전세계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노예제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관련 활동을 격려한다. G/TIP는 인신매매 이슈와 관련하여 외국정부와 협력하는데 사용되는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적 수단이다. PRM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환, 사회재통합,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9. 밀입국과 인신매매 센터 (HSTC)

HSTC는 정보를 배포하고 전략적 평가를 준비하는 정부 기관들의 통합 센터이다. 이익, 착취, 테러지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세계으로 이동시키는 범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위해서 법집행, 정보, 외교 커뮤니티를 결집시킨다.

## 10.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대통령 산하 정부기관간 태스크포스와 고위정책

**책운용팀**(The President's Interagency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and the Senior Policy Operating Group, PITF)

미국정부가 외국정부에게 인신매매에 대항하여 강력한 정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하듯이 미국정부의 정부기관간 작전팀도 연중 내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수행하는 국내외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고 있다. 2000년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은 대통령이 정부기관간 Task Force(PITF)를 확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PITF는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위한 장관급 수준의 Task Force이다.

## 부록 6.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호주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sup>132)</sup>

호주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목적지인데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인신매매는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서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대상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신매매는 복잡한 성격의 범죄로서 단일 기관이나 단일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 호주 정부는 국내, 인근 국가 지역, 국제적 노력의 공조를 통해서 인신매매와 싸우고 있다. 특별히, 호주 내의 주, 영토(territories),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호주 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이민·다문화·원주민부,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국, 관세부가 협력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 I.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인신매매방지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완하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완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 이용, 타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급여나 혜택 제공을 통해서 사람을 충원, 이동, 역류,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는 타인의 성매매, 다른 형태의 노예제, 신체기관의 제거를 통한 착취를 적어도 포함해야 한다.

132) 이 내용은 호주 법무부가 발간한 안내 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원제는 “Australian Government’s Action Plan to Eradicate Trafficking in Persons(2004)”이다.

## II.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어떻게 충원하는가?

인신매매자들은 피해자 충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목적국에서 무용수, 웨이트리스, 가사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통해 비교적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취약한 사람을 타깃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이 목적국에 도착한 후에야 하기로 예정된 일이나 조건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신매매자들은 피해자 탈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폭력, 구금, 위협, 선불금(debt bondage), 개인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그것이다. 종종 인신매매자들은 피해자 고국의 가족이나 자녀를 죽이거나 해를 입히려고 위협한다. 이외에 피해자들은 목적국에서 이민자로서 지위가 불확실하고 구금이나 추방당할 두려움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한다.

## III. 인신매매의 경향

인신매매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인신매매는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는데,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공장 및 농업노동자 확보나 인간신체의 기관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최근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것이 증가했다고 추측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추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일관성 없이 사용된 것이 이러한 어려움에 기여하였다. 유엔의 인신매매협약에서는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 전세계에 걸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인신매매의 국제적 특성과 범위에 대한 포괄적 그림을 얻기 위해서 “인신매매 통계 프로젝트(a Trafficking Statistics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에 인신매매된 사람은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주범죄위원회(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는 여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와 영토정부는 2003년 5월부터 범위연구(scoping studies)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호주범죄연구소(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는 1999년 3월 유엔에 의해서 시작된 “인신매매 방지 국제 프로그램(the Global Program against Trafficking in Humans)”에 참여하고 있다.

#### IV. 인신매매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신매매의 원인은 다양한데, 빈곤, 불완전 고용, 실업, 교육의 부족, 자원 접근의 부족이 포함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노숙, 경기 위축, 사회적 불안정도 관련 요소이다. 특히 인신매매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이 지속되는 것을 반영한다. 인신매매자들은 보통 사회, 경제,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고 더 좋은 조건을 추구하려는 피해자, 가족, 피해자와 가족 양측의 욕구에 호소함으로써 피해자를 충원한다. 이들은 목적국에서 피해자가 하게 될 일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 속인다. 인신매매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렴하고 규제받지 않는 노동력에 대한 세계 시장의 확산은 피해자에 대해 꾸준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V. 착취를 목적으로 한 성산업 분야의 여성 인신매매

호주로 인신매매된 여성은 도착하면 성산업에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은 구금되고, 신체적 성적 폭력과 위협에 처하고, 안전하지 못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고, 고객이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고, 인신매매자에게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여성이 성산업 종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이다.

## VI. 호주 정부의 대응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호주정부의 행동계획은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예방
- 검거와 조사
- 범죄자 기소
- 피해자 지원과 재활

이외에도 2003년 10월 호주정부는 2천만달러 이상을 인신매매 범죄 소탕을 위한 기금으로 투입했다. 새로운 기금을 통해 다음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었다.

- 23명으로 구성된 호주 연방 경찰 타격 팀을 구성
- 태국에 이민관련 고위 관리를 상주시킴
- 포괄적 피해자지원 조치를 제공
- 동남아시아로 귀환하는 피해자의 재통합을 지원
- 국내 지역사회에서 관련 의식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 제작

호주정부는 피해자를 위해 새로운 비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범죄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1. 예방

#### 가. 국제적 헌신

호주정부는 인신매매가 국제적 관심사임을 알고 있으며 해당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 나. 국제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협약

호주정부는 유엔의 국제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협약과 유엔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참여함으로써 인신매매에 대항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헌신함을 보여주었다. 호주는 위의 협약에 서명하였고 2004년에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비준할 계획이다. 호주 연방정부 시스템 하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정부나 영토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의 협약은 조사, 기소,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틀을 확립하였다.

## 다. 밀입국, 인신매매,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발리(Bali) 작전

호주정부는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소탕하는 지역 국가들의 노력에 있어서 전면에서 나서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밀입국, 인신매매, 관련범죄에 대한 2번의 지역 장관 회담에서 공동 의장직을 맡았다. 인신매매를 소탕하는데 있어서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밀입국, 인신매매,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발리 작전”과 “밀입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사”에 의해서 개발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관련 작업은 역량 육성, 법안 개정, 국경 관리, 일반인의 의식 고양, 정보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중국과 협력하여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국내 법안을 만드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모델 법안을 만들었다. 발리 작전의 16개 국가가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 라. 해외 개발 원조

호주원조기구(AusAID,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발전을 저해하는 빈곤과 사회·경제·정치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아동 섹스관광을 근절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파트너와 공조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법 집행기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이 협력 파트너이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의 역량 육성, 지역 협

력과 법정책 들의 강화를 목적으로 8백5십만달러를<sup>133)</sup> 인신매매 방지 프로젝트를 위해 아시아 지역 협력에 제공하였다. 처음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2003년 4월에 시작하여 2006년 4월에 완성되었다.

- 메콩강 하부지역(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1백만달러를 UNDP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프로젝트에 제공하였다. 관련 예산은 1999년 5월부터 2004년 4월에 제공되었다.
- 메콩 지역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귀환과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이주 기구에 4백7십만달러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유난에서 인신매매된 여성과 아동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국경에 걸친 관련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 9월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된다. 이 프로젝트의 2단계를 위해 6십6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논의 중이다.
- ASEAN 관광 지역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십5만달러를 Childwise Australia에 제공하였다. 목적은 관광지역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광업계 가이드라인과 지역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관련 지원은 2002년 4월에 시작하여 2004년 4월에 완성된다.
- Childwise Australia의 2단계 사업을 위해서 59만달러가 승인되었다. 이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아동의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와 인근지역 국가 정책과 계획 단계를 지원할 것이다. 아동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지역 국가의 협력을 계속 도모하려고 한다.

---

133) 호주달러를 의미한다.

호주 원조 프로그램은 성인지적이다. 2002-'03년도 6억4천2백8십만달러가 훈련, 지역사회 개발, 건강과 영양, 소득 창출,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초점을 두면서 젠더 요소를 포함하는 활동에 사용되었다. 목적은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외원조 프로그램 외에도 호주정부는 국제 이주기구와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이주가 이주자와 사회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헌신하는 정부간 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호주 인권과 동일기회 위원회는 국가 인권 기관의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지역에 걸쳐서 반인신매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 마. 법의 집행: 국제 협력

호주연방 경찰은 인신매매자의 활동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광범위한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최근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조사와 우수 사례에서 적용된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직 경찰의 훈련 과정 제공
- 필리핀 법 집행 기관과 성범죄 조사에 대한 훈련
- 파푸아 뉴기니아 경비대와 함께 성인지 훈련
- 유엔 고등인권관무관 국가에서 인준된 윤리규정(code of conduct)을 법 집행 담당자에게 교육시킴
- 캄보디아 공동 국제 범죄조사팀에게 자문 제공

호주 연방경찰은 호주 대사관과 고위위원회에 상주하고 있는 연락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들 관리들은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적 차원의 법집행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 바. 이민규정 준수 (Migration Compliance)

호주 정부는 동남아시아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있는 고위 이민부 관



리를 방콕 대사관에 상주시키고 있다. 태국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성노동자(Sex Workers)의 주요 공급처이면서 지역 인신매매 소탕 작전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이민부 고위관리는 태국에 상주하는 호주 연방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 2. 구금과 조사

### 가. 전체 정부차원의 접근

호주의 모든 수준의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위원회가 규제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성산업이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인신매매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 나. 성적 착취를 위한 여성인신매매를 소탕하기 위한 국가 정책 전략

호주 경찰총장위원회를 통해서, 호주 정부와 주 및 영토 정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인신매매 소탕을 위해서 국가 정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전략은 다음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예방 (Prevention)
- 역량과 자원 (Capacity and Resources)
- 피해자 지원 (Victim Assistance)
- 파트너쉽
- 훈련과 교육
- 규제와 입법화

위의 전략은 경찰서비스의 국가적 틀을 제공하면서, 특별히 조사, 훈련, 파트너쉽,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제 대응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의 범위를 보여준다. 전략 개발은 준비하는데 있어서 각 주와 영토는 관련 법안과 각각의 관할지역에서의 문제의 성격과 범위, 행정당국과 호주 이민·다문화·원주민부의 관계를 검토했다. 위의 전략은 2004년

7월 호주 경찰청장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다. 이것은 인신매매 소탕을 위해서 포괄적 접근을 지향하는 호주 정부의 노력의 일부분으로 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보완할 것이다.

#### 다. 연안 활동(Onshore Activities)

호주정부는 호주연방경찰 내에 23인으로 구성된 국제인신매매 타격팀(Transnational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Strike Team)을 구성하였다. 이 팀은 연방경찰의 국제범죄공조센터에 근거를 두고 인신매매와 성적착취를 다루기 위해서 조사관과 전문가를 모집한다. 이 팀은 인신매매 범죄단을 타겟으로 조사하여 호주 성노예를 근절하려는 작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연방경찰, 정부 기관, 주의 경찰, 영토정부의 경찰과 그러는 것처럼 타격팀은 해외 경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입법, 사건조사 방법, 인신매매 경향, 정보 타겟, 피해자 연락 문제를 다루면서 전문가 조사를 위한 훈련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이외에 이민·다문화·원주민부는 연방경찰과 정보와 증거 수집과 교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을 정교화하고 과정 절차에 대해서 면담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 라. 외국에서의 활동(Offshore Activities)

호주 연방경찰의 국제 네트워크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상주한 요원과 방콕의 국제 범죄 조정관이 포함된다. 2001년 호주 연방경찰은 방콕에 인신매매 공동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이 팀은 태국 왕립 경찰의 이민부에 위치하여 밀입국 외에도 인신매매를 강조하며 국제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2년 9월 프놈펜에 호주 연방경찰과 캄보디아 공동 국제 범죄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이 팀은 호주 연방경찰에게 노예와 성적 노예를 포함한 국제범죄 소탕을 촉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 마. 관련 법령

호주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

## 바. 기존의 법령

1999년 유엔의 인신매매에 대한 의정서가 개발되기 전에 호주정부는 노예, 성적 노예, 성적 노예를 위해 사기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타인을 노예로 삼은 것은 최대 25년 징역형, 성적 노예는 최대 19년 징역에, 성적 노예로 삼기 위해 사기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은 최대 9년 징역에 처해진다. 2002년도 호주정부는 착취를 목적으로 개인을 외국에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것을 범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 사. 새로운 법령

호주경찰로 하여금 인신매매 범죄 조사 방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통신 도청과 관련된 법령이 수정되었다. 노예, 성적 노예, 착취를 목적으로 사기로 사람을 충원하거나 밀입국시키는 것은 호주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는데 이것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경우를 포괄한다. 2004년 호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법령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 아. 아동 섹스 관광

호주의 아동 섹스 관광 범죄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는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호주인이 해외에서 기소를 피했다면 호주에서 기소될 수 있다. 1994년 법이 집행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여러 건의 기소가 있었다.

## 3. 범죄자 기소

호주 검찰총장은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 인신매매 범죄를 기소할 책임이 있다. 보다 효율적인 기소를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Bridging 비자를 만들었다. Bridging F 비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호주 당국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30일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30일 기간 동안 개인은 Criminal Justice Stay Certificate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경찰의 평가를 받는다.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호주 당국을 도우려 하고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의 지원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 Criminal Justice Stay 비자가 허락된다.

#### 4. 피해자 지원과 재활

호주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여 대처하고 있다. 사례관리 접근이 사용되는데 Bridging F 비자가 부여된 피해자는 비자가 유효한 기간 혹은 이들이 호주를 떠나고 싶을 때까지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받는 지원에는 일시적 숙박, 의료서비스 접근, 상담 및 법률 지원, 훈련과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다. 나중에 Criminal Justice Stay 비자를 받는 피해자는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신매매자 조사와 기소에 협조한 것으로 인해서 고향에 귀환했을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 증인 보호 비자(Temporary or Permanent Witness Protection Visa)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호주정부는 또 본국으로 귀환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호주원조기구(AusAID), 국제이주기구(IOM), 이민·다문화·원주민부, 호주연방경찰, 여성지위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작업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또한 현장에서 작전 수행 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경찰 및 이민부 관리들이 관련 이슈에 대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훈련은 담당자들이 인신매매의 지표를 인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원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확신하도록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이 피해자는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조사관을 도울 수 있다.

## 5. 지역 사회 의식의 고양

국내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하고,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금을 제공하였다. 의식고양과 관련된 전략은 다른 성노동자, 고객, 성매매업소 업주와 매니저, 성매매업소를 규제하는 관리, 이민국 요원, 성노동자 아웃리치 단체, 성적 건강서비스 제공자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주의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성산업에서 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다. 해당 전략은 관련 문제를 보도하는 미디어가 문화적 적합성 및 맥락 적합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도록 격려하면서 일반 지역사회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다. 인신매매의 지표, 피해자 권리, 피해자 지원의 가능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된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 성산업을 찾는 고객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략 초기에는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대부분의 피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드니와 멜버른에 집중될 것이다. 이 전략의 1단계는 2004년에 시작된다.

## 6. 성과 진단(Measuring Progress)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호주정부의 행동계획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증가
- 인신매매 피해자나 증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호주 당국에 협조할 의사가 증가한 정도
-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
- 인신매매와 관련된 도전을 감당할 능력의 증가

호주 정부는 인신매매 소탕을 위한 노력이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진전을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 이외

에도 매일의 관련 작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요원은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정된 대응을 위해서 계속 긴밀하게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전문 민간단체나 인신매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다른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7. 향후 전망

호주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의정서를 비준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질적이고 상징적으로 일보 전진한 것이다. 호주정부는 의정서 하에서 다음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존중할 것이다.

- 호주에 인신매매된 사람의 규모를 모니터
- 인신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국내 및 국제적 경향에 대응
-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범죄를 배양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지원 제공
-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행동

## 부록 7-1.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주점업 감소에 따른 총산출액 감소, 2004~06 기간)

(단위: 억 원)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농림수산물	31.5	-65.1	-230.3	-122.1	-385.9
광산품	21.6	-16.4	-59.0	-21.1	-75.0
음식료품	72.3	-137.4	-411.7	-182.4	-659.2
섬유 및 가죽제품	1.4	-3.3	-10.3	-3.6	-15.7
목재 및 종이제품	6.2	-10.3	-31.5	-10.7	-46.3
인쇄, 출판 및 복제	4.3	-2.5	-8.3	-3.1	-9.7
석유 및 석탄제품	11.6	-24.1	-83.1	-33.9	-129.5
화학제품	13.0	-23.7	-89.4	-37.2	-137.3
비금속광물제품	2.0	-3.5	-10.7	-4.1	-16.3
제1차금속제품	6.0	-9.1	-22.7	-9.9	-35.7
금속제품	2.8	-5.0	-14.6	-4.8	-21.6
일반기계	2.1	-3.5	-12.5	-4.3	-18.2
전기 및 전자기기	7.3	-5.1	-19.7	-6.7	-24.1
정밀기기	0.5	-0.5	-2.2	-0.6	-2.8
수송장비	1.7	-2.6	-7.7	-2.8	-11.5
가구 및 기타제조업	1.2	-3.4	-11.4	-4.3	-17.9
전력, 가스 및 수도	38.2	-24.9	-80.7	-27.3	-94.7
건설	5.8	-5.5	-20.4	-7.5	-27.6
도소매	12.7	-19.3	-94.0	-30.6	-131.1
음식점 및 숙박	4.2	-361.5	-477.2	-287.2	-1121.7
운수 및 보관	8.4	-15.0	-53.9	-17.9	-78.3
통신 및 방송	14.4	-8.8	-32.7	-11.3	-38.3
금융 및 보험	16.9	-14.4	-60.9	-21.3	-79.7
부동산/사업서비스	120.4	-56.9	-214.6	-61.3	-212.4
공공행정 및 국방	0.1	-0.1	-1.4	-0.4	-1.8
교육 및 보건	3.9	-5.6	-18.9	-6.8	-27.4
사회/기타서비스	1.6	-1.6	-5.2	-1.9	-7.1
기타	8.3	-9.9	-34.8	-12.6	-49.1
합계	420.3	-839.1	-2119.5	-937.5	-3475.8

## 부록 7-2.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주점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2004~06 기간)

(단위: 억 원)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농림수산물	16.1	-39.9	-135.1	-76.3	-235.2
광산품	14.4	-10.3	-39.7	-14.2	-49.8
음식료품	21.2	-49.0	-122.5	-53.9	-204.2
섬유 및 가죽제품	0.4	-1.0	-3.3	-1.1	-5.0
목재 및 종이제품	1.8	-3.2	-8.1	-3.1	-12.7
인쇄, 출판 및 복제	1.5	-1.0	-3.7	-1.2	-4.5
석유 및 석탄제품	3.3	-8.6	-29.7	-11.6	-46.6
화학제품	4.4	-6.2	-20.5	-7.0	-29.3
비금속광물제품	0.6	-1.0	-3.6	-1.3	-5.3
제1차금속제품	1.2	-1.7	-4.6	-2.1	-7.2
금속제품	1.0	-1.6	-5.2	-1.7	-7.4
일반기계	0.7	-1.0	-3.8	-1.4	-5.5
전기 및 전자기기	2.1	-1.5	-5.5	-1.3	-6.2
정밀기기	0.1	-0.1	-0.6	-0.2	-0.8
수송장비	0.4	-0.7	-2.1	-0.7	-3.1
가구 및 기타제조업	0.4	-1.2	-3.9	-1.5	-6.2
전력, 가스 및 수도	12.2	-10.9	-44.9	-16.1	-59.7
건설	2.6	-2.5	-9.2	-3.5	-12.5
도소매	7.6	-11.8	-57.3	-18.6	-80.1
음식점 및 숙박	1.7	-164.3	-207.0	-117.4	-486.9
운수 및 보관	3.6	-7.6	-25.7	-7.5	-37.2
통신 및 방송	8.8	-5.4	-19.7	-6.8	-23.0
금융 및 보험	12.3	-10.0	-41.0	-14.8	-53.5
부동산/사업서비스	79.0	-41.2	-156.3	-44.1	-162.7
공공행정 및 국방	0.1	-0.1	-1.0	-0.3	-1.3
교육 및 보건	2.6	-3.9	-12.6	-4.6	-18.5
사회/기타서비스	0.8	-0.8	-2.6	-1.0	-3.6
기타	0.0	0.0	0.0	0.0	0.0
합계	200.9	-386.5	-968.9	-413.3	-1567.8



## 부록 7-3.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주점업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2004~06 기간)

(단위: 명)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농림수산물	13	-27	-94	-50	-158
광산물	10	-7	-26	-9	-34
음식료품	22	-42	-126	-56	-202
섬유 및 가죽제품	1	-3	-9	-3	-13
목재 및 종이제품	3	-4	-14	-5	-20
인쇄, 출판 및 복제	3	-2	-7	-2	-8
석유 및 석탄제품	0	0	-1	-1	-2
화학제품	3	-6	-24	-10	-36
비금속광물제품	1	-1	-4	-1	-6
제1차금속제품	1	-1	-3	-1	-4
금속제품	2	-3	-8	-3	-12
일반기계	1	-2	-6	-2	-9
전기 및 전자기기	2	-2	-6	-2	-7
정밀기기	0	0	-2	0	-2
수송장비	1	-1	-2	-1	-4
가구 및 기타제조업	1	-2	-8	-3	-12
전력, 가스 및 수도	7	-4	-14	-5	-17
건설	7	-7	-24	-9	-33
도소매	46	-70	-342	-111	-477
음식점 및 숙박	12	-1025	-1352	-814	-3179
운수 및 보관	9	-16	-59	-19	-85
통신 및 방송	5	-3	-11	-4	-13
금융 및 보험	15	-12	-53	-18	-69
부동산/사업서비스	108	-51	-192	-55	-190
공공행정 및 국방	0	0	-2	0	-2
교육 및 보건	8	-12	-41	-15	-60
사회/기타서비스	5	-5	-17	-6	-23
기타	0	0	0	0	0
합계	286	-1310	-2446	-1206	-4677

## 부록 7-4.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기타 관련산업 감소에 따른 총산출액 감소, 2004~06 기간)

(단위: 억 원)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농림수산물	-24.7	-12.6	-22.2	-74.6	-134
광산물	-15.1	-4.8	-16.4	-31.1	-67
음식료품	-55.0	-26.0	-39.0	-108.8	-229
섬유 및 가죽제품	-4.4	-1.3	-5.2	-8.6	-20
목재 및 종이제품	-8.1	-2.6	-7.7	-14.4	-33
인쇄, 출판 및 복제	-7.0	-1.6	-6.4	-12.0	-27
석유 및 석탄제품	-12.9	-6.3	-21.9	-49.1	-90
화학제품	-25.4	-9.4	-41.1	-72.5	-148
비금속광물제품	-2.5	-1.0	-3.3	-6.4	-13
제1차금속제품	-9.3	-4.0	-12.1	-24.0	-49
금속제품	-3.5	-1.5	-5.0	-8.9	-19
일반기계	-3.0	-1.5	-6.5	-10.7	-22
전기 및 전자기기	-11.4	-3.0	-14.4	-23.0	-52
정밀기기	-0.7	-0.3	-1.4	-1.8	-4
수송장비	-7.1	-5.0	-19.9	-35.9	-68
가구 및 기타제조업	-3.4	-1.0	-3.7	-7.1	-15
전력, 가스 및 수도	-19.7	-10.2	-24.4	-40.9	-95
건설	-6.0	-2.0	-7.8	-16.0	-32
도소매	-13.7	-3.2	-15.0	-32.0	-64
음식점 및 숙박	-43.6	-22.9	-95.2	-282.7	-444
운수 및 보관	-9.3	-3.4	-11.7	-22.8	-47
통신 및 방송	-20.4	-8.1	-18.7	-27.7	-75
금융 및 보험	-19.8	-4.5	-18.8	-34.3	-77
부동산/사업서비스	-93.8	-22.1	-92.4	-162.4	-371
공공행정 및 국방	-0.3	-0.1	-0.5	-0.8	-2
교육 및 보건	-4.7	-1.6	-5.8	-10.5	-23
사회/기타서비스	-96.2	-58.6	-252.5	-419.9	-827
기타	-23.7	-6.7	-25.0	-44.2	-100
합계	-544.7	-225.3	-794.1	-1583.0	-3147

## 부록 7-5.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기타 관련산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2004~06 기간)

(단위: 억 원)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농림수산물	-12.6	-7.7	-13.0	-76.3	-110
광산품	-10.0	-3.0	-11.0	-14.2	-38
음식료품	-16.2	-9.3	-11.6	-53.9	-91
섬유 및 가죽제품	-1.4	-0.4	-1.7	-1.1	-5
목재 및 종이제품	-2.4	-0.8	-2.0	-3.1	-8
인쇄, 출판 및 복제	-2.4	-0.7	-2.8	-1.2	-7
석유 및 석탄제품	-3.6	-2.2	-7.8	-11.6	-25
화학제품	-8.5	-2.4	-9.4	-7.0	-27
비금속광물제품	-0.7	-0.3	-1.1	-1.3	-3
제1차금속제품	-1.8	-0.8	-2.4	-2.1	-7
금속제품	-1.3	-0.5	-1.8	-1.7	-5
일반기계	-1.0	-0.4	-1.9	-1.4	-5
전기 및 전자기기	-3.3	-0.9	-4.0	-1.3	-10
정밀기기	-0.2	-0.1	-0.4	-0.2	-1
수송장비	-1.8	-1.3	-5.5	-0.7	-9
가구 및 기타제조업	-1.1	-0.4	-1.3	-1.5	-4
전력, 가스 및 수도	-6.3	-4.5	-13.6	-16.1	-40
건설	-2.7	-0.9	-3.5	-3.5	-11
도소매	-8.2	-1.9	-9.1	-18.6	-38
음식점 및 숙박	-17.8	-10.4	-41.3	-117.4	-187
운수 및 보관	-4.0	-1.7	-5.6	-7.5	-19
통신 및 방송	-12.4	-4.9	-11.2	-6.8	-35
금융 및 보험	-14.4	-3.1	-12.7	-14.8	-45
부동산/사업서비스	-61.6	-16.0	-67.4	-44.1	-189
공공행정 및 국방	-0.2	-0.1	-0.3	-0.3	-1
교육 및 보건	-3.2	-1.2	-3.8	-4.6	-13
사회/기타서비스	-50.3	-29.7	-126.1	-1.0	-207
기타	0.0	0.0	0.0	0.0	0
합계	-249.3	-105.5	-372.5	-413.3	-1141

## 부록 7-6.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주점업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2004~06 기간)

(단위: 명)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권	전라권	전체
농림수산물	-10	-5	-9	-50	-74
광산품	-7	-2	-7	-9	-26
음식료품	-17	-8	-12	-56	-93
섬유 및 가죽제품	-4	-1	-4	-3	-12
목재 및 종이제품	-4	-1	-3	-5	-13
인쇄, 출판 및 복제	-6	-1	-5	-2	-14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1	-1
화학제품	-7	-2	-11	-10	-30
비금속광물제품	-1	0	-1	-1	-4
제1차금속제품	-1	0	-1	-1	-4
금속제품	-2	-1	-3	-3	-8
일반기계	-1	-1	-3	-2	-7
전기 및 전자기기	-3	-1	-4	-2	-11
정밀기기	-1	0	-1	0	-2
수송장비	-2	-2	-6	-1	-11
가구 및 기타제조업	-2	-1	-3	-3	-8
전력, 가스 및 수도	-4	-2	-4	-5	-15
건설	-7	-2	-9	-9	-28
도소매	-50	-11	-54	-111	-227
음식점 및 숙박	-123	-65	-270	-814	-1272
운수 및 보관	-10	-4	-13	-19	-46
통신 및 방송	-7	-3	-6	-4	-19
금융 및 보험	-17	-4	-16	-18	-56
부동산/사업서비스	-84	-20	-83	-55	-241
공공행정 및 국방	0	0	-1	0	-1
교육 및 보건	-10	-4	-13	-15	-42
사회/기타서비스	-308	-188	-808	-6	-1310
기타	0	0	0	0	0
합계	-688	-329	-1352	-1206	-3576

연구보고 2007-60

##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2007년 11월 28일 인쇄

2007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여성가족부

전화 / 02-2100-66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060100-000255-13



